

2018년 이슈페이퍼 모음집

2018 KICCE 육아지원정책 현안과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차례

[2018 이슈페이퍼 모음집]
육아지원정책 현안과 과제
KICCE(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PART 01

아동권리

- 아동권리의 법적 기반 확보 방안 3
-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공공성 강화 방안 21

PART 02

아동발달

- 초등 저학년 신체건강 증진방안 41
- 아동의 하루 생활시간 분석을 통한 아동의 시간 활용 제안 57

PART 03

유치원·어린이집 운영 및 교직원

- 어린이집 CARE 컨설팅 모형 개발 및 상시 질 관리 방안 77
- 유치원·어린이집 영유아와 교직원 건강관리 현황 및 개선 방안 101
- 맞춤형 보육 운영 현황과 개선과제 119
- 보육교직원 재교육의 새로운 방향 모색 : 전문교육과정 운영 143

PART 04

가정 및 지역사회 양육지원

- 영유아기 부모교육 실태 및 부모교육 의무화에 대한 정책제언 165
- 초등 자녀 방과후 돌봄 지원방안 189
- 저출산 분야 자녀돌봄 지원의 생애주기별 정합성 진단 및 향후 과제 207
- 1세 영아 가정양육환경 분석을 통한 가정양육 지원방안 모색 227
- 다문화 한부모 육아지원 개선방안 245
- 어린이집 특수교사 수급 현황과 개선 방안 267
- 맞벌이 가정의 긴급보육 실태 및 개선과제 285

PART 05

육아비용

- 영유아 가구의 교육·보육에 대한 인식과 서비스 이용 행태에 관한 고찰 303

PART

01

아동권리

- ▮ 아동권리의 법적 기반 확보 방안
김아름 부연구위원
- ▮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공공성 강화 방안
김아름 부연구위원

이슈페이퍼 2018-06

아동권리의 법적 기반 확보 방안

PART 01

김아름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우리나라 아동정책 관련 법제
3. 아동권리 취약부문의 법적 기반 강화
4. 아동 및 청소년 관련법의 통합
5. 헌법상 아동권 수용을 위한 개정

참고문헌

아동권리의 법적 기반 확보 방안*

김아름 부연구위원

| 요약 |

- 아동권리 보장을 위해 단계적으로는 우선 현재 개별법상 법적 기반이 미약하여 아동권리 보호가 취약한 영역에 대해 개정을 추진해야 하며(1단계), 용어, 연령 등 중복·중첩적으로 규정되어 재정이 분산되고, 추진이념에 있어서 충돌우려가 있는 관련법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야 함(2단계). 이후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통일된 기준과 추진 체계를 마련하는 기본법을 제정해야 하며(3단계), 마지막으로 아동이 하나의 권리주체의 대상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헌법 개정을 통해 이를 명확히 해야 함(4단계).
- 이에 아동의 정신건강 보장, 돌봄취약계층 아동의 통합지원, 근로아동의 환경개선, 미등록이주 아동 보호, 교내아동의 의사결정 참여와 정치활동 보장, 입양아동 보호체계 개선, 아동의 놀 권리 강화와 관련하여 각각의 개별법 개정방향을 제시함.
- 아동의 연령기준과 용어를 정비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의 교육체계에 비추어 볼 때, 영유아는 6세 미만 아동으로, 어린이는 6세 이상 13세 미만의 자(초등학교 이하), 청소년은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자로 정의하며, 이들 모두를 “아동”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함.
- 또한, 아동과 청소년으로 분리되어 있는 업무를 한 부처로 단일화하고, 관련된 법령들은 통합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헌법에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보충하고, 내용을 구체화한다면, 아동의 주관적 법적 지위와 책임 능력에 대한 일반적인 법의식이 훨씬 강하게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우리나라의 현행법상 아동정책은 요보호아동 중심이며,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기 보다는 가족과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수동적인 보호와 양육의 대상자로 취급하고

* 본 원고는 「김아름·유해미·박은영·장민선(2017).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법적 기반 확보 방안. 육아정책연구소」의 내용을 토대로 구성함.

있어 아동권리 보장에 한계가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현행 아동 관련 법제 및 정책을 분석하여 필요한 개선과제를 모색함과 동시에, UN 아동권리협약의 이행 및 아동권리 보장을 위해 필요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우리나라 아동정책 관련 법제

가. 국내법상 아동의 개념과 법적 지위

-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아동의 범위는 특별히 따로 법으로 정하지 않는 한 “18세 미만의 자”로 정의하고 있음(협약 제1조).
 - 그러나 국내법상 아동에 관하여는 그 용어와 연령들이 개별 법률에 따라 각기 달리 규정되어 있어 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을 ‘18세 미만인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적용대상은 ‘보호대상아동’ 즉,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 등(동법 제3조 제4호) 선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민법」에서는 아동의 정의 대신에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제4조)’는 규정을 통해 만 ‘19세 미만의 자’를 미성년자로 간주하고 있으며, 「소년법」에서도 ‘소년’을 19세 미만인 자로 규정하고 있음(동법 제2조).
 - 이 외에도 다양한 법률들에서 ‘아동’, ‘청소년’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만, 용어나 목적에 따라 그 기준을 달리하고 있음(〈표 1〉 참조).

〈표 1〉 현행 법령상 아동의 범위

	법명	구분	연령	소관부처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	18세 미만인 자	여성가족부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	18세 미만인 사람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 준용)	법무부
3	다문화가족지원법	아동· 청소년	24세 이하인 사람	여성가족부
4	모자보건법	영유아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	보건복지부
5	소년법	소년	19세 미만인 자	법무부
6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아동	18세 미만인 아동	보건복지부
7	아동복지법	아동	18세 미만인 사람	보건복지부
8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아동	18세 미만인 사람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 준용)	보건복지부
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	18세 미만인 사람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 준용)	법무부
1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 청소년	19세 미만의 자	여성가족부
11	아이돌봄 지원법	아이	만 12세 이하 아동	여성가족부
12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어린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학생 또는 18세 미만인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 준용)	식품의약품안전처
13	영유아보육법	영유아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보건복지부
14	유아교육법	유아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	교육부
15	입양특례법	아동	18세 미만인 사람	보건복지부
16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아동	18세 미만의 사람	보건복지부
17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청년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고용노동부
18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	여성가족부
19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만 19세 미만인 사람	여성가족부
20	한부모가족지원법	아동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함)	여성가족부
21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아동	16세 미만인 사람	법무부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에서 2018년 4월 20일 인출함.

- 이러한 국내 법체계에서의 아동의 법적 지위에 대해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장기적으로는 아동의 개념을 통합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 NPO 연대, 2010: 12).
- 즉, 법령에서 아동 연령 설정의 기준은 아동권리협약의 일반원칙, 즉, 비차별, 아동 최선의 이익, 생존과 발달의 권리원칙에 근거해야 하고, 아동 관련 법령 등에 있어 연령의 중첩과 누락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 서비스 접근성의 격차를 해소하여 부처 간의 업무 중복이나 공백을 방지해야 함.

나. 아동·청소년 관련 주요 대책의 아동권리 보장

-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은 2012년 8월부터 시행된 「아동복지법」 제7조(아동정책기본계획의 수립)와 2014년 2월 아동정책위원회에서 확정된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 방향에 관한 후속 조치로서 마련되었음.
- 이를 비롯하여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한 아동 관련 정책이 추진되어 왔음. 대표적으로 범부처 및 지역사회 연계 발전을 추구한 제5차 청소년기본계획(2013-2017), 유해환경에 대한 예방 및 선제적 대응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보호대책을 수립한 제2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16-2018), 범정부 아동학대 종합대책의 추진을 위해 마련된 아동학대방지대책(2016) 등이 있음.
- 또한 지속적으로 아동권리 실태 및 이행현황을 검토하기 위해 「아동복지법」제2조 제4항에 따른 기본이념과 동법 제4조 제5항에 따라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홍보하기 위한 규정 등을 근거로 하여 아동권리 인식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그 밖에 2011년 개정된 「아동복지법」 제11조는 아동의 양육 및 생활환경, 언어 및 인지 발달, 정서적·신체적 건강, 아동안전, 아동학대 등 5년마다 아동의 종합실태를 조사하여 공표하고, 이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함을 밝히고 있음.

다. 아동권리 보장과 법적 기반의 차원

- 아동권리 보장과 법적 기반의 정비 및 강화를 위해 분석한 내용은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구분됨.

- 우선 1) 아동권리의 통합적 기반으로서 법적 기반을 점검하고, 2) 아동권리 보장 수준이 미흡한 영역 및 세부 항목을 도출하여 관련 법률의 보완 사항을 제시함.

□ 아동권리 보장의 범위와 영역별 세부 내용

-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아동권리 일반 원칙 및 주요 내용과 최근 아동 관련 주요 대책의 기본 방향을 종합하여 아동권리 법적기반 확보를 위한 주요 영역을 구분하면 다음 <표 2>와 같음.
- 차별금지 등 아동권리협약의 일반 원칙은 아동 관련 모든 법률에서 일관되게 견지되어야 하며, 아동의 생존 및 발달을 위한 사회보장 혜택에 관한 권리와 학대 예방 등은 아동의 보호를 위한 일차적인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함.
- 이를 토대로 세부적으로 보건 및 사회복지 전반, 안전 및 보호, 교육 및 자립 역량, 가정보호 및 대안 양육, 그리고 놀 권리와 문화 활동에의 참여로 구분할 수 있음.

<표 2> 아동권리 보장 주요 영역 및 세부 내용

주요 영역	세부 내용
기본권/일반원칙	차별금지 아동 최우선의 원칙 아동견해 존중: 의사존중 및 참여권 보장 자유권 보장 시민권: 등록(출생 신고), 국적 및 신분 보장 사회보장(보건 및 복지)에 대한 권리
보건 및 복지	장애아동 등 대상별 맞춤형 복지 위기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정신건강 관리 사회보장을 통한 생존 발달 보장 발달주기별 건강 및 영양관리 체계 구축: 영유아기, 학교
안전 및 특별보호	가정, 돌봄서비스기관, 학교 등의 위해요인 해소 도로 등 이동공간 안전 확보: 안전교육 포함 발달주기별 안전 취약분야 투자 지역사회 안전환경 조성 경제적 착취 및 유해 노동으로부터의 보호 성적 학대 및 착취로부터의 보호 인신매매로부터의 보호 사법기관으로부터의 아동 보호 소수아동의 보호: 난민 아동 포함 학교폭력 예방 및 사후관리

주요 영역	세부 내용
	학대 및 체벌 금지 유해환경 개선 및 피해 예방: 온라인 모니터링 등 식품안전: 불량식품 및 급식관리
교육 및 자립역량	영유아기의 교육보육 기회 보장 아동권리 원칙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운영 직업훈련 및 생활지도를 포함한 교육 청소년의 필수역량 함양 및 균형 성장 청소년의 정책 결정과정 참여
가정보호 및 대안 양육	빈곤가정 아동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부모로부터의 분리와 가족복귀 학대 예방 및 사회복지 입양아동의 보호와 양육
놀권리와 여가활동	휴가와 여가 시간 보장 가족중심 여가문화 조성 아동 연령에 맞는 놀이 기회 및 환경 조성 문화활동과 예술활동 참여의 균등한 기회 보장

- 자료 1) 관계부처합동(2013).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
 2) 관계부처합동(2015).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
 3) 관계부처합동(2016a). 아동학대 방지대책.
 4) 관계부처합동(2016b). 제2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16~2018).
 5) 여성가족부(2012). 보도자료: 직접 참여하고 함께하는 모든 청소년 대상의 정책 추진-“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 수립”(2012. 12.2).
 6) 여성가족부(2016). 보도자료: 제2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16~’18) 수립 발표(2016. 4. 20).
 7) 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 NPO 연대(2006).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선택의정서.
 8) 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 NPO 연대(2010). 제3, 4차 유엔아동권리협약 민간보고서.
 * 각 자료의 내용을 참고하여 새롭게 구성함.

□ 아동권리 보장의 법적 기반 정비와 미비 사항 보완

- 아동권리 보장의 법적 기반은 기존 법률의 정비, 즉, 현행 아동 관련 법률들이 아동 권리를 온전하게 보장하는지를 점검하고, 나아가 세부 항목별로 법적 미비사항이 없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아동권리 법적 기반 미비 사항에 관한 검토에 있어서는, ① 보건 분야의 아동의 정신건강 보장, ② 복지 분야의 돌봄취약계층(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아동의 통합지원, ③ 특별보호 분야의 근로아동의 환경 개선(최저임금 포함)과 미등록이주아동의 보호, ④ 교육 및 자립역량 분야의 교내 아동의 의사결정 참여와 정치적 활동 보장, ⑤ 가정보호 및 대안양육 분야의 입양아동 보호체계 개선, ⑥ 놀 권리와 여가활동 분야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3 아동권리 취약부문의 법적 기반 강화

가. 아동의 정신건강 보장

- 우리나라에는 아동의 정신건강 보장에 관련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청소년복지법」 등의 복지 관련법과 「교육기본법」, 「학교보건법」 등 학교와 관련된 8개의 직·간접적인 법이 존재함.
-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정신건강증진법」은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아동의 정신건강 문제를 특화하여 그에 대한 예방, 교육, 상담, 치료 재활 등에 관한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체계는 갖고 있지 못함.
-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법이나 교육 관련법은 교육이나 복지증진 일반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나, 정신건강을 전문으로 하는 법체계를 구비하지 못하고 있으며, 관련법의 중복과 사각지대 문제가 구조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 이와 더불어 아동의 정신건강 증진과 관련하여 인터넷게임 중독, 자살 등의 예방과 전문적인 치료·재활 등 예방적 차원의 관련 규정이 미비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법적 근거의 마련이 필요함.

나. 돌봄취약계층 아동의 통합지원

- 우리나라 한부모가족 지원체계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이원화되어 있는데,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적용대상인 한부모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없고, 단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수령할 수 있는 생계급여를 수령할 수 있음.
- 이 외에도 한부모가정에서 양육되는 아동이 공적부조가 아닌 이혼이나 사별에 따른 부모 일방의 양육 내지 양육비를 지원받는 방식으로 성장하게 되는 점과 다문화가정 대상의 지원은 대체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언어교육 위주라는 점과 같은 문제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음.

- 이에 현재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정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소액 급여지급 형태는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전달체계의 통합을 통해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다. 근로아동의 환경 개선

- 현행법상 근로아동에 관해 별도로 규정된 일반법은 없으며, 「근로기준법」, 「직업안전법」 등 연령의 구분 없이 적용되는 일반적인 근로관계법에 따르고 있음.
- 다만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소자근로에 관해 별도의 장으로 규정하여, 최저고용연령, 근로시간 및 조건, 위험한 환경에서의 근로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정도임(황옥경 외, 2015: 349).
- 그러나 현실적으로 아동이나 연소자가 근로하는 형태를 감안하더라도 동법 제11조는 법의 적용범위를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하고 있어,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근로아동에 대한 보호가 어려움.
- 이에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연소자가 근로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근로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함.
- 또한, 생활비를 마련해야 하는 비진학 청소년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부 근로허용시간을 이원화하여 더욱 열악한 근로환경에 내몰리게 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음.

라. 미등록이주아동 보호

- 우리나라는 이주아동 권리와 관련하여,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있으나,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은 합법적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및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며, 「다문화가족지원법」 또한 결혼이민자와 국적취득자 및 귀화를 허가받은 자로서 모두 합법적인 체류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함.
-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우리나라의 제3·4차 국가보고서에 대해 불법체류자 자녀를 포함한 이주아동이 교육에 접근하고 실질적으로 교육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정책과

전략을 개발하고 채택할 것과, 모든 이주노동자 및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 협약을 비준하고 국내법이 협약조항에 합치되도록 할 것을 권고한 바 있으나, 아직 다른 국제협약과 법규들에 관하여는 비준하지 않은 상황임.

- 또한, 현재 「아동복지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에서 법의 기본이념으로 차별금지를 명시하고는 있으나, 해당 법에서 재외국민아동이나 외국에 장기 거주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유아교육·보육료를 지원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등 실질적으로 차별을 두고 있음.
- 이에 이주아동에 대한 교육원 및 건강권 등 생존과 발달에 직결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등 교육과 관련된 법률과 「건강보험법」 등 해당 관계 법률에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해서는 이 법에 보장된 권리에 대해 차별하여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들이 차별받지 않고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마. 입양아동 보호체계 개선

- 우리나라는 법원에 의한 입양허가제가 도입되고, 중앙입양원이 설립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입양 전 아동의 보호 및 결연, 입양허가 신청, 예비양부모 교육 등 입양아동의 인생을 좌우하는 절차들은 아직도 입양기관이 담당하고 있음.
- 이처럼 입양아동의 보호체계와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점은 입양절차의 대부분이 민간기관인 입양기관에 맡겨져 있다는 점임.
- 또한, 입양 전 아동의 보호에 있어서 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것이 없는데, 이에 따라 각 입양기관에서는 아동을 일시보호시설에서 보호하거나, 위탁가정봉사자에게 보호를 맡기거나 혹은 예비양부모 가정에 입양 허가 전에 보내고 있음.
- 그러나 이 시기 아동이 학대나 사고를 당한 경우 국가가 개입할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동의 보호에 있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입양특례법」에 입양 전 아동의 보호체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중앙정부(보건복지부) 및 지자체, 중앙입양원의 역할을 강화하여 입양아동 보호에 있어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여 입양아동의 권리보장을 확보하여야 함.

바. 아동의 놀 권리 강화

- 우리나라는 선행학습을 근절하여 공교육의 정상화를 이루기 위해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한 바 있는데, 동법은 초·중등학교 교과과정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사실상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는 효과를 얻기 힘들.
 - 또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야학습을 제한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오히려 휴일에 아동들이 쉬지 못하고 학원에 가야 하는 등 여전히 아동의 휴식권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공휴일을 포함한 휴일학습을 규제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한편, 물리적 환경과 관련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아동의 안전을 위해 안전기준에 미달한 놀이터에 대해서는 이용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음.
 - 다만, 안전 검사에 불합격한 놀이터에 대해 이용을 금지하는 조치만을 규정하고 있고, 놀이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점검 후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에 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아, 아직까지도 상당히 많은 놀이터가 봉쇄되어 사용되지 못하고 있음.
 - 아동이 안전하게 놀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단순히 점검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아동에게 상시 안전한 놀이터를 제공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책무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 그 밖에도 놀이터 설치 시 당사자인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맞는 놀이시설을 고루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아, 대부분 유아 이상의 큰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전기준 뿐만 아니라 발달단계에 따른 시설을 고루 갖추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서는 50인 미만 어린이집의 경우 실외놀이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동 규정은 영유아의 놀 권리를 침해하고, 건강한 성장발달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모든 어린이집이 실외 놀이터를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4 아동 및 청소년 관련법의 통합

가. 아동의 연령기준과 용어 정비

- 아동을 칭한 용어는 관련 법률에서 영유아, 아동, 청소년, 어린이, 미성년, 소년 등으로 달리 규정되고 있어 아동에 대한 법률적 규정은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음.
 - 통상 6세 미만,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는 영유아로 보며, 18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는 청소년으로 보지만, 현행법상 9세 이상 18세 미만의 자는 아동에 속하기도 하고 청소년에 속하기도 하여 아동과 청소년의 개념이 중복됨(조성혜, 2011: 52).
 - 이러한 원인은 여러 가지로 분석되고 있는데, 아동과 관련하여 시대적 상황이나 정책적 필요에 의해 제·개정 되어 왔다는 점, 대륙법계의 독일법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최근 영미법계 법령과 국제조약·기준 등을 참고함에 따라 기준 연령에 대한 혼란이 가중되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음(최윤영, 2013: 83).
 - 이처럼 유사한 목적의 법령들에서 용어, 대상연령의 상이함은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아동복지와 청소년복지의 범위 획정을 모호하게 하여 문제가 됨.
- 모든 법률에 대해 획일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분명 무리가 있지만, 정책방향에 따라 통일성 없이 용어 및 연령을 정하고, 대상자를 중복 또는 누락시키는 것은 수범자의 혼란을 야기하며, 정책 시행과 서비스 제공에 혼선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아동 관련 법체계 내에서는 연령과 용어를 가급적 통일시키는 것이 타당함.
 - 예컨대, 영화관과 놀이공원의 이용료나 버스, 지하철 등의 교통요금에 있어서도 청소년 내지 어린이 할인 요금 대상의 연령기준이 제각각인데 이는 법에서 명확한 연령을 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임.
 - 또한, 「아동복지법」 제53조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 등에 대해 각각 아동에 대한 입장료와 이용료 감면, 청소년 우대혜택을 두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각각의 법에서 설정하고 있는 시설의 범위와 연령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대상자가 누락되는 문제가 발생함.
- 독일의 사회법전 제8권 「아동·청소년지원법」은 아동은 14세 미만, 청소년은 14세 이

상 18세 미만, 성인은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본 「아동복지법」은 영아는 1세 미만, 유아는 1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 소년은 초등학교 입학 후 18세 미만, 그리고 이 모든 개념을 통합하여 아동이라 정의하고 있음.

-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아동의 정의를 18세 미만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각 나라의 교육체제나 문화에 따라 정의는 달라질 수 있음.
- 따라서, 우리의 교육체제에 비추어 볼 때, 영유아는 6세 미만 아동으로, 어린이는 6세 이상 13세 미만의 자(초등학교 이하), 청소년은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자로 정의하며, 이들 모두를 “아동”의 범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나. 소관부처 등 행정전달체계의 정비

- 아동과 관련된 개별 법령들을 바탕으로 정리하면, 아동 관련 소관부처는 대한민국 정부를 비롯하여 13개의 부(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환경부, 행정안전부), 1개의 처(식품의약품안전처), 1개의 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로 정리됨.
 - 이처럼 아동 또한 대한민국의 국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동과 관련이 없는 부처는 찾아보기 어려움.
 - 다만, 각 부처가 아동이라는 존재에 관심을 기울이는 정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아동에 관해 대표적인 중앙행정기관인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의 3개 부처 역시 각기 개별적으로 아동 관련 정책을 계획·운영하고 있어 통합적인 운영체제의 구축이 요구됨(이양희 외, 2015: 205).
- 특히, 아동복지에 있어서는 하나의 부처가 컨트롤타워로서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전달체계도 하나로 통합하여 사무와 재정분담에 있어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분권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독일의 지방 청소년청이나 일본의 어린이·육아본부, 영국의 지방 아동서비스국 등을 참고하여,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제3의 부처를 신설하는 것을 고려해보아야 함.

다. 아동·청소년 통합기본법 제정 및 관련법 통·폐합

- 현행 입법체계는 아동과 청소년으로 분리되어, 개별 쟁점에 필요한 개별법들이 제정·시행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그러나 입법체계가 일관성과 통일성을 갖추어야 현장에서 법집행을 하는데도 일관성과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음.
 - 현재 아동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을 비롯하여 「영유아보육법」 외 다수의 법률이 있으며, 청소년에 대해서는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보호법」외 다수의 법률이 제정·시행되고 있음.
 - 이렇게 이원화된 법률들에 대해서 1차적으로는 아동과 청소년으로 분리되어 있는 업무를 한 부처로 단일화하고, 관련된 법령들은 통합할 필요가 있음.
- 「청소년 기본법」상의 청소년 연령과 「아동복지법」상의 아동의 연령은 중복되고 있고, 각각의 법에 따른 청소년정책조정위원회와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업무 역시 중복됨.
 - 이러한 업무의 중복과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을 막기 위해서는 「아동복지법」과 「청소년 기본법」을 통합하고, 아동권리 보장의 기본방향과 정책의 틀을 형성하는 통합적인 기본법을 제정해야 함.
- 통상 기본법을 제정하는 방법으로 하나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존의 법률을 전면 개정함으로써 법적 위상을 강화시키는 방법이 있음.
 - 기본법 제정의 의의는 복잡한 법체계의 정비와 혼선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에서 그리고 하나의 대상에 대한 법적 지위의 향상을 위한 목적에서 제정되는 것이 일반적임.
 - 이 과정에서 기본이념과 목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정책이 일관성을 갖고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큰 의미가 있음.
 - 아동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기본법으로서 「아동복지법」의 확대개편을 통해 아동과 관련된 정책의 일관성을 모색하고, 행정부 및 민간영역에서의 관련 지원프로그램 등의 정책집행에 필요한 기본틀을 만드는 것이 합리적임.
 - 또한 유엔아동권리협약에는 마련되어 있지만,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에는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개별법과의 비교를 통해 해당 내용이 기본법에 담기도록 해야 할 것임.

5 헌법상 아동권 수용을 위한 개정

가. 헌법상 근거 미비와 개정 필요성

- 아동 역시 우리 「헌법」 제10조에 따라 인간의 존엄성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헌법」 제34조 제4항은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로 규정하고 있어 “아동”이 빠져 있음.
 - 「헌법」 제32조 제5항은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연소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하지 않음.
 - 이처럼 이들 조항은 아동을 권리행사의 주체로 보기보다는 보호의 대상, 즉, 권리향유의 대상으로 보는데 그치고 있음.
- 그동안 우리나라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를 강화시키기 위해 입법적·정책적으로 많은 노력을 해왔음.
 - 그러나 아직 아동은 독립된 법적 주체로 인정되기 보다는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특히, 자신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하나의 인격체로서 성인과 평등한 권리주체가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식이 부족한 상황임.
 - 이에 「헌법」에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보충하고, 내용을 구체화한다면, 아동의 주관적 법적 지위와 책임 능력에 대한 일반적인 법의식이 훨씬 강하게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임(정혜영, 2009: 84).

나. 헌법 개정의 방향 및 주요내용

- 현재 독일에서는 아동의 권리를 헌법상 기본권적 지위에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독일기본법」에서 이러한 경향을 보이는 이유는, 현재의 법체계를 통해서는 아동의 적극적인 권리보장에 많은 한계와 어려움 등이 있기 때문임.
 - 예컨대, 복잡한 현대사회의 양상에 있어서, 아동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독일기본법」에서는 문헌상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

기 때문에 적극적인 예방 혹은 피해구제에 어려움이 발생함.

- ▣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천명하고 있는 기본원칙(보호, 지원, 참여, 차별금지, 아동복지의 우선 등)에 관하여 최상위법인 헌법에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더욱 적극적인 권리의 보호가 가능하게 됨.

 - 뿐만 아니라 아동이 적극적인 권리의 주체자임을 천명하고, 사회적 약자인 아동의 권리를 명확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헌법개정은 추진되어야 할 것임.
 - 이에 따라 헌법개정을 통한 아동권리 반영은 아동이 보호와 배려를 수동적으로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이를 적극적으로 요구할 주체가 된다는 규정, 개별적 인격체로서 권리의무의 평등한 주체가 된다는 규정, 국가와 사회의 아동존중의 원칙을 선언, 모든 행위를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지향한다는 원칙 규정, 아동의 국적, 성별 등과 무관하게 평등한 대우를 약속한다는 원칙규정 등 아동권리의 기본 이념들을 헌법 내에 규정하는 방식이 되어야 할 것임(이양희 외, 2015: 107).

| 참고문헌 |

- 관계부처합동(2013).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
- 관계부처합동(2015).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
- 관계부처합동(2016a). 아동학대 방지대책.
- 관계부처합동(2016b). 제2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16~2018).
- 김아름·유해미·박은영·장민선(2017).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법적 기반 확보 방안. 육아정책 연구소.
- 여성가족부(2012). 보도자료: 직접 참여하고 함께하는 모든 청소년 대상의 정책 추진-“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 수립“(2012. 12.2).
- 여성가족부(2016). 보도자료: 제2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16~’18) 수립 발표(2016. 4. 20).
- 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 NPO 연대(2006).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선택의정서.
- 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 NPO 연대(2010). 제3, 4차 유엔아동권리협약 민간보고서.
- 이양희·오동석·정병수·김희진·전미아·김강한(2015).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법적 제도와 방안 연구. 2015 보건복지부연구용역. 국제아동인권센터.
- 정혜영(2009). 아동의 기본권에 관한 연구 - ‘아동’관련 조항의 신설과 그 헌법적 모델에 관한 검토. 공법학연구, 10(4), 81-112.
- 조성혜(2011). 아동·청소년 복지의 개념과 법체계의 개선방안. 법제연구, 41, 43-85.
- 최윤영(2013). 아동복지법제의 개선에 관한 연구: 권리와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황옥경·안동현·이호균·강현아·홍관표·현소혜·정선영(2015). 아동·청소년권리 국제인권기준의 국내이행 기초현황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웹사이트>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이슈페이퍼 2018-08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공공성 강화 방안

김아름

1. 서론
2. 우리나라 아동학대 대응체계 현황 및 문제
3. 해외사례 및 시사점
4.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공공성 강화 방안

참고문헌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공공성 강화 방안*

김아름 부연구위원

| 요약 |

- 아동학대 문제는 우리 사회를 해하는 중대한 문제로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관찰 및 발견, 조치, 사후관리 등의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하며, 특히, 상당부분 민간에 의지하고 있는 현재의 아동보호체계를 공공의 영역으로 흡수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아동학대의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법무부와 기획재정부에서 각출된 ‘기금’에서 예산이 마련되고 있는데,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주로 민간에서 운영되는 만큼, 필요한 예산확보를 통해 공공성을 강화하고, 이 기관들에 대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감독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일반회계예산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현장조사원들은 조사원증을 발급받는 등의 자격이 부여되지만, 실제 경찰과 동행하지 않는 경우 현장조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특별사법경찰제도를 활용하여 아동 및 복지 전문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현장조사원’을 사법경찰관리로 임명하여 활용하는 방안이 도입될 필요가 있음.
- 2014년 이후로 아동학대 관련 신고체계는 경찰의 112센터로 통합되어 있으나, 실제 운영에 있어 다양한 루트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 신고의 방식과 절차에 따라 이후 사건의 진행 속도나 경과가 달라지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실질적인 신고체계의 일원화가 필요함.
- 아동학대 대응체계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를 통해 공공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 요보호아동에 대한 사후 서비스를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함.

1 서론

-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의 “2018 아동학대 방지 보완대책 - 아동학대 대책 실효성 제고 방안”에 따르면 지난 수년간 아동학대 사건은 지속적으로

* 본 원고는 「김아름·박은영·김재선(2017).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의 역할과 법제 개선방안. 육아정책연구소」의 내용을 토대로 구성함.

증가하는 추세임.

- 그러나 자극적인 기사와 소재로 인해 아동학대 사건 자체와 관련자의 처벌 여부 등에만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어 있으며, 피해자인 아동에 대한 관리, 향후대처 등 사후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떨어짐.
- 아동학대 문제는 우리 사회를 해하는 중대한 문제로 보아야 하며, 지금부터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관찰 및 발견, 조치, 예방 등의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유엔아동권리위원회(2011)는 제3·4차 국가보고서 심의결과보고서에서 아동학대 신고자의 안전을 고려하는 보고체계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 구체적으로는 아동학대를 신고할 법적 의무를 강화하고 확대할 것(권고사항 44항)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수를 증설하고, 학대피해자를 위한 재활지원 등 인적·기술적·재정적 자원을 배정할 것(권고사항 45항)을 권고하였음.
- 본고에서는 최근 우리 정부가 제출한 제5·6차 국가보고서 및 아동학대 방지 보완대책과 함께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현황과 법제도 등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해외사례와의 비교 및 시사점 도출을 통해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과제들을 도출하여 해결방안 등을 제시하고자 함.

2 우리나라 아동학대 대응체계 현황 및 문제

가. 아동학대 발생 현황

- 정부는 2014년부터 아동학대 신고전화를 112 콜센터로 통합하여 24시간 신고와 상담뿐만 아니라 즉시 수사나 긴급개입 등의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11년에 10,146건이었던 것이 2017년에는 34,221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이 중에서 실제 아동학대로 판단된 건수는 2011년 6,058건에서 2017년 21,524건으로 조사되었음(표 1 참조).

〈표 1〉 아동학대 발생건수

단위: 건

구분 \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아동학대 신고건수	10,146	10,943	13,076	17,791	19,214	29,669	34,221
아동학대 의심건수	8,325	8,979	10,857	15,025	16,651	25,873	-
아동학대 판정건수	6,058	6,403	6,796	10,027	11,715	18,573	21,524

자료: 대한민국정부(2017). 제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p.88; 관계부처 합동(2018). 아동학대 방지 보완대책-아동학대 대책 실효성 제고 방안, p.16 재편집.

- 한편, 2016년을 기준으로 피해아동의 연령을 살펴보면,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령기에 해당하는 아동이 전체 피해아동의 62.3%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학령기 아동이 학교 및 학원 등 외부 환경에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 노출되어 학대 사실이 발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음(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7: 106).
- 영유아기에 해당하는 만 6세 미만의 아동은 아동학대 사례 전체 건수 중 21.5%를 차지하고 있는데, 부모와 주요한 애착관계를 형성하는 영유아기에 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들보다 불안정 애착을 보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영유아 학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함(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7: 106).
- 더 나아가 2017년의 경우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 중 만 6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 비율은 전체의 80.6%에 해당하고 있는데(관계부처 합동, 2018: 3), 이처럼 영유아의 경우 중대학대범죄에 상대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대책 마련이 시급함(표 2 참조).

〈표 2〉 2017년 학대로 사망한 아동 현황

연령	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7세	8세	9세	12세
사망자 수	31	12	2	3	3	2	3	1	2	1	1	1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8). 아동학대 방지 보완대책-아동학대 대책 실효성 제고 방안, p.3.

나.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관련 인프라 현황

- 정부는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시설 및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왔음. 2015년부터 지방에 이양되었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을 국고지원으로 전환한 결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1년 43개소에서 2017년 현재 60개소로 증가하였음(표 3 참조).

〈표 3〉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수

단위: 개소

구분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5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43	46	50	50	55	59
학대피해아동쉼터		-	-	-	36	40	53	54

주: 학대피해아동쉼터는 2014년부터 통계 관리
 자료: 대한민국정부(2017). 제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p.87.

- 학대피해아동쉼터는 2014년 36개소에서 2017년 현재 54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표 3 참조), 2015년에 학대로 인해 분리보호조치된 피해아동 3,110명 중 쉼터를 이용한 아동은 830명(21.3%)으로, 정부는 학대피해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증설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정부는 학대피해아동을 보호하고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있으며, 2015년 아동학대예방사업 예산 확대로 모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임상심리 전문인력을 1~2명씩 배치하여 2014년 190명에서 2015년 315명으로 증가하였음. 2016년 5월부터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을 개소당 15명에서 17명으로 증원하고 있음.

다. 아동학대 조사 및 수사체계

- 2014년부터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현장동행 출동체계(아동학대처벌법 제11조)를 마련함에 따라 경찰 동행출동은 2013년 552건에서 2016년에는 14,594건으로 증가하였음.
- 그러나 아직까지 그 비율은 전체 현장조사 건수에 27.3%에 불과함(표 4 참조).

〈표 4〉 2016년 현장조사 동행 현황

단위: 건

상담원	경찰	상담원· 경찰	상담원· 공무원	경찰· 공무원	상담원·경찰· 공무원	계
30,210 (56.6%)	5,720 (10.7%)	14,594 (27.3%)	718 (1.3%)	114 (0.2%)	2,045 (3.8%)	53,401

자료: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7). 2016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 p.94.

라. 현행법상 유관기관의 범위와 역할

- 아동학대범죄의 처리절차에는 보건복지부, 법무부, 교육부 등의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국가행정부처와 경찰, 검찰, 법원 등의 사법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그 외의 사회복지시설에 이르기까지 아동학대의 예방과 관리에 있어 다수의 기관들이 참여하고 있음.
 - 현행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등에 관련 기관과 역할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으나, 일부 기관에 한정되어 있음.
 - 경우에 따라서는 관련 기관의 범위가 넓어지기도 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한정되어 진행되기도 하는데,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의 역할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개별 단계들에 있어서 절차의 일원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마. 현행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문제

- 지난 2000년 전면개정된 「아동복지법」으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도 본격적인 아동보호체계를 갖추게 되었음.
 - 다만, 이 시기에도 국가가 아동보호체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기보다는 그 기능과 주된 역할을 민간인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발전되어져 왔음.
 - 그러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아동학대 사건의 위험성과 국민들의 인식 전환으로 인해 2014년 「아동학대처벌법」이 제정되었고, 이에 따라 아동학대사건에서 검찰과 경찰의 사법공조체제가 수립되었으며, 형사사법체제 내에서의 사건처리가 본격화되었음.
- 이처럼 아동학대행위자의 처벌 및 피해아동의 조치가 개선되는 등 사건처리를 위한

국가적 노력은 계속되고 있지만, 아동학대에 대한 사전적인 예방이나 사후관리 등의 공공서비스는 여전히 많은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 이에 대한 원인은 우선 정비되지 않은 법체계에서 찾을 수 있는데, 각 정부부처와 기관들에 권한과 임무를 부여하고 있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은 수차례 개정과정을 거쳐 오는 동안 본래의 입법취지와 목적에 대한 고려 없이 개정 당시의 필요에 충실했던 관계로 법체계와 제도상 어색한 모습을 하게 되었기 때문임.
-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아동학대 범죄의 신고 및 발생건수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예산과 인력, 수요를 충분히 따라가기에는 버거운 인프라는 아동학대의 예방이라는 본질적 문제 해결에 다가서기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 현행 아동학대 대응체계는 그 책임소재를 특정 기관에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음.
 - 즉, 아동학대 예방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불완전한 대응체계와 지원이더라도 관련부처와 지자체, 유관기관 구성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지만, 우리가 심심치 않게 접하는 언론보도의 내용은 책임소재의 불분명으로 인한 공방이주를 이루고 있음.
 -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도식처럼 되어 있는 지금의 체계를 단순화하여, 권한과 기능을 집중하고, 필요한 예산의 마련과 인력의 확충이 수반될 필요가 있음.

3 해외사례 및 시사점

가. 미국

- 미국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자국법상 아동학대에 대해 엄격한 보호체계를 갖춘 국가로 평가되고 있음.
- 특히, 연방과 협력하여 지방(주정부) 중심의 보호체계를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부모의 친권보다)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지방정부가 민간과 연

계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점 등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음.

- 아동학대에 대한 보호체계는 미국 수정헌법 제10조에 의하여 사실상 지방정부(State, County 등)를 통해 주도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므로 연방정부의 개입여지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음.

 - 그러나 지속적으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연방법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치유법」(“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Act”)이 제정되면서 전국적으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네트워크와 조치들이 발전하게 되었음.
 - 동 법에서는 신체, 정서, 성적, 유기 및 방임 등으로 학대의 유형을 구분하고, 각 유형별로 대응방안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으며, 특히 아동학대에 관한 일반 프로그램으로서 학대에 대한 전국정보센터(National Clearinghouse)를 구축하는 등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연방의 지원을 기반으로 하되 각 주가 주체가 되어 아동학대 신고 및 예방제도, 조사 및 격리조치 등의 구체적인 수단들을 규율하게 됨.
- 미국의 아동보호체계는 친권을 강조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아동 중심으로 이루어져있음.

 - 신고, 조사 및 평가절차에서 부모 등 성인의 관점에서 친권보호를 우선시하지 않고, 당사자인 아동에게 최선의 대응이 무엇인가(Best Interest of the Child)를 기준으로 최선책을 찾으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음.
 - 예컨대 아동학대 발견 이후 학대의 정도, 아동과 부모와의 관계, 부모의 사회적·경제적 상황 등을 전문가와 함께 충분히 논의하고 가장 바람직한 대응방안(격리, 친인척 입양, 면접권 인정 등)을 모색함.
 - 특히 최근 여러 주에서 채택하고 있는 차등적 대응체계는 아동의 개별적이며 구체적인 이익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를 가짐.
- 마지막으로 미국의 지방정부와 연계된 민간 프로그램은 가정방문, 양육지원, 건강교육 등의 여러 영역에서 주정부의 지원을 받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민간 프로그램은 공공 서비스에 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규율되어 더욱 아동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주고 있음.

나. 영국

- 영국의 아동학대 보호체계는 198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며 아동의 인권보다는 부모의 친권보호의 관점에서 논의가 전개된 바 있음.
 - 그러나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하여 2003년 이후 영국 정부는 아동학대 방지정책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삼았고, 모든 아동의 권리가 보호되어야 한다는 관념을 담은 “Every Child Matters”에 관한 정책제안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음.
- 영국의 아동법, 아동복지법은 사인·지방 및 중앙정부·법원 등 여러 기관이 협조하도록 하는 협력적 네트워크 체계(“Working Together”)를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동법,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경우, 사인(당사자, 주변인)이 신고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지방 및 중앙 정부에서도 직접 아동학대에 관한 데이터를 구축·운영하여 아동학대를 사전에 발견하는데 적극 개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아동학대 사건 발견 이후에 이루어지는 주요 행정절차인 조사, 평가, 관리체계에서도 중앙정부 내 각 부처(보건부, 내무부, 교육부)의 협력, 지방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강조하였음.
 - 한편, 긴급조치 및 법원의 보호조치에서는 법원의 역할이 강조되어 형사사건 중에서도 아동학대 사건을 중대한 사안으로 다루고 있음.
-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아동보호를 위한 법제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경우, 협력적 보호체계를 활용하고 아동학대에 관한 데이터 구축을 통하여 민간의 신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행정청이나 주무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사전에 학대사실을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보호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다. 독일

- 독일은 유럽 내에서도 법체계의 정비 및 규정의 세세함에 있어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아동학대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연방정부차원에서는 연방가족부가 아동학대예방 등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개발을 시도하고 있음.
- 특히 최근에는 아동의 성적 학대에 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관심을 통해 아동의 성적학대에 대한 의식전환에 앞장서고 있음.
- 독일의 아동학대 체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첫째로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청(Jugendamt)과 가정법원(Familiengericht) 사이의 긴밀한 협력관계의 구축이라 할 수 있으며, 둘째로는 아동학대사건에 관한 청소년청의 적극적인 개입을 위한 권한의 부여와 조정자로서의 역할이라 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대응체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시작으로 수사단계에서 경찰, 검찰, 법원을 거쳐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행정·사법부처와 민간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모든 단계에서 업무의 범위가 얽히고 설켜져 있으며, 책임소재 또한 불분명하여 그 도식이 매우 복잡함.
- 그러나 독일은 행정관청인 청소년청이 그 역할을 주도적으로 담당하고 있으며, 학대아동에 관한 사후관리까지 직접 담당하는 등 행정청이 직접적으로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동학대 혹은 의심 아동을 위한 가장 최선의 국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음.
-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독일과 같이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단순화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기관 혹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중심이 되어, 대응체계 전반을 관리하는 방안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라. 일본

- 일본은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아동학대 예방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일본은 아동학대 발생 예방을 위해 시정촌과 같은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모자보건포괄지원센터의 설치를 통해 임신기부터 취학 전 육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 이에 임신이나 육아로 인한 불안·고립감 등에 대응함으로써 영유아의 학대치사 등

- 아동학대의 위험을 조기에 발견·감소시킬 수 있도록 아동육아지원 시스템을 강화함.
- 또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임신부나 영유아 모친을 평소에 접촉할 기회가 많은 의료 기관이나 육아지원시설, 학교 등에서 그 정보를 기초자치단체에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접근은 시정촌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가장 가까이에서 위기아동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함임.
 - 일본 「아동복지법」에서는 우리나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에 해당하는 아동상담소를 확대 설치하고, 아동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적절한 초기대응이 가능하도록 아동상담소에 아동심리사, 의사 또는 간호사, 전문 아동복지사 등의 전문인력을 배치할 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법률상담 또한 가능하도록 변호사를 상주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전반적으로 인력배치의 한계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전문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대대적인 지원과 입법적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4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공공성 강화 방안

가.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단일화

- 최근 발표된 정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아동학대 방지 보완대책”과 논의들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아동보호체계의 공공성 강화’ 방안에 관한 것임.
- 그동안 민간에 의지하던 대응체계를 행정기관 혹은 공공기관이 그 역할을 대신하도록 함으로써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는 것이 요지임.
- 그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공공기관화” 보다는 오히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전문성과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우선 해결해야 할 문제일 것임.

- 한편, 현재 아동학대 대응체계는 주로 보건복지부에서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법무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등 아동학대와 관련된 정부부처는 다수 존재하며, 이외에도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학교 등 다양한 기관들이 관여하고 있음.
 - 이는 권한과 기능이 다수의 부처와 기관에 산재되어 있어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컨트롤타워의 부재 문제가 나타남. 조직과 기능의 분산은 효율성 저해라는 당연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대응체계의 간소화, 일원화, 집중화를 필요로 함.
 - 따라서 현행 「아동복지법」상의 ‘아동정책조정위원회’ 혹은 범정부적인 행정조직의 신설을 통해 국가적 기능창구의 일원화가 필요함.
 - 즉, 아동정책과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또는 신규 범정부부처(가칭 아동청)로 하고, 그 산하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둬으로써 아동학대대응체계의 절차를 간소화 혹은 일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음.

나. 일반회계 예산으로의 전환

-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현재 집행되는 예산은 관련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재원으로 마련되는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내는 벌금에서 조성되는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기금’과 복권 판매에 따른 수입에서 발생하는 기획재정부의 ‘복권기금’으로 마련되고 있음.
 - 실제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의 지원에 관하여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예산은 거의 없는 실정임.
 - 매년 약 600-700억 원 규모로 조성되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만으로는 아동학대예방 등의 보호업무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에 한계가 있음.
 - 또한, 자칫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동 기금에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지출을 늘릴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다른 유형의 범죄피해자 보호와 같은 조성 기금의 본래 목적에 저해될 수 있어 이를 통해 또 다른 인권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 현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운영예산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경우 100% 국비로 충당하고 있으며,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경우 국비(50%)와 지방비(50%)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음.

- 학대피해아동쉼터의 경우 국고보조사업으로서 국비(40%)와 지방비(60%)의 비율을 통해 예산이 마련되고 있음.
- 일반회계 예산은 집행절차에 있어서 합법성에 의거하여 엄격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편성 등도 가능함.
- 또한 감사원이나 국회의 감시를 받을 수 있는 등 다양한 견제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 결국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을 마련해 나감에 있어서 -어느 정도 예산의 증가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예산의 집행과 활용을 위한 대원칙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 따라서 장기적으로 아동학대예방 등의 업무는 첫째, 국가의 감독 하에서 혹은 국가 주도의 국가사무로서 인식되어야 하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은 전문성을 갖고 있는 정부의 보조적 수단으로서 국가의 사무를 분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 이에 따라 일반회계예산으로 전환하여 정부는 더 큰 감독권한을 갖고, 현재의 아동 보호전문기관에는 더 큰 공공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다. 아동보호전문기관 현장조사원에 대한 사법경찰권의 부여

-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서 고려할 수 있는 세 번째 수단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제한적인 수사권인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임.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6년을 기준으로 현장조사 시에 상담원과 경찰이 동행한 사례는 34.2% 불과하였고, 상대적으로 상담원만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는 56.8%로 높은 비중으로 나타났음.
- 우리 법체계상 경찰은 원활한 사례개입에 필요한 피해아동의 보호조치 등을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도록 체계를 구축하고(보건복지부, 2017: 216),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하도록 하는 등(아동학대 처벌법 제11조 1항), 경찰이 현장에 출동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음.
- 현재 경찰은 신고접수, 동행출동, 현장조사, 수사 및 재학대 조기발견으로 나누어 대응하고 있으며, 전담경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등 시스템 상으로는 비교적 안

정적인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현장에 동행하는 비율은 전체 건수의 1/3에 불과하므로, 아동학대의 예방과 조기발견 그리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는 현장조사를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실무담당자에게 적절한 권한이 부여될 필요가 있음.
- 아동학대 문제에 관한 대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즉시 아동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점과 그 절차는 아동의 상태를 전문적으로 살필 수 있는 아동전문가여야 한다는 점임.
 - 이는 경찰이 전담부서 및 전담경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출동 시에 전담경찰관과 동행이 어렵거나, 혹은 112 등의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의 초동조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아동의 심리 등 세부적인 사항에까지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실무상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음.
 - 실제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업무의 폭증으로 이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은 실무에서 뿐만 아니라 언론 등에서도 수차례 지적된 바 있음.
- 다만, 장기적으로는 아동학대 및 보호에 관한 사무가 국가사무로 전환되는 것이 ‘아동의 권리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함.
 - 따라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경찰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현장조사요원을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등의 방법 또한 제한된 경찰력의 한계문제를 해결하고, 사건의 처리에 있어서도 아동 보호의 관점에 있어서 더욱 적합하다고 생각됨.

라.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신고 및 관리체계의 일원화

-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재 우리나라에서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신고전화는 2014년 9월 29일 이후로 경찰신고(112)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소방서, 인터넷 신고, 내방 신고 등 다양한 방법이 활용되고 있음.

- 현행법상 아동학대 신고는 경찰뿐만 아니라 아동보호전문기관에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인터넷 매체 등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된 탓에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직접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2016년 전체 신고건수 중 신고접수 경로를 살펴보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한 신고가 52.1%로 가장 많았고, 112는 47.1%, 1366은 0.5%, 129는 0.2% 순임(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7: 20).
 - 이는 현행 경찰의 112 시스템으로 신고체계가 통일되었다고 하나, 실상은 그렇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음.
- 한편, 신고자가 신고를 어디로 하느냐에 따라 문제의 해결방식이나 절차 등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함.
 - 경찰에 신고전화를 하게 되는 경우 경찰은 현장출동을 하는 등의 일반적인 처리절차를 거치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경찰에 동행요청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경찰과 동행하기 어렵다는 현장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음.
- 더 나아가 아동학대 처리절차에 있어서 원활한 정보공유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라도 신고체계의 완전한 일원화가 필요함.
 - 아동학대 처리과정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례 및 사후관리의 역할 또한 담당하고 있는데, 현행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정보의 관리체계는 아동학대 피해자의 파악 및 관련 서비스 제공 등의 현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특히 사후관리에 있어서는 부처별 혹은 기관별로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신고체계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를 담당할 수 있는 통합관리체계의 구축이 필요함.

마.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 지자체의 경우 해당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의 관심도와 업무 이해도에 따라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처우는 달라질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아동관련 시설이나 상황 등에 관하여 폭넓은 정보를 지니고 있으며, 관련 예산뿐만 아니라 감독권한 등을 갖고 있음.
-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의 모색이 필요함.
- 「아동복지법」제1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피해아동의 보호조치, 퇴소조치,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상실 선고에 관한 청구 등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기 위해 그 소속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 이에 이 위원회를 통해 ‘피해아동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관한 사항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동법 제12조 제1항 제7호에서는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도 함께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추상적 개념을 도입하기 보다는 요보호아동에 대한 구제방안을 수립하고, 책임·감독하는 기능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사례관리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이원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아동복지법」제28조에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가 종료된 후에도 아동학대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1조), 학대사건 이후의 사례관리를 아동보호전문기관에게 위임하고 있음.
 - 그러나 현실적으로 서울 등 몇 개소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민간에서 운영되고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인적·물적 한계는 아동보호를 위해 충분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
 - 이에 고위험군과 저위험군의 사례로 나누어, 고위험군의 사례관리는 아동이나 복지전문가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맡도록 하고, 저위험군의 사례관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전담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이런 고위험군과 저위험군의 사례관리의 판단은 사례전문위원회에서 담당하되, 사례전문위원회에 참석하는 인적 구성은 실무자 중심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함.

| 참고문헌 |

- 관계부처 합동(2018). 2018 아동학대 방지 보완대책 - 아동학대 대책 실효성 제고 방안.
- 김아름·박은영·김재선(2017).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의 역할과 법제 개선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대한민국정부(2017). 제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 보건복지부(2011).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4차 국가보고서 및 권고사항 자료집.
- 보건복지부(2017). 아동분야 사업안내 2권.
-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7). 2016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웹사이트>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PART

02

아동발달

- Ⅰ 초등 저학년 신체건강 증진방안
박원순 부연구위원
- Ⅰ 아동의 하루 생활시간 분석을 통한 아동의 시간 활용 제안
도남희 연구위원

이슈페이퍼 2018-14

초등 저학년 신체건강 증진방안

PART 02

박원순

1. 배경 및 문제점
2. 초등학교 저학년 신체건강 프로그램의 현황
3. 초등학교 저학년 신체건강 활동의 어려움
4. 정책제언

참고문헌

초등 저학년 신체건강 증진방안*

박원순 부연구위원

| 요약 |

- 우리나라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신체활동이 부족하여 비만 및 과체중 아동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신체활동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지 못함.
- 아동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운동장의 설치 기준이 과거에 비하여 후퇴하였으며, 대기오염 및 기상 조건의 문제로 신체활동을 위한 운동장의 활용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음.
- 신체활동을 위한 실내 시설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운영에 있어서 고학년 중심으로 체육관, 혹은 강당을 우선 배정하여 저학년이 신체활동을 충분히 수행하기 어려움.
- 따라서 초등학교 저학년의 신체활동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개정, 신체활동을 위한 초등학교 공간의 확보, 초등 교사 및 시설 지원을 통한 다각적 노력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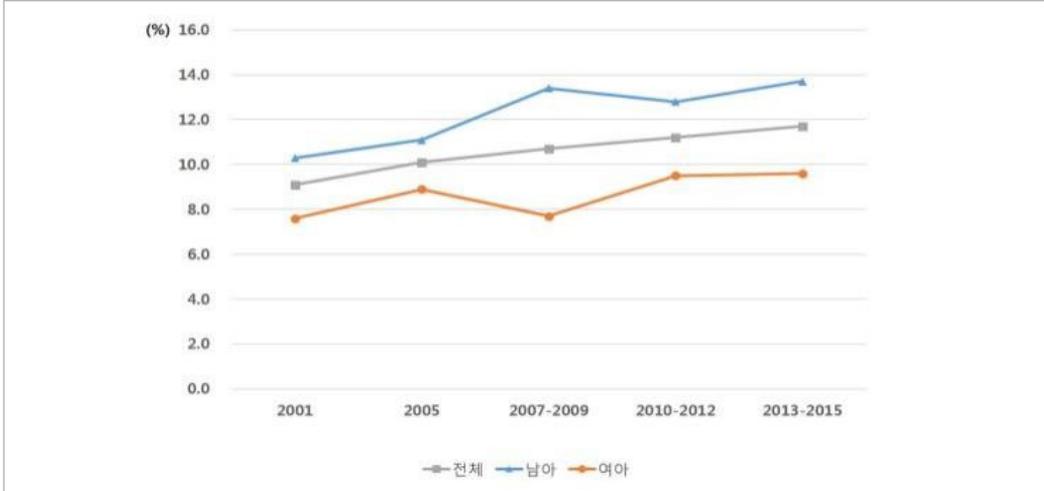
1

배경 및 문제점

- 초등학교 저학년은 발달적으로 활발한 신체활동이 필요한 시기
 - 우리나라 소아청소년 5명 중 1명은 과체중 및 비만으로, 2000년 이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소아청소년 비만은 성인 비만으로 이어지면서 생애주기에 따라 다양한 합병증과 부정적인 영향을 남기는 것으로 나타남.
 - 소아청소년 비만은 실외 체육활동 저하와 같은 신체활동 부족의 생활 방식으로 인한 것임.
 - 학령기 아동은 발달적 특성상 유연성, 균형감, 협응력이 향상되고, 저학년의 경우 근력 및 지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계획적인 체육활동 지도가 필요함.
 - 국민건강영양조사(그림 1 참고), 그리고 학교 건강검사 표본 조사(그림 2 참고)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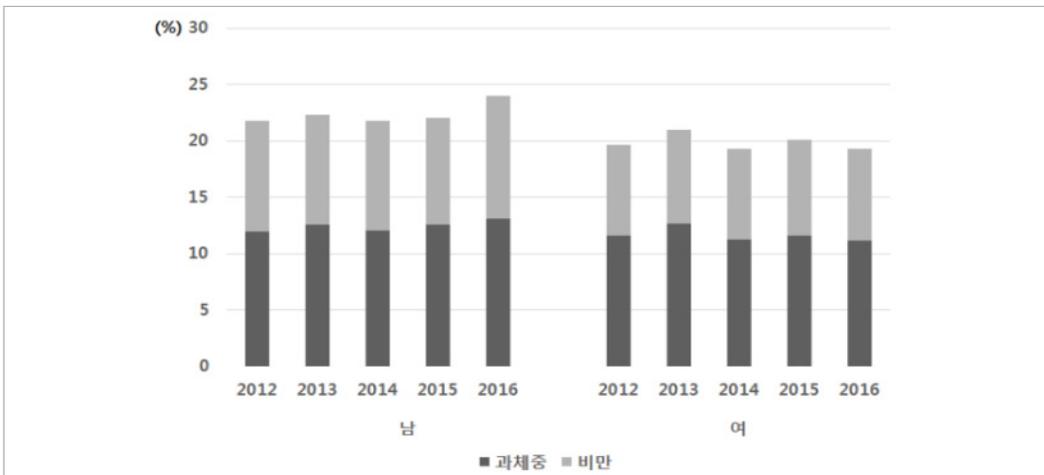
* 본 원고는 「박원순·김동훈·박상봉·최윤경(2017). 유아기 신체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 방안 연구(II): 유아기 신체 건강 증진 활성화 방안. 육아정책연구소」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함.

에 따르면 6-11세 아동의 비만을 및 과체중 비율은 2001년 이후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여아에 비해서 남아의 비만을 그리고 과체중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자료: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2016). 2015국민건강통계Ⅱ(배포용),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188p.

[그림 1] 6-11세 아동 비만 유병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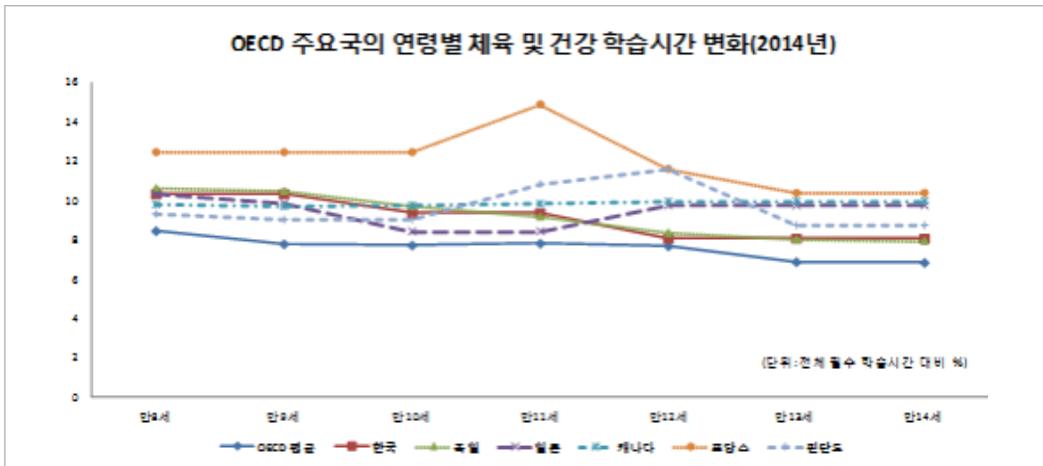


주: 과체중군 85백분위수 초과 95백분위수 미만, 비만군 95백분위수 이상.
 자료: 1) 교육부(2013). 2012년도 학교건강검사 표본조사 주요 결과, p. 12.
 2) 교육부(2014). 2013년도 학교건강검사 표본조사 주요 결과, p. 14.
 3) 교육부(2015a). 2014년도 학교건강검사 표본조사 주요 결과, p. 7.
 4) 교육부(2016). 2015년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분석결과, p. 9.
 5) 교육부(2017). 2016년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분석결과, p. 9.

[그림 2] 초등학생 체질량지수(BMI)기준 비만을 현황

□ 초등학교 저학년 교육과정상 신체활동 편성 부족

- 2017년 새로이 도입된 '2015 초등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 교육과정을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의 교육과정을 '학교', '봄', '가족', '여름', '마을', '가을', '나라', '겨울'의 8가지 대주제를 중심으로 통합하여 제시하여 신체 활동이 과거에 비해 많이 위축되었음.
- 즐거운 생활 교과는 신체활동의 구현, 운동장에서의 수업이 어려운 점과 안전 등의 문제로 주로 미술 수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체육 영역의 지도가 미흡함.
- 근력과 지구력이 부족한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한 구체적이고 계획적인 체육활동 지도가 필요함.
- 국제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체육 및 건강' 과목의 학습 시간은 OECD 평균보다 낮고 학년이 증가할수록 더욱 낮아지고 있음.



출처: 길혜지(2016). OECE 주요국의 체육교과 학습시간 비교
 (http://kess.kedi.re.kr/post/6656649?itemCode=03&menuId=m_02_03_02에서 2017. 11. 2 인출).

[그림 3] OECE 주요국의 체육교과 학습시간 비교

2 초등학교 저학년 신체건강 프로그램의 현황

가.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신체활동

□ 초등학교 저학년과 고학년 교과의 신체활동 시수 비교

-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의한 초등학교 교과별 시간 배당 기준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1, 2학년의 교과는 국어, 수학,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안전 생활로 3~6학년과 상이하여 일대일로 비교하기는 어려움.
- 고학년의 체육 교과와 연계된 저학년 교과는 슬기로운 생활과 즐거운 생활임.
- 1~2학년 즐거운 생활은 8개의 영역(대주제)과 16개의 핵심개념(소주제)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신체활동과 관련 있는 내용은 놀이, 창의적 표현, 게임 등으로 통합적인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음.
- 3~4학년과 5~6학년 체육 교과의 시수는 동일하게 204시간으로 배당되어 있으나 1~2학년은 통합 교과로 운영되고 있어 체육 활동 시수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움.

〈표 1〉 초등학교 교과별 시간 배당 기준

구분	1~2학년	3~4학년	5~6학년	
교 과 (군)	국어	국어 448	408	408
	사회/도덕	수학 256	272	272
	수학	바른 생활 128	272	272
	과학/실과	슬기로운 생활 192	204	340
	체육	즐거운 생활 384	204	204
	예술(음악/미술)	안전 생활 68	136	204
	영어			
	교과(군) 총 수업시간 수	1,476	1,768	1,972
창의적 체험활동	272	204	204	
학년(군)별 총 수업시간 수	1,748	1,972	2,176	

자료: 교육부(2015b). 2015 개정 초·중등 교육과정 총론. p.7.

나. 정부 및 공공기관의 아동 건강 관련 사업

-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및 공공기관의 운동 중심 건강증진 프로그램 사례
 -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보건소 및 초등학교에서 실시한 ‘건강한 돌봄 놀이터’ 시범사업은 식생활 교육 및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과체중 및 비만을 예방하고자 하였음.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행복나눔 생활체육교실’은 소외계층의 아동이 빙상, 농구, 사격 등의 스포츠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는 서비스임.
 - 대한체육회,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가 함께 실시한 ‘주말생활체육학교’는 학교 안에서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으로, 학교 밖에서는 승마, 수상스포츠, 스케이팅과 같은 이색적인 체험 종목을 운영함.

〈표 2〉 아동 대상 건강 관련 프로그램

사업	담당부서	세부사업 내용
「건강한 돌봄놀이터」 시범사업	보건복지부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전국 23개 보건소, 61개 초등학교 참여.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1~2학년 학생 2357명 * 서울(8), 부산(6), 인천(2), 대구(3), 광주(5), 울산(3), 경기(17), 강원(2), 충북(3), 충남(2), 전남(3), 경북(2), 경남(2), 제주(3) • 내용: 가정연계 건강식생활 교육(16회), 놀이도구를 이용한 신체활동 프로그램(32회) 제공 • 효과: 2.5%(34명)의 과체중·비만아동이 감소
행복나눔 생활체육교실	문화체육관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부모 등의 만 12세 이하 자녀의 집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돌봄서비스 제공 •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육공백가정: 취업한부모, 맞벌이 가정, 장애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 - 아동연령 기준 시간제: 생후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영아종일제: 생후 3개월~36개월 이하 - 소득기준 시간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 영아종일제: 모든 소득계층
주말생활체육학교	대한체육회	<p>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운영되는 무료 프로그램으로 전국의 초·중·고등학교를 빌려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제공하는 학교 안 프로그램과 그 외 스포츠 시설에서 운영하는 학교 밖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짐</p>

자료: 1) <http://www.sportal.or.kr/sportal.do> 에서 2017. 11. 06. 인출.
 2) <https://sat.sportal.or.kr/dscs/main> 에서 2017. 11. 06. 인출

다.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한 신체활동 연구 동향

□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한 신체활동 프로그램 개발연구의 사례

- 초등학생을 위한 신체활동 프로그램의 사례는 주로 고학년 중심의 활동이 많았으며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은 찾아보기 힘들었음.
- 박경애·김성수(2009)의 연구는 2학년부터 5학년을 대상으로 한 줄넘기 프로그램을 제안하였음.
- 임종은(2005)의 연구는 초등 1~2학년을 대상으로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제안하였음.
- 그러나 위의 연구를 포함한 초등학생 대상 연구의 대부분에서 체육활동, 교육 프로그램의 중재를 통한 기초체력 증진 등의 효과가 일부 나타났으나 향상된 정도는 크지 않았음.

〈표 3〉 초등 대상 신체활동 프로그램

구분	종류	대상	기간	구성	결과
박경애· 김성수 (2009)	체육 (줄넘기)	2~5학년 50명	12개월	• 총 4단계로 구성	• 체지방량 감소, 유연성 증가
임종은 (2005)	체육	경남지역 초등 1, 2 학년 258명	4~5개월	• 체육놀이 활동 및 가정 체육 프로그램 • 신체자각, 기초체력 증진 놀이, 공놀이, 기구놀이, 체조놀이, 민속놀이를 구성	• 근지구력, 유연성, 순발력 등 일부 기초체력 증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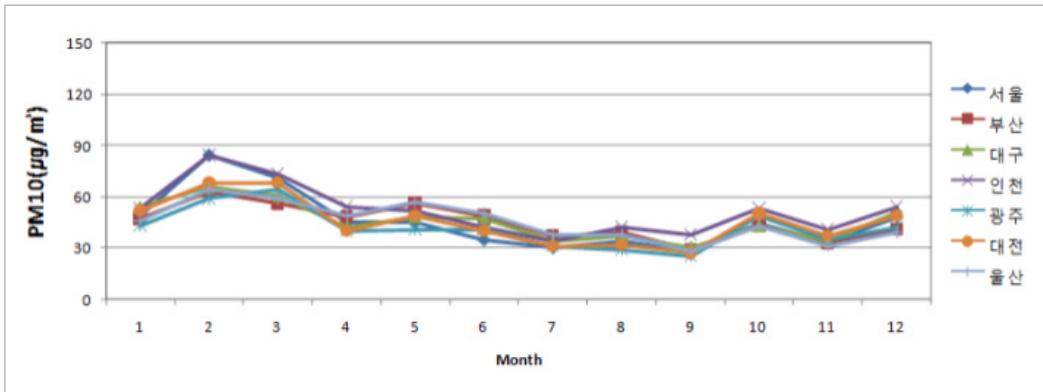
자료: 1) 박경애·김성수(2009). 초등학교 학생들의 음악줄넘기가 신체구성과 체력요인에 미치는 영향. 교원교육, 25(4), 54-71.

2) 임종은(2005). 초등학교 저학년의 기초체력 증진을 위한 체육놀이 활동과 가정체육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초등체육연구, 15, 117-150.

3 초등학교 저학년 신체건강 활동의 어려움¹⁾

가. 옥외 신체활동의 어려움

- 기상 조건에 따른 운동장(옥외 체육장) 사용 일수의 축소
 - 신체활동은 여건이 허락한다면 장소의 제약이 거의 없는 야외에서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임.
 - 미세먼지 혹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은 날이나, 계절적으로 황사 경보가 발령된 날 등 대기오염이 심한 날에는 운동장을 사용할 수 없음.
 - 요즘 들어 공기의 질, 특히 초미세먼지나 황사와 같은 공기의 질이 큰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는 시점에서 운동장의 사용은 교육과정을 계획할 때 미리 예측하고 계획 하기가 어려움.
 - 미세먼지(PM-10)의 경우 2015년 우리나라 연평균 기준($50\mu\text{g}/\text{m}^3$)을 초과한 측정소는 전국 253개의 유효측정소 중 87개소가 연평균 기준을 초과하였으며 24시간 기준을 초과한 경우는 226개소여서 미세먼지 농도가 심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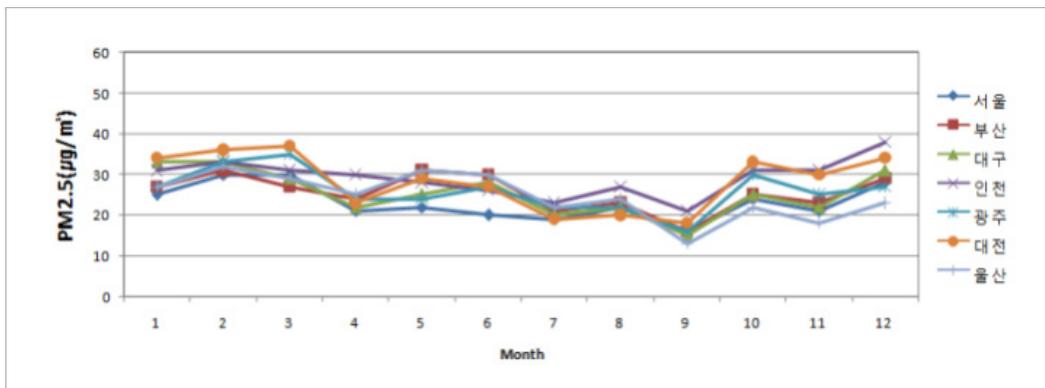


자료: 국립환경과학원(2016: 32) 대기환경연보2015, 그림 2-16 주요도시의 2015년 PM-10 월평균 농도

[그림 4] 주요도시의 월 평균 미세먼지 농도

1) 본 장은 「박원순·김동훈·박상봉·최윤경(2017). 유아기 신체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 방안 연구(II): 유아기 신체 건강 증진 활성화 방안. 육아정책연구소」의 초등교사 3인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담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음.

- 초미세먼지(PM-2.5)의 경우에도 2015년 우리나라 연평균 기준을 초과한 측정소는 전국 100개의 유효측정소 중 35개소가 연평균 기준($25\mu\text{g}/\text{m}^3$)을 초과하였으며 24시간 기준을 초과한 경우는 96개소에 달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지 않는 지역은 거의 없음.
- 초미세먼지의 경우 일평균 기준 농도는 $50\mu\text{g}/\text{m}^3$ 인데 그림 5를 보면 대전의 경우 1~3월, 그리고 10~12월까지 연간 6개월에 걸쳐 월평균 농도가 $30\mu\text{g}/\text{m}^3$ 을 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특히 2017년 4월부터 교육부는 실외수업 자제를 적용하는 미세먼지 기준을 일평균 $100\mu\text{g}/\text{m}^3$ 에서 $81\mu\text{g}/\text{m}^3$ 으로 강화하여 실외수업을 실시할 수 있는 조건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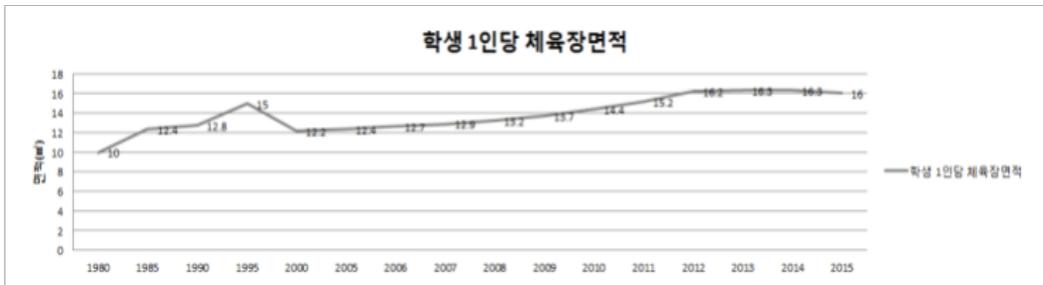
자료: 국립환경과학원(2016: 33) 대기환경연보2015, 그림 2-17 주요도시의 2015년 PM-2.5 월평균 농도

[그림 5] 주요도시의 월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 비나 눈이 오는 기상조건에 따라 실외 운동장을 사용하는 데에도 제약이 있음.
- 2016년 기준으로 연간 강수일이 서울은 109일, 대전은 118일, 광주는 126일, 부산은 103일로 우리나라 주요 도시의 연간 강수일은 일년의 1/4 이상임.
- 이처럼 우리나라는 대기오염과 기상조건으로 인해 실외운동에 적합하지 않은 날이 많음.

□ 운동장(옥외 체육장) 크기 기준의 후퇴

- 학교 운동장의 크기는 원래 「학교시설·설비기준령」(1969. 12. 4. 시행, 대통령령 제4398호)에 따라 초등학교는 12개 학급을 기준으로 4,800 평방미터를 기준으로 하고 학급이 늘고 줄어드는데 따라 180 평방미터씩 가감하게 되어 있었음.
- 이 기준은 개정을 통해 1976년 6월 7일 12학급까지 7,800 평방미터로 확대되었다가 다시 1980년 9월 26일, 그리고 1982년 8월 5일 개정을 통하여 학급당 290평방미터로 줄어 12학급일 경우에는 3,480 평방미터에 그치게 됨.
- 1992년 10월 1일 개정을 통하여 운동장은 학급수 기준에서 학생 정원을 기준으로 바뀌어 600명까지 3,000 평방미터로 변경되고 이후 1997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으로 대체되어 현재까지 그 기준을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음.
-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운동장 설치 기준이 축소되는 문제와 더불어 설치기준이 학급수가 아닌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함으로써 학급당 운동장 면적 기준은 계속 줄어들거나 최소한 증가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



자료 : e-나라지표 (2017년 10월 20일 인출) 초중등 교육시설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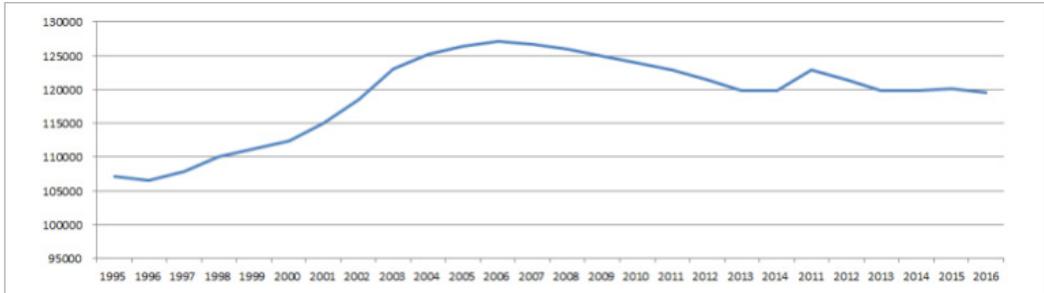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38

주석 : 학생 1인당 체육장면적= 체육장면적/재적학생수(체육장: 학생의 체육을 위하여 설치된 옥외의 장소적 시설을 말함. 학교지역 내 교지면적 중 교사대지를 뺀 나머지 면적을 모두 체육장으로 간주함)

[그림 6] 초등학교 학생 1인당 체육장 면적 크기의 연도별 변화

- 그림 6에서는 학생 1인당 체육장 면적은 대규모 폐교가 있었던 1995년-2000년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보임.
- 학생 수의 감소가 학생 1인당 체육장 면적의 증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나 이는 학급당 정원이 꾸준히 줄어들면서 그림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급의 수는 줄지

않았기에, 결국 학생 1인당 체육장의 면적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학급당 체육장의 면적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음을 시사함.



자료 : 교육통계서비스 (2017년 10월 20일 인출) 유초중등 학급수. <http://kess.kedi.re.kr/index>

[그림 7] 초등학교 학급 수의 연도별 추이

나. 실내 신체활동 시설(체육관 혹은 강당)의 부족

□ 실내 신체활동 전용 공간의 절대 부족

- 대기오염이나 기상여건으로 인해 야외에서 신체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날에도 실내체육관이 있으면 신체활동의 수행이 가능함.
- 그러나 체육관 및 강당이 없는 학교도 많이 있으며 대부분의 실내 신체활동 시설은 대부분 옥외시설보다 그 면적이 협소하여 신체활동 공간이 부족한 실정임.

□ 실내 신체활동 전용 공간 운영의 문제

- 특히 정규 교과에 체육이 없는 1~2학년의 경우 체육관이나 강당의 사용이 타 학년에 비하여 적게 배정되어 체육관의 사용시간이 더 부족함.

□ 교실 활용의 문제

- 운동장이나 체육관을 사용하기 어려운 날 교실에서 신체활동을 진행할 수 있으나 신체활동의 종류에 따라 제약이 따름.
- 협소한 공간으로 인해 게임적인 요소가 없을 경우 참여하는 아동의 만족도가 크게 떨어짐.
- 교실의 경우 신체활동을 위해 고안된 공간이 아니므로 책걸상 등 신체활동에 부적합하거나 위험한 요소들이 있어서 주의할 필요가 있음.

다. 교사의 신체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낮은 접근성

□ 교사의 인식 부족

- 많은 초등학교 저학년 교사의 경우 학교생활의 적응, 즉 교실 수업환경을 위한 통제를 중심으로 사고해 왔음.
-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발달적 특성에 따른 신체활동의 필요와 욕구에 대한 이해도가 낮음.

□ 신체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 및 연수 부족

- 초등학교 저학년 교사를 위한 신체활동 연수 프로그램이 많이 부족할 실정.
-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다양한 매체로 홍보할 필요가 있음.

4

정책제언

가. 초등학교 저학년 교육과정에 적절한 신체활동 반영

□ 저학년 교육과정에 아동 발달상의 신체활동 욕구 반영

- 신체적으로 왕성하게 성장하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들은 신체활동에 대한 발달상의 욕구가 있음.
- 그러나 기존 교육과정은 아동이 적극적으로 신체활동을 펼칠 수 있는 체육교과를 통합교과로 편성하며 체육교과의 특징보다는 예술·표현적 요소가 강조되어 왔음.
- 교육과정 개정 시 이러한 왕성한 아동의 신체발달의 욕구를 반영한 개정이 필요함.

□ 체육교과의 활성화

- 초등학교 저학년에 통합교과가 도입되어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얻고 있음.
- 다만 통합교과가 ‘표현 활동 위주의 놀이 강조’ 및 ‘총괄, 하위목표 구분의 모호함’ 과 ‘대주제와 활동 주제간 관련성 부족’, ‘체육 교과와의 내용 중복’, ‘통합의 당위성 부족’, ‘신체활동 지도의 소홀 가능성 내포’, ‘평가방식의 모호함’ 등의 문제점을 지

니고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즐거운 생활에서 체육 교과를 분리하여 하루 1시간 이상의 바깥놀이를 의무화한 누리과정, 체육 교과가 구분된 초등 3~6학년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이룰 필요가 있음.
- 창의체험활동 및 통합교과의 활용
 - 즐거운 생활 외에도 창의체험활동 시간을 통해 신체활동을 추가로 더 경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이 통합교과의 시간에 적절한 주제와 결합하여 신체활동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나. 초등학교에 신체활동을 위한 적절한 공간 확보

- 운동장 설치기준의 개선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의 개정 시 운동장 크기를 학생 수 기준에서 학급 수 기준으로 변경하거나 학생 수와 학급 수를 혼합한 산식을 사용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 기존에 건립된 교사(校舍)를 줄이고 운동장을 늘일 수는 없지만 신설되는 초등학교는 기준에 따른 충분한 운동장의 규모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폐교되는 시설의 경우 인근 학교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운동장 및 체육관 등의 시설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체육관(강당) 시설의 확충
 - 체육관이 없는 학교를 중심으로 실내 체육관을 신설하도록 노력하고, 또 공간이 부족하고 낡은 곳에서는 수선 및 증축을 통하여 학생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시설 확대가 요구됨.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읍면동에 체육관이 없을 경우 초중등학교 부지에 학생·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실내체육관의 건립을 지원하는 개방형다목적 체육관 건립지원 기금(기금 30%, 지방비 20% 교육청 50%)을 운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

요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통해 실내체육관을 지속적으로 늘여갈 필요가 있음.
- 지역에 따라 학교시설인 체육관 건립에 지방비를 지출하는 것을 두고 갈등을 겪고 있는 곳도 있으므로 교육청에서 애초 학교 수용계획을 입안할 시 실내체육관의 설치를 기본적으로 포함하고 교사의 개증축 시에도 실내체육관을 우선순위에 두고 검토해야 함.
- 신체활동 프로그램에 교실 활용
 - 안전을 위해 교실을 신체활동의 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한 매뉴얼 등을 제작 및 배포하여 신체활동을 위한 안전한 공간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교실에서 가능한 신체활동의 경우에도 활동의 크기뿐 아니라 아동들이 흥미를 잃지 않도록 하는 게임적인 요소도 포함해야 함.

다. 신체활동을 위한 초등학교 지원

- 신체활동을 위한 교사 지원
 - 초등학교 저학년 교사들에게 더 많은 신체활동 및 체육 관련 연수의 기회를 제공하여 성장기 아동의 신체발달의 중요성과 그 욕구를 이해하고 이를 충분히 초등학교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함.
 - 초등학교 저학년 교사들에게 보다 많은 신체활동 및 체육 활동을 소개하는 멀티미디어 교육 자료를 제작하여 보급함.
 - 교사들을 위해 교수-학습 과정안을 보충할 자료로 동영상 매뉴얼을 제작해 동작 등을 간단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함.
- 신체활동을 위한 시설 및 교구 지원
 - 학교마다 보유하고 있는 기구나 교구가 다르므로 시설물 기준을 마련하여 표준적으로 갖추어야 할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안전상의 문제를 겪는 곳은 개보수를 통해 보완하도록 함.
 - 신체활동을 하기 위한 범용 도구들을 전체 아동의 수에 맞게 보급할 필요가 있음.

Ⅰ 참고문헌 Ⅰ

- 교육부(2013). 2012년도 학교건강검사 표본조사 주요 결과.
- 교육부(2014). 2013년도 학교건강검사 표본조사 주요 결과.
- 교육부(2015a). 2014년도 학교건강검사 표본조사 주요 결과.
- 교육부(2015b). 2015 개정 초중등 교육과정 총론.
- 교육부(2016). 2015년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분석결과.
- 교육부(2017). 2016년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분석결과.
- 국립환경과학원(2016) 대기환경연보2015.
- 길혜지(2016). OECE 주요국의 체육교과 학습시간 비교, 교육정책포럼, 280, 36-39.
- 박경애·김성수(2009). 초등학교 학생들의 음악즐넘기가 신체구성과 체력요인에 미치는 영향. 교원교육, 25(4), 54-71.
- 박원순·김동훈·박상봉·최윤경(2017). 유아기 신체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 방안 연구(Ⅱ): 유아기 신체 건강 증진 활성화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2016). 2015국민건강통계Ⅱ(배포용),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 임종은(2005). 초등학교 저학년의 기초체력 증진을 위한 체육놀이 활동과 가정체육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초등체육연구, 15, 117-150.
- 〈웹사이트〉
- e-나라지표 (2017). 초중등 교육시설 현황.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38
- 교육통계서비스 (2017) 유치중등 학급수. <http://kess.kedi.re.kr/index>
- 대한체육회(2017). 체육포털, <http://www.sportal.or.kr>

이슈페이퍼 2018-12

아동의 하루 생활시간 분석을 통한 아동의 시간 활용 제안

도남희

1. 아동의 하루 생활시간의 중요성
2. 아동의 하루 생활시간
3. 아동의 생활시간 비교
4. 아동의 시간사용을 위한 제언

참고문헌

아동의 하루 생활시간 분석을 통한 아동의 시간 활용 제안*

도남희 연구위원

| 요약 |

- 최근 우리나라도 아동의 삶의 질과 행복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아동의 생활시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 아동의 주중 하루일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주중에는 9.47시간의 수면시간을 취하고 있었으며 학교 및 학교 외 기관 이용에서 주로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음.
- 주말에는 9.70시간의 수면시간을 취하며 기본생활에 있어서도 주중보다 더 느긋하게 일과를 보내며 외출, 실내 활동 및 바깥 놀이, TV 시청 등의 여가시간에 중점적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미국의 9~12세 아동은 하루에 수면 9시간 40분, 교외학습 31분, 운동 61분, 미디어 1시간 7분으로 나타남. 뉴질랜드의 경우는 개인유지 시간*이 한국 아동에 비해 적게 나타났으며 학습 시간은 짧은 반면, 미디어 등 기타 여가시간은 더 많았음.
- 아동의 균형 있는 생활을 위해 충분한 수면시간 확보와 적정 학습시간과 넉넉한 자유 시간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적 배려가 필요함.

* 개인유지시간은 보통 수면(낮잠제외), 식사, 위생 등에 사용시간임.

1 아동의 하루 생활시간의 중요성

- 최근 관심 있는 주제는 삶의 질과 행복이며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는 시간사용임.
 - 물질이나 다른 재화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주어지나 시간은 누구나 하루 24시간으로 동일하게 주어지며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은 달라짐(손애리,

* 본 원고는 「도남희·배윤진·이윤진·이예진·김문정·임준범·김희수(2017).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17 (한국아동패널 II). 육아정책연구소.」를 토대로 수정·보완하여 구성함.

2000).

- 사회가 복잡해지고 생활양식이 다양화되어 자원으로서의 시간의 가치를 인식하고 시간사용을 조사하여 구체적인 일상생활 모습을 파악할 수 있음.
- 최근 우리나라도 아동의 삶의 질과 행복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아동의 생활시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 우리나라 아동들의 삶의 만족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 국가들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세계일보, 2014. 11. 5).
 - 우리나라 아동의 시간사용은 수면시간과 운동시간은 적고 지나친 학업시간으로 실내·외 활동을 통한 여가시간이 적은 불균형한 양상임을 지적하고 있음(박현선, 2016; 최은영, 2016).
- 이에 8차년도 한국아동패널 자료에 근거하여 초등학교 2학년의 생활시간 분석을 통한 아동들의 생활을 살펴보고 국외 아동 생활시간을 비교하여 균형있는 생활시간 제안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함.

2 아동의 하루 생활시간

가. 수면

- 기본생활유지에 필요한 수면시간을 알아본 결과, 패널 아동들은 주중에 9.47시간을 주말에는 9.70시간을 취하고 있었음.
- 주중에 21시 58분에 잠들어 7시 26분에 깨어나고, 주말에는 22시 30분에 잠들어 8시 11분에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남.

〈표 1〉 아동의 수면 시간

단위: 시:분, 시간, N=1,525

구분	주중					주말					주말-주중 편차				
	최소	최대	중위수	평균	표준 편차	최소	최대	중위수	평균	표준 편차	최소	최대	중위수	평균	표준 편차
취침시각	20:00	24:00	22:00	21:58	0:38	24:00	1:00	22:27	22:30	1:05	-3:00	3:00	0:30	0:34	0:35
기상시각	4:00	8:30	7:30	7:26	0:25	6:00	12:30	8:00	8:11	0:54	0:00	5:30	0:30	0:49	0:43
수면시간	7.00	12.00	9.50	9.47	0.64	7.00	13.00	10.00	9.70	0.83	-3.00	4.50	0.00	0.23	0.84

주: 9시간 미만 수면을 취하는 경우는 주중 10.4%, 주말 10.5%임.

- 패널 아동의 주중-주말 수면시간의 편차를 살펴본 결과, 대체로 주말에 34분 늦게 잠자리에 들어 49분 늦게 일어나 평균 0.23시간 가량 더 자는 것으로 나타남.
- 패널 아동은 대체로 적정 시간 수면을 취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조사 대상 아동의 10% 가량은 권장 수면시간에 못 미치게 잠을 자는 것으로 응답되었음.
 - 미국 수면재단(National Sleep Foundation, NSF)에서 권고하고 있는 학령기 아동의 수면시간은 9~11시간(Hirshkowitz, Whiton, Algert et al., 2015)임.

나. 공·사교육 기관 이용 시간

- 패널 아동은 학교에서 정규 수업시간 외에 등하교 시간과 교내 방과후 교실 이용시간을 모두 포함하여 주중 평균 5.71시간, 주말 0.19시간을 보냄.
 - 대다수 아동이 주중에만 학교를 이용하였으며, 주중에 약 5.52시간 학교에서 더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남.
- 학원, 개인/그룹 지도 및 과외, 학습지 지도, 문화센터, 공공기관, 지역아동센터 등 학교 이외의 기관에서 교육 및 돌봄을 받는 경우는 주중 1.84시간, 주말 0.33시간으로 나타남.
 - 한국아동패널 아동들이 주중에 학교 이외의 기관에서 보내는 시간이 있는 경우는 90.4%이고, 주말에 학교 이외의 기관에서 보내는 시간이 있는 경우는 19.8%로 나타남.
 - 학교와 마찬가지로 대다수 아동은 주중에 약 1.51시간을 더 학교 이외의 기관에서 교육 및 돌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표 2〉 아동의 공·사교육 기관 이용 시간

단위: 시간, N=1,525

구분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					학교 이외의 기관에서 교육/돌봄 시간				
	최소	최대	중위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중위수	평균	표준편차
주중	0.5	10.0	6.0	5.71	1.06	0.0	7.0	2.0	1.84	1.09
주말	0.0	9.0	0.0	0.19	0.93	0.0	6.0	0.0	0.33	0.78
주말-주중 편차	1.5	-10.0	-5.5	-5.52	1.41	4.5	-6.0	-1.5	-1.51	1.25

주: 아동의 하루일과 시간에 학교 이외의 기관에서 교육/돌봄 시간이 포함된 경우는 주중 90.4% 주말 19.8%이며, 시간 산출에는 전체 사례를 포괄하여 분석함.

다. 독서 및 숙제

- 패널 아동의 하루 일과를 통해 분석한 결과, 패널 아동의 85% 이상은 주중 또는 주말에 독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남.
 - 1일 평균 독서 시간은 주중 0.69시간(약 42분), 주말 0.96시간(약 58분)으로 1시간 미만이었으며, 주말에 약 0.27시간을 더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됨.

〈표 3〉 아동의 책 읽기 시간 및 독서량

단위: 시간, N=1,525

구분	책 읽기 시간				
	최소	최대	중위수	평균	표준편차
주중	0.0	4.0	0.5	0.69	0.44
주말	0.0	5.0	1.0	0.96	0.72
주말-주중 편차	-2.0	4.5	0.0	0.27	0.58

주: 아동의 하루일과 시간에 책 읽기 시간이 포함된 경우는 주중 88.5% 주말 85.5%이며, 시간 산출에는 전체 사례를 포괄하여 분석함.

- 아동의 숙제와 학습 시간을 살펴본 결과, 아동의 94.1%는 주중에 숙제(학교, 학원, 과외, 학습지 등) 또는 공부를 위해 일과 시간을 사용하였음.
 - 숙제 및 학습을 위해 주중 0.90시간, 주말 0.88시간으로 주중과 주말에 큰 차이 없이 보통 1시간 가량이 소요됨.

〈표 4〉 아동의 숙제 및 학습 시간

단위: 시간, N=1,525

구분	최소	최대	중위수	평균	표준편차
주중	0.0	4.0	1.0	0.90	0.51
주말	0.0	4.0	1.0	0.88	0.73
주말-주중 편차	-4.0	4.0	0.0	-0.01	0.70

주: 1) 학습시간은 학교 등의 기관에서 받는 정규교육시간과 구분되는 학교 외 아동의 학습시간을 의미함.
 2) 아동의 하루일과 시간에 숙제 및 학습 시간이 포함된 경우는 주중 94.1% 주말 76.1%이며, 시간 산출에는 전체 사례를 포괄하여 분석함.

라. 미디어 이용

- 패널 아동의 미디어 이용으로 TV 시청, 스마트폰과 PC 인터넷 등의 사용시간과 이용 비율을 살펴봄.
 - 조사대상 아동의 대다수는 TV를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TV 시청은 주말에는 95.3%가 보는 반면 주중에는 82.9%가 보는 것으로 조사되어 주말에만 TV를 시청하는 경우도 소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아동이 TV 시청에 사용하는 시간은 주중 1.25시간, 주말 2.43시간으로, 주말에 약 1.29시간 더 보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5〉 아동의 TV 시청 시간

단위: 시간

구분	최소	최대	중위수	평균	표준편차
주중	0.5	5.0	1.0	1.25	0.68
주말	0.5	11.0	2.0	2.43	1.08
주말-주중 편차	-3.0	8.0	1.0	1.29	1.05

주: 아동의 하루일과 시간에 TV 시청 시간이 포함된 경우는 주중 82.9% 주말 95.3%이며, 시간 산출에는 전체 사례를 포괄하여 분석함.

- 아동의 51.4%는 개통 여부에 상관없이 휴대폰이나 스마트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되었음.
 - 소유와 별도로 아동이 휴대폰(스마트폰)을 이용하는지 질문한 결과 85% 이상이 이용하고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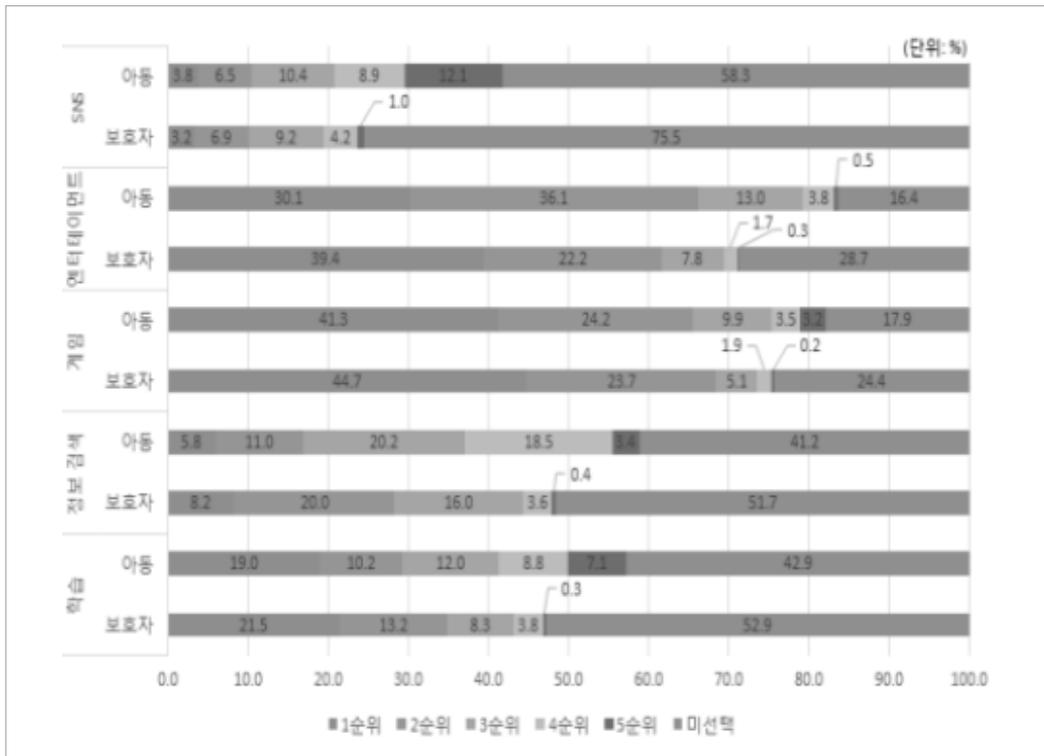
- 아동의 휴대폰 이용 여부에 대한 응답은 보호자와 아동이 유사한 비율로 나타났으며 보호자가 응답한 아동의 휴대폰 이용시간은 평균 0.99시간이었음.

〈표 6〉 아동의 스마트폰, PC(인터넷) 이용 여부 및 이용 시간

단위: %(명), 시간

구분	이용 여부			이용 시간				
	미이용	이용	계(수)	최소	최대	중위수	평균	표준편차
아동 응답	14.9	85.1	100.0(1,496)	-				
보호자 응답	12.9	87.1	100.0(1,525)	0.5	5.0	1.0	0.99	0.69

주: 아동의 51.4%는 휴대폰(스마트폰, 키즈폰 포함)을 소유한 것으로 응답함.



[그림 1] 아동의 스마트폰, PC(인터넷) 이용 순위

- 미디어 사용에 대한 보호자의 응답을 순위로 변경하여 아동 응답과 비교한 결과 대체로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나 이용하지 않는 항목의 비율에서는 차이가 있었음.

- 아동이 가장 많은 비율로 이용하는 게임의 경우, 아동과 보호자의 응답이 6.5%p로 가장 작은 차이를 보였으나 그 외의 항목에 있어서는 약 10%p이상의 차이를 보였음.
- 특히 엔터테인먼트, SNS에서 보호자의 인식보다 아동이 더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음.

마. 실내·외 놀이

- 패널 아동의 하루 일과 중 장난감 놀이, 자유롭게 어슬렁거리기 등의 실내 활동 시간이 포함된 경우는 주중 96.0%, 주말 99.0%로 대다수 아동이 일과 중 실내 놀이를 하고 있었음.
 - 평균적으로 실내 활동에 소요하는 시간은 주중 1.49시간, 주말 2.53시간으로 주말에 주중시간보다 약 1.03시간을 더 사용함.
- 신체활동 위주의 바깥 놀이의 경우는 주중 79.7%, 주말 85.5%로 실내 놀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하고 있었음.
 - 아동은 주중 평균 0.89시간, 주말 1.93시간을 바깥 놀이에 사용하며, 실내 활동과 마찬가지로 주말시간에 약 1.04시간을 더 소비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한주간 아동의 실내·외 놀이 시간은 실내 놀이가 약 30분 가량 더 긴 것으로 응답되어 대다수 아동이 실내 공간 위주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7〉 아동의 실내·외 놀이 시간

단위: 시간, N=1,525

구분	장난감 놀이, 자유롭게 어슬렁거리기 등의 실내 활동					신체활동 위주의 바깥 놀이				
	최소	최대	중위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중위수	평균	표준편차
주중	0.0	7.0	1.0	1.49	0.98	0.0	5.0	1.0	0.89	0.70
주말	0.0	12.5	2.0	2.53	1.43	0.0	7.0	2.0	1.93	1.27
주말-주중 편차	-4.5	8.5	1.0	1.03	1.41	-3.0	7.0	1.0	1.04	1.29

주: 아동의 하루일과 시간에 실내 놀이 시간이 포함된 경우는 주중 96.0% 주말 99.0%이며, 바깥 놀이 시간이 포함된 경우는 주중 79.7% 주말 85.5%임. 시간 산출에는 전체 사례를 포괄하여 분석함.

- 아동의 실내·외 운동 시간은 주중에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주말에는 실외 운동에 조금 더 긴 시간을 사용함.
 - 아동이 하루에 태권도, 공놀이, 수영 등 실내 운동을 하는 시간은 주중 50.55분, 주말 46.45분으로 1시간에 못 미쳤으며, 주말에 약 37.91분 가량을 더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골목, 마당, 놀이터 등의 집 밖에서 햇볕을 쬐며 노는 실외 운동 시간의 경우 주중 51.29분, 주말 78.89분으로 주말에 약 47.29분을 더 사용하는 것으로 응답하였음.

〈표 8〉 아동의 실내·외 운동 시간

단위: 분, N=1,451

구분	실내 운동 시간					실외 운동 시간				
	최소	최대	중위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중위수	평균	표준편차
주중	0	450	50	50.55	39.20	0	300	30	51.29	41.83
주말	0	720	30	46.45	53.24	0	720	60	78.89	69.73
주말-주중 편차	0	600	30	37.91	41.90	0	600	30	47.29	54.22

주: 아동이 실내 운동 시간을 0으로 응답한 경우는 주중 10.2%, 주말 29.5%였으며, 실외 운동 시간을 0으로 응답한 경우는 주중 8.0%, 주말 15.1%이었음. 시간 산출에는 전체 사례를 포괄하여 분석함.

바. 외출 및 기본생활

- 아동의 외출 시간은 주중 0.44시간, 주말 3.09시간으로 주말에 2.65시간을 더 나는 것으로 나타남.
 - 하루 일과 중 아동이 가족이나 또래와 함께 외출하는 경우는 주중 44.0%, 주말 96.3%로 대다수 아동은 주말시간을 활용해 외출(친구 및 친척 집 방문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남.
 - 패널 아동이 하루 일과 중 식사, 씻기, 옷 입기 등의 기본생활을 위해 소요하는 시간은 주중 1.28시간, 주말 1.59시간으로 유사하였으며 주말의 일과에서는 기본생활에 약 0.31시간 가량을 더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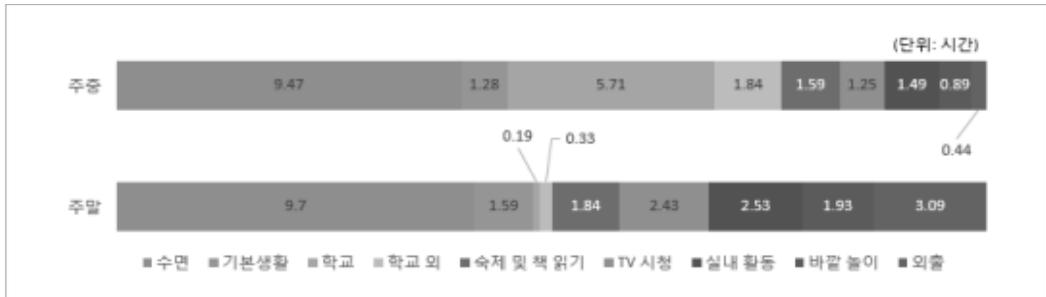
〈표 9〉 아동의 외출 및 기본생활 시간

단위: 시간, N=1,525

구분	가족, 또래와 함께하는 외출					식사, 씻기, 옷 입기 등의 기본생활				
	최소	최대	중위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중위수	평균	표준편차
주중	0.0	3.0	0.0	0.44	0.57	0.5	3.0	1.0	1.28	0.49
주말	0.0	10.0	3.0	3.09	1.84	0.5	4.0	1.5	1.59	0.64
주말-주중 편차	-2.0	10.0	2.0	2.65	2.00	-1.5	2.5	0.0	0.31	0.55

주: 아동의 하루일과 시간에 외출 시간이 포함된 경우는 주중 44.0% 주말 96.3%이며, 시간 산출에는 전체 사례를 포괄하여 분석함.

- 아동의 주중, 주말 하루일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주중에는 학교 및 학교 외 기관 이용에서 주로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음.
- 수면 및 기본생활에 있어서도 주중보다 더 느긋하게 일과를 보내는 것으로 응답되었음.
- 주말 일과의 경우 외출, 실내 활동 및 바깥 놀이, TV 시청 등의 여가시간에 중점적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그림 2] 아동의 주중, 주말 하루 일과

3 아동의 생활시간 비교¹⁾

가. 국내의 생활시간 조사

- 국내의 생활시간 조사를 통해 아동의 생활시간을 파악하고자 함.
 - 한국 아동 10세 이상의 약 27,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생활시간조사 결과를 통해 필수생활시간, 의무생활시간, 여가생활시간 등으로 분석하여 제시함.

〈표 10〉 한국 아동의 대분류에 따른 하루 생활시간 사용량(2014)

단위: 분, %

구분	초등학생(10~11세)		중학생(13~14세)		고등학생(16~17세)	
	시간	비율	시간	비율	시간	비율
개인유지	733.7	51.0	691.9	48.0	646.1	44.9
일	0.9	0.1	1.7	0.1	13.1	0.9
학습	279.9	19.4	359.6	25.0	416.6	28.9
가정관리	17.7	1.2	19.8	1.4	18.7	1.3
가족돌보기	4.0	0.3	1.0	0.1	0.5	0.0
참여 및 봉사활동	0.4	0.0	0.7	0.0	1.5	0.1
교제 및 여가활동	304.4	21.1	273.1	19.0	243.2	16.9
이동	82.3	5.7	75.0	5.2	86.1	6.0
기타	16.7	1.2	17.4	1.2	14.2	1.0

자료: 통계청(2014). 국민생활시간조사.

주: 비율은 24시간에서 해당 활동이 차지하는 비율임.

-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수면을 포함한 개인유지 시간과 참여 및 봉사 활동, 교제 및 여가활동 시간이 하루 중 차지하는 비율이 줄어들고 일 및 학습 시간이 증가함.
- 아동의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항목인 수면, 학교외 학습, 운동, 미디어 활용 시간의 양을 개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초등학생은 평균적인 평일 수면 시간이 527분, 주말 수면 시간이 589분으로 주말에 약 1시간 정도 더 자는 것으로 나타남

1) 아동의 생활시간 비교를 위해 한국아동패널의 조사 자료와 국내외의 생활시간조사를 비교하고자 하였으나 행동분류 체계와 영역이 상이하여 비교를 할 수 없었음.

- 교외학습 시간은 주말이 평일에 비해 자습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63분, 자습을 포함할 경우 75분 더 적었음.
- 운동시간은 평일 14분, 주말 40분으로 주말에 더 많은 시간 할애함.
- 미디어 활용시간은 평일 78분에서 주말 193분으로 약 2시간 가까이 증가함. 미디어 활용 시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TV 시청은 평일은 54분이었으나 주말에는 151분으로 크게 증가함.

〈표 11〉 한국 아동의 주요 항목 시간 사용량(2014년)

단위: 분, %

구분	초등학생(10~11세)			중학생(13~14세)			고등학생(16~17세)			
	평일	주말	전체	평일	주말	전체	평일	주말	전체	
수면	527.3	589.3	551.4	474.5	581.5	516.6	419.6	549.6	472.3	
교외 학습	자습 미포함	136.8	73.5	112.2	155.5	166.8	159.9	98.5	199.5	139.4
	자습 포함	150.0	74.5	120.6	176.3	167.4	172.8	184.6	215.2	197.0
운동	14.2	39.9	24.2	11.2	21.1	15.1	13.4	19.9	16.0	
미디어	78.2	193.4	122.9	69.1	178.8	112.2	52.2	150.0	91.9	
TV 시청	53.9	150.7	91.5	44.8	132.7	79.3	27.4	99.7	56.7	

자료: 통계청(2014). 국민생활시간조사.

- 주: 1) 교외학습은 학원수업 수강, 방송·인터넷 강의 수강, 스스로 학습, 기타 학교활동외 학습 포함.
 2) 운동은 걷기·산책, 달리기·조깅, 등산, 자전거·인라인, 개인 운동, 구기 운동, 낚시·사냥, 기타 스포츠, 레포츠 항목을 포함함.
 3) 미디어에는 책 읽기, 신문 보기, 잡지 보기, 실시간 방송보기(이하 TV시청), 비디 오 보기, 라디오 듣기, 오디오 듣기, 인터넷 정보 검색, 기타 미디어 관련 여가활동 항목 포함함.

- 아동에게 권장하는 생활시간에 대한 국외의 가이드라인을 검토하여 어린이재단에서 아동균형생활시간을 별도로 선정함(초록우산 어린이재단, 2016).
 - 미국 수면재단과 미국 국립심장폐혈액연구소의 기준을 참고하여 초등학생은 하루 9~12시간을 권장 수면시간으로 정함.
 - 공부시간의 경우, 국외는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하 '혼자공부시간')을 일일 권장공부시간으로 많이 사용하므로 우리나라는 사교육이 일반화된 현실을 반영하여 혼자 공부시간을 포함하되 상한기준선은 모든 학교급에서 60분씩 상향 조정함.

- 공부와 놀이가 뚜렷이 구분되기 어려움 초등저학년과 유아기에는 기준을 따로 설정하지 않음.

〈표 12〉 아동 균형생활시간지표에 따른 생활시간

	권장 수면시간	권장 공부시간	권장 운동시간	권장 미디어시간
유아(만5세)	10~14시간	-	1시간 이상	1시간 이하
초등저학년(초1)	9~12시간	-	1시간 이상	2시간 이하
초등고학년(초4)	9~12시간	30~120분	1시간 이상	2시간 이하
중학생(중2)	8~10시간	60~150분	1시간 이상	2시간 이하
고등학생(고2)	8~10시간	90~180분	1시간 이상	2시간 이하

자료: 박현선(2016). '아동 균형생활시간지표의 활용을 중심으로' 〈표 7〉 발췌하여 인용함.

출처: 초록우산 어린이재단(2016). 아동옹호를 위한 지표와 지수의 의미와 역할-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권리 지수. 제11차 아동복지 포럼.

나. 국외의 생활시간 비교

- 미국 아동의 생활시간을 PSID(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의 아동발달에 대한 부가조사 결과를 토대로 분석한 내용을 제시함.
 - 수면시간은 579.9분(9시간 40분)으로 나타나며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은 288.1분, 학습(공부) 시간은 31.4분, 스포츠 시간은 55.1분, 놀이 75.7분, TV시청은 116.1분으로 나타남.

〈표 13〉 미국 9~12세 아동의 하루 생활시간 사용량 및 비율(1997년)

단위: 분, %

구분	시간	비율
시장활동	2.3	4
가사	52.7	88
개인활동	68.1	100
식사	63.6	100
취침	579.9	100
학교	288.1	9.0
공부	31.4	62
교회활동	12.9	28

구분	시간	비율
방문	29.7	69
스포츠	55.1	76
야외활동	6.0	17
취미생활	1.3	4
예술활동	8.0	22
놀이	75.7	88
TV시청	116.1	94
독서	10.7	34
가정 내 대화	3.9	28
기타 수동적 여가생활	20.3	52
데이케어	3.7	4
해당없음	10.7	-

자료: Hofferth & Sandberg(2001). How American children spend their time의 결과를 발췌함.

출처: 초록우산 어린이재단(2016). 아동옹호를 위한 지표와 지수의 의미와 역할-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권리 지수. 제11차 아동복지 포럼.

□ 한국 초등학생의 하루 생활시간을 미국의 초등학생과 비교함.

- 한국 초등학생은 수면 551분, 교외학습 112분, 운동 24분, 미디어 123분으로 나타남.
- 연령대가 유사한 미국의 9~12세 아동은 하루에 수면 580분, 교외학습 31분, 운동 61분, 미디어 127분으로 나타남.
- 수면은 한국의 초등학생보다 미국의 9~12세 아동들이 평균적으로 약 30분 정도 더 자는 것으로 나타나나 교외학습은 한국의 초등학생이 월등히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남.
- 운동시간의 차이도 뚜렷한데, 운동시간이 가장 많은 한국의 초등학생이 24분 정도 이나 미국의 9~12세 아동은 하루 평균 61분 가량임.

〈표 14〉 한국과 미국 아동의 생활 시간량과 비율

단위: 분, %

구분	한국						미국			
	초등학생 (10~11세)		중학생 (13~14세)		고등학생 (16~17세)		9~12세		15~18세	
	시간	비율	시간	비율	시간	비율	시간	비율	시간	비율
수면	551.4	38.3	516.6	35.9	472.3	32.8	579.9	40.3	561.6	39.0

구분	한국						미국			
	초등학생 (10~11세)		중학생 (13~14세)		고등학생 (16~17세)		9~12세		15~18세	
	시간	비율	시간	비율	시간	비율	시간	비율	시간	비율
교외학습	112.2	7.8	159.9	11.1	139.4	9.7	31.4	2.2	-	-
자율학습 포함	120.6	8.4	172.8	12.0	197.0	13.7				
운동	24.2	1.7	15.1	1.0	16.0	1.1	61.1	4.2	49.0	3.4
미디어	122.9	8.5	112.2	7.8	91.9	6.4	126.9	8.8	159.4	11.1

자료: 통계청(2014).생활시간조사. Hofferth & Sandberg(2001). How American children spend their time과 김외숙·박은정(2012)의 결과를 발췌함.

출처: 초록우산 어린이재단(2016). 아동옹호를 위한 지표와 지수의 의미와 역할-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권리 지수. 제11차 아동복지 포럼.

- 뉴질랜드의 시간사용조사(Time Use Survey: TUS)는 12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부모와 함께 사는 아동을 중심으로 비교함.
 - 뉴질랜드의 아동들과 비교해보면, 뉴질랜드 12-17세 아동의 개인유지 시간은 한국의 초등학생 보다는 적고, 중학생 보다는 많았으나 교육시간은 전반적으로 한국의 교육시간보다 적음.
 - 관계와 오락시간은 한국 아동보다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스포츠와 취미 시간은 한국의 중학생과 유사하였음. 그러나 미디어와 기타 여가로 보내는 시간의 비율은 뉴질랜드 아동이 한국 아동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15〉 한국과 뉴질랜드 아동의 생활시간량과 비율

단위: 분, %

구분	한국						뉴질랜드	
	초등학생 (10~11세)		중학생 (13~14세)		고등학생 (16~17세)		12~17세	
	시간	비율	시간	비율	시간	비율	시간	비율
개인유지	741.3	51.5	698.9	48.5	653.3	45.4	711	49.4
일 관련	1.0	0.1	1.9	0.1	15.5	1.1	24	1.7
교육	319.1	22.2	404.3	28.1	468.8	32.6	240	16.7
가정관리 등	27.0	1.9	24.8	1.7	23.6	1.6	72	5.0
종교, 시민활동 등	8.3	0.6	9.3	0.6	6.5	0.5	13	0.9
관계, 오락	38.0	2.6	52.6	3.7	56.9	3.9	89	6.2

구분	한국						뉴질랜드	
	초등학생 (10~11세)		중학생 (13~14세)		고등학생 (16~17세)		12~17세	
	시간	비율	시간	비율	시간	비율	시간	비율
스포츠와 취미	112.7	7.8	87.8	6.1	75.1	5.2	87	6.0
미디어, 기타 여가	175.4	12.2	142.4	9.9	124.7	8.7	197	13.7

자료: 통계청(2014). 생활시간조사

Statistics New Zealand(2011). Time Use Survey 2009-2010.

출처: 초록우산 어린이재단(2016). 아동옹호를 위한 지표와 지수의 의미와 역할-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권리 지수. 제11차 아동복지 포럼.

4 아동의 시간사용을 위한 제언

- 아동의 하루 생활시간은 생활의 균형을 파악할 수 있는 도구임.
 - 아동의 하루 생활시간의 지속적인 측정을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함.
 - 하루 생활시간의 신뢰롭고 타당성 있는 측정을 위한 국내와 국외의 행동분류체계의 통일이 필요함.
- 기본 생활습관 확보의 유지가 중요함.
 - 수면은 생활습관을 볼 수 있는 주요한 바로미터임. 현재 한국아동패널 아동의 수면 시간은 적정 수준이나 적정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아동의 수면시간 확보가 필요함.
- 학습시간과 여가시간의 균형이 필요함.
 - 미국과 뉴질랜드 같은 연령대의 아동에 비해 한국아동의 교육시간과 학습시간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 외 학습시간도 많음.
 - 운동시간도 미국의 같은 또래에 비해 적게 나타나고 있으며 자유로운 관계와 오락 시간에 있어서도 뉴질랜드의 또래에 비해 적게 나타남.
 - 적정 학습시간을 확보하되 아동 스스로 탐구하고 자유로운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회의 노력과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함.

| 참고문헌 |

- 김외숙·박은정(2012), 한국과 미국 고등학생의 생활시간에 대한 비교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0(4), 119-132.
- 도남희·배윤진·이예진·이윤진·김문정·임준범·김희수(2017).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17 (한국아동패널 II). 육아정책연구소.
- 박현선(2016).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권리지수 개발연구-아동 균형생활시간지표의 활용을 중심으로-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 제11차 아동복지 포럼.
- 세계일보(2014. 11. 5). 한국 아동 삶의 질 만족도 OECD 최하위...1위 네덜란드.
- 손애리(2000). 시간연구의 특성과 '생활시간조사' 개발 과정. 조사연구, 1(1), 135-148.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2016). 아동옹호를 위한 지표와 지수의 의미와 역할-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권리 지수.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 제11차 아동복지 포럼.
- 최은영(2016).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권리지수 개발연구-아동의 생활시간 실태와 국내·외 비교-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 제11차 아동복지 포럼.
- 통계청(2014). 생활시간조사. 통계청
- Hofferth, S. & Sandberg, J.(2001). How American children spend their tim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3(2), 295-308.
- Statistics New Zealand(2011). Time Use Survey 2009-2010.

PART

03

유치원·어린이집 운영 및 교직원

- ▮ 어린이집 CARE 컨설팅 모형 개발 및 상시 질 관리 방안
권미경 부연구위원
- ▮ 유치원·어린이집 영유아와 교직원 건강관리 현황 및 개선 방안
최은영 연구위원
- ▮ 맞춤형보육 운영 현황과 개선과제
양미선 연구위원
- ▮ 보육교직원 재교육의 새로운 방향 모색 : 전문교육과정 운영
강은진 연구위원

이슈페이퍼 2018-01

어린이집 CARE 컨설팅 모형 개발 및 상시 질 관리 방안

PART 03

권미경

1. 배경 및 문제점
2. 어린이집 컨설팅 운영 현황
3. 어린이집 CARE 컨설팅 모형
4. 어린이집 상시 질 관리 방안

참고문헌

어린이집 CARE 컨설팅 모형 개발 및 상시 질 관리 방안*

권미경 부연구위원

| 요약 |

- 우리나라는 유치원 평가와 어린이집 평가인증으로 대표되는 평가를 가장 주요한 질 관리 수단으로 하고 있지만 평가 이후 동일한 질적 수준이 담보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현재 어린이집 컨설팅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어린이집 설치 운영, 평가인증 조력, 보육과정, 재무회계, 맞춤형 보육지원 등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 중임.
- CARE 컨설팅은 평가인증 결과를 토대로 취약 부분에 대한 개선안을 어린이집 상황에 맞게 찾아 질적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공유된 비전 및 가치(Common Value)', '역량(Ability)', '자원(Resource)', '동기부여(Empowering)'라는 4가지 측면에서 진단하여 원장의 리더십 함양 중심의 컨설팅을 제공함.
- 어린이집 상시 질 관리를 위한 컨설팅 지원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무평가제 도입에 선제적 대응으로의 컨설팅 운영체계 설계, 컨설팅 이후 개선 정도를 고려한 인센티브 부여, 역량 있는 컨설턴트 확보 및 전문화, 컨설팅 소요비용 확보, 컨설팅 실행을 위한 교사 지원 강화, 질 관리 도구로의 CARE 컨설팅 결과 자료화 등이 필요함.

1 배경 및 문제점

- 유아교육과 보육에 대한 질 관리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 각국이 주력하는 부분임.
- 우리나라는 유치원 평가와 어린이집 평가인증으로 대표되는 평가를 가장 주요한 질 관리 수단으로 하고 있지만 평가 이후 동일한 질적 수준이 담보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평가인증 이후 어린이집의 상시 질 관리와 자체점검,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평가의 형

* 본 원고는 「권미경·박원순·이규림·박인숙·권혜진·이완정·임지영(2017).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어린이집 평가 연계 컨설팅 지원 방안 연구(II): 통합평가지표 적용을 고려한 어린이집 컨설팅 연구. 육아정책연구소.」의 내용을 토대로 구성함.

- 식이 아닌 유치원의 장학과 같은 보육교직원 지원 및 컨설팅에의 요구가 높아, 이에 조력, 컨설팅의 방법으로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평가인증 결과가 유사하더라도 그 원인이 다를 수 있으므로, 취약 부분에 대한 개선은 어린이집 상황에 맞게 찾아야 실효성 있는 접근이 가능하나 현재의 어린이집 컨설팅 지원은 주제별로 되어 있음이 문제점임.
 - 평가인증에서 낮은 점수를 받더라도 그 원인은 어린이집이 지닌 고유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어느 한 부분의 컨설팅이 아닌 문제 진단에서 출발하여야 함.
 - 이에 본 고는 2017년 11월 이후 적용을 계획 중인 통합평가지표 내용과 전년도 시범 사업의 결과를 반영하고 컨설팅 모형을 정교화하여, 평가인증 이후 어린이집의 상시 질 관리 체계로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중심 평가연계 컨설팅 운용 방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함.
 - 향후 어린이집 의무평가제로의 전환에 대비하여 평가 이후 상시 질 관리체계로의 컨설팅 운용 안을 준비하는 선제적 접근의 일환임.

2 어린이집 컨설팅 운영 현황

- 어린이집 보육컨설팅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3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제4항 ‘어린이집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에서 명시하는 주요 사업임(보건복지부·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2016: 104).
- 어린이집 보육컨설팅은 전문가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어린이집이 설치부터 평가인증 이후까지 필요한 컨설팅을 받도록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음(보건복지부·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2016: 104).
- 현재 어린이집을 위한 컨설팅은 사설기관이나 개인적인 컨설팅을 제외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음.
 - 이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주요 사업의 일환으로 어린이집 설치운영, 평가인증 조력, 보육과정, 재무회계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

- 지자체에서도 관내 어린이집의 컨설팅 요구에 부응하여 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하여 특화된 컨설팅 제공이 확대되는 추세임.

가. 어린이집 설치운영 컨설팅¹⁾

- **(내용)** 설치운영 컨설팅은 2012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신설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초기 운영을 위한 환경구성, 보육과정, 재무회계, 인사관리 등의 내용을 컨설팅함(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 어린이집 설치운영 컨설팅 사업은 시도 및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이루어짐.
- **(운영현황)**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지난 4년간 총 617개소 어린이집 컨설팅을 진행하였음.
 - 2013년 시범사업에서 18개 센터가 참여하여 95개 신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하였고, 2014년에는 33개 센터가 총 252개소의 신규 설치운영을 컨설팅 지원하였음.
 - 2015년에는 32개 센터가 193개의 신규 및 변경인가 어린이집 대상 컨설팅을 실시하였는데, 이는 전년대비 30% 이상 감소된 것으로 그 이유는 전국 어린이집 수 감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보건복지부·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2016: 105).

나. 어린이집 평가인증 컨설팅²⁾

- **(내용)** 어린이집 평가인증 컨설팅은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이고 준비 과정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지표 교육, 현장방문 컨설팅 등을 통해 어린이집 자체점검 개선방향 수립을 지원하는 것을

1)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central.childcare.go.kr/lcentral/d1_30000/d1_60059/d1_30003/d1_600054.jsp에서 2017년 10월 17일 인출함.

2)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central.childcare.go.kr/lcentral/d1_30000/d1_60059/d1_30003/d1_600056.jsp에서 2017년 10월 17일 인출함.

의미함(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 평가인증에 대한 이해와 준비를 돕기 위한 조력의 개념으로 어린이집 컨설팅이 시작되었으며 2018년 현재 제3차 평가인증제도가 운영 중임.
 -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는 2005년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1차(2006-2009), 2차(2010-2015)가 실시됨.
 - 2015년부터 3차 평가인증제가 시범운영 되다가 2017년 11월부터 유치원과 동일한 지표인 통합평가지표를 적용하는 3차 어린이집 평가인증이 시행 중임.
- **(운영 현황)** 2016년에는 시도센터 3,128개소와 시군구센터 3,945개소를 합한 총 7,073개소를 방문하여 91,630명에게 컨설팅을 실시함.
 - 2013년에 방문 컨설팅한 어린이집은 9,668개소이며 105,473명을 교육하였고, 2014년에는 9,637개소를 방문하여 98,742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15년에는 8,442개소의 80,281명에게 컨설팅을 시행하였음.

다. 보육과정 컨설팅

- **(내용)** 보육과정 컨설팅은 보육교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지원함으로써 교사의 전문성 향상 및 자긍심 제고를 통해, 표준보육과정의 효과적인 현장 적용과 실천을 목적으로 함(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 보육과정 컨설팅 사업은 시도·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이루어짐.
 - 대표적인 보육과정 컨설팅으로는 중앙센터 주관의 ‘교사+ 보육과정 컨설팅 사업’, 서울시의 ‘아이조아, 서울 맞춤 컨설팅’, 부산시의 ‘어린이집 맞춤형 보육장학제 사업’ 등이 있음.
- 보육교사가 자발적으로 신청을 하면 컨설턴트가 해당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문제를 진단하고 신청인과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함.
 - ‘교사+ 보육과정 컨설팅 사업’의 경우, 현장방문 2회 외에 전화나 이메일을 통한 원격 지원을 1회 이상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개별 또는 집단별로 컨설팅이 가능함.
 - 이후 현장방문과 연계하여 ‘교사 소모임 컨설팅’도 이루어짐.

- 컨설턴트가 리더가 되어 자유롭게 토의하는 중 교사 스스로 문제해결 방안을 찾는 형태로 진행됨.
- **(운영 현황)** 2016년에는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한 1,040명이 지원함.
 - 2013년에는 24개 센터에서 1,756명의 교사를 컨설팅하였고 2014년에는 33개 센터에서 1,617명을 지원함.
 - 2015년에는 교사 개별 컨설팅의 취지를 명확히 하여 총 4,132명을 컨설팅 지원하였지만 2016년에는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한 1,040명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중앙센터에서 진행하는 ‘교사⁺ 보육과정 컨설팅’ 사업을 포함하지 않아 횟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됨(보건복지부·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2017).

라. 어린이집 재무회계 컨설팅³⁾

- **(내용)** 어린이집 재무회계 컨설팅은 2013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어린이집 재무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회계를 관리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임(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 재무회계 관련 상담과 교육 및 현장방문 컨설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함(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 **(운영 현황)** 전체 실적은 지난 4년간 시도 및 시군구 센터는 총 723회, 인원은 43,496명을 교육하였음.
 - 재무회계 컨설팅은 2013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3년에는 11,415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했고, 2014년에는 16,508명, 2015년에는 8,726명이 컨설팅 교육을 받았음.
 - 2015년은 전년대비 약 50% 감소하였는데 그 이유를 대집단에서 소집단으로의 교육 형태 변화, 컨설팅 사업의 안정화에 따른 변화로 보고 있음(보건복지부·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2016: 114).
 - 2016년에는 전년 대비 교육 횟수는 증가하였으나, 교육인원은 감소하는 양상을 보

3)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central.childcare.go.kr/central/d1_30000/d1_60059/d1_30003/d1_600055.jsp에서 10월 17일 인출함.

였음.

마. 맞춤형 보육 운영 컨설팅⁴⁾

- (내용) 맞춤형 보육 운영 컨설팅은 2016년 7월부터 시작된 맞춤형 보육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실시하고 있으며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어린이집 특성 및 상황에 따라 현장방문 및 온라인 상담 등을 지원함(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 맞춤형 보육은 아이와 부모의 보육수요에 맞게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작되었고,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맞춤형 서비스를 포함하는 어린이집의 운영에 대한 컨설팅 요구가 증가함.
- 맞춤형 보육 운영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맞춤형 보육 운영 컨설팅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함(보건복지부·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2017).
- 맞춤형 보육 운영 컨설팅은 맞춤형 보육에 따른 보육계획안 작성부터 하루일과 운영, 맞춤형 및 종일반 운영에 따른 교사의 역할 등 어린이집 특성 및 상황에 따라 현장방문 및 온라인 상담 등을 통해 지원함.
- 맞춤형 보육 운영 컨설팅은 원활한 진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작, 컨설팅과 관련된 센터장 및 사업 담당자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보건복지부·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2017).
- 신청대상은 맞춤형 보육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이며, 시도 및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이루어짐.

바. 기존 어린이집 지원 컨설팅과 CARE 컨설팅

- 기존의 어린이집 지원 컨설팅과 CARE 컨설팅과의 차별성에 대한 설명을 위해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어린이집에 제공 중인 컨설팅과 CARE 컨설팅의 목적과 특징을 제시하면 다음 <표 1>과 같음.
- 무엇보다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 중인 컨설팅은 어린이집 개원 지원, 재무회계

4)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central.childcare.go.kr/lcentral/d1_30000/d1_60059/d1_30003/d1_600200.jsp에서 10월 17일 인출함.

방법 교육지원, 교사 보육과정 운영 지원, 평가인증 조력이라는 목적을 지님.

- CARE 컨설팅은 평가인증 이후 결과에 기초하여 취약 부분에 대한 개선안을 어린이집 상황에 맞게 찾아 질적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을 지님.
 - 평가인증에서 낮은 점수를 받더라도 그 원인은 어린이집이 지닌 고유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어느 한 부분의 컨설팅이 아닌 문제 진단에서 출발함.
 -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직원의 합의를 통해 개선안을 도출하여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존 컨설팅과 다른 점임.
- 이런 의미에서 CARE 컨설팅은 개별 어린이집의 특성을 반영한 컨설팅이며,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시행 중인 다른 컨설팅을 안내하고 연계하도록 하는 종합컨설팅임.

표 1 | 육아종합지원센터 중심 어린이집 컨설팅과 CARE 컨설팅 특징

구분	주요 사항
설치운영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인가(변경인가 포함)를 앞둔 어린이집 초기 운영에 필요한 보육과정, 보육환경 구성, 재무 회계, 인사관리 등의 제반 내용을 컨설팅하여, 설치시점부터 질 높은 서비스 갖추도록 지원 • 특징: 2012년부터 해당 컨설팅 시작
재무회계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어린이집 재무회계 투명성 확보, 효율적인 회계 관리 및 어린이집 재정운영의 안정화 등을 통한 어린이집 운영의 신뢰감증대에 중점을 두어 지원 • 특징: 2013년 시범사업 시작으로 진행됨. 재무회계 관련 상담, 교육, 현장 방문 컨설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
보육과정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보육교사를 직접 지원하는 컨설팅으로, 표준보육과정 적용 및 실천,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전문 컨설팅을 통해 보육교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지원 • 특징: 2011년 「보육컨설팅」으로 시작하여, 2012년 「품질관리 컨설팅」, 2014년 「보육과정 컨설팅」으로 명칭 변경
평가인증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평가인증을 신청한 어린이집(신규인증, 재인증, 재참여)이 평가 인증 준비에 대한 시행착오를 줄이고 효과적으로 평가인증 과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 • 특징: 2005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실시했던 「평가인증 조력」 사업이 시초이며, 2012년부터 평가인증 컨설팅으로 사업명 변경추진
CARE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평가 인증 결과를 받은 어린이집의 평가 결과를 통해 어린이집 취약점과 개선할 부분을 어린이집 구성원 간 협의를 통해 도출하고 C.A.R.E. 컨설팅 모형을 적용하여 컨설팅 진행함으로써 어린이집 운영능력과 보육서비스 질을 스스로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 • 특징: 어린이집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자율적 동기과 역량 함양, 평가 인증 이후 자발적인 상시 질 관리 체계 및 자체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지향

구분	주요 사항
	- 진단 이후 필요하다면 기존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시행 중인 다른 컨설팅을 안내하고 연계함.

자료: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2017). 2016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결과보고서. pp113-119 내용 및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인출한 자료를 재구성함(2017년 10월 17일 인출).

http://central.childcare.go.kr/lcentral/d1_30000/d1_60059/d1_30003/d1_600053.jsp

http://central.childcare.go.kr/lcentral/d1_30000/d1_60059/d1_30003/d1_600054.jsp

http://central.childcare.go.kr/lcentral/d1_30000/d1_60059/d1_30003/d1_600055.jsp

http://central.childcare.go.kr/lcentral/d1_30000/d1_60059/d1_30003/d1_600056.jsp

3 어린이집 CARE 컨설팅 모형

- 본고는 평가인증 결과에 기초한 보육의 질 향상 및 상시적 관리 체계 구축을 지향하며 어린이집 구성원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진단하고 그 해결을 위해 협력하는 컨설팅의 모형을 제시하고자 함.

가. CARE 컨설팅 개발 배경 및 목표

- 평가 이후 상시 질 관리 필요성에 따라, 「CARE 컨설팅」은 평가인증 이후에 이루어지는 사후 컨설팅 개념으로 어린이집이 자발적인 질 향상과 유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행동주의 경영컨설팅의 기법을 고려한 것임(최윤경 외, 2016: 15).
- CARE 컨설팅의 목표는 어린이집의 조직 문화를 점검 및 개선하여 조직의 건강성을 증진시키고, 어린이집 구성원들의 행동변화를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건강한 조직문화 안에서 전문성을 갖추도록 돕는 것임.
 - 또한 개인 수준 및 조직 수준의 자체점검 및 모니터링 과정을 내재화시켜 어린이집의 자생적 활력을 함양하도록 하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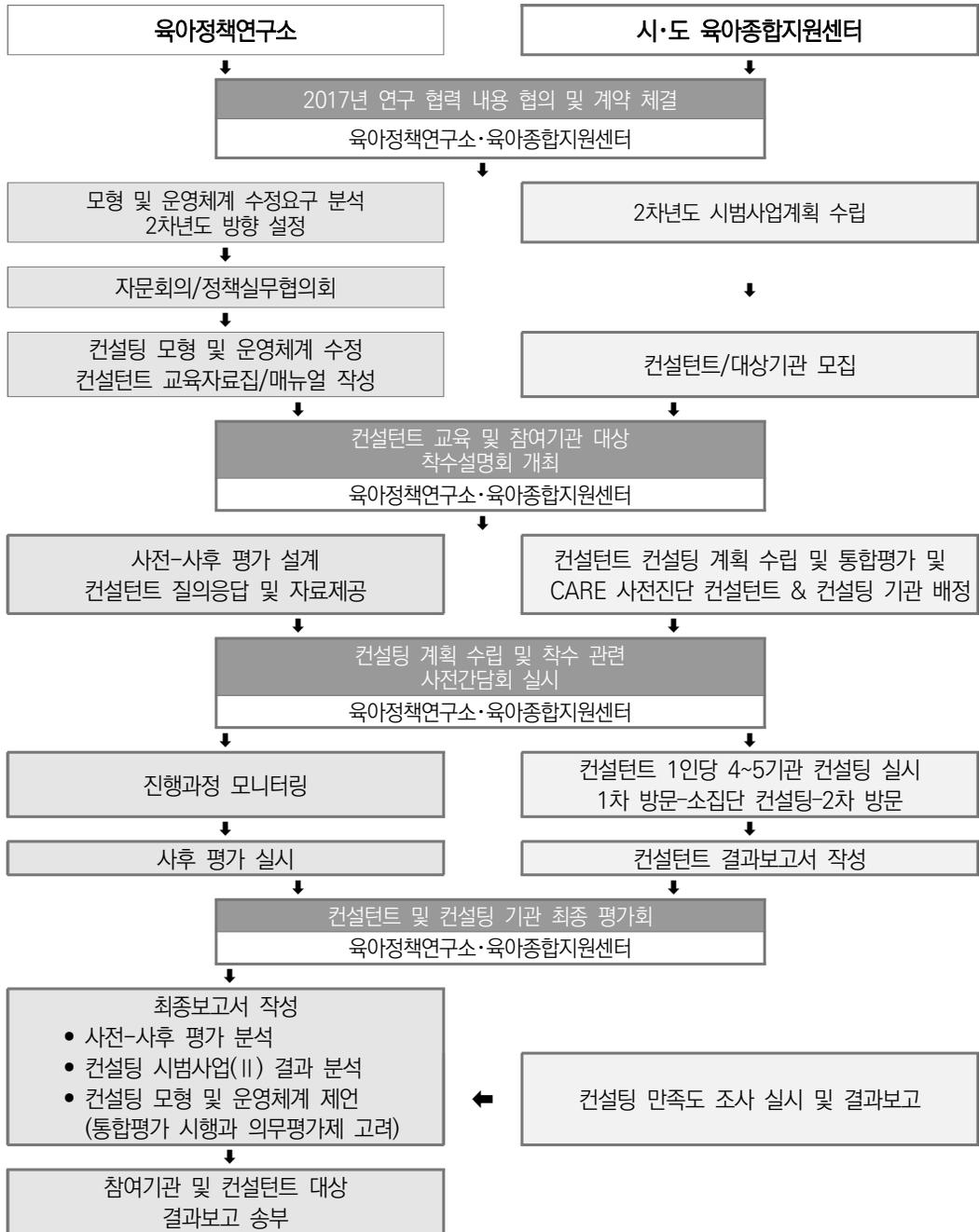
나. CARE 컨설팅 개발과정

- 평가인증 이후 어린이집의 상시 질 관리와 자체점검,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어린이집 지원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어린이집 평가 연계 컨설팅 지원 연구를 2016년부터 5차년 계획으로 기획·착수하게 되었음.
- 1차년도(2016년)는 어린이집 평가 결과와 연계된 코칭 및 컨설팅 제공을 위해 컨설팅 가이드라인(매뉴얼) 개발과 적용연구를 추진함. 1차년도는 한국보육진흥원 평가인증국에서 컨설팅의 현장 시범적용을 진행하였음.
- 2017년 2차년도 연구에는 다음의 두 가지를 고려하였음. 첫째, 평가의 준거가 되는 지표를 유치원·어린이집 통합평가 지표를 적용하여 컨설팅 출발점 진단이 가능하도록 보완하였음. 둘째,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주축으로 어린이집 현장에 시범적용을 도모하고자 하였음.

다. CARE 컨설팅 시범사업 운영

- (육아종합지원센터와의 협력) 서울, 충북, 울산 육아종합지원센터 3곳을 협력진으로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음.
- (수석 컨설턴트 선발 및 멘토단 구성) 2016년 컨설턴트 중 역량이 우수한 컨설턴트 3인을 수석 컨설턴트로 선발하여 2017년 컨설턴트를 지원하는 역할을 부여하였음. 컨설팅 멘토단은 본 컨설팅의 개발진인 대학교수 1인, 수석 컨설턴트 1인, 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 1인 및 센터 전담인력 1인이 컨설턴트 6인의 멘토단이 되는 구조임.
- (컨설턴트 선발 및 배치, 교육) 각 센터 컨설턴트 풀을 최대한 활용하여 세 지역에서 각 6인, 총 18인을 선발하였음. CARE 컨설팅 개발진과 연구진이 컨설턴트 18인과 수석 컨설턴트 3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음.
- (컨설팅 신청) 컨설팅 지원을 희망하는 어린이집이 시범사업 담당부서에 메일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를 토대로 컨설팅 대상 지정여부를 심사하였음.
- 참여한 어린이집은 총 89개소로, 기관유형별로는 국공립 20개소, 사회복지법인 4개소, 민간 37개소, 가정 23개소, 직장 5개소임.

- (착수설명회 개최) 전반부에는 컨설팅 개발진이 CARE 컨설팅에 대해 교육하는 시간을, 후반부에는 통합평가지표에 기반 한 CARE 조직진단 체크리스트의 틀을 적용하여 컨설팅의 출발점을 진단하는 워크숍 시간을 가졌음.
- (컨설팅 실행: 2개월) 컨설팅은 <사전진단 → 1차 방문 → 소집단 상담 → 2차 방문>의 순으로 진행하였음.
 - 사전진단은 담당 컨설턴트가 1차 방문 전, 어린이집 컨설팅 신청서, CARE 진단체크리스트, 어린이집 평가인증 결과 등을 활용하여 어린이집의 상황을 사전 진단하는 과정임.
 - 1차 방문에서 컨설턴트는 교직원들 개별면담, 필요문서 검토, 보육실 관찰, 원장(혹은 중간관리자)과의 소규모 회의나 교직원들과의 집단 회의를 주재함.
 - 소집단 상담은 컨설턴트가 담당하는 4~5개의 컨설팅 대상 기관이 참여하여 경험과 실행정도를 공유하는 중간점검의 과정이며 실천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컨설턴트의 추가적인 지원이 이루어짐.
 - 2차 방문에서는 개선 정도를 확인하고, 이러한 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어린이집 구성원들을 충분히 격려하고 지지함. 이 과정에서 어린이집의 개선전략 실행결과에 대한 확인(C: Check), 조치(D: Do), 적용(A: Action & Adjust), 계획하기(P: Plan)가 이루어짐.
- (결과보고 및 평가) 컨설팅 종료 후 컨설턴트는 사전상담을 시작으로 1차 방문, 소집단 컨설팅, 2차 방문 등 컨설팅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면서 전반적으로 주요하게 다루어졌던 내용을 토대로 종합적 평가를 하고 어린이집별 컨설팅 결과보고서를 제출함.
- (결과보고회 및 이수증 수여식) 컨설팅이 모두 종료된 후에는 각각의 센터에서 컨설팅 참여기관을 대상으로 최종 결과보고회를 실시하였음. 컨설팅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 일환으로 이수증을 전달하였음.



자료 : 권미경 외 (2017).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어린이집 평가 연계 컨설팅 지원 방안 연구(II): 통합평가지표 적용을 고려한 어린이집 컨설팅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17, [그림 1-3-1].

그림 1 | 연구 총괄 및 시범사업 진행 절차

라. CARE 컨설팅 개념 및 특징⁵⁾

- CARE 컨설팅 모형은 행동주의 이론에 근거하여 인간 행동의 원리를 조직 상황에 적용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어린이집 구성원의 자체적인 문제 진단을 통해 도출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 수준에서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행동 변화에 적용함.
- 이를 통해 보육서비스와 직결된 문제를 해결하고, 조직의 건강성을 증진시키는 순환적 구조를 가지며, 궁극적으로는 구성원의 자발적인 자체 점검의 과정을 내재화하도록 도움.
- CARE 컨설팅은 어린이집의 특성을 ‘공유된 비전 및 가치(Common Value)’, ‘역량(Ability)’, ‘자원(Resource)’, ‘동기부여(Empowering)’ 라는 4가지 측면에서 진단(최윤경 외, 2016: 73) 하도록 하고 구성원 스스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활성화시키도록 지원함으로써 어린이집의 조직문화 및 건강성을 개선함.



자료: 최윤경 외(2016).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어린이집 평가 연계 컨설팅 지원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19 [그림 1-3-2].

1 그림 2 | CARE 컨설팅의 진단 영역

5) 최윤경 외(2016)의 1차년도 연구 내용(pp.73-75)을 토대로 재구성하여 정리함.

- CARE 컨설팅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CARE 컨설팅」이라고 명명됨.
 - 첫째, CARE(Common value, Ability, Resource, Empowering) 진단시스템을 활용하여 어린이집이 직면한 문제의 원인을 조직 내에서 규명하고, 밝혀진 이유를 개인적 수준에서의 행동변화에 적용하는 것임.
 - 둘째, 본 컨설팅에서 전문가의 역할이 도우려는(care) 조력자의 자세를 견지하도록 구성되었다는 점임.
- 컨설턴트는 기관 전반의 문제를 모두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는 가시적이고 즉각적인 변화를 볼 수 있는 핵심 행동의 변화를 도모하도록 해야 함.
 -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평가자나 슈퍼바이저의 역할과 같이 평가하거나 가르치려는 태도는 지양하고, 어린이집 구성원들을 격려하고 도우려는(care) 조력자의 자세를 견지함.

마. CARE 컨설팅 기법 및 과정

1) 기법

- 본 컨설팅은 경영컨설팅 기법을 어린이집 조직에 적용한 <서식> CARE 조직진단 체크리스트⁶⁾를 사용하여 컨설턴트와 보육교직원이 함께 어린이집의 조직진단 및 현재 상태를 진단하고 이를 기반으로 개선전략을 도출하고, 이를 실천하여 어린이집의 변화를 도모함.
 - [KICCE CARE checklist]로 어린이집 조직 및 현재 상태 진단하기: 어린이집 조직 및 현재 상태의 문제가 [KICCE CARE checklist]의 영역 및 하위요소 중 어느 부분에 존재하고 있는지 파악함.
 - 상향식(bottom-up) 방식으로 컨설팅 의제 도출 및 합의하기: 현재 상태 진단을 토대로 컨설턴트는 원장, 보육교직원이 협의하여 컨설팅을 희망하는 의제를 도출함.
 - 핵심변화 행동 중심으로 개선전략 세우기: 개선전략 도출 시 원하는 결과(목표) 상태를 먼저 정한 후 이 결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보육교직원의 핵심변화 행동

6) <부록>으로 제시함.

을 찾음.

- 보육교직원의 핵심변화 행동 실행에 점검계획 세우기

2) PDCA 순환모형

□ CARE 컨설팅 과정은 PDCA 순환모형을 적용한 결과임.

- 계획하기(P: Plan) 단계에서 문제 인식을 위한 자료수집, 자료를 분석하고 개선 계획을 개발, 목표달성을 위한 기준을 설정함(신승호, 2006).
- 실행하기(D: Do) 단계에서는 설정한 계획에 따라 해결책을 실행하며, 실행과정에서 나타난 변화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해야 함.
- 확인하기(C: Check) 단계에서는 실행한 결과를 비교 및 분석하고 해결책의 효과를 검토하고 결과를 측정하며 예상했던 것과 비교함.
- 조치하기(A: Action & Adjust) 단계에서는 이전 단계에서 검토한 결과를 처음 계획과 비교하여 차이가 있으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다음 계획을 세울 때 반영하는 등의 환류가 있어야 함.

□ PDCA 사이클은 순환적으로 반복되어 지속적인 질 향상 효과를 거둘 수 있어, 하나의 구체적 핵심 행동의 수정이 이루어지고 다음의 핵심 행동의 수정을 도모하는 순환적 구조를 만들어가게 됨.

3) 어린이집 평가연계 컨설팅의 과정

- 효과적인 컨설팅 진행과 컨설팅의 효과를 내재화할 수 있도록 돕는 ‘PDCA 사이클’ 모형을 적용하여 컨설팅을 통해 변화된 어린이집 구성원들의 기술과 태도, 보육에 관한 지식 등이 컨설팅 종료 이후에도 정착되고 더 나아가 컨설팅의 효과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함.
- 본 컨설팅은 어린이집 구성원들의 기관과 구성원 스스로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에 대한 동기부여와 실행을 지원하기 위한 개선 계획-실행-평가가 순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안됨.
- CARE 컨설팅의 과정은 온라인을 통한 사전진단, 1차 방문, 소집단 컨설팅, 2차 방문으로 구성되어 이를 PDCA 모형에 적용하면 [그림 3]과 같음.

- CARE 컨설팅 지원으로 컨설턴트와는 한 번의 PDCA 사이클이 진행되지만, CARE 컨설팅이 종료된 후 어린이집에서는 원장과 보육교직원을 중심으로 다음 단계의 계획을 주도적으로 수립하고, 실행하고, 성과를 측정하고, 피드백을 그 다음 계획에 반영하는 PDCA 사이클을 지속해서 반복하여 추진함으로써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을 향상해가게 되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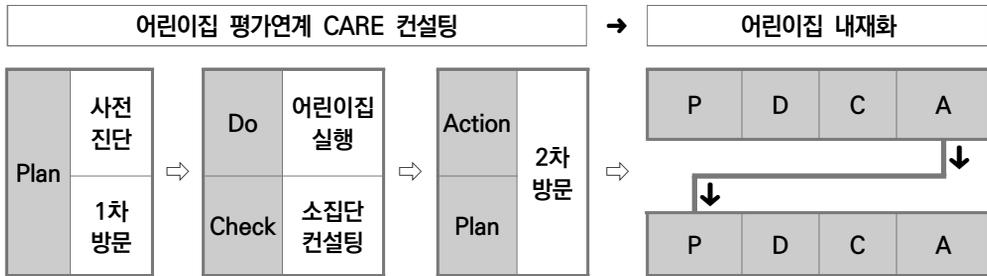


그림 3 | 어린이집 평가연계 컨설팅의 과정과 PDCA 사이클

바. CARE 컨설팅 운영체계

- 2017년 시범사업의 결과를 반영하여 육아정책연구소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협력하여 추진하는 평가인증 결과에 기초한 어린이집 CARE 컨설팅 수정 모형을 제안하고 그 운용 계획을 제시하면 다음 [그림 4]와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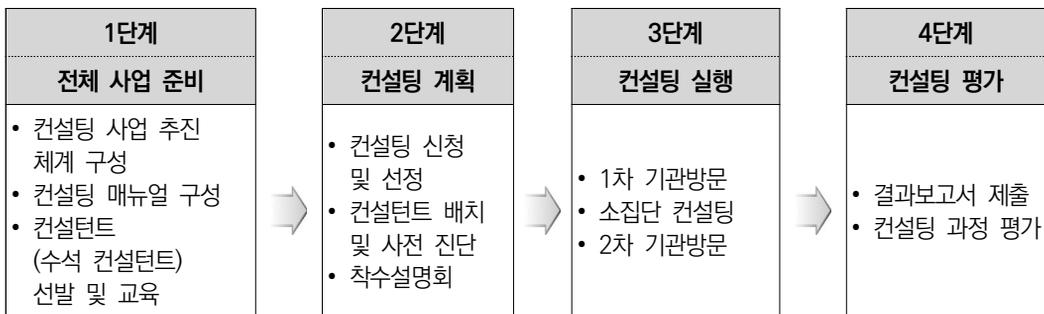


그림 4 | 어린이집 평가연계 CARE 컨설팅 추진 단계

- CARE 컨설팅은 준비과정부터 평가에 이르는 총 4단계로 구성되며(그림 4 참조), 컨

설팅 소요기간은 참여 희망 어린이집의 신청 시점으로부터 결과보고 및 종료에 이르기까지는 총 4개월 내외임.

4 어린이집 상시 질 관리 방안

- 본 연구를 통해 개발한 CARE 컨설팅이 보육현장에 평가인증 이후 사후 질 관리 도구로 기능하기 위해 다음의 내용들이 준비되어야함.

가. 의무평가제 도입에 선제적 대응으로의 컨설팅 운영체계 설계

- 어린이집 의무평가제 도입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최하위 등급의 의무적 품질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단순평가지표 보다는 상시적인 질 관리 중심의 컨설팅이 요구되고 있고 그 방안으로 CARE 컨설팅을 개발함.
 - 어린이집 평가인증의 평가지표가 질적 수준의 기준을 제시한다면 컨설팅은 그 질적인 수준을 관철시키기 위한 지원임.
- 어린이집이 평가인증 사후 지원으로 CARE 컨설팅에 참여 가능하도록 컨설팅의 운영을 위한 체계가 보건복지부, 한국보육진흥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실무선상에서 면밀하게 준비되어야 함.
 - 어린이집 의무평가가 이루어진다면 현재 전체 4만 여개의 어린이집이 3년 기간 동안 순차적으로 참여하게 되므로 대략 1년에 약 1만 7천여 개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에 참여하게 될 것임.
 - 또한 이 중 최하위 등급(D 등급)을 받을 어린이집의 비율을 약 5% 정도로 예측하면 1년에 약 800개소 정도로 추산됨.

나. 컨설팅 이후 개선 정도를 고려한 인센티브 부여

- 의무평가제 도입 시 하위 등급 어린이집에의 컨설팅으로 CARE 컨설팅을 적용할 경우 컨설팅 참여를 동기화하거나, 컨설팅 후 인센티브를 어떻게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어린이집 평가인증 체계와 연계하여 마련되어야함.

- 최하위 등급을 받은 어린이집에서 CARE 컨설팅을 받고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재인증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으나, 재인증 시 가산점 부여에 대해서는 불합리하다는 의견도 있어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함.
- 보육 현장의 질 관리를 위해 최하등급(D 등급)을 받은 어린이집의 경우 자발적 참여가 아닌 컨설팅 비용을 자부담하고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한 과정으로 사료됨.

다. 역량 있는 컨설턴트 확보 및 전문화

-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컨설팅의 컨설턴트 자격 기준보다 상향된 최소자격기준을 정하고 전문 직업화할 필요가 있음.
- CARE 컨설팅을 평가인증 사후 컨설팅으로 전국사업으로 확대할 때, 컨설턴트의 선발과 유지를 위해 자격기준을 정교화하고 보육관련 학과의 교수,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센터장, 어린이집 원장 경력자 등을 중심으로 역량 있는 컨설턴트 풀(pool)을 두텁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 다른 컨설팅보다도 CARE 컨설팅은 어린이집의 상황과 자발적으로 진단으로 도출된 의제에의 접근 과정이 다양하여 컨설턴트의 역량이 컨설팅 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큼.
- 장기적으로는 컨설턴트의 양성과정과 자격부여가 공식화될 필요가 있음(최윤경 외, 2016: 166).
- 특히 향후 CARE 컨설팅을 전국 사업으로 확대 시에는 컨설팅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컨설턴트를 지원하는 수석 컨설턴트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상근직으로 배치할 것을 제언함.

라. 컨설팅 소요비용 확보

- 무엇보다 평가인증 최하위 등급에 대한 국가 수준의 질 관리 필요성이라는 명분을 토대로 컨설팅을 위한 예산의 확보가 필수적임.

- CARE 컨설팅이 6주~8주 동안 진행되고, 4시간 이상 소요되는 2차례의 어린이집 방문, 1회 소집단 컨설팅으로 추진됨에 따라 컨설팅에 소요되는 비용이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지원 중인 다른 컨설팅들에 비해 높음.
- 그러나 소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컨설팅 회기를 줄이거나 내용을 간략화 함은 자칫 컨설팅의 효과를 담보하기 어렵게 될 가능성이 있음.
- 시범사업을 토대로 연간 800개 어린이집(전체 평가인증 참여 어린이집 중 최하위 등급을 받을 어린이집의 비율을 약 5% 정도로 예측)에 대한 CARE 컨설팅의 최소비용은 5억 정도로 추산됨.
- 만약 충분한 예산의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 컨설팅 추진과정의 간략화보다는 참여하는 어린이집에서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이 차선책으로 고려됨.
 -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컨설팅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동기가 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참여 어린이집에서 컨설팅 소요 비용의 일부 비용을 분담함이 컨설팅 효과를 높이는데 긍정적으로 기능할 것으로 예상됨.

마. 컨설팅 실행을 위한 교사 지원 강화

- 컨설팅 과정에서 교사들의 시간확보가 어려우므로 컨설턴트 방문 시 대체교사의 지원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
 - CARE 컨설팅을 위해 1차 방문과 2차 방문 시 교사의 면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린이집 현장에서 보육활동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컨설팅을 위한 교사의 시간 확보가 쉽지 않음.
 - 이를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대체교사의 파견 시 컨설팅에 우선순위를 두어 배정하는 방안이 고려됨.
- 컨설팅 진행을 위한 시간의 확보라는 부분 보다 근본적으로는 교사가 적절한 근무 시간을 보장받으며 보육과정을 운영하고, 그에 합당한 처우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이 우선되어야함.
 - 본 연구 과정에서 컨설팅 자체가 교사에게 또 다른 업무의 연장으로 간주되고 그로

인해 컨설팅 효과가 반감되는 현상을 확인하기도 함.

바. 질 관리 도구로의 CARE 컨설팅 결과 자료화

- 통합평가 지표를 적용하는 평가인증지표는 4개 영역, 79개 항목으로 구성되었음. 평가 결과에 기초한 질 관리를 위해서는 평가지표 영역별, 항목별 감점요소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함.
 - 또한 본 CARE 컨설팅을 통해 개별 어린이집에서 개선을 위해 어린이집 구성원 스스로가 도출하였던 대의제와 소의제 핵심변화 행동이 무엇이었는지 분석하고 자료화할 필요가 있음.
- 어린이집 상시 질 관리 도구로 CARE 컨설팅 결과 누적 자료화가 필요함.
 - 본 CARE 컨설팅의 자료는 평가인증 4개 영역, 79개 항목별 감점요소의 원인이 무엇이며 이를 어린이집 현장에서 어떤 변화를 통해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임.
 - 누적자료를 분석함으로써 평가지표 영역별, 항목별 컨설팅 필요 부분의 일반적 경향을 도출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 지원을 위한 컨설팅의 방법 또한 자료화되어감으로써 평가 이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이 가능해질 수 있음.

Ⅰ 참고문헌 Ⅰ

- 권미경·박원순·이규림·박인숙·권혜진·이완정·임지영(2017).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어린이집 평가 연계 컨설팅 지원 방안 연구(Ⅱ): 통합평가지표 적용을 고려한 어린이집 컨설팅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보건복지부·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2016). 2015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결과보고서.
- 보건복지부·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2017). 2016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결과보고서.
- 신승호(2006). 공공부문 BSC 운용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PDCA 모형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최윤경·권미경·윤지연·권혜진·이완정·김온기·임지영·이원선(2016).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어린이집 평가 연계 컨설팅 지원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참고 사이트〉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2017. 10. 17 인출)

http://central.childcare.go.kr/lcentral/d1_30000/d1_60059/d1_30003/d1_600053.jsp

http://central.childcare.go.kr/lcentral/d1_30000/d1_60059/d1_30003/d1_600054.jsp

http://central.childcare.go.kr/lcentral/d1_30000/d1_60059/d1_30003/d1_600055.jsp

http://central.childcare.go.kr/lcentral/d1_30000/d1_60059/d1_30003/d1_600056.jsp

http://central.childcare.go.kr/lcentral/d1_30000/d1_60059/d1_30003/d1_600200.jsp

부록

어린이집 CARE 조직진단 체크리스트(CARE checklist)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단일시: 년 월 일 기관명: 응답자 구분 <input type="checkbox"/> 원장 <input type="checkbox"/> 중간관리자(기관장에 준하는 역할 수행) <input type="checkbox"/> 교사 																																																	
<p>※ 귀하의 어린이집은 아래에서 제시된 내용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해당하는 점수를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p>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	조금 개선이 필요하다.	아주 약간씩 개선이 필요하다.	개선이 필요 없다.																																											
	0	1	2	3	4	5																																											
	<table border="1"> <thead> <tr> <th>구성요소</th> <th>문항 내용</th> <th>점수</th> <th>총점</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4">C 공유된 비전 및 가치 (Common Value)</td> <td>C-1</td> <td>어린이집의 관리자(예: 원장, 중간관리자)는 보육교직원에게 어린이집의 보육철학, 보육이념 및 보육원리를 안내한다.</td> <td rowspan="4">/20</td> </tr> <tr> <td>C-2</td> <td>보육교직원들은 우리 어린이집의 보육철학과 보육이념을 알고 보육과정과 프로그램을 통해 적용한다. 업무과정에서 이를 중시한다.</td> </tr> <tr> <td>C-3</td> <td>우리 어린이집은 영유아의 보호자와 가족들에게 기관안내와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어린이집의 보육철학과 보육방법을 안내하고 있다.</td> </tr> <tr> <td>C-4</td> <td>우리 어린이집에서는 어린이집의 보육과정과 프로그램을 통해 보육철학과 이념이 구현되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한다.</td> </tr> <tr> <td rowspan="4">A 역량 (Ability)</td> <td>A-1</td> <td>모든 보육교직원은 각자의 보육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보육관련 지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td> <td rowspan="4">/20</td> </tr> <tr> <td>A-2</td> <td>모든 보육교직원은 각자의 보육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 기술(예: 영역별 활동 방법, 놀이 /영유아 상호작용 방법)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td> </tr> <tr> <td>A-3</td> <td>모든 보육교직원은 각자의 보육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일반적인 관리 능력(예: 문제해결능력, 합리적 의사결정능력 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td> </tr> <tr> <td>A-4</td> <td>모든 보육교직원은 각자의 보육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대인관계 기술(예: 교사 대 교사 갈등해결, 교사 대 원장 갈등해결, 교사 대 학부모 갈등해결, 구성원 간 협력, 동료의 성취를 독려 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td> </tr> <tr> <td rowspan="4">R 자원 (Resource)</td> <td>R-1</td> <td>우리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직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근무환경(시간, 인력, 업무량, 시설설비와 기자재 등)이 충분히 조성되어 있다.</td> <td rowspan="4">/20</td> </tr> <tr> <td>R-2</td> <td>우리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직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참고용 자료, 영유아용 교재교구 및 비품이 충분히 구비되어 있다.</td> </tr> <tr> <td>R-3</td> <td>우리 어린이집의 모든 보육교직원은 각자가 수행해야 하는 개별 업무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알고 있다.</td> </tr> <tr> <td>R-4</td> <td>우리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직원이 보육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업무처리 과정(매뉴얼)이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다.</td> </tr> <tr> <td rowspan="4">E 동기 부여 (Empowering)</td> <td>E-1</td> <td>우리 어린이집의 원장과 중간관리자는 각 보육교직원이 수행해야 하는 업무의 세부적인 내용과 범위를 사전에 충분히 명확하게 설명하고 알려준다.</td> <td rowspan="4">/20</td> </tr> <tr> <td>E-2</td> <td>우리 어린이집의 원장과 중간관리자는 각 보육교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을 참관이나 연담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피드백을 준다.</td> </tr> <tr> <td>E-3</td> <td>우리 어린이집의 원장과 중간관리자는 각 보육교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을 주기적인 문서 점검(예: 보육일지 등)을 통해 점검하고 피드백을 준다.</td> </tr> <tr> <td>E-4</td> <td>우리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직원들이 자신의 보육업무에 열의를 가지고 보다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발휘하도록 다양한 인센티브(예: 교사회의에서의 격려 및 칭찬, 정기적 평가 또는 보상)가 이루어진다.</td> </tr> </tbody> </table>					구성요소	문항 내용	점수	총점	C 공유된 비전 및 가치 (Common Value)	C-1	어린이집의 관리자(예: 원장, 중간관리자)는 보육교직원에게 어린이집의 보육철학, 보육이념 및 보육원리를 안내한다.	/20	C-2	보육교직원들은 우리 어린이집의 보육철학과 보육이념을 알고 보육과정과 프로그램을 통해 적용한다. 업무과정에서 이를 중시한다.	C-3	우리 어린이집은 영유아의 보호자와 가족들에게 기관안내와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어린이집의 보육철학과 보육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C-4	우리 어린이집에서는 어린이집의 보육과정과 프로그램을 통해 보육철학과 이념이 구현되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한다.	A 역량 (Ability)	A-1	모든 보육교직원은 각자의 보육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보육관련 지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20	A-2	모든 보육교직원은 각자의 보육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 기술(예: 영역별 활동 방법, 놀이 /영유아 상호작용 방법)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A-3	모든 보육교직원은 각자의 보육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일반적인 관리 능력(예: 문제해결능력, 합리적 의사결정능력 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A-4	모든 보육교직원은 각자의 보육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대인관계 기술(예: 교사 대 교사 갈등해결, 교사 대 원장 갈등해결, 교사 대 학부모 갈등해결, 구성원 간 협력, 동료의 성취를 독려 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R 자원 (Resource)	R-1	우리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직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근무환경(시간, 인력, 업무량, 시설설비와 기자재 등)이 충분히 조성되어 있다.	/20	R-2	우리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직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참고용 자료, 영유아용 교재교구 및 비품이 충분히 구비되어 있다.	R-3	우리 어린이집의 모든 보육교직원은 각자가 수행해야 하는 개별 업무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알고 있다.	R-4	우리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직원이 보육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업무처리 과정(매뉴얼)이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다.	E 동기 부여 (Empowering)	E-1	우리 어린이집의 원장과 중간관리자는 각 보육교직원이 수행해야 하는 업무의 세부적인 내용과 범위를 사전에 충분히 명확하게 설명하고 알려준다.	/20	E-2	우리 어린이집의 원장과 중간관리자는 각 보육교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을 참관이나 연담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피드백을 준다.	E-3	우리 어린이집의 원장과 중간관리자는 각 보육교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을 주기적인 문서 점검(예: 보육일지 등)을 통해 점검하고 피드백을 준다.	E-4	우리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직원들이 자신의 보육업무에 열의를 가지고 보다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발휘하도록 다양한 인센티브(예: 교사회의에서의 격려 및 칭찬, 정기적 평가 또는 보상)가 이루어진다.
구성요소	문항 내용	점수	총점																																														
C 공유된 비전 및 가치 (Common Value)	C-1	어린이집의 관리자(예: 원장, 중간관리자)는 보육교직원에게 어린이집의 보육철학, 보육이념 및 보육원리를 안내한다.	/20																																														
	C-2	보육교직원들은 우리 어린이집의 보육철학과 보육이념을 알고 보육과정과 프로그램을 통해 적용한다. 업무과정에서 이를 중시한다.																																															
	C-3	우리 어린이집은 영유아의 보호자와 가족들에게 기관안내와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어린이집의 보육철학과 보육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C-4	우리 어린이집에서는 어린이집의 보육과정과 프로그램을 통해 보육철학과 이념이 구현되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한다.																																															
A 역량 (Ability)	A-1	모든 보육교직원은 각자의 보육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보육관련 지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20																																														
	A-2	모든 보육교직원은 각자의 보육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 기술(예: 영역별 활동 방법, 놀이 /영유아 상호작용 방법)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A-3	모든 보육교직원은 각자의 보육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일반적인 관리 능력(예: 문제해결능력, 합리적 의사결정능력 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A-4	모든 보육교직원은 각자의 보육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대인관계 기술(예: 교사 대 교사 갈등해결, 교사 대 원장 갈등해결, 교사 대 학부모 갈등해결, 구성원 간 협력, 동료의 성취를 독려 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R 자원 (Resource)	R-1	우리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직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근무환경(시간, 인력, 업무량, 시설설비와 기자재 등)이 충분히 조성되어 있다.	/20																																														
	R-2	우리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직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참고용 자료, 영유아용 교재교구 및 비품이 충분히 구비되어 있다.																																															
	R-3	우리 어린이집의 모든 보육교직원은 각자가 수행해야 하는 개별 업무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알고 있다.																																															
	R-4	우리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직원이 보육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업무처리 과정(매뉴얼)이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다.																																															
E 동기 부여 (Empowering)	E-1	우리 어린이집의 원장과 중간관리자는 각 보육교직원이 수행해야 하는 업무의 세부적인 내용과 범위를 사전에 충분히 명확하게 설명하고 알려준다.	/20																																														
	E-2	우리 어린이집의 원장과 중간관리자는 각 보육교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을 참관이나 연담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피드백을 준다.																																															
	E-3	우리 어린이집의 원장과 중간관리자는 각 보육교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을 주기적인 문서 점검(예: 보육일지 등)을 통해 점검하고 피드백을 준다.																																															
	E-4	우리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직원들이 자신의 보육업무에 열의를 가지고 보다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발휘하도록 다양한 인센티브(예: 교사회의에서의 격려 및 칭찬, 정기적 평가 또는 보상)가 이루어진다.																																															

이슈페이퍼 2018-05

유치원·어린이집 영유아와 교직원 건강관리 현황 및 개선 방안

최은영

1. 배경
2. 영유아 건강관리 현황과 문제점
3. 교직원 건강관리 현황과 문제점
4. 개선 방안

참고문헌

유치원·어린이집 영유아와 교직원 건강관리 현황 및 개선 방안*

최은영 연구위원

| 요약 |

- 본 글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건강·위생 환경에 대한 실태 분석을 통해 기관에서 영유아가 건강하고 균형 있게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함.
- 영유아 건강검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항목은 '정신건강을 포함한 검진 실시'가 34.0%로 요구도가 가장 높았음.
- 예방접종 미실시 영유아에 대한 조치로 '예방접종을 하도록 보호자에게 안내함'이 85.6%, '예방접종 사전안내 후, 접종 사실을 재확인함'이 38.9%, '별도로 조치하지 않음'이 5.2%로 나타남.
- 교직원 결핵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는 '신청/검진 예정'이 24.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정교원만 지원대상이고, 교직원은 검진 해당사항이 없어서'가 18.1%, '검진에 대해 잘 몰라서'가 15.7%로 나타남.
- 교직원이 전염성 질환(독감, 신종플루, 수족구, 결막염 등)에 감염되었거나 의심되는 경우,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로 '대체교사 구하기가 어려움'이 36.4%로 가장 높게 나타남.

1 배경

- 영아 시기인 만 2세까지는 성장과 발육이 왕성하고, 유아 시기인 만 3~5세까지는 인지·정서적 발달과 함께 신체적 성장이 급속히 진행되는 시기로 이때의 성장과 발달은 전 생애에 걸쳐 결정적인 영향을 줌.
 - 영유아는 자신의 건강 문제를 인식하고 적절한 행동을 취하는데 능동적이지 못하며, 성인에 비해 면역력이 약하고, 질병에 취약하여 전염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건강 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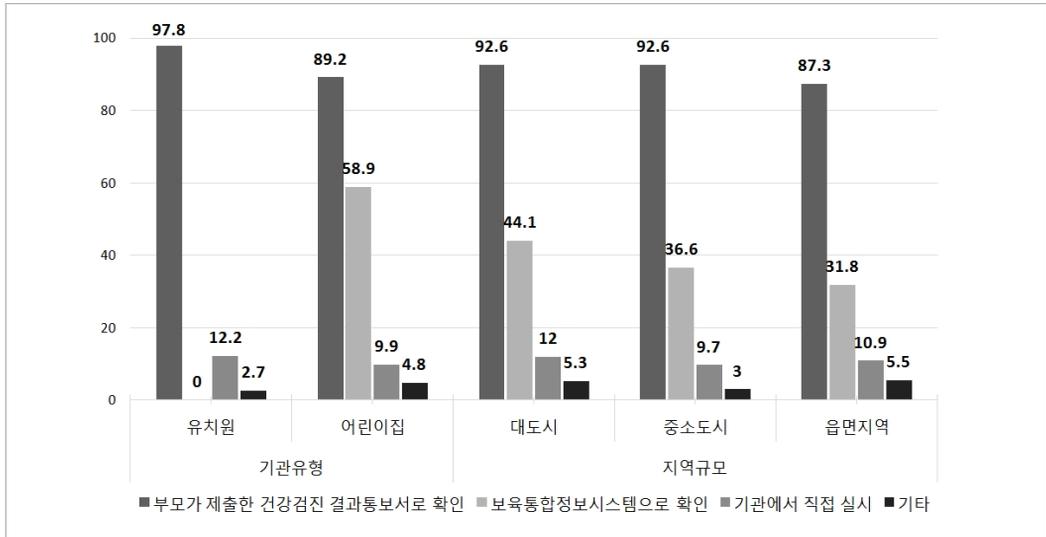
* 본 원고는 「최은영·김아름·이민경(2017). 안전한 영유아 보육·교육 환경 조성 방안(Ⅲ):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건강·위생 관리 실태 및 증진 방안(세부과제 1.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건강위생 관리 실태 및 개선 방안). 육아정책연구소」의 내용을 토대로 구성함.

- 또한 호기심이 많은 반면에 자신의 신체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나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능력이 미숙하여 안전위험 요소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성인의 세심한 지도가 필요함(서현미·전미향·최나영, 2009).
- 무상교육·보육 시행 이후 취학 전 유아교육·보육기관을 이용하는 영유아 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이들이 기관에 머무는 시간도 길어지고 있음.
 - 어린이집 이용 영아 비율을 살펴보면 0세가 33.0%, 1세 78.0%, 2세가 84.0%이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는 3세가 88.7%, 4세가 85.7%, 5세가 94.5%로 나타남(이진화·박진아·박기원, 2015).
 - 한편 기관 이용시간은 어린이집의 경우 평균 7시간 20분, 유치원의 경우 평균 7시간 10분임(김은설·유해미·최은영 외, 2016).
- 유아교육·보육 기관은 영유아의 발달 수준에 맞고 건강에 위협을 주지 않는 환경을 제공하여 신체적·인지적·정서적·사회적 발달을 도모하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영유아가 바람직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건강과 안전에 대한 개념은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한 후 치료하고 대처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던 과거와 달리 질병과 사고 발생 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는 예방적 의미가 보다 강조되고 있음(정미라·배소연·이영미, 2012).
- 영유아의 건강은 교직원의 건강과도 직결되므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영유아와 교직원 건강관리에 대한 실태 분석을 통해 기관에서 영유아가 건강하고 균형 있게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본 글은 유치원 원장 409명, 어린이집의 원장 808명 총 1,217명을 대상으로 건강·위생 관련 현황, 현장의 어려움과 요구 사항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함.

2 영유아 건강관리 현황과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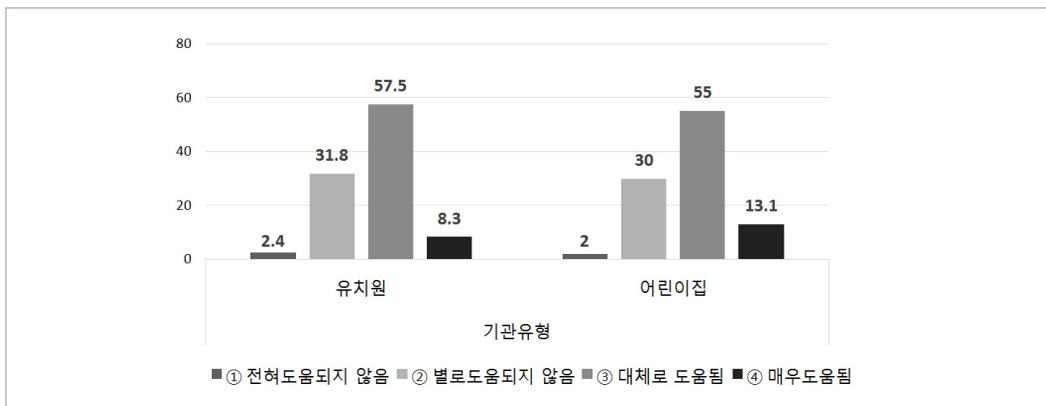
가. 영유아 건강검진

- 유치원 원장은 원아와 교직원에 대해 건강검사를 해야 하는데(학교보건법 제7조), 원아에 대한 건강검사는 신체의 발달상황, 신체의 능력, 건강조사, 정신건강 상태 및 건강검진으로 구분하며, 신체의 발달상황, 신체의 능력, 건강조사 및 정신건강 상태 검사는 원장이, 건강검진은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실시함(「학교건강검사규칙」 제3조).
 - 「학교보건법」과는 별도로 「유아교육법」에서는 유치원 원장에게 교육하고 있는 유아에 대해 1년에 한번 이상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규정함(「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2조의5).
 - 다만, 보호자가 별도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검사결과 통보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건강검진을 생략할 수 있음(「유아교육법」 제1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5 제1항).
- 한편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하고 있는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에 대해 1년에 한 번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영유아의 건강진단 실시여부를 어린이집 생활기록부에 기록하여 관리하는 등 건강관리를 하여야 함.
 - 다만, 보호자가 별도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검사결과 통보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생략할 수 있음(「영유아보육법」 제3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 영유아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어떠한 방법을 취하고 있는지 질문한 결과, ‘부모가 제출한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로 확인’한다는 비율이 92.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어린이집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확인’이 39.1%, ‘기관에서 직접 실시’가 10.7%로 나타남.
 - 유치원(97.8%)과 어린이집(89.2%) 모두 ‘부모가 제출한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로 확인’하는 비율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어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확인’하는 비율이 절반 이상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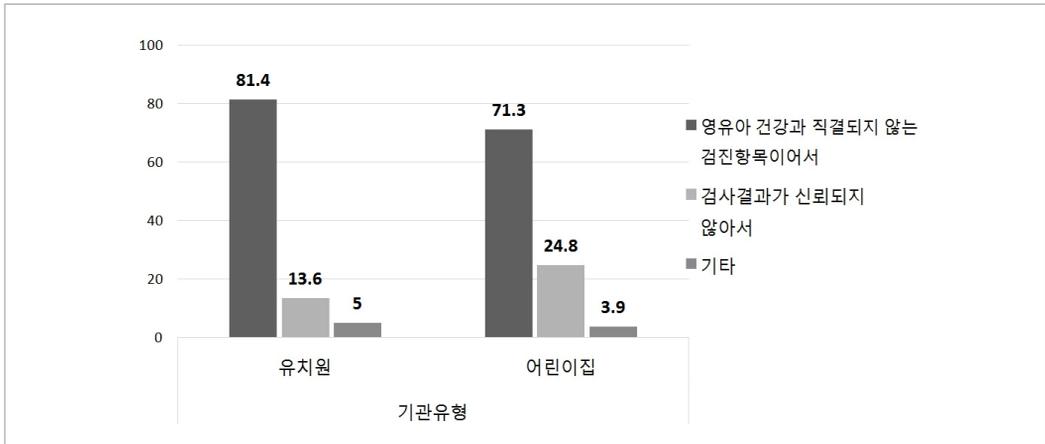
[그림 1] 영유아 건강관리 방식(중복 응답)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가 영유아의 건강상태를 이해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를 질문한 결과,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32.7%)보다 도움이 된다는 응답(67.3%)이 비교적 높게 나타남.
- 1점 ‘전혀 도움되지 않음’에서 4점 ‘매우 도움됨’의 4점 척도로 살펴보았을 때의 도움 정도는 평균 2.77점으로 비교적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2]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의 영유아 건강상태 이해 도움 정도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가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질문한 결과, ‘영유아 건강과 직결되지 않는 검사항목이어서’라는 응답이 74.9%로 나타났으며, ‘검사결과가 신뢰되지 않아서’가 20.9%로 나타남.



[그림 3]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가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

- 영유아 건강검진에 추가해야 할 필요가 있는 항목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알레르기 10.2%, 발달검사 6.7% 순으로 나타남.
- 그 외에도 혈액검사, 아토피, 결핵, 전염성질환, 특이체질검사, 영양상태, 심장질환 등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됨.

[표 1] 추가가 필요한 건강검진 항목(오픈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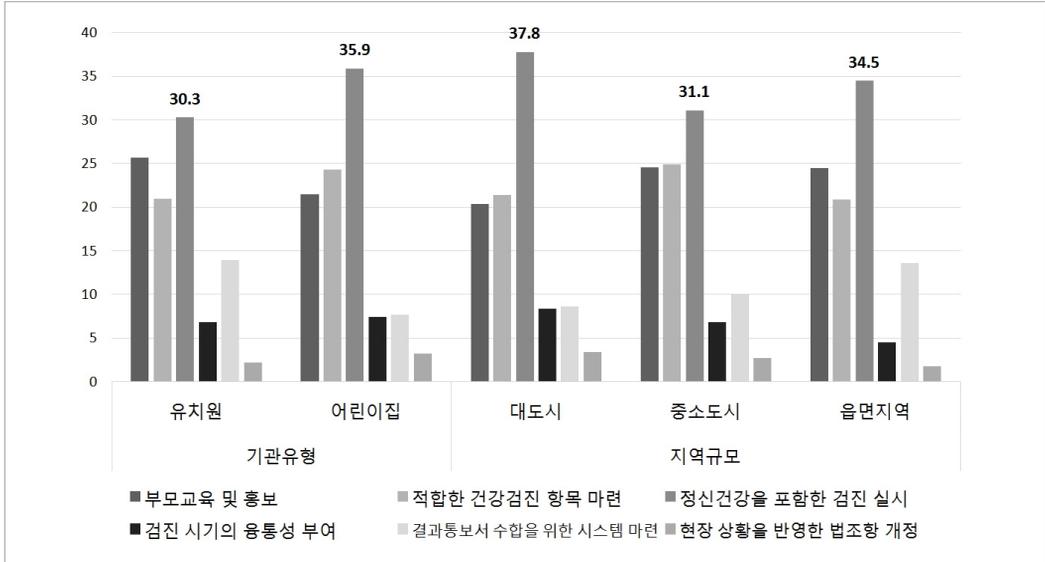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내용	비율	사례수	구분	내용	비율	사례수
1	알레르기	10.2	124	30	심장질환	0.2	3
2	발달검사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6.7	82	31	빈혈검사	0.2	3
3	정신발달검사	3.0	37	32	폐질환	0.2	2
4	인지발달검사	3.0	37	33	척추측만증	0.2	2
5	언어발달검사	3.0	36	34	적성검사	0.2	2
6	시력	2.5	30	35	자폐검사	0.2	2

구분	내용	비율	사례수	구분	내용	비율	사례수
7	혈액검사	2.4	29	36	언어발달	0.2	2
8	ADHD	2.3	28	37	신장기능검사	0.2	2
9	신체발달검사	2.4	29	38	소아우울증	0.2	2
10	구강	2.1	26	39	사시	0.2	2
11	심리검사	1.7	21	40	부모양육방법	0.2	2
12	아토피	1.4	17	41	기질검사	0.2	2
13	소변검사	1.2	14	42	간질	0.2	2
14	사회성검사	1.0	12	43	희귀병여부	0.1	1
15	결핵	1.0	12	44	편식	0.1	1
16	전염성 질환	0.9	11	45	족부	0.1	1
17	예방접종	0.9	11	46	위생상태	0.1	1
18	특이체질검사	0.8	10	47	수두	0.1	1
19	청력	0.7	8	48	소아당뇨	0.1	1
20	장애발달검사	0.7	8	49	비염	0.1	1
21	영양상태	0.7	8	50	변비(장상태)	0.1	1
22	과거병력검사	0.5	6	51	발달장애검사	0.1	1
23	호흡기질환	0.2	3	52	바이러스	0.1	1
24	소아비만	0.4	5	53	기생충대변검사	0.1	1
25	면역력	0.3	4	54	근육	0.1	1
26	간염 보균자 검사	0.3	4	55	고관절	0.1	1
27	행동발달검사	0.2	3	56	경련	0.2	2
28	천식	0.2	3	57	감각	0.1	1
29	애착유형검사	0.2	3	58	없음/잘모름	61.5	748

자료: 최은영·김아름·이민경(2017). 안전한 영유아 보육·교육 환경 조성 방안(Ⅲ):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건강·위생 관리 실태 및 증진 방안(세부과제 1.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건강위생 관리 실태 및 개선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pp. 95-96. <표 Ⅲ-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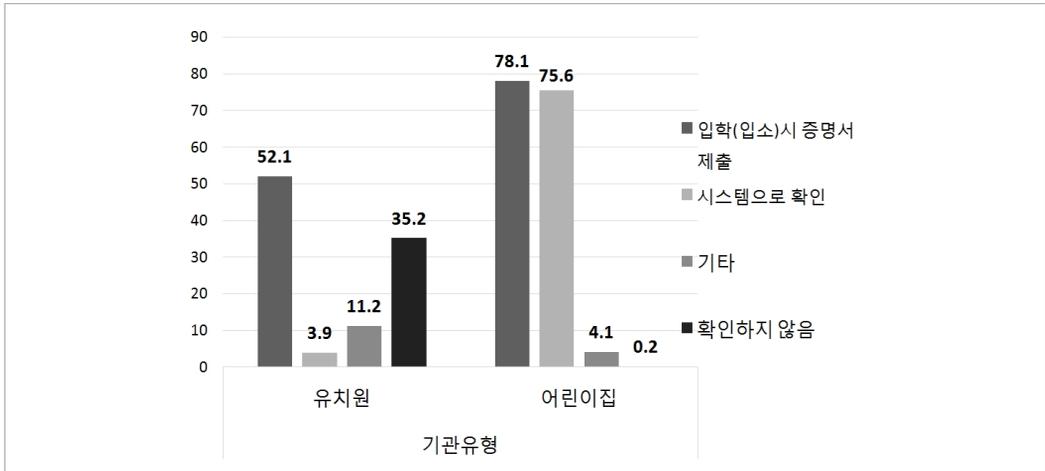
- 영유아 건강검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항목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정신건강을 포함한 검진 실시’가 34.0%로 요구도가 가장 높았음.
 -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동일하게 ‘정신건강을 포함한 검진 실시’가 각각 30.3%, 35.9%로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유치는 ‘높은 수급율을 위한 부모교육 및 홍보’(25.7%)가, 어린이집은 ‘기관 집단생활에 적합한 건강검진 항목 마련’(24.3%)이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4] 영유아 건강검진 개선사항(1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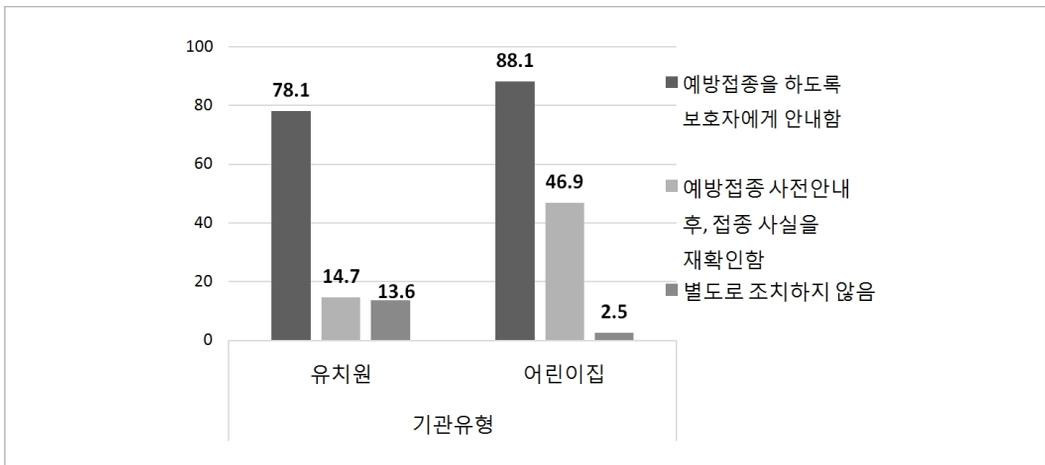
나. 영유아 예방접종

-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의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한 후, 그 시기까지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영유아에 대하여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도록 보호자를 지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예방접종 지원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영유아보육법」 제31조의3 제2항).
- 영유아 예방접종상태를 어떠한 방식으로 확인하는지 질문한 결과, ‘입학(입소)시 예방접종 증명서 제출’이 69.4%, ‘시스템으로 확인’이 51.5%, ‘확인하지 않음’이 12.0%, ‘기타’가 6.5%로 나타남.
 -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입학 시 예방접종 증명서 제출’이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유치원의 경우는 ‘확인하지 않음’의 비율이 35.2%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예방접종에 대한 정보가 있어 ‘시스템으로 확인’하는 비율이 75.6%로 상대적으로 높았음.



[그림 5] 영유아 예방접종상태 확인 방법(중복 응답)

- 기관에서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미접종 영유아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지 질문한 결과, ‘예방접종을 하도록 보호자에게 안내함’이 85.6%, ‘예방접종 사전안내 후, 접종 사실을 재확인함’이 38.9%, ‘별도로 조치하지 않음’이 5.2%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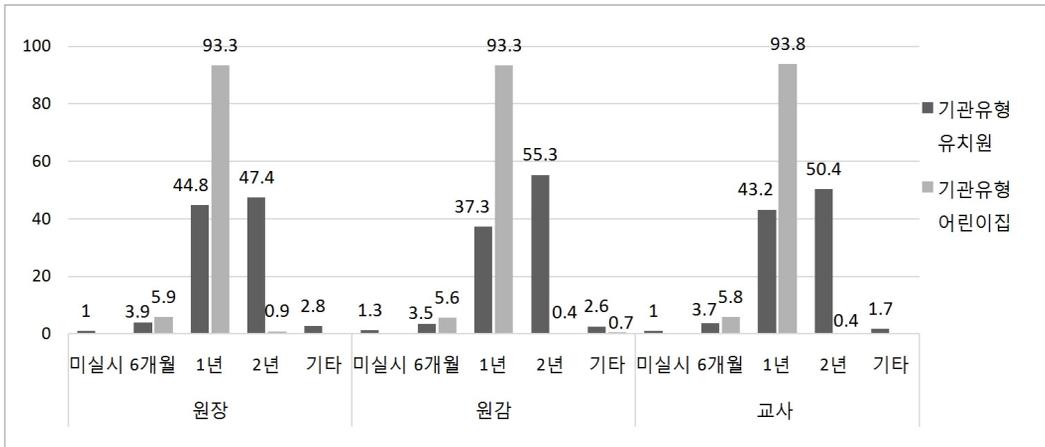


[그림 6] 미접종 영유아 조치 방법(중복 응답)

3 교직원 건강관리 현황과 문제점

가. 교원 건강검진

- 근무하는 교원의 건강검진 실시 주기에 대해 질문한 결과, 원장(77.5%), 원감(63.2%), 교사(76.8%) 모두 1년 주기로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유치원의 경우에는 1년과 2년의 비율이 각각 약 50%대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반면,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1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다는 비율이 약 90%대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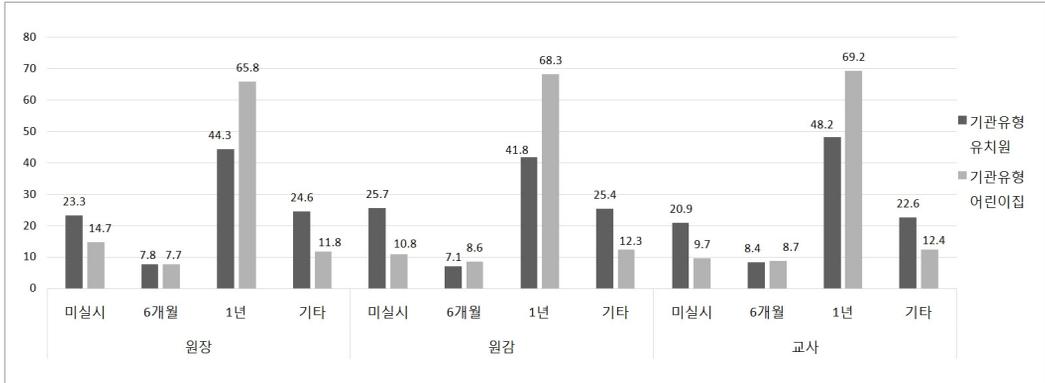


[그림 기] 교원 건강검진 주기(원장, 원감, 교사)

나. 교직원 결핵검사

- 보건복지부는 2016년 2월 「결핵예방법」을 개정하여, 어린이집 원장에게 보육교직원 및 종사자에 대한 결핵검진 등을 의무화함(「결핵예방법」 제11조).
- 결핵검진은 매년 실시하며, 임상적·방사선학적 또는 조직학적 검사, 객담(喀痰)의 결핵균 검사 등을 실시함.
- 잠복결핵검진의 경우 어린이집에 소속된 기간(다른 기관·학교 등으로 그 소속을 변경하여 근무한 기간을 포함) 중 1회 실시하며, 면역학적 검사를 실시함(보건복지부, 2017: 96).

- 교원의 결핵검사 주기를 살펴보면, 원장(58.8%), 원감(54.1%), 교사(62.1%) 모두 1년 주기로 결핵검사를 실시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유치원보다 어린이집에서 1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다는 비율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그림 8] 교원 결핵검사 주기(원장, 원감, 교사)

- 교직원의 결핵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는 ‘신청/검진 예정’이 24.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정교원만 지원대상이고, 교직원은 검진 해당사항이 없어서’가 18.1%, ‘검진에 대해 잘 몰라서’가 15.7%로 나타남.

<표 2> 교직원 결핵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오픈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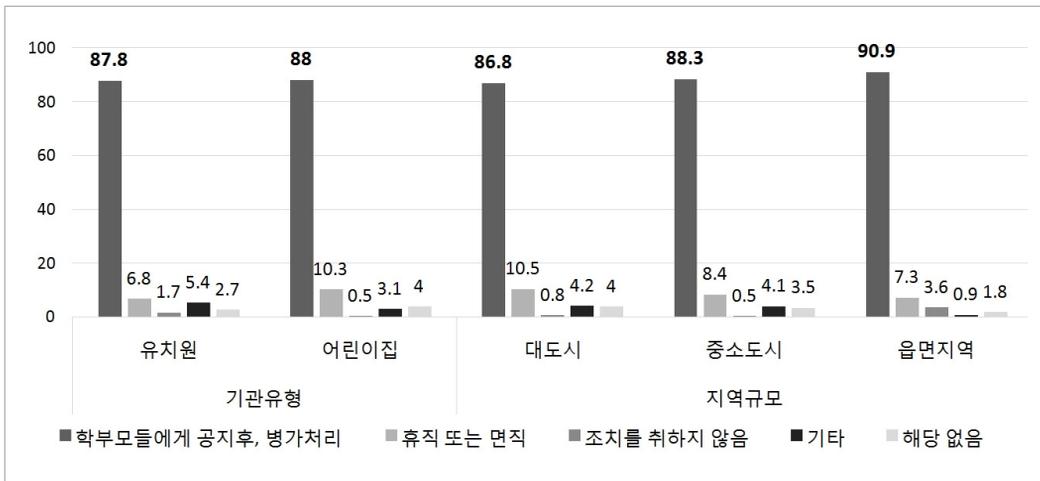
내용	%	사례수
신청/검진 예정	24.2	(68)
정교원만 지원대상이고, 조리사, 직원 검진 해당사항이 없어서	18.1	(51)
검진에 대해 잘 몰라서	15.7	(44)
건강검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9.3	(26)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6.4	(18)
의무검사가 아니어서	6.4	(18)
보육/교육 시간을 빼서 검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어서	5.0	(14)
비용부담의 어려움	4.6	(43)
건강검진 항목에 포함되지 않아서	2.8	(8)
개인적으로 실시해서	2.1	(6)

내용	%	사례수
채용 검사 시 건강검진 같음함	2.1	(6)
보건증 발급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1.4	(4)
검사시간의 제한으로 일정을 맞출 수 없어서	1.4	(4)
검사 받을 수 있는 곳이 마땅히 없어서	0.4	(1)
전 체	100.0	(281)

자료: 최은영·김아름·이민경(2017). 안전한 영유아 보육·교육 환경 조성 방안(Ⅲ):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건강·위생 관리 실태 및 증진 방안(세부과제 1.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건강위생 관리 실태 및 개선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p. 117, <표 Ⅲ-1-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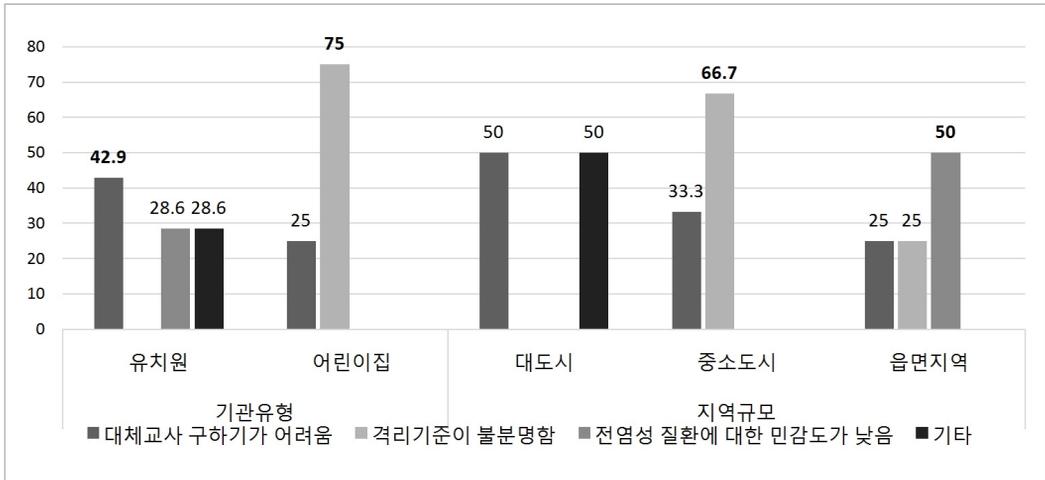
다. 교직원 전염성 질환 감염시 조치

- 교직원이 전염성 질환(독감, 신종플루, 수족구, 결막염 등)에 감염되었거나 의심되는 경우,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지에 대해 질문함.
 - ‘학부모들에게 공지 후, 병가처리’가 87.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휴직 또는 면직’이 9.1%, ‘기타’ 3.9%, ‘조치를 취하지 않음’ 0.9% 순으로 나타남.



[그림 9] 교직원 전염성 질환 감염 의심시 조치 방법(중복 응답)

-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질문한 결과, ‘대체교사 구하기가 어려움’이 36.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격리기준이 불분명함’이 27.3%, ‘전염성 질환에 대한 민감도가 낮음’과 ‘기타’가 각각 18.2%로 나타남.



[그림 10]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주된 이유

4 개선 방안

가. 영유아 건강관리

- 「건강검진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영유아에 대한 출장검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 현행법상 원장에게 부과하는 건강검진 의무를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며, 건강검진 실시 또한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확인을 위한 의무사항으로 규정해야 함.
- 2008년 「건강검진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국가에서 지원하여 실시하는 영유아건강검진이 도입되었고, 영유아의 보호자가 동행하여 교육 및 상담을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실상 기관이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조항은 실효성이 떨어짐.

- 영유아 건강검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알레르기 질환 검사, 정신건강 검사(현행 검사의 보완)를 포함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영유아 건강검진에 포함되어 있는 치과 검진과 같이 검사에 적합한 시기를 설정하여 알레르기 검진(만 2세), 정신건강 검진(만 3세)을 진행하되 검사의 필요성, 재정 확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함.
- 「유아교육법」에서는 예방접종 여부 확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지역 보건소나 병원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관련 정보에 관한 시스템이 연계될 수 있는 체계의 구축이 필요함.
 - 보육사업 안내에서는 질병에 걸린 영유아의 치료와 예방을 위해 지역 보건소 및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협조를 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건강주치의제도).
- 영유아 시기 예방접종의 중요성에 대해 환기하고, 이와 관련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함.
 - 어린이집의 원장은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영유아에 대해서는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도록 보호자를 지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예방접종 지원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영유아보육법」 제31조의3 제2항).
 -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이하 안아키)로 인한 질병 발생 등 부작용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어 이와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녀의 정기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부모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됨(의협신문, 2017. 9. 8).

나. 교직원 건강관리

- 만 3~5세 유아가 이용할 수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직원 건강검진주기에 대한 법적 기준이 상이하므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적정 주기를 설정하고 일원화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에서 조사한 교직원의 건강검진 주기를 살펴보면, 교원(원장, 원감, 교사)은 전반적으로 1년이 가장 많았으나 유치원은 2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직원(조리사/영양사, 기타 직원) 또한 1년이 가장 많았음.

- 「영유아보육법」에서는 어린이집 원장이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에 대해 1년에 한 번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나(「영유아보육법」 제31조 제1항), 「유아교육법」에서는 유아에 대한 건강검진 실시의무만을 정함(「유아교육법」 제 17조 제1항).
- 다만, 「학교보건법」에서 교직원에 대한 건강검사 실시의무를 정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같음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유치원 교직원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2년에 1번 이상 건강검진을 받아야 함(「학교보건법」 제7조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 결핵 이외의 전염성 질환에 감염된 유치원 교직원에 대해서는 격리시키거나 휴직·면직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지침 마련이 필요함.
 -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배식인력은 「식품위생법」 제4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9조에 의한 건강 진단(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함. 이 경우 집단급식소에 해당되는 어린이집 관련 종사자는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하나, 집단급식소가 아닌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실시여부를 권장함(보건복지부, 2017: 96).
 - 본 연구의 조사 결과, 유치원의 결핵검사 실시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결핵검사 미실시 이유로 검사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의무검사가 아니어서라고 응답하여 결핵검사에 대한 홍보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음.
- 영유아의 질병과도 직결되는 교원의 전염성 질환에 대한 관리가 대체인력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대체교사 지원 시 병가에 우선 순위를 부여할 수 있어야 함.
 - 본 연구의 조사 결과, 교원의 전염성 질환 감염시 조치방법으로 공지 후 병가처리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0.9%로 나타남.
 - 싱가포르의 교직원이나 센터에서 음식을 준비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전염병에 걸린 경우에는 의사가 복귀를 허용할 수 있다고 허가할 때까지 그 사람을 업무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함(CHILD CARE CENTRES REGULATIONS 15조 2항).

Ⅰ 참고문헌 Ⅰ

- 김은설·유해미·최은영·최효미·배윤진·양미선·김정민(2016).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가구 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 보건복지부(2017). 보육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 서현미·전미향·최나영(2009). 학령전기 아동 부모의 아동 건강지식 정도, 건강습관 지도이행도 수준 및 건강교육 요구도 조사. 한국보건간호학회지, 23(2), 207-218.
- 이진화·박진아·박기원(2015).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 연구(Ⅲ). 육아정책연구소.
- 정미라·배소연·이영미(2012). (영유아를 위한) 건강 및 영양교육. 경기: 양서원.
- 최은영·김아름·이민경(2017). 안전한 영유아 보육·교육 환경 조성 방안(Ⅲ):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건강·위생 관리 실태 및 증진 방안(세부과제 1.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건강위생 관리 실태 및 개선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CHILD CARE CENTRES REGULATIONS(Singapore Statutes Online, <https://sso.agc.gov.sg/SL/CCCA1988-RG1?DocDate=20121221>)에서 2017년 10월 23일 인출함.

[보도자료]

- 의협신문(2017. 9. 8.). 박인숙 의원 '아동학대 안아키 차단' 입법 추진,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8710>에서 2017년 10월 11일 인출함.

[웹사이트]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이슈페이퍼 2018-16

맞춤형 보육 운영 현황과 개선과제

PART 03

양미선

1. 배경 및 문제점
2. 맞춤형 보육 운영 현황과 요구
3. 맞춤형 보육 개선 과제

참고문헌

맞춤형 보육 운영 현황과 개선과제*

양미선 연구위원

| 요약 |

- 맞춤형 보육은 보육 요구도에 따라 이용시간을 지원하고, 어린이집 이용시간 개념을 명확화 하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됨.
- 맞춤형 보육 제도를 조기 안착하고 내실화하기 위해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현장의 애로 및 요구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 맞춤형 보육 내실화 위해 맞춤형 보육 관련 행정절차 및 서류 간소화하고, 긴급보육바우처 지원을 축소 또는 폐지하며, 맞춤형 보육 컨설팅 지원 사업을 활성화해 나감.
- 아울러, 맞춤형 보육을 담당하는 교사 처우개선을 위해 영아보육 교육 이수 시 근무환경개선비 지원 자격을 부여하고, 영아 혼합반 운영 지원 강화 및 프로그램 개발 보급하며, 영아반 교사 지원 관련 특수보육시책 사업과 영아반 보조교사 지원 및 배치 기준 등을 체계화함.

1 배경 및 문제점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정부는 2016년 7월부터 맞벌이 가정 등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가구가 필요한 만큼 충분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는 맞춤형 보육제도를 시행함.
-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가정 내 돌봄이 가능한 영아에게 적정 시간의 보육서비스를 지원하여 영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둠.
- 보육 요구도에 따라 이용시간을 지원하고, 어린이집 이용시간 개념을 명확화 하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음.

* 본 원고는 「양미선·이윤진·최윤경(2017). 영아반 운영 내실화를 위한 교사 지원 방안. 육아정책연구소.」의 내용을 토대로 구성함.

- 맞춤형 보육제도의 조기 정착과 내실화를 위해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현장의 애로 및 요구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본 글에서는 맞춤형 보육 운영 현황과 애로 및 요구를 파악하여 맞춤형 보육내 실화 및 이를 담당하는 영아반 보육교사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나. 연구내용

-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음.
 - 맞춤형 보육 종일반과 맞춤형 자격, 지원단가, 긴급보육바우처 등의 지원체계를 살펴봄.
 - 영아반 운영 어린이집의 운영 실태와 애로 및 요구를 파악함.
 - 맞춤형보육 운영 내실화와 영아반 담당 보육교사 지원 방안을 제시함.

다. 연구방법

- 본 연구 수행을 위하여 문헌연구, 맞춤형보육 제도 등을 검토함.
- 영아반 및 맞춤형/종일반 운영, 긴급보육바우처 등 관련 통계자료를 분석함.
- 영아반 운영 어린이집 원장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함.

2 맞춤형 보육 운영 현황과 요구

가. 개요

- 정부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반 영아에 대한 보육서비스를 종일반과 맞춤형으로 구분하여 지원하는 맞춤형 보육을 2016년 7월부터 시행함.
 - 맞벌이, 다자녀 등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가구의 영아에게는 필요한 만큼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12시간 종일반(7:30~19:30), 그 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아는 6시간 맞춤형(9:00~15:00) 서비스와 월 15시간의 긴급보육바우처를 제공함(보건복지부, 2017a: 309).

- 단, 지역별·어린이집별 사정에 따라 보호자와 협의하여 1일 6시간 서비스 제공을 준수하면서 오전 9~오후 15시 전·후 1시간 범위 내에서 이용시간 탄력 조정이 가능하며, 이용 아동 현황, 시설운영 상황 등에 따라 필요시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맞춤형 이용시간 조정이 가능함.

□ 종일반 자격은 <표 1>과 같음.

<표 1> 종일반 자격 사유

구분	세부 자격
취업	•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농어업인, 무급가족종사자, 기타 근로자
구직 및 취업준비	• 구직급여 수급자, 직업능력개발 훈련 또는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워크넷을 통한 구직활동 중인 사람
장애	• 부모, 아동, 아동의 형제자매 등 가구원 중 장애가 있는 가구
다자녀/육아부담	• 자녀 3명(연령무관) 이상 가구, 0·1세반 나이('15년 1월 1일 이후 출생)에 해당하는 2자녀 가구
임신 및 산후관리	• 모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산후관리 중(자녀 2명 가구)인 모가 있는 가구
한부모/조손가족	• 부모가 이혼 또는 사망한 편부/편모 가구 또는 부모의 이혼 또는 사망 등으로 조부모와 손자녀로 구성된 가구
입원간병	• 아동의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가 장기입원하거나 중증질환*등이 있어 간병이 필요한 경우
학업	• 부모가 학교(사이버대, 방통대 제외)에 재학 중(휴학 중인 경우에는 불인정)임을 증명하는 재학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장기부재	• 부 또는 모가 군입대, 교정시설 입소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저소득층/다문화가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다문화가구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2017. 6. 5 인출).

- 맞춤형은 2017년 기준 만0세가 344천원, 만1세 302천원, 만2세 250천원이고, 종일반은 각각 430천원, 378천원, 313천원임.

<표 2> 영아 보육료 지원단가

단위: 천원

구분	만0세		만1세		만2세	
	종일반	맞춤반	종일반	맞춤반	종일반	맞춤반
지원단가	430	344	378	302	313	250

자료: 보건복지부(2017a). 보육사업안내 p.303.

- 어린이집의 맞춤형 이용을 이용하는 아이와 부모가 질병, 학교방문 등 긴급한 보육수요 발생 시 맞춤형 보육시간 이외에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긴급보육바우처를 지원함.
 - 매월 15시간(월 6만원)을 지원하며, 매월 미사용분은 익년도 2월까지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음. 익년도 2월 이후 미사용 긴급보육바우처 전액은 소멸되고, 익년도 3월부터 재생성됨.
 - 타 어린이집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도 매월 15시간씩 누적 생성됨. 단, 맞춤형 보육료 자격이 변경되거나 소멸되는 경우에는 긴급보육바우처도 소멸됨(보건복지부, 2017a: 331).

나. 맞춤형 보육 운영 현황

1) 어린이집 및 영아반 수

- 영아반을 1개 반 이상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2016년 말 기준 총 40,233개소로 전체 어린이집 중 97.9%를 차지함.
 - 극히 소수의 어린이집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어린이집들이 영아반을 운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표 3〉 영아반 운영 어린이집 수

단위: 개소(%)

구분	영아반 운영 어린이집 수								전체 어린이집	비율
	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민간	가정	직장	협동		
2016 (비율)	40,233 (100.0)	2,763 (6.9)	1,319 (3.3)	745 (1.9)	13,946 (34.7)	20,381 (50.7)	927 (2.3)	152 (0.4)	41,084	(97.9)
2015	41,677	2,542	1,330	771	14,267	21,853	765	149	42,517	(98.0)
2014	42,814	2,405	1,340	775	14,416	23,062	677	139	43,742	(97.9)
2013	42,786	2,257	1,361	785	14,283	23,376	605	119	43,770	(97.8)

주: 영아 혼합반 및 만0~2세반을 1개반 이상 배치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의미함.
 자료: 사회보장정보원(2013, 2014, 2015, 2016). 어린이집 일람현황 내부자료(각 년도 12월 말 기준).

- 어린이집 유형별로 가정 50.7%, 민간 34.7%, 국공립 6.9% 순으로 민간부문의 어린이집에서 대부분 영아반을 운영하고 있음.

- 최근 어린이집 중 영아보육 중심으로 운영하는 가정어린이집이 이용 아동 수 감소에 따른 재정 운영 상의 어려움으로 어린이집을 폐쇄하면서 개소수가 크게 줄고 있음. 그러나 영아반 운영 어린이집은 전체 어린이집의 98% 내외를 유지하고 있음.
- 영아반이 있는 어린이집의 반 편성 비율과 1개소당 영아반 수를 보면 다음과 같음.
 - 전체 연령반 중 영아반이 85.8%를 차지하고, 나머지 14.2%는 유아반임.
 - 어린이집 유형별로는 국공립과 사회복지법인인 각각 65% 정도가 영아반이고, 민간은 이보다 많은 74.2%, 가정은 99.4%로 어린이집 유형 중 가정어린이집의 영아반 비율이 가장 높음. 직장도 70.1%로 국공립보다 높은 편임.

〈표 4〉 어린이집 유형별 영아반 비율 및 1개소당 영아반 수

단위: %, 개(개소)

구분	반 편성		1개소 당 영아반 수	(수)	구분	반 편성		1개소 당 영아반 수	(수)
	영아	유아				영아	유아		
전체	85.8	14.2	4.4	(40,233)					
어린이집 유형					현원 규모				
국공립	66.3	33.7	4.4	(2,763)	20인 이하	98.3	1.7	3.8	(22,212)
사회복지법인	65.6	34.4	5.3	(1,319)	21~49인	80.0	20.0	4.6	(9,563)
법인단체등	61.7	38.3	3.9	(745)	50~79인	63.5	36.5	4.9	(4,431)
민간	74.2	25.8	4.9	(13,946)	80~99인	57.6	42.4	5.6	(2,080)
가정	99.4	0.6	3.9	(20,381)	100~125인	54.0	46.0	6.3	(851)
직장	70.1	29.9	6.0	(927)	126인 이상	49.3	50.7	7.7	(1,096)
협동	56.1	43.9	2.4	(152)					

자료: 사회보장정보원(2016). 어린이집 일람현황 내부자료(2016년 12월 말 기준).

- 어린이집 1개소당 평균 4.4개 반의 영아반을 운영하고 있고, 직장 평균 6.0개, 사회복지법인 5.3개, 민간 4.9개, 국공립 4.4개 반 순임.
- 영아반은 2016년 말 기준 총 175,586개 반이 운영되었고, 이 중 2세반이 51,046개로 가장 많고, 1세반 48,042개, 0세 28,588개, 0,1세 혼합반 26,913개, 1,2세 혼합반 20,337개, 2,3세혼합반이 660개 순임.

〈표 5〉 제 특성별 영아반 비율

단위: %(개소)

구분	0세반	1세반	2세반	0,1세혼합반	1,2세혼합반	2,3세혼합반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	5.0	9.5	10.7	1.2	2.1	0.5
사회복지법인	2.0	4.7	6.0	2.1	2.5	0.9
법인단체등	0.7	1.7	2.5	1.0	1.5	0.5
민간	27.2	40.6	51.2	28.6	35.2	44.7
가정	62.5	38.4	25.1	66.3	57.7	52.6
직장	2.5	4.8	4.2	0.7	0.8	-
협동	0.1	0.2	0.3	0.1	0.3	0.9
어린이집 규모						
20인 이하	63.5	39.0	25.6	66.8	58.5	54.1
21~49인	20.5	24.8	24.7	19.8	23.1	40.8
50~79인	6.6	12.8	15.6	5.5	7.5	3.2
80~99인	4.8	10.3	13.7	4.3	5.7	1.2
100~125인	1.7	4.1	5.8	1.5	2.3	0.3
126인 이상	2.9	9.0	14.5	2.1	2.9	0.5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28,588)	(48,042)	(51,046)	(26,913)	(20,337)	(660)

자료: 사회보장정보원(2016). 어린이집 일람현황 내부자료(2016년 12월 말 기준).

- 연령반별로 보면, 0세반은 총 28,588개 반이고, 가정이 62.5%를 다수를 차지하고 민간 27.2%, 국공립 5.0% 정도임.
 - 1세반은 민간과 가정이 각각 40.6%, 38.4%로 비등하고, 국공립 9.5%, 사회복지법인과 직장이 각각 4.7~4.8% 정도로 민간은 0세반에 비해 1세반이 많고, 가정은 반대의 경향성을 보임.
 - 2세반은 민간 51.2%, 국공립 10.7%로 상승하고 가정은 25.1%까지 줄어듦.
 - 연령혼합반도 0,1세 혼합반은 가정이 66.3%이고 민간이 28.6% 정도이나 연령이 높아지면 민간 비중은 늘어나고, 가정은 반대로 줄어듦.
- 어린이집 규모별로 보면, 0세반은 20인 이하가 63.5%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21~49인이 20.5%임. 50인 이상 어린이집은 5% 내외 정도로 소수임.

2) 이용 영아 수

- 어린이집 이용 0~2세 영아 수는 2016년 말 기준 845,984명으로 0~5세 전체 어린이집 이용 아동 중 58.3%에 해당함.
- 연령별로는 만2세가 386,726명으로 26.6%, 만1세 318,245명 21.9%, 만0세 141,013명 9.7% 순으로 만2세가 어린이집 이용 영아의 절반을 차지함.

〈표 6〉 어린이집 이용 영아 수

단위: 명, %

구분	현원 수				전체 이용 아동수 대비 비율				0~5세 전체
	0세	1세	2세	전체	0세	1세	2세	전체	
2016	141,013	318,245	386,726	845,984	9.7	21.9	26.6	58.3	1,451,215
2015	137,117	308,227	419,252	864,596	9.4	21.2	28.9	59.5	1,452,813
2014	138,563	342,056	409,954	890,573	9.3	22.9	27.4	59.5	1,496,671
2013	148,273	325,921	400,781	874,975	10.0	21.9	27.0	58.8	1,486,980
2012	177,757	321,716	372,811	872,284	12.0	21.6	25.1	58.6	1,487,361
2011	146,666	249,787	342,879	739,332	10.9	18.5	25.4	54.8	1,348,729
2010	125,133	229,486	331,637	686,256	9.8	17.9	25.9	53.6	1,279,910

자료: 보건복지부(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보육통계.

3) 맞춤형 보육

- 2016년 말 기준,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0~2세 영아는 총 845,984명으로 연령별로 만0세는 16.7%, 만1세는 37.6%, 만2세는 45.7%를 차지함.
- 이 중 종일반은 총 653,088명으로 77.2%, 맞춤반은 192,896명 22.8%를 차지함.

〈표 7〉 맞춤반/종일반 이용 아동 수

단위: 명(%)

구분	현원				맞춤반/종일반 아동 수	
	만0세	만1세	만2세	전체	종일반	맞춤반
2016년	141,013 (16.7)	318,245 (37.6)	386,726 (45.7)	845,984 (100.0)	653,088 (77.2)	192,896 (22.8)
2017년 3월 말	61,290 (8.5)	270,830 (37.7)	385,432 (53.7)	717,552 (100.0)	502,280 (70.0)	215,272 (30.0)

자료: 사회보장정보원(2017). 어린이집 일람현황 내부자료(2017년 3월 말 기준).

- 어린이집 유형별로 종일반 아동 비율을 보면, 직장 84.1%, 법인단체 81.9%, 가정 78.6%, 민간 73.7% 순임.

〈표 8〉 어린이집 유형별 종일반 이용 아동 수

단위: 명(%)

구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	민간	가정	직장	협동	전체
현원 전체	67,897	39,690	16,164	370,943	325,184	24,393	1,713	845,984
만0세	4,866	2,958	1,199	41,054	88,626	2,151	159	141,013
만1세	24,490	13,998	5,528	131,911	131,783	9,961	574	318,245
만2세	38,541	22,734	9,437	197,978	104,775	12,281	980	386,726
종일반 (비율)	58,076 (85.5)	30,926 (77.9)	13,242 (81.9)	273,491 (73.7)	255,519 (78.6)	20,505 (84.1)	1,329 (77.6)	653,088 (77.2)

자료: 사회보장정보원(2016). 어린이집 일람현황 내부자료(2016년 12월 말 기준).

- 영아반별 종일반 이용 아동 비율은 만2세와 만0세 반이 각각 75% 정도이고, 만1세 반이 71.9%임.
 - 혼합반도 만0,1세와 만1,2세반이 각각 70% 내외로 전체 평균과 비슷한 수준임.
- 어린이집 현원 규모별로는 21~50인과 51~100인이 각각 75% 대로 높고, 101인 이상이 69.2%로 낮음.
 - 만1세반은 21~50인의 종일반 비율이 74.2%로 높고, 101인 이상은 63.7%로 유의미하게 낮으며, 만2세반은 51~100인이 77.9%로 가장 높고, 20인 이하가 70.5%로 낮음.

〈표 9〉 연령반별 종일반 아동비율

단위: %(개소)

구분	만0세	만1세	만2세	만01세 혼합	만12세 혼합	만23세 혼합	전체
전체	74.6	71.9	74.6	73.3	70.7	84.4	73.6
어린이집유형							
국공립	77.5	77.0	81.2	77.4	75.5	-	78.8
사회복지법인	81.5	70.0	75.9	76.0	61.5	100.0	72.7
민간	72.8	70.5	73.0	74.2	74.3	87.5	72.4
가정	72.1	71.6	70.3	71.4	71.4	50.0	72.0
F	1.4	2.0	5.1**	0.1	0.9	-	3.9**
현원규모							
20인 이하	72.5	71.8	70.5	71.4	72.1	50.0	72.2
21~50인	74.4	74.2	75.2	74.0	79.4	93.8	75.0
51~100인	77.8	73.5	77.9	78.2	59.7	100.0	75.6
101인 이상	79.6	63.7	72.9	71.3	66.2	-	69.2
F	0.7	3.4*	3.1*	0.2	2.2	10.3	2.7*
(수)	(251)	(467)	(465)	(104)	(104)	(4)	(505)

주: 무응답으로 전체 응답자 수보다 적음.

* $p < .05$, ** $p < .01$

- 2016년 7월부터 12월까지 맞춤형 아동 중 긴급보육바우처를 사용한 아동의 비율은 맞춤형 아동 중 월평균 85% 내외가 긴급보육바우처를 사용함.

〈표 10〉 월별 긴급보육바우처 사용 현황

단위: %, 시간

구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바우처 이용 아동 비율	84.1	84.4	83.4	84.4	85.1	84.7
아동 1인당 월평균 이용시간	12.1	13.1	13.4	13.7	14.1	13.7

자료: 보건복지부(2017b). 긴급보육바우처 현황 내부자료(2016년 7~12월말 기준).

- 맞춤형 이용 아동의 긴급보육바우처 사용 사유는 2016년 말 기준으로 가정활동이 65.6%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자기계발 12.4%, 자녀돌봄 10.3%, 구직활동 6.4% 순이며 나머지는 3% 미만 수준임.

- 긴급보육바우처 이용 사유별 이용시간은 질병치료가 평균 1.33시간, 친목도모 평균 1.30시간, 구직활동 평균 1.28시간 순임. 나머지 이용 사유도 평균 1시간 정도로 이용시간이 큰 차이가 없음.

〈표 11〉 긴급보육바우처 사용 사유

단위: 건, 시간(%)

구분	가정 활동	질병 치료	자녀 돌봄	구직 활동	자기 개발	친목 도모	기타	예외 사용	총계
사례수	1,373,601 (65.6)	30,195 (1.4)	216,512 (10.3)	134,931 (6.4)	260,180 (12.4)	16,614 (0.8)	61,829 (3.0)	4 (0.0)	2,093,866 (100.0)
이용시간	1.05	1.33	1.08	1.28	1.15	1.30	1.15	4.88	1.09

자료: 보건복지부(2017b). 긴급보육바우처 현황 내부자료(2016년 12월 말 기준).

- 맞춤형이 종일반보다 이른 시간에 하원함에 따라 어린이집 일과 시간을 조정하였는지를 살펴본 결과는 〈표 12〉에 제시함.
- 어린이집 일과를 맞춤형보육 시행 이전과 동일하게 운영한다는 어린이집이 54.3%로 절반 정도를 차지함.

〈표 12〉 맞춤형 하원시간으로 인한 일과 조정 여부

단위: %(개소)

구분	오전 간식시간	점심시간	낮잠시간	오후 간식시간	특별활동	차량 운행시간	기타	없음	(수)
전체	7.1	5.2	13.8	32.8	8.8	14.2	0.6	54.3	(479)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	6.4	4.3	6.4	28.7	12.8	7.4	1.1	61.7	(94)
사회복지법인	4.3	2.1	7.4	18.1	4.3	22.3	-	62.8	(94)
민간	4.6	6.6	16.6	31.1	8.6	18.5	0.7	53.6	(151)
가정	12.1	6.4	20.0	47.1	9.3	8.6	0.7	44.3	(140)
지역규모									
대도시	7.7	6.7	15.3	34.9	7.7	15.3	1.4	51.2	(209)
중소도시	8.2	5.7	17.0	38.4	11.9	10.7	-	52.8	(159)
읍면지역	4.5	1.8	6.3	20.7	6.3	17.1	-	62.2	(111)

주: 중복응답 결과임.

- 이는 맞춤형 아동이 긴급보육바우처(월 15시간)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과 운영시간 조정이 필요 없기 때문임.
- 일과 운영시간을 조정한 어린이집 중 32.8%는 오후 간식시간을, 14.2%는 차량 운행시간을, 13.8%는 낮잠시간을, 8.8%는 특별활동, 7.1%는 오전 간식시간을 일과 조정함.
- 종일반 아동이 많은 국공립과 사회복지법인은 일과 시간을 조정하지 않았다는 비율이 60%대로 높음. 가정은 오전과 오후 간식시간, 낮잠시간 조정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사회복지법인과 민간은 차량운행시간 조정이 각각 22.3%, 18.5%로 높음.
- 영아반 수별로는 앞서 살펴본 정원규모별 응답비율과 유사한 경향을 보임. 특히 3개 반 이하 어린이집은 특별활동시간을 조정하였다는 비율이 11.1%로 높음.
- 일과 운영시간을 조정한 경우, 오전 간식시간은 30분 이내로 늦춰졌다는 비율이 67.6%로 높은 반면, 점심시간과 낮잠시간, 오후 간식시간은 30분 이내로 앞당겨졌다는 비율이 70%를 상회함.
- 특별활동은 30분 초과와 30분 이내로 앞당겨졌다는 비율이 각각 42.9%로 비등하고, 차량운행시간도 30분 이내로 앞당겨졌다는 비율이 다빈도이나 30분 내외로 미뤄졌다는 비율도 30%가 넘음.

〈표 13〉 일과 운영시간 조정 개요

단위: %(개소)

구분	30분 초과로 앞당겨짐	30분 이내로 앞당겨짐	30분 이내로 늦춰짐	30분 초과로 늦춰짐	계(수)
오전 간식시간	5.9	23.5	67.6	2.9	100.0(34)
점심시간	-	76.0	20.0	4.0	100.0(25)
낮잠시간	9.1	77.3	12.1	1.5	100.0(66)
오후 간식시간	17.2	73.2	7.6	1.9	100.0(157)
특별활동	42.9	42.9	14.3	-	100.0(42)
차량운행시간	27.9	39.7	19.1	13.2	100.0(68)
기타	33.3	33.3	33.3	-	100.0(3)

- 긴급보육바우처를 사용한 맞춤형 아동 중 가장 늦게 집으로 돌아가는 아동의 하원시각을 조사한 결과, 오후 16시 30분에서 17시 사이가 30.9%로 많고, 오후 16시에서 16시 30분과 오후 16시 이전이 각각 21.9%, 21.2% 순임.
- 맞춤형 아동 중 80% 이상이 긴급보육바우처를 사용하고, 종일반 다수가 하원하는 오후 16시 30분 이후에 하원한다고 할 때 제도 시행으로 교사의 업무가 크게 줄지 않았을 것으로 사료됨.

〈표 14〉 어린이집 유형 및 정원규모별 맞춤형 아동 하원시각

단위: %(개소)

구간	어린이집 유형				정원 규모				전체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민간	가정	20명 이하	21~50명 미만	50~100명 미만	100명 이상	
16:00 이전	27.6	15.7	19.6	22.4	24.5	25.7	16.4	16.9	21.2
16:01~16:30	26.4	16.9	23.1	20.9	22.4	21.9	26.0	10.2	21.9
16:31~17:00	29.9	30.3	31.5	31.3	29.4	32.4	32.2	28.8	30.9
17:01~17:30	5.7	11.2	9.1	13.4	12.6	6.7	7.5	16.9	10.2
17:31 이후	10.3	25.8	16.8	11.9	11.2	13.3	17.8	27.1	15.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87)	(89)	(143)	(134)	(143)	(105)	(146)	(59)	(453)

〈표 15〉 어린이집 유형 및 정원규모별 종일반 아동 하원시각

단위: %(개소)

구간	어린이집 유형				정원 규모				전체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민간	가정	20명 이하	21~50명 미만	50~100명 미만	100명 이상	
18:00 이전	8.0	11.8	13.2	21.5	20.8	15.7	11.0	4.8	14.3
18:01~18:30	20.0	19.6	23.9	19.4	18.8	27.0	20.8	15.9	21.0
18:31~19:00	20.0	29.4	27.7	28.5	28.6	22.6	28.9	23.8	26.7
19:01~19:30	37.0	32.4	22.6	18.8	20.1	20.0	28.3	47.6	26.3
19:31 이후	15.0	6.9	12.6	11.8	11.7	14.8	11.0	7.9	11.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00)	(102)	(159)	(144)	(154)	(115)	(173)	(63)	(505)

- 종일반 아동 중 가장 늦게 집으로 돌아가는 아동의 하원시각을 조사한 결과는 <표 15>에 제시함.
 - 오후 18시 30분에서 19시, 오후 19시와 19시 30분 사이가 각각 26% 정도로 많고, 오후 18시에서 18시 30분도 21.0%로 높음. 오후 18시 이전에 하원한다는 비율도 14.3%임.
- 맞춤형 아동이 하원한 후 종일반 운영형태를 보면, 개별 운영한다는 비율이 51.8%로 많고, 연령 혼합반과 통합반이 각각 28%, 27.6%임.
 - 가정은 연령 혼합반이 42.1%, 국공립은 반별 개별 운영이 70.2%로 타 유형보다 높음.
 - 영아반 수별로도 연령반별 개별 운영이 다수이지만, 4개반 이상은 연령별 통합반 비율이 높음.

<표 16> 종일반 운영 형태

단위: %(개소)

구분	연령별 통합반	연령 혼합반	반별 개별 운영	기타	(수)
전체	27.6	28.0	51.8	1.1	(475)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	20.2	18.1	70.2	1.1	(94)
사회복지법인	34.4	18.3	53.8	1.1	(93)
민간	25.7	27.0	55.4	2.0	(148)
가정	30.0	42.1	34.3	-	(140)
영아반 수					
3반 이하	25.0	26.9	50.9	0.9	(108)
4반	28.4	31.0	46.5	-	(155)
5반 이상	28.3	26.4	56.1	1.9	(212)

- 맞춤형 하원 후 종일반을 개별 운영하는 경우 담임교사가 반을 담당하지만, 연령별 통합반 또는 연령 혼합반으로 운영하는 경우 누가 담당하는지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연령별 통합반은 담임교사가 교대로 담당하는 경우가 50.4%이고, 통합반에 편성된 영아의 담임교사 모두가 담당하는 어린이집은 45.0%임. 이 외에 보조교사나 기타 인력이 담당한다는 비율도 5% 정도됨.
 - 영아반 수별로는 일정한 경향성을 나타내지 않음.

〈표 17〉 연령별 통합반 및 연령 혼합반 교사 배치

단위: %(개소)

구분	연령별 통합반					연령 혼합반					
	담임 교사 전체 담당	담임 교사 교대 담당	보조 교사	기타	계(수)	담임 교사 전체 담당	담임 교사 교대 담당	비담 임 교사	보조 교사	기타	계(수)
전체	45.0	50.4	1.5	3.1	100.0(131)	29.3	63.9	1.5	2.3	3.0	100.0(133)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	36.8	47.4	5.3	10.5	100.0(19)	11.8	64.7	5.9	5.9	11.8	100.0(17)
사회복지법인	40.6	53.1	-	6.3	100.0(32)	11.8	76.5	5.9	-	5.9	100.0(17)
민간	36.8	63.2	-	-	100.0(38)	20.0	80.0	-	-	-	100.0(40)
가정	59.5	38.1	2.4	-	100.0(42)	45.8	49.2	-	3.4	1.7	100.0(59)
영아반 수											
3반 이하	37.0	55.6	3.7	3.7	100.0(27)	31.0	69.0	-	-	-	100.0(29)
4반	54.5	43.2	-	2.3	100.0(44)	31.3	64.6	-	2.1	2.1	100.0(48)
5반 이상	41.7	53.3	1.7	3.3	100.0(60)	26.8	60.7	3.6	3.6	5.4	100.0(56)

- 연령 혼합반의 경우에는 담임교사가 교대로 담당한다는 비율이 63.9%로 다빈도이고, 담임교사 모두가 담당한다는 비율은 29.3% 정도임.
- 가정은 담임교사 전체 담당과 교대 담당이 각각 45.8%, 49.2%로 거의 비슷한 수준이나 나머지 유형은 담임교사가 교대로 담당한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영아반 수별로도 교대로 담당한다는 비율이 높고, 5개 반 이상은 기타 인력이 담당한다는 비율이 5.4%로 높음.

다. 맞춤형 보육 시행 효과 및 애로

- 맞춤형 보육 시행 이후 어린이집 84.2%가 현원 수 변화가 없다고 답하였고, 10.1%는 20% 미만, 5.3%는 20% 이상 감소하였다고 답하였으며, 증가했다는 의견은 0.4%로 극소수임.
- 국공립과 가정 어린이집에서 감소했다는 비율이 가장 많고, 20% 미만과 20% 이상을 합산하면 각각 20%를 상회함.

- 영아반 수에 따라 일정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지만, 3개 반 이하 어린이집에서 20% 이상 감소했다는 비율이 10%가 넘음. 현원 수가 감소하였지만 20% 미만 수준으로 감소했다는 비율은 영아반 수에 비례하여 증가함.

〈표 18〉 맞춤형보육 시행 이후 현원 변화

단위: %(개소)

구분	20%미만 감소	20%이상 감소	변동 없음	20%미만 증가	계(수)
전체	10.1	5.3	84.2	0.4	100.0(505)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	4.0	-	96.0	-	100.0(100)
사회복지법인	18.6	4.9	75.5	1.0	100.0(102)
민간	8.2	4.4	86.8	0.6	100.0(159)
가정	10.4	10.4	79.2	-	100.0(144)
영아반 수					
3반 이하	6.7	10.8	81.7	0.8	100.0(120)
4반	10.6	4.4	85.0	-	100.0(160)
5반 이상	11.6	3.1	84.9	0.4	100.0(225)

〈표 19〉 맞춤형보육 시행 이후 어린이집 수입 변화

단위: %(명)

구분	변동 없음	20% 미만 감소	20%이상 감소	계(수)
전체	26.7	53.5	19.8	100.0(505)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	43.0	50.0	7.0	100.0(100)
사회복지법인	26.5	56.9	16.7	100.0(102)
민간	25.2	52.2	22.6	100.0(159)
가정	17.4	54.9	27.8	100.0(144)
영아반 수				
3반 이하	33.3	46.7	20.0	100.0(120)
4반	23.8	55.6	20.6	100.0(160)
5반 이상	25.3	55.6	19.1	100.0(225)

- 맞춤형 보육을 시행한 후에도 보육료 수입에 변화가 없다는 어린이집은 26.7% 정도 이고, 53.5%는 수입이 20% 미만, 19.8%는 20% 이상 줄었다고 답함.

- 변동이 없다는 비율은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민간, 가정 순으로 높지만, 20% 이상 감소는 반대임.
- 영아반 수에 따라서는 3개 반 이하는 변동이 없다는 비율이 4개 반 이상보다 많음.
- 맞춤형 보육 시행 이후 행정업무량이 제도 시행 이전보다 20% 미만 정도 증가했다는 비율이 55.4%, 나머지 31.7%는 20% 이상 증가했다고 답하여서 87.1%가 증가했다고 답함.
- 어린이집 유형별로도 20% 미만 정도가 증가했다는 비율이 다수를 차지하지만, 가정은 20% 이상과 20% 미만이 각각 41.7%, 43.8%로 비슷함. 특히, 국공립어린이집은 맞춤형 아동이 적어서 변동이 없다는 비율이 18.0%로 다른 유형보다 높음.
- 영아반이 5개반 이상 어린이집에서 20% 이상 증가했다는 비율이 높음.

〈표 20〉 맞춤형 보육 시행 이후 어린이집 행정 업무량 변화

단위: %(명)

구분	20% 이상 증가	20%미만 증가	변동 없음	20% 이상 감소	계(수)
전체	31.7	55.4	12.7	0.2	100.0(505)
어린이집유형					
국공립	20.0	62.0	18.0	-	100.0(100)
사회복지법인	33.3	57.8	8.8	-	100.0(102)
민간	28.9	60.4	10.7	-	100.0(159)
가정	41.7	43.8	13.9	0.7	100.0(144)
영아반 수					
3반 이하	32.5	51.7	15.0	0.8	100.0(120)
4반	28.8	59.4	11.9	-	100.0(160)
5반 이상	33.3	54.7	12.0	-	100.0(225)

- 맞춤형 보육 시행으로 인한 어려움을 1,2순위로 살펴본 결과, 1순위를 보면, 보육료 수입 감소에 따른 재정운영이 65.7%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행정업무 증가가 27.9%, 일과운영이 3.8%, 나머지는 1% 내외로 소수임.
- 2순위는 행정업무 증가가 52.9%로 다빈도이고, 보육료 수입 감소에 따른 재정 운영과 일과운영이 각각 18.4%, 원아 모집 5.0%, 교사 채용 3.0% 순임.

- 1, 2순위를 합산하면, 보육료 수입 감소에 따른 재정운영이 84.1%, 행정업무 증가가 80.8%이고, 일과 운영이 22.2% 정도임.

〈표 21〉 맞춤형보육 시행 이후 어려운 점: 1+2순위

단위: %(명)

구분	원아 모집	보육료 수입 감소	행정 업무 증가	일과 운영	교사 채용	교사 이직	기타	계(수)
1순위	1.6	65.7	27.9	3.8	0.6	-	0.4	100.0(505)
2순위	5.0	18.4	52.9	18.4	3.0	0.6	1.8	100.0(505)
1+2순위	6.6	84.1	80.8	22.2	3.6	0.6	2.2	(505)

라. 맞춤형 보육 지원

-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운영하는 맞춤형 보육 컨설팅 지원 여부를 살펴본 결과, 어린이집 중 13.3%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실시하는 영아보육 컨설팅을 지원받음.

〈표 22〉 영아보육 컨설팅 지원 여부 및 계획

단위: %(명)

구분	지원	미지원 시		계(수)
		2017년 내 계획 있음	2017년 내 계획 없음	
전체	13.3	15.0	71.7	100.0(505)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	11.0	21.0	68.0	100.0(100)
사회복지법인	14.7	11.8	73.5	100.0(102)
민간	13.2	12.6	74.2	100.0(159)
가정	13.9	16.0	70.1	100.0(144)
영아반 수				
3반 이하	10.0	14.2	75.8	100.0(120)
4반	13.1	20.0	66.9	100.0(160)
5반 이상	15.1	12.0	72.9	100.0(225)

- 국공립을 제외하고 나머지 어린이집 유형에서 컨설팅을 받았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영아반 수가 많을수록 지원받았다는 비율이 높음.

- 조사시점까지 영아보육 컨설팅을 지원받지 않았지만, 2017년 내에 계획이 있다는 비율은 15%이고, 나머지는 계획이 없다고 답함.
- 영아보육 컨설팅 분야는 표준보육과정 이해가 65.7%, 보육일지 작성 58.2%, 교수-학습지도와 교사로서의 역할 각각 35.8%, 행정사무 관리 19.4%, 기본생활 습관지도 14.9% 순임.

〈표 23〉 컨설팅 받은 주요 분야

단위: %(명)

구분	표준보육 과정이해	교수- 학습지도	기본생활 습관지도	교재교구 제작	보육일지 작성	행정 및 사무관리	부모교육 및 부모상담	교사로서 의 역할	기타	(수)
전체	65.7	35.8	14.9	1.5	58.2	19.4	17.9	35.8	4.5	(67)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	90.9	36.4	9.1	-	45.5	-	18.2	36.4	-	(11)
사회복지법인	60.0	33.3	33.3	6.7	60.0	40.0	26.7	53.3	-	(15)
민간	57.1	33.3	14.3	-	47.6	28.6	14.3	28.6	4.8	(21)
가정	65.0	40.0	5.0	-	75.0	5.0	15.0	30.0	10.0	(20)
영아반 수										
3반 이하	66.7	8.3	16.7	-	66.7	25.0	25.0	75.0	8.3	(12)
4반	52.4	47.6	9.5	-	66.7	14.3	4.8	19.0	9.5	(21)
5반 이상	73.5	38.2	17.6	2.9	50.0	20.6	23.5	32.4	-	(34)

주: 중복응답 결과임.

- 컨설팅을 지원받은 어린이집 중 71.6%는 도움된다는 비율이 97%로 높고, 도움정도는 평균 3.2점임.
 - 어린이집 유형 및 영아반 수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국공립과 가정 어린이집이나 영아반이 4개반 이상인 어린이집의 도움정도가 높음.

〈표 24〉 영아보육 컨설팅 도움정도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도움되지 않음	도움되지 않음	어느 정도 도움	매우 도움	계(수)	4점 평균
전체	1.5	1.5	71.6	25.4	100.0(67)	3.2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	-	-	54.5	45.5	100.0(11)	3.5
사회복지법인	6.7	-	80.0	13.3	100.0(15)	3.0
민간	-	4.8	76.2	19.0	100.0(21)	3.1
가정	-	-	70.0	30.0	100.0(20)	3.3
F						1.9
영아반 수						
3반 이하	-	8.3	75.0	16.7	100.0(12)	3.1
4반	4.8	-	57.1	38.1	100.0(21)	3.3
5반 이상	-	-	79.4	20.6	100.0(34)	3.2
F						.3

3 맞춤형 보육 개선 과제

가. 맞춤형 보육 내실화 방안

□ 맞춤형 보육 제도 개선

- 유아는 제외한 채 영아만 맞춤형 보육을 시행함에 따라 어린이집 일과 운영의 어려움 특히 하원시간 이원화에 따른 현장 업무 과중 등을 호소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 작업 필요
- 영아와 유아 전체를 아우르는 ‘어린이집 이용시간’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예를 들어 기본보육시간 1일 8시간 등.

□ 긴급보육바우처 지원 축소 및 폐지

- 맞춤형 아동이 긴급보육바우처를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 지원 자격을 강화하여 지원대상을 점차적으로 축소하고, 3년 내에 폐지하는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음.
- 맞춤형 보육 관련 행정절차 및 서류 간소화
 - 맞춤형 보육으로 맞춤형/종일반 조사 설문지 배포 및 수거, 긴급바우처 보육포털사이트 등록, 매월 긴급보육바우처 등록 아동 확인 및 부모 서명 확인, 맞춤형 아동 현황 보육일지 기록, 출석부의 등하원시간 기록 확인 등의 업무가 추가 발생함.
 - 정부 지원 확대와 함께 정부 보조금 지원금 부정 수급자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사전 차단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나 관련 증빙 서류들이 과도하게 생산됨.
 - 사전 차단하기 위한 행정절차나 관련 증빙 서류들이 과도하게 생산되었음. 자격 인정이나 지원금 지급을 위한 절차는 필요하므로 시스템을 활용하여 행정절차를 최소화하고, 서류를 간소화하여 어린이집 현장의 업무를 줄여 나감.
- 맞춤형 보육 컨설팅 지원 사업 활성화
 - 현재 시도 및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평가인증 컨설팅 시 부가적으로 실시하는 영아보육 컨설팅을 별도 사업으로 확대하여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필요없다는 의견이 70%를 상회하였으나, 영아보육의 질적 개선을 위하여 영아보육 컨설팅을 확대 및 지원이 필요함.

나. 영아반 교사 지원 방안

- 영아보육 교육 이수 시 근무환경개선비 지원 자격 부여
 - 영아반 보육교사의 근무환경개선비는 ‘유아반 교사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향후 지원단가가 누리과정 수당 수준으로 인상될 시 지원자격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 있음.
 - 영아반 교사도 누리과정 담당교사와 동일하게 일정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만 근무환경개선비를 지원받도록 함.
- 영아 혼합반 운영 지원 강화 및 프로그램 개발 보급
 - 영아보육 직무교육 시 영아 혼합반 운영에 대한 별도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프로그

램을 개발 및 보급해 나감.

- 영아반 교사 지원 관련 특수보육시책 사업 체계화
 - 17개 시도가 동일하게 지원하는 처우개선비는 중앙정부 사업인 근무환경개선비와 통합하여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원자격이나 지원단가 등을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나감.
- 영아반 보조교사 지원 및 운영기준 체계화
 - 영아반 보조교사도 누리과정 보조교사 채용 기준과 유사하게 기준을 마련하여 배치함.

〈표 25〉 보조교사 배치 기준(안)

영아반	보조교사 배치 인원 수
2개반 이하	어린이집 선택 배치 가능
3-4개반	최소 1명 이상
5-7개반	최소 2명 이상
8-10개반	최소 3명 이상
11개반 이상	최소 4명 이상

| 참고문헌 |

- 보건복지부(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보육통계.
- 보건복지부(2017a).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2017b). 긴급보육바우처 현황 내부자료.
- 사회보장정보원(2013, 2014, 2015, 2016). 어린이집 일람현황 내부자료(각 년도 12월 말 기준).
- 사회보장정보원(2017). 어린이집 일람현황 내부자료(2017년 3월 말 기준).
- 양미선·이윤진·최윤경(2017). 영아반 운영 내실화를 위한 교사 지원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웹사이트>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2017. 6. 5 인출).

이슈페이퍼 2018-07

보육교직원 재교육의 새로운 방향 모색 : 전문교육과정 운영

강은진

1.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의 현황
2.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개편에 대한 평가 및 요구
3. 국정과제 전문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전문가 의견
4. 보육교직원 전문교육과정 운영 제안
5. 기대효과

참고문헌

보육교직원 재교육의 새로운 방향 모색: 전문교육과정 운영*

강은진 연구위원

| 요약 |

- 어린이집 교사와 유치원 교사와의 격차 해소를 위해 국정과제에서 제안한 전문교육과정은 현 보수교육 체제의 개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됨.
- 본고는 전문가 50인의 전공배경에 따라 현 보수교육에 대한 평가 및 전문교육과정 도입에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구하여 세 가지 안을 제시함.
- 전문교육과정을 신규 중간관리자 자격 도입 시 승급교육으로 활용(장기안), 보육교사 1급 승급 교육 전 17개 교과목 및 온라인을 통해 자격 취득한 자에 한해 선수 이수과정으로 활용(중기안), 현재의 집체식 보수교육 운영방식의 대안으로서 적용(단기안)하는 방안에 대해 제시함.
- 보육교사의 경력에 따라 전문성이 개발될 수 있도록 보수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전문교육과정이 활용될 수 있을 것임.

1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의 현황

- 영유아보육법에서는 제23조 및 제23조의2를 통해,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의무가 규정됨.
 - 집합교육의 운영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며, 원장의 경우 사전직무교육과 직무교육으로, 보육교사의 경우 직무교육과 승급교육으로 각각 구분됨.

* 본 원고는 「강은진·조성연·박상신(2017). 보육교직원 전문교육과정 개발의 방향성 탐색 연구. 육아정책연구소.」의 내용을 토대로 구성함.

〈표 1〉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등의 보수교육

어린이집 원장 직무교육					사전직무교육	
일반직무교육		특별직무교육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기본교육	심화교육	영아보육 직무교육	장애아보육 직무교육	방과후보육 직무교육		
보육교사 직무교육					승급교육	
일반직무교육		특별직무교육			2급 보육교사 승급교육	1급 보육교사 승급교육
기본교육	심화교육	영아보육 직무교육	장애아보육 직무교육	방과후보육 직무교육		

자료: 보건복지부(2017). 2017년도 보육사업안내, p. 201.

□ 보수교육 기관 및 실시 현황

- 2016년 보수교육기관은 총 105개 기관이며, 주로 서울과 경기도에 대다수가 분포되어 있음. 또한 보수교육기관 중 56개 기관이 보육교사교육원이며 47개 기관은 대학(부설)기관임.

〈표 2〉 2016년 보수교육기관 현황

단위: 개소

구 분	총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교육원 ¹⁾	56	14	4	2	3	2	-	2	-	10	-	2	1	2	2	7	4	2
대학(부설) ²⁾	47	3	1	2	3	3	1	2	1	14	2	2	4	2	-	1	4	1
기타 ³⁾	2	1	-	-	-	-	-	-	-	1	-	-	-	-	-	-	-	-
총계	105	18	5	4	6	5	1	4	1	25	2	4	5	4	2	8	8	3

주: 1) 교육원: 3급 양성교육기관(보육교사교육원)

2) 대학(부설): 대학(교) 및 대학 부설기관 포함(평생교육원, 산학협력단, 사회교육원 등)

3) 기타: (재)한국보육진흥원(서울), 화성시육아종합지원센터(경기)

자료: 한국보육진흥원(2016). 2016년 보수교육기관 평가 보고.

최윤경 외(2016). 2016 보육교직원 보수교육기관 평가.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한국보육진흥원(미발간). p.48에서 재인용.

- 2016년 보수교육 실시현황을 살펴보면, 교사 대상 교육과 원장 대상 교육 모두 기본과정이 더 많이 개설되고 있었음. 반면 원장 사전직무 교육 73건의 교육이 실시되었으며, 수강인원은 7,363명으로 나타남. 뿐만 아니라 일반직무교육 중 원장 심화과정과 교사 심화과정, 영아특별직무 교육은 교육횟수와 수강인원 모두 적었음.

〈표 3〉 2016년 보수교육 실시 현황

단위: 회(명)

구분	원장일반 (기본)	원장일반 (심화)	교사일반 (기본)	교사일반 (심화)	1급 승급교육	2급 승급교육	원장 사전	영아 특별
총 교육횟수	78 (5,667)	10 (793)	91 (6,255)	11 (775)	191 (23,242)	46 (3,466)	73 (7,363)	9 (435)
2016 평균 교육기간	40시간	40시간	40시간	40시간	80시간	80시간	80시간	40시간
평균 수강인원	72.7	79.3	68.7	70.5	121.7	75.3	100.9	48.3

자료: 보건복지부(2017). 내부자료.

- 보수교육 이수형태를 살펴본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에 의하면, 집합교육의 형태가 가장 많으나, 온·오프라인 교육의 병행, 온라인교육의 이수율도 일정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보육교사들은 일반 보수교육기관이 아닌 온라인 보수교육을 통해 교육을 받는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음.

〈표 4〉 보수교육 형태(중복응답)

단위: %(명)

구분	집합교육	집합교육과 온라인 교육 함께	인터넷 등 온라인 교육	(수)
전체	49.4	32.0	38.5	(2,602)

주: 중복응답 결과임.

자료: 이미화 외(2016).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어린이집조사.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 225, 〈표 IV-5-23〉 재인용.

2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개편에 대한 평가 및 요구

- 본 고는 전문가 50인의 전공배경(아동·보육, 유아교육, 아동·가족·사회복지)과 근무기관(2·3년제, 4년제)에 따라 현 보수교육에 대한 평가 및 전문교육과정 도입에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구함.
- 최근 보수교육과정의 개편이 이루어졌으며 2017년은 처음 시행되는 해로 전문가들의 보수교육과정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개편된 보수교육과정 중 일반직무교육이 보육교사 직무능력 제고에 적절한지를 묻는 문항에서는 일부 도움이 되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9.2%로 가장 높게 나타남. 아동·보육 전공과 4년제 대학에서는 전면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옴.

〈표 5〉 개편된 보수교육과정 중 일반직무교육에 대한 평가

단위: % (N=50)

구분	그렇다	일부 도움 되나 보완이 필요하다	전면적 개선이 필요하다	계	$\chi^2(df)$
전체	38.8	59.2	2.0	100.0	
전공					
아동·보육	22.2	72.2	5.6	100.0	
유아교육	42.1	57.9	0.0	100.0	5.4(4)
아동·가족·사회복지	58.3	41.7	0.0	100.0	
근무기관					
2·3년제 대학	35.7	64.3	0.0	100.0	
4년제 대학	40.0	57.1	2.9	100.0	0.5(2)

자료: 강은진·조성연·박상신(2017). 보육교직원 전문교육과정 개발의 방향성 탐색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 57, 〈표 III-1-3〉 재인용.

- 개편 보수교육과정에서 보완이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는 보수교육 운영에 대한 응답이 40.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보수교육과정 교과목 부분이 뒤를 이었음.

〈표 6〉 개편 보수교육과정에서 보완이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

단위: % (N=50)

구분	보수교육과정 교과목 부분	교과목 구성 시 필수와 선택을 구분한 부분	이수과목 (학점) 구성 부분	보수교육 운영 부분	기타	계	$\chi^2(df)$
전체	25.0	6.3	9.4	40.6	18.8	100.0	
전공							
아동·보육	21.4	7.1	7.1	35.7	28.6	100.0	7.0(8)
유아교육	36.4	9.1	0.0	45.5	9.1	100.0	
아동·가족·사회복지	14.3	0.0	28.6	42.9	14.3	100.0	
근무기관							
2·3년제 대학	30.0	10.0	0.0	50.0	10.0	100.0	2.8(4)
4년제 대학	22.7	4.5	13.6	36.4	22.7	100.0	

자료: 강은진·조성연·박상신(2017). 보육교직원 전문교육과정 개발의 방향성 탐색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p. 57-58, 〈표 III-1-4〉 재인용.

- 이 외에도 전문가들은 보수교육과정 이수를 위한 교육이수 시간 부족의 이유를 꼽았는데, 교과목 수에 비해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 깊이 있는 교육이 어렵기 때문임.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에서 이수하는 내용이 중복되는 것으로 나타나 기본과 심화과정 간 연계성은 갖도록 하되 영역별, 단계별로 내용을 세분화하고 차별화해야 함을 요구함.

3 국정과제 전문교육과정의 운영에 대한 전문가 의견

가.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격차 완화를 위한 전문교육과정 제안

-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질적 격차 해소를 위해 보수교육 체제와 구별되는 전문교육과정 운영과 그에 대한 보상이 제안됨.
 - 문재인 정부 들어 국정과제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격차 완화’ 이행을 위해, 교사 자질 향상 및 처우개선 방안 검토가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양 기관교사들의 처우뿐만 아니라 질적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됨. 그 한 방법으로 현 보수교육 체제와는 구별되며, 집약적이고 밀도 있는 전문교육과정 운영이 제안됨.
 - 유치원 교사의 경우도 자격연수와 승급을 위한 교육이 있으나, 그 방식은 보육교사의 보수교육과는 다르며, 양성과정에서부터 교과목의 차이도 존재함.
 - 동일 자격증을 소유한 보육교사 내에서도 온라인과 오프라인 양성학과 졸업생과, 이론 중심 교과목 17개 과목만을 수강한 교사들과 관련 학과(전공)을 통해 실무역량 중심 교육을 이수한 졸업생 간의 실제 직무역량에는 차이가 존재함.

나. 전문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전문가 제안

- 전문교육과정 운영방식과 목적
 - 전문가들은 보수교육과 유사한 의무교육 형태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40.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도입될 교육과정의 내용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 28.8%, 자발적 신청제가 적절하다는 응답이 15.4%의 순으로 나타남.

〈표 7〉 전문교육과정의 참여방법 및 운영방식의 바람직한 형태

단위: %(N=50)

구분	보수교육과 유사한 의무교육	자발적 신청제	도입될 교육과정의 내용에 따라 결정	기타	계	$\chi^2(df)$
전체	40.4	15.4	28.8	15.4	100.0	
전공						
아동·보육	44.4	0.0	33.3	22.2	100.0	
유아교육	33.3	33.3	23.8	9.5	100.0	9.5(6)
아동·가족·사회복지	46.2	7.7	30.8	15.4	100.0	
근무기관						
2·3년제 대학	33.3	13.3	40.0	13.3	100.0	
4년제 대학	43.2	16.2	24.3	16.2	100.0	1.8(4)

자료: 강은진·조성연·박상신(2017). 보육교직원 전문교육과정 개발의 방향성 탐색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 66, 〈표 III-2-1〉 재인용.

- 전문교육과정 도입 시 명확한 목적 선정을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 중 44.2%가 지적했듯이, 교육내용 개발을 우선순위로 꼽음. 뒤이어 교육대상 선정이 30.8%로 중요 고려 사항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경향성은 응답자의 근무 전공 및 유형에 상관없이 전 집단에서 일관되게 드러남.

〈표 8〉 전문교육과정의 명확한 목적 선정을 위한 우선 고려 사항

단위: %(N=50)

구분	교육대상 선정	교육내용 개발	교육기관 선정	교육 후 관련 보상	기타	계	$\chi^2(df)$
전체	30.8	44.2	7.7	7.7	7.7	100.0	
전공							
아동·보육	38.9	44.4	5.6	0.0	11.1	100.0	
유아교육	25.0	50.0	10.0	10.0	5.0	100.0	4.0(8)
아동·가족·사회복지	30.8	38.5	7.7	15.4	7.7	100.0	
근무기관							
2·3년제 대학	35.7	42.9	0.0	7.1	14.3	100.0	
4년제 대학	29.7	45.9	10.8	8.1	5.4	100.0	2.7(4)

자료: 강은진·조성연·박상신(2017). 보육교직원 전문교육과정 개발의 방향성 탐색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 66, 〈표 III-2-2〉 재인용.

□ 전문교육과정의 개발 방향

- 전문가들은 전문교육과정 도입 시 교육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으로 자격취득경로가 가장 중요하며, 교육과정 이수형태(온라인/오프라인)도 중요한 요건으로 응답함.

〈표 9〉 전문교육과정 도입 시 교육대상 선정 기준

단위: 점(N=50)

구분	교사경력		최종학력		자격취득 경로		자격취득 이수교과목내용		교육과정 이수형태	
	M	SD	M	SD	M	SD	M	SD	M	SD
전체	3.6	1.1	3.9	1.1	4.7	0.7	3.7	1.1	4.5	0.8
전공										
아동·보육	3.4	1.4	3.9	1.1	4.5	0.9	3.3	1.1	4.4	1.1
유아교육	3.9	1.0	4.0	1.1	4.7	0.7	4.0	1.1	4.4	0.7
아동·가족·사회복지	3.4	0.8	3.7	1.0	4.9	0.4	4.0	0.9	4.6	0.7
<i>F</i>	1.4		0.2		0.8		2.4		0.3	
근무기관										
2·3년제 대학	4.00	1.1	3.9	1.3	4.4	1.1	3.5	1.4	4.3	0.9
4년제 대학	3.42	1.1	3.9	1.0	4.8	0.4	3.8	0.9	4.5	0.8
<i>t</i>	2.90		0.0		4.7*		1.0		0.9	

자료: 강은진·조성연·박상신(2017). 보육교직원 전문교육과정 개발의 방향성 탐색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 67, 〈표 III-2-3〉 재인용.

* $p < .05$

- 전문교육과정의 내용 선정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부분으로 전문가들은 경력교사의 직무에 맞는 핵심역량을 1순위로 꼽았음. 다음으로 교과별 전문 지식과 기술을 위한 심화 내용이 담겼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음.

〈표 10〉 전문교육과정의 내용 선정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

단위: %(N=50)

구분	경력교사의 직무에 맞는 핵심역량 중심	4차 산업 및 미래 인재양성을 위해 필요한 인문학 및 최신 정보	교과별(과학, 창의, 예술 등) 전문지식과 기술을 위한 심화	기타	계	$\chi^2(df)$
전체	68.0	4.0	16.0	12.0	100.0	
전공						
아동·보육	66.7	11.1	11.1	11.1	100.0	4.760(6)

구분	경력교사의 직무에 맞는 핵심역량 중심	4차 산업 및 미래 인재양성을 위해 필요한 인문학 및 최신 정보	교과별(과학, 창의, 예술 등) 전문지식과 기술을 위한 심화	기타	계	$\chi^2(df)$
유아교육	70.0	0.0	15.0	15.0	100.0	
아동·가족·사회복지	66.7	0.0	25.0	8.3	100.0	
근무기관						
2·3년제 대학	64.3	0.0	28.6	7.1	100.0	3.120(3)
4년제 대학	69.4	5.6	11.1	13.9	100.0	

자료: 강은진·조성연·박상신(2017). 보육교직원 전문교육과정 개발의 방향성 탐색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p. 68-69, <표 III-2-4> 재인용.

- 전문교육과정 도입 시 포함되어야 하는 핵심역량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진 것은 ‘교사인성’이었음. 다음으로 교사의 반성적 자기개발과 교직윤리도 중요한 핵심역량으로 다뤄짐.

<표 11-1> 전문교육과정 도입 시 교육내용 선정 기준_핵심역량1

단위: 점(N=50)

구분	교사인성		창의성		반성적 자기개발		교직 윤리		영유아의 발달적 특성 이해		다양한 영유아의 사회문화적 발달특성 이해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전체	4.6	0.6	4.0	0.9	4.5	0.7	4.5	0.8	4.2	0.9	4.1	0.8
전공												
아동·보육	4.5	0.7	3.9 ^a	0.7	4.6	0.6	4.6	0.9	4.3	0.7	4.1	0.9
유아교육	4.7	0.6	4.5 ^b	0.7	4.4	0.8	4.6	0.7	4.1	1.0	4.0	0.9
아동·가족·사회복지	4.5	0.7	3.5 ^a	1.1	4.5	0.5	4.3	0.9	4.3	1.0	4.5	0.7
F (사후검정)	0.4		7.0 ^{**} (a(b))		0.4		0.6		0.3		1.3	
근무기관												
2·3년제 대학	4.3	0.8	4.5	.7	4.6	0.7	3.9	1.1	3.9	1.1	3.9	1.0
4년제 대학	3.9	0.9	4.5	.7	4.5	0.9	4.3	0.8	4.2	0.7	4.1	1.0
t	4.0		0.0		0.1		1.9		1.3		0.7	

자료: 강은진·조성연·박상신(2017). 보육교직원 전문교육과정 개발의 방향성 탐색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 70, <표 III-2-5> 재인용.

** $p < .01$.

- 전문교육과정 도입 시 포함되어야 하는 핵심역량으로 교수학습의 이해 및 실행, 영유아 행동지도 및 관계 형성, 영유아와 교사 권리 이해 및 옹호, 교사로서의 전문성 발달을 위한 자기관리도 중요한 핵심역량임.

〈표 11-2〉 전문교육과정 도입 시 교육내용 선정 기준_핵심역량2

단위: 점(N=50)

구분	보육과정에 대한 이해 및 실행		교수학습의 이해 및 실행		평가에 대한 이해 및 실행		공동체 의식 및 의사소통 기술		부모 및 동료와의 협력		지역사회 및 국가와의 협력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전체	4.0	1.0	4.3	0.9	4.1	0.8	4.1	0.8	4.2	0.8	3.5	0.8
전공												
아동·보육	4.1	0.9	4.2	0.9	3.8a	1.0	4.1	0.7	3.9	0.8	3.5	0.9
유아교육	4.3	1.0	4.5	1.0	4.6b	0.6	4.3	0.7	4.3	0.9	3.6	0.8
아동·가족·사회복지	3.6	1.0	4.2	0.6	3.8a	0.7	3.8	1.0	4.4	0.7	3.4	0.8
F (사후검정)	2.1		0.6		6.2**(a(b))		1.8		1.3		0.3	
근무기관												
2·3년제 대학	4.1	1.2	4.4	0.8	4.1	1.0	4.1	1.1	3.6	1.1	3.6	1.1
4년제 대학	4.4	0.7	4.1	0.9	4.1	0.7	4.2	0.7	3.4	0.7	3.4	0.7
t	1.0		1.3		0.1		0.1		0.5		0.6	

자료: 강은진·조성연·박상신(2017). 보육교직원 전문교육과정 개발의 방향성 탐색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 70, 〈표 Ⅲ-2-6〉 재인용.

** $p < .01$.

〈표 11-3〉 전문교육과정 도입 시 교육내용 선정 기준_핵심역량3

단위: 점(N=50)

구분	정보화 소양: 정보화 기술 이해 및 활용		영유아 행동지도 및 관계형성		문서작성 및 관리		영유아와 교사 권리 이해 및 옹호		교사로서의 전문성 발달을 위한 자기관리		리더십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전체	3.8	0.8	4.5	0.6	3.4	1.0	4.4	0.8	4.3	0.7	3.8	0.9
전공												
아동·보육	3.5 ^a	0.8	4.6	0.5	3.3	0.7	4.6	0.6	4.4	0.6	4.1	0.6
유아교육	4.1 ^b	0.6	4.5	0.6	3.8	1.2	4.2	0.8	4.5	0.8	4.0	1.1
아동·가족·사회복지	3.6 ^a	0.9	4.5	0.7	3.1	0.9	4.4	0.8	4.0	0.6	3.2	0.6

구분	정보화 소양: 정보화 기술 이해 및 활용		영유아 행동지도 및 관계형성		문서작성 및 관리		영유아와 교사 권리 이해 및 옹호		교사로서의 전문성 발달을 위한 자기관리		리더십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F (사후검정)	3.1*(a<b)		0.4		2.6*		1.2		2.2		4.3**	
근무기관												
2·3년제 대학	4.1	1.0	4.2	0.6	3.6	1.2	4.4	0.7	4.5	0.5	3.9	1.1
4년제 대학	3.6	0.7	4.6	0.5	3.4	0.9	4.4	0.8	4.3	0.7	3.8	0.8
t	4.5*		5.1*		0.8		0.1		1.4		0.3	

자료: 강은진·조성연·박상신(2017). 보육교직원 전문교육과정 개발의 방향성 탐색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 71, <표 III -2-7> 재인용.

* $p < .05$, ** $p < .01$.

□ 전문교육과정의 교육 운영기관 및 방식

- 전문가들은 전문교육과정 운영 시 운영기관 선정 1순위로 ‘강사수급 및 관리능력’을 꼽음.

<표 12> 전문교육과정 운영 시 운영기관 선정 기준(1순위)

단위: %(N=50)

구분	접근성	시설 보유현황	강사수급 및 관리능력	운영진	공공성	기타	계	$\chi^2(df)$
전체	10.0	0.0	56.0	16.0	16.0	2.0	100.0	
전공								
아동·보육	11.8	0.0	41.2	17.6	29.4	0.0	100.0	
유아교육	10.0	0.0	70.0	5.0	10.0	5.0	100.0	9.24(8)
아동·가족·사회복지	7.7	0.0	53.8	30.8	7.7	0.0	100.0	
근무기관								
2·3년제 대학	7.1	0.0	57.1	14.3	21.4	0.0	100.0	
4년제 대학	11.1	0.0	55.6	16.7	13.9	2.8	100.0	0.95(4)

자료: 강은진·조성연·박상신(2017). 보육교직원 전문교육과정 개발의 방향성 탐색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 75, <표 III -2-11> 재인용.

-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의 선정과 질 관리를 위한 방법으로는 ‘전문교육과정 기관 인증’이 74.0%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임. 그 다음으로는 ‘지역 거점 대학원 중심 교육’이 20.0%로 나타남.

〈표 13〉 전문교육과정 운영기관 선정과 질 관리를 위해 적합한 방법

단위: %(N=50)

구분	전문교육과정 기관 인증	지역 거점 대학원 중심 교육	기관의 자율경쟁에 맞춤	기타	계	$\chi^2(df)$
전체	74.0	20.0	0.0	6.0	100.0	
전공						
아동·보육	58.8	29.4	0.0	11.8	100.0	
유아교육	80.0	15.0	0.0	5.0	100.0	3.72(4)
아동·가족·사회복지	84.6	15.4	0.0	0.0	100.0	
근무기관						
2·3년제 대학	86.7	6.7	0.0	6.7	100.0	
4년제 대학	68.6	25.7	0.0	5.7	100.0	2.39(2)

자료: 강은진·조성연·박상신(2017). 보육교직원 전문교육과정 개발의 방향성 탐색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 76, 〈표 Ⅲ-2-14〉 재인용.

- 보육교사의 전문교육과정 참여를 위해 필요한 지원은 ‘전문교육과정 참여를 위한 대체교사 지원’을 꼽았으며, 이는 50.0%의 비율로 나타남. 그 다음으로는 ‘전문교육과정 참여를 위한 교육휴가 부여’로 나타났으며, 이는 복지처우 개선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임.

〈표 14〉 보육교사의 전문교육과정 참여를 위해 필요한 지원

단위: %(N=50)

구분	전문 교육과정 참여를 위한 교육휴가 부여 (복지처우 개선)	전문 교육과정 참여 시 교육비용 지원	전문 교육과정 참여를 위한 대체교사 지원	기타	계	$\chi^2(df)$
전체	39.6	4.2	50.0	6.3	100.0	
전공						
아동·보육	50.0	0.0	43.8	6.3	100.0	
유아교육	31.6	10.5	52.6	5.3	100.0	4.07(6)
아동·가족·사회복지	38.5	0.0	53.8	7.7	100.0	
근무기관						
2·3년제 대학	28.6	0.0	50.0	21.4	100.0	
4년제 대학	44.1	5.9	50.0	0.0	100.0	8.72**(3)

자료: 강은진·조성연·박상신(2017). 보육교직원 전문교육과정 개발의 방향성 탐색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 79, 〈표 Ⅲ-2-16〉 재인용.

** $p < .01$.

- 전문교육과정을 자발적 참여로 운영할 경우 보육교사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유보통합 시 교사자격 전환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 다음으로는 ‘추가수당지급’과 ‘호봉상승’, ‘승진’ 순이었음.

〈표 15〉 전문교육과정을 자발적 참여로 운영 시 보육교사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

단위: %(N=50)

구분	추가 수당 지급	승진	호봉 상승	유보통합 시 교사자격 전환에 가산점 부여	기타	계	$\chi^2(df)$
전체	21.3	4.3	14.9	53.2	6.4	100.0	
전공							
아동·보육	12.5	6.3	12.5	56.3	12.5	100.0	
유아교육	16.7	5.6	16.7	61.1	0.0	100.0	6.33(8)
아동·가족·사회복지	38.5	0.0	15.4	38.5	7.7	100.0	
근무기관							
2·3년제 대학	15.4	0.0	15.4	61.5	7.7	100.0	
4년제 대학	23.5	5.9	14.7	50.0	5.9	100.0	1.34(4)

자료: 강은진·조성연·박상신(2017). 보육교직원 전문교육과정 개발의 방향성 탐색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 80, 〈표 III-2-17〉 재인용.

4 보육교직원 전문교육과정 운영 제안

가. 전문교육과정의 핵심역량별 교과군 제안

□ 핵심역량에 기초한 교과군 설정 제안

- 기존 보수교육과정과 같이 교과목을 정하기보다는 각 역량별(교사소양, 실무역량, 행정 및 리더십 역량) 교과군을 설정하고, 전문교육과정 기관 인증 시 기관의 특성에 따라 역량 달성을 위해 구체적인 교과목명과 내용을 평가하여 승인하도록 함으로써 기관의 자율성을 두는 방안도 검토될 필요있음.

나. 대상별 전문교육과정의 방향

□ 장기안: 신규자격(가칭, 원감) 승급을 위한 전문교육과정

- 신규자격으로서 원감자격을 신설하고, 중간관리자로서의 역량과 원장의 준비를 위한 교육을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 관리를 위한 방안으로서 전문교육과정의 도입을 제안함.
- 교육대상은 3년 이상의 현직 경력을 갖춘 보육교사 1급 소지자로, 유치원의 원감연수와 같이 일정기간 동안의 집중적인 훈련과 연수가 요구되는 방안임.

	교사소양	실무 역량	행정 및 리더십
	인성 교직 윤리 교사 전문성	영유아 이해 및 행동지도 보육과정 이해 및 실행 평가 이해 및 실행 부모 및 동료 협력	문서 작성 관리 회계 리더십
교사 양성 과정	- 인성 - 교육철학 - 영유아 교육심리 이해	-영아발달/유아발달/아동발달 -영유아보육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아동건강교육/ -아동간호학 -아동영양학/ -사회정서 지도 -특수아동 이해/ -다문화보육 -장애아 지도/ -아동상담론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보육의 특수성/ -보육과정 -누리과정 영역 및 교과목의 성격 -보육봉사/ 부모교육론	-어린이집 운영관리 -가족관계론 -가족복지론 -지역사회복지론 -보육정책론
보수교육과정	-교육철학 -창의역량 -디지털시대 교수매체 활용	-영유아의 건강관리 -영아/유아 상호작용 전략 -재난안전/교통안전(세분화) -보육과정 및 누리과정 영역별 운영 -다문화/장애통합보육 -부모교육 -부모상담 기술	-가족/지역사회 협력
전문교육과정	-인문학적 소양 및 시민의식 -보육교사의 생애주기 -보육교사로서의 자기 이해 (성격유형 검사, 스토레스 해소법) -반성적 자기개발 -의사소통기술 -갈등과 문제해결력 증진 등	-장애통합 -특수보육의 이해 -영유아 생활지도 및 상담 -부모상담 -기타 보육교사 양성과정 교과목 중 선택교과목들의 심화 교과목 -보육과정의 이해 -보육계획안 구성 및 적용 -교수학습 이해 및 실행 등 -정보화기술의 이해와 활용	-어린이집 운영관리 -문서작성 및 관리 -회계작성 -영유아와 교사의 권리 이해 및 옹호 -교사 전문성 발달의 이해와 지원 -현장연구 이해와 지원 -가족, 지역사회 이해 및 지원 -보육정책 등

자료: 강은진·조성연·박상신(2017). 보육교직원 전문교육과정 개발의 방향성 탐색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 91, <표 IV-2-2> 재인용.

[그림 1] 현 교사양성 및 보수교육과정과 전문교육과정의 핵심역량별 교과군 비교

- 보육교직원으로서 자신의 소명의식은 물론 교사들의 역량 관리, 행정운영 능력, 부모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능력, 보육정책에 대한 이해 능력 등 중간관리자로서의 역량과 리더십을 충분히 기를 수 있도록 다루는 것이 필요함. 영유아와 교직원의 권리, 건강 및 안전 보장을 위한 민감성과 대처능력에 대한 훈련도 필요하며, 이 과정을 기반으로 이수에 대한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엄정한 교육평가도 고려함.
- 오랫동안 유아교육과 보육계에서 논의해온 유·보통합이 실행되는 경우, 전문교육과정인 현직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교사의 자격 전환 과정에 적용가능하다고 응답한 바 있음. 이는 신규자격을 위한 양성과정교육의 개편과 더불어 기존 자격자들의 자격 전환을 통해 양 기관에 상호취업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임. 이를 위해서, 어린이집 교사들에게는 앞서 제시한 ‘교사소양군의 교과목에 대한 재교육’이 필요함.
- 현 유치원 교사 양성 교육과정상의 교직과목은 영아나 유아에게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바, 영아와 유아를 지도하는데 필요한 교사소양군 교과목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음.

□ 중기안: 특정 교사 대상 전문교육과정

- 보육교사 내에도 자격취득 경로와 이수형태에 따라 전문성의 차이가 존재함. 그러므로 두 번째 안은 전문교육과정의 대상을 특히 온라인 형태의 학점은행제를 통해 자격을 취득한 교사와 보육직무와 직접적으로 무관한 학과에서 17개 교과목만을 이수해 자격을 취득한 교사들을 대상으로 할 것을 제안함.
- 1급 승급교육을 이수하기 전 요건으로 전문교육과정을 수강하도록 하며, 현재 보수교육기관과 지역 대학 중 인증을 받은 기관에서 실무 교과목을 수강하도록 하는 방안임.
- 아동보육학과와 유아교육과 등 17개 교과목 외에 보육직무와 관련한 교양 및 전공 교과목을 충분히 들은 현직 교사들의 경우 바로 1급 승급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될 필요가 있음.

□ 단기안: 일반 보육교사 소양을 위한 전문교육과정

- 보수교육과정과 별도로 진행하거나, 보수교육과정 인정 과정으로서 보육교직원의 내 교사 소양을 위한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안임.

- 보육교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개설하며, 전문교육과정 인증기관에서 휴가 및 방학기간을 활용해 3~5일 내 단기강좌로 개설함.
- 보상은 보수교육과정 일반직무교육의 일부 시수를 인정해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는 보수교육과정을 필수와 선택교과목으로 구분해 운영하는 방안이 전제가 되어야 가능함. 현재 보수교육과정의 일정과 내용이 정해져 있어 실제 보육 교사들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수교육과정과 병행하여 전문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안임.

다. 전문교육과정 운영기관 및 수강자 지원

□ 전문교육과정 운영기관

- 전문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운영기관의 질 관리임. 보수교육 기관의 질적 격차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현 보수교육기관에 전문교육과정을 위탁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임.
- 우수한 강사진을 수급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과 운영진 및 공공성에 대한 논의가 있음. 이에 전문교육과정 운영에 적합한 기관으로 전공심화를 운영하고 있는 전문 대학과 교사소양 교과목을 관리·운영할 수 있는 교육대학원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관을 제안함. 또한 질 관리를 기관의 자율에 맡기기보다 인증형태를 갖추어 엄정한 선정과 질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함.

□ 전문교육과정 수강 대상 지원 방안

- 전문교육과정을 수강하고자 하는 보육교사들을 위한 지원이 병행되어야 전문교육과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 보육교사들의 전문교육과정 참여를 위해서는 대체교사 지원의 필요와 교육휴가 부여에 대한 요구가 있었는데, 이는 서로 연관이 있으므로 순차적인 지원이 아니라 동시에 고려되어야 함.
- 방학이 따로 있지 않은 보육현장에서 보육교사들이 시간을 마련하여 전문교육과정을 수강하는 것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보육교사들이 전문교육과정을 수강하는 일정기간 동안 “교육휴가”를 부여하고 그 기간 동안 대체교사를 지원하는 방안이 모색됨.

5 기대효과

-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더불어 내용 및 방법상의 한계에 대한 문제 역시 꾸준히 제기되어 옴. 단기안과 중기안 측면에서의 전문교육과정의 도입은 현 보수교육의 체제 개편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임.
 - 현 보수교육의 집체교육, 잡화점식 운영의 비효율성과 보수교육기관의 질적 격차 등에 대한 지적을 상쇄할 수 있도록 함.
 - 보수교육 내 승급교육 중 특히 1급 승급교육은 다양한 양성교육 경로를 통해 진입한 교사들의 질적 격차를 고려해,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내용 및 방법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보수교육 중 일반직무교육은 핵심 교육과 지자체 및 유관 대학의 연계를 통한 자율교육으로 구분하여, 전문성을 인증 받은 기관의 교육 이수를 통해 보다 실무 역량에 유용한 교육을 받도록 선택의 다양성을 넓혀줄 필요가 있음.
 - 현재 경력단절 보육교사들이 보조교사나 보육교사로 재진입 하는 경우, 재교육이 부재한 상태임. 전문교육과정의 운영은 경력단절 교사들의 재진입시 교육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인력 투입의 양뿐만 아니라 질적 도모도 함께 할 수 있을 것임.
- 보육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중간관리자급의 신설 자격이 자격체계에 포함되면 그에 따라 실무역량뿐만 아니라 행정역량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보다 전문적인 재교육이 요구됨.
 - 신규 보육교사들이 입직을 한 후 교사로서의 경력을 쌓으며 전문성을 개발하는데 있어, 현 자격체계로는 한계가 있음. 보육교사 3급, 2급, 1급의 자격 급수별 역할이 유사하며, 학력에 따른 차이도 미반영됨. 보육교사라는 일자리를 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전문성을 개발하고 실행할 수 있는 자격체계를 갖추고, 그에 따른 역할과 직무에 대한 규정과 그에 상응하는 보수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전문교육과정은 이러한 측면에서 보육교사들의 전문성 강화와 보수체계 개편에 기반이 될 것이라 여겨짐.

| 참고문헌 |

- 강은진·조성연·박상신(2017). 보육교직원 전문교육과정 개발의 방향성 탐색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보건복지부(2017). 2017년도 보육사업안내.
- 이미화·최윤경·이정원·도남희·권미경·박진아·이혜민·김영원(2016).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어린이집조사.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 최윤경·조용남·이정원·김동훈·배윤진·권혜진·김수진·하혜영·최지은(2016). 2016 보육교직원 보수교육기관 평가.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한국보육진흥원(미발간).
- 한국보육진흥원(2016). 2016년 보수교육기관 평가 보고.

PART

04

가정 및 지역사회 양육지원

- ▮ 영유아기 부모교육 실태 및 부모교육 의무화에 대한 정책제언
이운진 연구위원
- ▮ 초등 자녀 방과후 돌봄 지원방안
이재희 부연구위원
- ▮ 저출산 분야 자녀돌봄 지원의 생애주기별 정합성 진단 및 향후 과제
유해미 연구위원
- ▮ 1세 영아 가정양육환경 분석을 통한 가정양육 지원방안 모색
김지현 부연구위원
- ▮ 다문화 한부모 육아지원 개선방안
권미경 부연구위원
- ▮ 어린이집 특수교사 수급 현황과 개선 방안
이정림 연구위원
- ▮ 맞벌이 가정의 긴급보육 실태 및 개선과제
유해미 연구위원

이슈페이퍼 2018-15

영유아기 부모교육 실태 및 부모교육 의무화에 대한 정책제언

이윤진

1. 영유아기 부모교육에 대한 관점: 교육대상 vs 교육주체
2. 취학 전·후 학부모교육 관련 법령 비교분석
3. 영유아기 부모교육 참여 실태
4. 정부지원기관의 부모교육 운영 실태
5. 유치원·어린이집의 부모교육 운영 실태
6. 영유아기 부모교육 활성화 및 의무화에 대한 의견
7. 영유아기 부모교육 의무화에 대한 정책제언

참고문헌

영유아기 부모교육 실태 및 부모교육 의무화에 대한 정책제언*

이윤진 연구위원

| 요약 |

- 최근 취학 전 학부모 관련 정책은 학부모를 교육의 대상으로 강조하는 기조로 변화된 반면, 학령기 학부모 정책은 교육 주체로서의 학부모를 강조하는 추세임. 요컨대, 취학 전·후의 부모교육 정책이 대비됨.
- 본 연구에서는 부모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영유아 부모들에게 주목함. 이들 부모는 정부 지원기관(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유아교육진흥원 등)에서 실시하는 부모교육에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특징을 지님(해당 기관 평균 이용기간 2.48년).
- 이들 부모,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 정부지원기관의 부모교육 실무자 3개 집단 모두 영유아기 부모교육의 의무화가 타당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옴.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이기는 하나, 의무화가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의견도 있었음.
- 그러나 부모교육을 의무화한 국외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웠고, 의무교육 단계인 초중등학교의 학부모 교육도 의무화가 아니므로 영유아기 부모교육 의무화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함.
- 영유아기 부모교육을 의무화하려면 “왜” 영유아기 부모교육을 의무화해야 하는 지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지향점(교육목표)은 “자녀행복추구권”으로 함.
- 실시시기는 자녀출산 전인 예비부모 때가 적절하며, 이수시간은 최소화하되, 이수증을 자녀가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입학할 때, 제출하도록 함.
- “건강가정지원법”이 예비부모를 포함할 수 있고, 부모교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모교육 의무화 근거 법령으로 가장 적절함.

1

영유아기 부모교육에 대한 관점 : 교육대상 vs 교육주체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원고는 「이윤진·이정림·임준범(2017). 영유아기 부모교육 참여 실태 및 내실화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의 내용을 토대로 구성함.

- 아동학대 발생이 가정에서 친부모에 의해 가장 많이 발생하므로(육아정책연구소 영상 보고서, 2018) 부모교육을 강화 내지는 의무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짐.
 - 양육수당 및 누리과정 지원금을 부모교육 이수와 연계해서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음.
 -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 또는 교사들은 젊은 부모들의 개인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기관운영이 어렵다고 토로함.
- 2017년 3월 14일자로 “영유아보육법”에 “보호자의 교육”이란 법조항을 신설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영유아의 성장·양육방법, 보호자의 역할, 영유아의 인권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국가와 지자체가 영유아기 부모(보호자) 대상으로 필요한 부모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는데, 이는 부모(보호자)를 부모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대상(객체)으로 인식했다고 해석할 수 있음.
- 한편, 고등교육을 받은 고학력 부모들이 증가하고 책이나 매스컴, SNS 발달 등으로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게 되면서 부모는 교육을 받아야 하는 객체이기 보다는, 필요한 교육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교육에 참여하고 더 나아가 자신이 필요한 프로그램을 직접 계획하고 실시하는 데 개입하는(정옥분·정순화, 2012: 50) 교육의 주체로 강조되고 있음.
 - 최근 초·중등학교 학부모교육정책이 학부모의 자발적 참여를 기조로 수립, 추진하고 있음. 일부 시도 교육청에서는 학교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권한과 책임, 참여권 보장을 위해 ‘학교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음.
- 영유아 부모(보호자) 대상으로 부모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관련 법조항을 신설한 것은 초중등교육에서 학부모를 교육의 주체로 인식하고 능동적 참여를 독려하려는 정책과는 분명 기조가 다름.
- 영유아기 부모교육 정책은 학령기 부모정책과 일관된 기조 하에 상호 연계되어야 하며 다원화된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부모교육 역시, 권리와 의무라는 양 관점이 균형있게 제시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영유아기 부모교육의 참여실태와 내실화 방안을 모색함.

- 본 연구에서는 부모 스스로가 “좋은 부모가 되고자” 부모교육에 관심을 갖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영유아 부모에 주목함. 특히, 유치원과 어린이집과는 달리, 참여의 구속력이 전혀 없는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실시하는 부모교육에 참여하는 부모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 아울러,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유아교육진흥원에서 부모교육을 담당하는 실무자 및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나. 부모교육의 조작적 정의

- 본고에서 부모교육이란 부모를 교육의 대상(객체)으로 보고, 교육을 통해 부모에게 전달하거나 가르치고자 하는 활동임.
- 이에 따라 부모교육 범위에 교육프로그램, 상담프로그램, 부모-자녀체험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장난감 및 도서대여, 공동육아나눔터, 부모 자조모임은 포함하지 않음.

2 취학 전·후 학부모교육 관련 법령 비교분석

가. 취학 전 학부모교육 관련 법령

- 영유아보육법의 학부모 참여 관련 법령
 - 동법 제6조(보육정책위원회). 중앙과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으로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함.
 - 동법 제25조(어린이집운영위원회 ②). 어린이집운영위원회 구성 시, 학부모 대표가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함.
 - 2015년 동법에 학부모가 어린이집의 운영실태 참관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되기도 함.

□ 영유아보육법에 부모교육 관련 조항 신설

- 동법 제9조의2(보호자 교육) 조항을 2017년 3월 14일자로 신설함. 신설하게 된 배경으로는 “현재 부모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영유아의 성장·양육방법, 보호자의 역할, 영유아의 인권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라고 밝힘(법제처 사이트, 검색일: 2017년 6월 14일).
- 법조항 신설 배경을 통해 부모를 교육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유아교육법의 부모참여 관련 법령

- 동법 제5조(유아교육위원회). 중앙 및 시도 유아교육위원회에 구성 시, 유아교육전문가, 유치원대표, 유치원교사(수석교사를 포함한다)대표, 학부모 대표 및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함.
- 동법 제19조3(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②, ③, ④). 유치원운영위원회는 해당 유치원의 교원 대표 및 학부모 대표로 하며, 위원 정수는 5명 이상 11명 이내의 범위에서 유치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설치함. 단, 병설유치원은 유치원 교원 대표 및 학부모 대표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함.

□ 건강가정지원법의 부모교육 관련 조항

- 동법의 제22조(자녀양육지원의 강화) “아동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 방과후 서비스, 양성평등 육아휴직제 등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라고 규정함.
- 부모교육 관련해서는 동법 제32조(건강가정교육)의 ①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②의 2에 부모교육을 명시함.
- 정리하면, 건강가정지원법에서 건강가정교육의 일환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모교육을 실시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나. 학령기 학부모 참여 관련 법령

- 1997년 구 교육법을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3법체제로 개편하고 학부모 등 교육주체들의 교육권 개념조항을 교육기본법에 규정함.

- 학교 교육의 주체는 크게 1) 어린이와 학생, 2) 부모, 3) 교원, 4) 학교설립·경영자, 5) 국가로 구분함.
- 무상·의무교육의 공교육체제가 실시되고 있는 초·중학교는 부모를 학부모라 명명하고 학부모를 학교교육의 주체로 규정해서 학교교육에 대한 참여권한을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에 규정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제도화함.
- 서울시교육청은 단위학교에서 법적근거 없이 자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부모회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학부모가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학교교육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권을 보장하여 교육공동체가 소통·공감하는 교육문화를 실현하기 위해(서울특별시교육청 보도자료, 2015. 10. 8.), ‘서울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3 영유아기 부모교육 참여 실태¹⁾

가. 정부지원기관의 부모교육 참여 현황

- 본고에서 의미하는 정부지원기관이란 정부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보건복지부), 건강가정지원센터(여성가족부), 유아교육진흥원(교육부)로 한정함.
- 조사 대상자 575명의 영유아 부모들이 이들 기관을 이용한 기간은 평균 2.48년으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약 2년 이상 장기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자녀의 현재 평균 연령(3.57세)을 감안하면, 자녀가 영아일 때부터 부모교육을 이수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해당 기관을 알게 된 경로는 “스스로 필요하다고 느껴서” 35.4%, “자녀가 다니는 기관에서 추천” 30.6%, “지인 소개”가 20.0% 순으로 나옴.
- 부모교육을 이수한 목적으로는 “자녀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가 49.8%로 가장 많았

1) 본 연구(이윤진·이정림·임준범, 2017) 설문조사에 참여한 영유아 부모 757명의 조사결과임.

고, “양육정보를 얻으려고”도 40.6%로 많이 응답함.

-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만족도와 자녀양육의 도움정도는 3.67점~3.93점(4점 척도)으로 나타남. 이수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와 도움이 큰 것을 알 수 있음.
- 향후 이용계획은 “가급적 수강할 계획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70.4% 가장 높았으며, 반드시 수강하겠다는 응답도 28.3%로 조사됨.

나. 자녀 재원 기관의 부모교육 참여 현황

- 자녀가 재원하고 있는 기관(어린이집, 유치원, 유아학원 등)에서 실시한 부모교육의 참여정도를 묻는 질문에 76.7%가 “참여한다”(최대한 참여 39.4%+가급적 참여 37.3%)고 응답함.
 - 정부지원기관에서 실시하는 부모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부모는 재원 기관에서 실시하는 부모교육에도 높은 참여도를 보임.
 - 취업모의 경우도 비취업모 79.3% 보다는 낮지만, 74.3%가 참여한다고 응답해서 높은 참여도를 보임.

〈표 1〉 자녀 재원 기관의 부모교육 참여 정도

단위: %(명)

구분	최대한 참여	가급적 참여	경우에 따라 참여 또는 비참여	거의 비참여	참여한적 없음	공지 받은적 없음	계 (사례수)	$\chi^2(df)$
전체	39.4	37.3	11.8	4.6	3.0	3.9	100.0(609)	
모 취업여부								
취업모	34.3	40.0	14.0	5.1	3.2	3.5	100.0(315)	8.96(5)
비취업모	44.9	34.4	9.5	4.1	2.7	4.4	100.0(294)	

자료: 이윤진·이정림·임준범(2017). 영유아기 부모교육 참여 실태 및 내실화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87.

- 자녀의 재원 기관에서 실시한 부모교육에 대해 95.2%의 부모들이 만족한다고 응답함. 부모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었음.
- 자녀의 재원 기관에서 실시한 부모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이유의 대부분은 “시간이 없어서”(63.0%)이며, “기관방문이 어색해서”(8.7%), “다른 자녀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

서”(8.7%) “별로 도움이 안 돼서”(2.2%) 등은 소수 의견이었음.

- 특히, 취업모의 경우 ‘시간이 없어서’가 76.9%로 비취업모 45.0%에 비해 훨씬 높게 나옴. 기타의견으로는 다른 기관에서 실시하는 부모교육 이수료 충분해서, 입학한 지가 얼마 안 돼서 등이 나옴.

〈표 2〉 자녀 자원 기관의 부모교육 비참여 이유

단위: %(명)

구분	참여 시간이 없어서	기관 방문이 어색해서	다른 자녀의 양육 문제로	다른 매체로 정보 얻을수 있어서	별로 도움이 안되서	기타	계 (사례수)	χ^2 (df)
전체	63.0	8.7	8.7	6.5	2.2	10.9	100.0(46)	
모 취업여부								
취업모	76.9	11.5	7.7	3.8	-	-	100.0(26)	10.91(5)
비취업모	45.0	5.0	10.0	10.0	5.0	25.0	100.0(20)	

자료: 이윤진·이정림·임준범(2017). 영유아기 부모교육 참여 실태 및 내실화 방안 연구. 육아 정책연구소. pp.89-90.

주: 자녀 기관 부모교육 비참여 응답자 n=46의 응답결과임.

4 정부지원기관의 부모교육 운영 실태²⁾

가. 부모교육 프로그램별 부모 참여도

- 각 센터(기관)에서 실시한 영유아기 부모교육 프로그램 중 참여도가 가장 높은 프로그램은 “부모-자녀가 함께 체험하는 프로그램”(3.85점/4점)로 나타남. “오프라인 개별 양육 상담프로그램”(3.43점), “소규모 강의식 부모교육”(3.24점), “집단양육 상담프로그램”(3.10점) 순으로 나타남.

- 강의식보다는 체험식, 대규모보다는 소규모, 설명식보다는 상담프로그램에 대한 선호도가 높음.

2) 본 연구(이윤진·이정림·임준범, 2017) 설문조사에 참여한 114명 정부지원기관의 부모교육 담당자의 응답 결과임.

〈표 3〉 영유아기 부모교육 프로그램 참여도

단위: 점(명)

구분	대규모 강의식 부모교육	소규모 강의식 부모교육	개별양육 상담프로그램		집단양육 상담 프로그램	부모-자녀 체험 프로그램
			온라인	오프라인		
전체	2.86	3.24	2.59	3.43	3.10	3.85
(사례수)	(104)	(104)	(56)	(83)	(71)	(106)
센터(기관) 종류						
유아교육진흥원	3.58	3.67	2.33	3.80	3.17	3.82
육아종합지원센터	2.77	3.20	2.80	3.55	3.20	3.85
건강가정지원센터	2.75	3.24	1.67	3.12	2.92	3.85

- 주: 1) 수치가 클수록 참여도가 높다는 의미임.
 2)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은 경우는 비해당으로 처리함.
 3) 대규모와 소규모의 기준은 20인을 기준으로 함.

나. 부모교육 참여가 높은/낮은 이유

- 참여도가 높은 이유는 “유익한 교육내용”(41.2%), “부모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36.8%), “강사의 전문성”(8.8%), “적극적 홍보”(4.4%), “유명강사”(4.4%) 순임(1순위 기준).
- 각 센터(기관)에 따라 참여도의 차이가 나타남. 유아교육진흥원과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유익한 교육내용”을,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부모의 높은 관심”(34.1%)을 참여도가 높은 이유로 가장 많이 꼽음. 유아교육진흥원은 “유명강사”의 응답율이 23.1%로 다른 센터에 비해 매우 높게 나옴.

〈표 4〉 참여도가 높은 이유

단위 : %(명)

구분	유익한 교육 내용	부모의 높은 관심	강사 전문성	적극적 홍보	유명 강사	기타	비해당	계 (사례수)	$\chi^2(df)$
전체(1순위)	41.2	36.8	8.8	4.4	4.4	2.6	1.8	100.0(114)	
센터(기관) 종류									
유아교육진흥원	30.8	23.1	15.4	7.7	23.1	-	-	100.0(13)	
육아종합지원센터	49.1	35.1	8.8	1.8	1.8	1.8	1.8	100.0(57)	18.72(12)
건강가정지원센터	34.1	43.2	6.8	6.8	2.3	4.5	2.3	100.0(44)	
전체(1+2순위)	77.2	65.8	21.9	17.5	7.9	0.9	5.3	1.8	1.8 (114)

자료: 이윤진·이정림·임준범(2017). 영유아기 부모교육 참여 실태 및 내실화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107, p.108

주: 비해당은 “참여가 높은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없음” 또는 “모든 프로그램 참여도가 저조함”임.

- 참여도가 낮은 이유는 “자녀동반이 어려워서”(23.7%), “부모교육에 대한 낮은 관심”(20.2%), “교육시간이 맞지 않아서”(18.4%), “홍보 부족”(12.3%), “진부한 교육내용”(9.6%) 순임(1순위 기준).
- 순위별 복수응답 결과, 1순위는 동일했지만 2위와 3위의 이유가 바뀜. 즉, 복수응답에서는 “교육시간”이 “부모교육에 대한 부모님의 낮은 관심”보다 더 많이 나옴. “교육장소”의 문제도 복수응답에서는 높게 나옴.
 - 복수응답에서 유아교육진흥원은 “자녀동반이 어려워서” “교육장소”가 동일하게 1순위로 나옴.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전체 응답 경향과 거의 동일하게 나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진부한 교육내용”의 응답비율이 20.5%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옴.

〈표 5〉 참여도가 낮은 이유(1순위)

단위 : %(명)

구분	자녀 동반 어려워서	부모의 낮은 관심	교육 시간	홍보 부족	진부한 교육 내용	교육 장소 (접근성)	강사 전문성 부족	불편한 신청 시스템	기타	비해당	계 (사례수)	χ^2 (df)
전체(1순위)	23.7	20.2	18.4	12.3	9.6	7.9	0.9	0.9	1.8	4.4	100.0(114)	
센터(기관) 종류												
유아교육진흥원	7.7	15.4	23.1	15.4	-	23.1	7.7	-	-	7.7	100.0(13)	20.84 (18)
육아종합지원센터	26.3	17.5	15.8	14.0	14.0	7.0	-	-	1.8	3.5	100.0(57)	
건강가정지원센터	25.0	25.0	20.5	9.1	6.8	4.5	-	2.3	2.3	4.5	100.0(44)	
전체(1+2순위)	59.6	28.9	34.2	17.5	16.7	21.1	4.4	1.8	7.0	4.4	(114)	

자료: 이윤진·이정림·임준범(2017). 영유아기 부모교육 참여 실태 및 내실화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109, p.110.

주: 1) 비해당은 “참여가 높은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없음” 또는 “모든 프로그램 참여도가 저조함”임.

2) 1+2순위 무응답이 4.4%로 나옴.

5 유치원·어린이집의 부모교육 운영 실태³⁾

가. 부모교육 프로그램별 실시 현황

-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연간 계획을 수립할 때 부모교육을 포함한다고 99.6%의 원장이 응답함. 연간 계획 수립 시, 프로그램 선정 방식에 대해서는 “교사회의에서 결정”한다는 의견이 39.8%,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해서 결정”한다는 의견이 37.1%로 확인됨.
- 연간 실시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으로는 “원장 또는 교사가 실시한 부모교육”이 7.48회로 가장 많았고, “부모상담” 2.06회, “부모-자녀 체험프로그램”이 1.73회 순으로 나타남.
- 부모교육 프로그램별로 학부모의 참여정도를 보면, “오리엔테이션 및 설명회” 참여도가 3.37점(4점 만점)으로 가장 높고, 부모-자녀 체험 프로그램 3.36점, 부모상담 3.22점, 원장 또는 교사가 실시한 부모교육은 3.05점, 전문강사 초청 부모교육은 2.82점으로 나타남.
- 실시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대부분 부모평가를 실시함.

나. 부모교육 참여 및 비참여 이유

- 부모교육 참여도가 높은 이유로는 “자녀와 관련된 내용이라서”가 68.4%로 가장 많았고, “부모교육 자체에 대한 부모들의 높은 관심도”가 14.6%, “유익한 교육내용”이 6.6%로 그 뒤를 이음(1순위 기준).

〈표 6〉 부모교육 참여도가 높은 이유(1순위, 1+2순위)

단위 : %(명)

구분	자녀와 관련된 내용 이라서	부모의 높은 관심	유익한 교육 내용	강사의 전문성	적극적 홍보	강사의 인지도	기타	계 (사례수)	$\chi^2(df)$
전체(1순위)	68.4	14.6	6.6	3.2	3.0	3.0	1.1	100.0(528)	
전체(1+2순위)	86.4	49.8	31.4	13.8	11.0	5.5	2.1	(528)	

자료: 이윤진·이정림·임준범(2017). 영유아기 부모교육 참여 실태 및 내실화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130.

3) 본 연구(이윤진·이정림·임준범, 2017) 설문조사에 참여한 유치원 및 어린이집 528명 원장의 응답 결과임.

- 이와 반대로 부모교육 참여도가 낮은 이유로는 “부모들의 낮은 관심”이 42.6%로 가장 많았고, “교육시간이 맞지 않아서” 31.3%, “진부한 교육내용” 10.2%, “자녀동반의 어려움”이 8.7%순으로 나타남(1순위 기준).

〈표 7〉 부모교육 참여도가 낮은 이유(1순위, 1+2순위)

단위 : %(명)

구분	부모의 낮은 관심	교육 시간	진부한 교육 내용	자녀 동반 어려움	홍보 부족	강사 전문성 부족	교육 장소	기타	계 (사례수)
전체(1순위)	42.6	31.3	10.2	8.7	2.3	1.7	1.1	2.1	100.0(528)
전체(1+2순위)	64.8	57.4	27.5	23.1	8.9	8.0	4.7	5.7	(528)

자료: 이윤진·이정림·임준범(2017). 영유아기 부모교육 참여 실태 및 내실화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131.

6 영유아기 부모교육 활성화 및 의무화에 대한 의견

가. 부모교육 활성화에 대한 의견

1) 부모 의견

- 자녀 재원 기관에서 실시하는 부모교육 참여에 대해서 76.6%의 학부모가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응답함.
- 영유아기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맞춤형 부모교육”을 가장 많이 꼽음(58.8%). 다음으로 “찾아가는 부모교육”(17.3%)임.

〈표 8〉 영유아기 부모교육 참여 제고방안: 부모 조사 결과

단위: %(명)

구분	① 맞춤형 부모교육	② 찾아가는 부모교육	③ 국공립 기관 입소권 부여	④ 부모교육 이수 마일리지 적립	⑤ 기타	계 (사례수)	$\chi^2(df)$
전체	58.8	17.3	11.8	11.2	0.9	100.0(757)	
모 취업여부							
취업모	55.1	19.0	12.6	12.3	1.1	100.0(374)	4.27(4)
비취업모	62.4	15.7	11.0	10.2	0.8	100.0(383)	

구분	① 맞춤형 부모교육	② 찾아가는 부모교육	③ 국공립 기관 입소권 부여	④ 부모교육 이수 마일리지 적립	⑤ 기타	계 (사례수)	$\chi^2(df)$
자녀 기관 이용여부							
이용	59.8	17.9	9.5	11.7	1.1	100.0(609)	16.57(4)
비이용	54.7	14.9	20.9	9.5	-	100.0(148)	**

자료: 이윤진·이정림·임준범(2017). 영유아기 부모교육 참여 실태 및 내실화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p.98-99.

주: ① 부모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부모교육 제공(예: 개별 상담 프로그램 등)

② "찾아가는 부모교육" 서비스 제공(예: 직장으로 찾아가는 아버지 교육 등)

③ 부모교육을 이수한 부모에 국공립어린이집 및 유치원 입소(입학) 우선권 부여

④ 부모교육을 이수한 부모에게 마일리지 적립 및 일정 포인트 이상이 되면 현금으로 사용

⑤ 기타

** $p < .01$

2) 원장 의견

- 부모교육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맞춤형 부모교육 제공”이 41.3%로 가장 많이 나왔고, 다음으로 “찾아가는 부모교육 서비스 제공” 25.0%, 부모교육 이수 시간을 적립해서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 적립” 17.0% 순으로 나옴.

〈표 9〉 부모교육의 참여 제고 방안: 원장 조사 결과

단위 : %(명)

구분	① 맞춤형 부모교육	② 찾아가는 부모교육	③ 국공립 기관 입소권 부여	④ 부모교육 이수 마일리지 적립	⑤ 기타	계(사례수)	$\chi^2(df)$
전체	41.3	25.0	17.0	12.3	4.4	100.0(528)	
설립유형							
국공립유치원	39.6	25.0	20.8	10.4	4.2	100.0(96)	
사립유치원	41.3	27.2	17.4	8.7	5.4	100.0(92)	
국공립어린이집	30.8	15.4	13.8	33.8	6.2	100.0(65)	44.95(16)* **
민간어린이집	45.7	25.7	18.3	7.0	3.5	100.0(230)	
법인어린이집	37.8	31.1	6.7	20.0	4.4	100.0(45)	

자료: 이윤진·이정림·임준범(2017). 영유아기 부모교육 참여 실태 및 내실화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151.

주: ① 부모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부모교육 제공(예: 개별 상담 프로그램 등)

② "찾아가는 부모교육" 서비스 제공(예: 직장으로 찾아가는 아버지 교육 등)

③ 부모교육을 이수한 부모에 국공립어린이집 및 유치원 입소(입학) 우선권 부여

④ 부모교육을 이수한 부모에게 마일리지 적립 및 일정 포인트 이상이 되면 현금으로 사용

⑤ 기타

*** $p < .001$

나. 부모교육 의무화에 대한 의견

1) 부모 의견

□ 부모교육의 의무화에 대해 64.6%의 부모가 타당하다고 응답함(보기문항 ①+④).

- 부모교육 의무화는 타당하지 않다(보기 문항 ②+③+⑤+⑥)는 약 35%임. 요컨대, 의무화보다는 부모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의무화할 경우, 맞벌이 가정의 경우 실제 참여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며, 의무화하더라도 교육의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고, 영유아기 교육·보육이 의무도 아닌 데 부모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등등의 이유로 부모교육의 의무화는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임.

〈표 10〉 영유아기 부모교육 의무화에 대한 의견: 부모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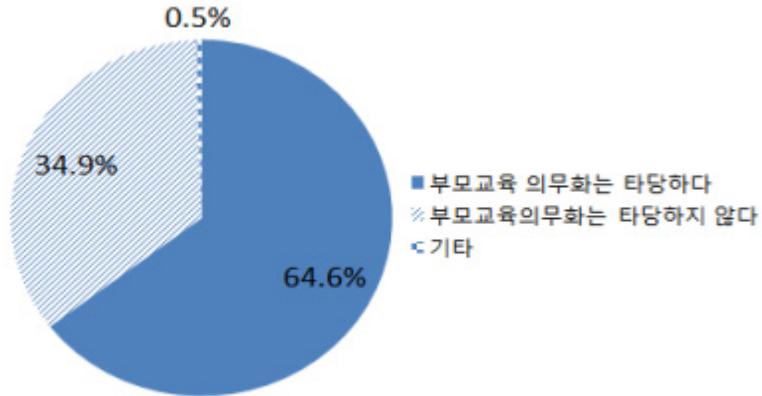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기타	계 (사례수)	$\chi^2(df)$
전체	55.5	18.4	12.7	9.1	3.3	0.5	0.5	100.0(757)	
지역규모									
대도시	56.0	17.0	13.5	8.5	4.1	0.3	0.6	100.0(318)	
중소도시	56.0	18.6	12.0	9.2	3.1	0.8	0.5	100.0(393)	7.04(12)
읍면	47.8	26.1	13.0	13.0	-	-	-	100.0(46)	
모 취업여부									
취업모	52.4	16.3	16.0	11.0	3.2	0.8	0.3	100.0(374)	
비취업모	58.5	20.4	9.4	7.3	3.4	0.3	0.8	100.0(383)	14.33(6)*
자녀 기관 이용여부									
이용	55.2	18.7	12.8	8.9	3.1	0.7	0.7	100.0(609)	
비이용	56.8	16.9	12.2	10.1	4.1	-	-	100.0(148)	2.78(6)

자료: 이윤진·이정림·임준범(2017). 영유아기 부모교육 참여 실태 및 내실화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p.100-101.

- 주: ① 영유아기의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이 시기의 부모교육 의무화는 타당하다.
 ② 부모 스스로가 판단해서 자발적으로 부모교육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맞벌이 가정 등 직장일로 바쁜 부모들을 고려하면, 의무화는 현실적이지 못하다.
 ④ 교육의 효과가 크므로 부모교육 의무화는 타당하다.
 ⑤ 영유아 교육·보육이 의무가 아니므로 부모교육 의무화는 타당하지 않다.
 ⑥ 교육의 효과가 적으므로 부모교육 의무화는 타당하지 않다.

* $p < .05$



[그림 1] 영유아기 부모교육 의무화에 대한 의견

2) 원장 의견

- 영유아기 부모교육 의무화에 대해서는 “영유아기의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이 시기의 부모교육 의무화는 타당하다(보기 문항 ①)”가 64.4%로 가장 많이 나옴. 다음으로 부모교육 의무화는 “현실적이지 못하다(보기 문항 ②)”가 13.8%, 의무화보다는 부모가 필요에 의해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보기 문항 ③)”가 10.6% 순으로 나옴.
 - “교육효과가 크므로 부모교육 의무화는 타당하다”)의무화가 타당하다(보기 문항 ①+④)가 71.0%로 대부분의 원장은 부모교육의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이에 반해 의무화가 타당하지 않다고 유목화할 수 있는 보기 문항 ②, ③, ⑤, ⑥을 합치면 28.4%임.
 - 기관소재지별로 보면, 서울과 경인권이 부모교육 의무화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옴.

〈표 11〉 영유아기 부모교육 의무화에 대한 의견: 원장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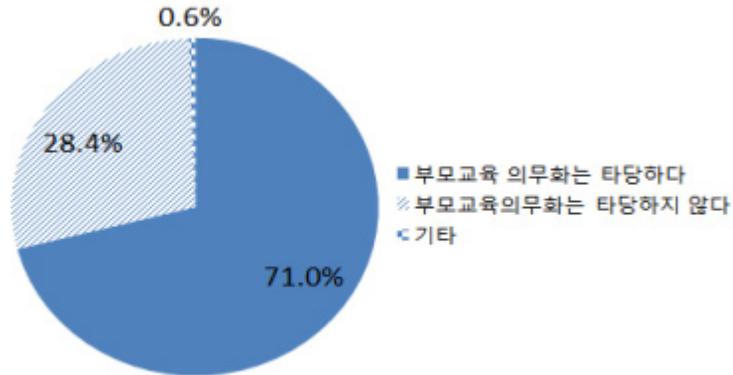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계(사례수)
전체	64.4	13.8	10.6	6.6	2.1	1.9	0.6	100.0(528)
설립유형								
국공립유치원	57.3	19.8	11.5	6.3	-	3.1	2.1	100.0(96)
사립유치원	67.4	8.7	8.7	9.8	2.2	3.3	-	100.0(92)
국공립어린이집	73.8	7.7	13.8	4.6	-	-	-	100.0(65)
민간어린이집	66.5	11.7	9.6	6.5	3.5	1.7	0.4	100.0(230)
법인어린이집	48.9	31.1	13.3	4.4	2.2	-	-	100.0(45)
$\chi^2(df)$	38.16(24)*							
기관소재지								
서울	50.6	23.5	7.4	16.0	1.2	-	1.2	100.0(81)
경인권	60.5	15.9	15.9	3.2	2.5	1.9	-	100.0(157)
충청권	82.3	8.1	3.2	3.2	-	3.2	-	100.0(62)
전라권	77.8	3.2	6.3	4.8	1.6	3.2	3.2	100.0(63)
경상권	63.2	10.5	11.3	9.0	3.8	2.3	-	100.0(133)
강원·제주권	62.5	25.0	12.5	-	-	-	-	100.0(32)
$\chi^2(df)$	69.87(30)***							

자료: 이윤진·이정림·임준범(2017). 영유아기 부모교육 참여 실태 및 내실화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147.

- 주: ① 영유아기의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이 시기의 부모교육 의무화는 타당하다
 ② 맞벌이 가정 등 직장일로 바쁜 부모들을 고려하면, 의무화는 현실적이지 못하다
 ③ 부모 스스로가 판단해서 자발적으로 부모교육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교육의 효과가 크므로 부모교육 의무화는 타당하다
 ⑤ 영유아 교육·보육이 의무가 아니므로 부모교육 의무화는 타당하지 않다
 ⑥ 교육의 효과가 적으므로 부모교육 의무화는 타당하지 않다
 ⑦ 기타

* $p < .05$, *** $p < .001$



[그림 2] 영유아기 부모교육 의무화에 대한 의견(원장대상)

3) 정부지원기관 부모교육 실무자 의견

- 영유아기 부모교육 의무화가 “타당하다”(보기 문항 ①+③)는 의견이 약 70%로 원장 조사 결과와 비슷하게 나옴.
 - 맞벌이 가정 등의 현실적인 이유로 “의무화는 현실적이지 못하다” 20.2%, “부모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0% 등으로 의무화를 반대하는 의견은 약 27.2%로 나옴.

<표 12> 영유아기 부모교육의 의무화에 대한 의견: 실무자 조사 결과

단위 :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계(사례수)	$\chi^2(df)$
전체	62.3	20.2	7.9	7.0	2.6	100.0(114)	
센터(기관) 종류							
유아교육진흥원	61.5	-	23.1	15.4	-	100.0(13)	
육아종합지원센터	68.4	22.8	5.3	1.8	1.8	100.0(57)	13.94(8)
건강가정지원센터	54.5	22.7	6.8	11.4	4.5	100.0(44)	

자료: 이윤진·이정림·임준범(2017). 영유아기 부모교육 참여 실태 및 내실화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118.

주: ① 영유아기의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이 시기의 부모교육 의무화는 타당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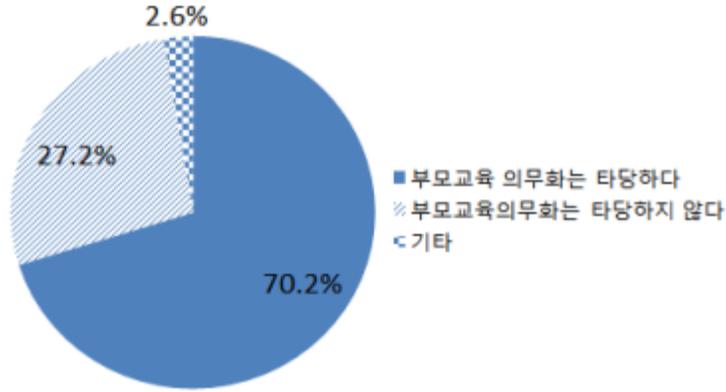
② 맞벌이 가정 등 직장일로 바쁜 부모들을 고려하면, 의무화는 현실적이지 못하다

③ 교육의 효과가 크므로 부모교육 의무화는 타당하다

④ 부모 스스로가 판단해서 자발적으로 부모교육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⑤ 기타

** $p < .01$



[그림 3] 영유아기 부모교육 의무화에 대한 의견(실무자대상)

7 영유아기 부모교육 의무화에 대한 정책제언

가. 정책방향

□ 부모교육을 권리와 의무의 균형 있는 관점으로 접근함.

- 전통사회에서처럼 조부모, 친인척 등 다양한 성인들로부터 양육을 받은 경험이 없거나 형제가 적어서 자신보다 어린 동생을 육아해 본 경험이 거의 없는 요즘 20대~30대 부모들은 자녀양육의 어려움이 큼. 또, 1~2명의 자녀를 출산하다 보니 “잘” 키우고 싶은 욕구도 매우 큼. 이에 부모교육에 대한 수요도 많고, 의무화도 필요하다는 인식도 높음.
- 그러나 부모교육을 의무화한 국외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웠고, 의무교육 단계인 초·중등학교의 학부모 교육도 의무화가 아닌데 영유아기 부모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임. 다원화된 민주주의 사회에서 교육은 권리와 의무라는 양측을 균형있게 다뤄야 함.
- 요즘 젊은 부모들은 좋은 부모가 되고 싶은 욕구뿐 아니라 부모 개인의 삶도 중시하는 다양한 욕구와 의식 수준을 갖고 있으므로 영유아기 부모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은 실패할 확률이 높음. 부모로서의 권리(참여)와 책임(의무)을 균형있게 지원하는 보

다 성숙한 부모교육 정책이 필요함.

나. 정책제언

- 영유아기 부모교육 의무화는 신중히 접근해야 하며, 만약 고려한다면 다음과 같은 정책제언을 제안함.
- 이해 당사자들 간의 입장차이가 있으므로 공론화 과정 필요
 - “왜” 영유아기 부모교육을 의무화해야 하는 지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논의과정이 있어야 함. 즉, 의무화해서 우리사회가 얻는 이익이 과연 무엇인지 면밀하게 논의하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함.
 - 공론화 과정을 통해 영유아기 부모교육 의무화가 필요한 것으로 결론이 나오면,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등을 모색함.
- 영유아기 부모교육 의무교육 목표는 “자녀행복추구권”으로 설정
 - 교육목표를 무엇으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교육내용이 달라짐. 예컨대, 기초적인 양육기술(예: 씻기기, 모유수유 등) 습득이 필요하다면 “기본적인 양육기술 습득”이 교육목표가 될 것임.
 -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이용이 보편화되면서(이용률 80% 이상), 기관 이용의 예절교육을 부모가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는 의견, 정부가 양육수당 및 누리과정지원금을 지원하므로 이에 상응하는 부모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있음.
 - 한편, 재혼가정에서 아동학대 문제가 발생하면서 부모교육의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강하게 형성되었고, 이후 부모가 이혼하게 되면 부모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것으로 제도화함.
 - 본 연구에서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영유아기 부모교육을 의무화한다면 교육목표는 관련 법령을 근거로 ‘아동의 행복추구권’ 또는 ‘영유아의 이익 최우선 보장’으로 설정할 것을 제안함.
- 건강가정법 제22조에 자녀양육은 “아동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원을 강화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영유아보육법 제3조에도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부모교육의 의무화를 통해 부모는 자녀의 행복과 이익을 최우선으로 보장해야 함을 일깨워 주어야 함.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체라는 점, 그래서 자녀의 행복과 이익의 기준은 부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있음이 부모교육의 핵심 내용이 되어야 함.
- 영유아기 부모교육 의무 이수 시간은 최소화
 - 설문조사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실시하는 부모교육 참여도를 보면,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차이가 거의 없었음. 그러나 ‘시간이 없어서’ 부모교육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응답은 취업모가 유의미하게 많이 나옴.
 - 부모교육 의무화에 대해 취업모와 비취업모 모두 ‘의무화는 타당하다’를 1순위로 가장 많이 꼽았으나(취업모 52.4%, 비취업모 58.5%), 취업모의 경우 ‘맞벌이 가정 등을 고려하면, 의무화는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응답이 16.0%로 비취업모 9.4%에 비해 높았음(이윤진·이정림·임준범, 2017: 101).
 - 취업모의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맞벌이 가정을 고려해서 부모교육 의무 이수 시간(기간)은 최소화함. 구체적인 교육 이수 횟수와 이수 시간은 후속연구를 통해 명료화함.
- 영유아기 부모교육 의무 이수 시기는 ‘예비부모기(期)’가 적절함.
 - 어린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 부모교육에 자녀를 동반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동반할 경우 교육에 집중하기도 쉽지 않음. 따라서 부모교육 의무 이수 시기는 자녀 출산 전이 가장 현실적이고 교육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함.
 - 산전에 정기검진을 받기 위해 병원이나 보건소를 갈 때 부모교육을 연계하도록 하며, 부부가 함께 교육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함. 출산 후 퇴원할 때까지는 부모교육을 받도록 하며 받지 않은 일방의 배우자 있으면, 퇴원할 때 자녀를 인수받지 못함.
 - 의무 부모교육 이수를 1회로 할지, 자녀 1명당 기준으로 할지 역시, 후속연구를 통해 명료화함.
- 영유아기 부모교육 의무교육 이수와 인센티브 연계는 지양

- 부모교육 의무화를 국공립기관 입소 우선권 부여, 양육수당 및 누리과정지원금 등과 연계해서 실시하는 것은 지양함. 본 부모대상 설문조사에서 이에 대한 응답이 10%대 초반으로 적게 나옴.
 - 앞서 기술했듯이, 의무 부모교육을 이수해야만 출산 후 퇴원 시, 자녀를 인수받을 수 있다는 조건이 부여된다면 향후 인센티브 연계 조건은 부모들의 부담감만 가중시킬 수 있음. 의무 부모교육은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교육을 ‘조건 없이’ 받는 교육이란 기본 방침으로 운영함.
 - 대신, 의무 부모교육을 이수한 부모에게 교육이수증을 수여하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자녀를 보내게 될 때, 이수증 제출을 필수로 함.
- 법령 정비를 통한 근거 법 마련
- 영유아기 부모교육을 의무화하려면 법령을 정비해야 함. 영유아기 부모교육은 영유아보육법과 건강가정지원법에서 규정할 수 있음. “유아교육법”은 관련 법조항이 없음.
 - “영유아보육법”의 보호자 교육을 규정한 제9조의 2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건강가정지원법” 제32조(건강가정교육)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내용으로 “1. 결혼준비교육, 2. 부모교육, 3. 가족윤리교육, 4. 가족가치실현 및 가정생활관련 등”이 열거되어 있음.
 - 부모교육을 실시하는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임은 두 법령이 동일하나, 하나는 “실시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실시하여야 한다”고 다르게 규정함.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
 - 건강가정지원법이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의무화로 규정하기에는 법체계상 순조로울 수 있으며 또, 의무교육 대상을 예비부모로 하게 되면 건강가정지원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함.

| 참고문헌 |

서울특별시교육청 보도자료(2015. 10. 8). '서울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육아정책연구소 영상보고서(2018). 대한민국 아동권의 현주소와 법적 개선방안. KICCE 영상보고서 제1호. 육아정책연구소.

이윤진·이정림·임준범(2017). 영유아기 부모교육 참여 실태 및 내실화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정옥분·정순화(2012). 부모교육. 서울: 학지사

<웹사이트>

법제처 사이트, www.law.go.kr 검색일: 2017년 6월 14일

이슈페이퍼 2018-02

초등 자녀 방과후 돌봄 지원방안

PART 04

이재희

1. 서론
2. 국내 방과후 돌봄서비스 현황
3. 국외 방과후 돌봄서비스 현황
4. 방과후 돌봄에 대한 정책수요와 과제
5. 방과후 돌봄 정책 추진 방향

참고문헌

초등 자녀 방과후 돌봄 지원방안*

이재희 부연구위원

| 요약 |

- 초등학교 저학년 학부모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에 하나는 자녀의 방과후 돌봄임.
- 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서비스 등 다양한 부처에서 방과후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지만, 초등 학부모의 수요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또한 방과후 돌봄서비스에 대한 공급 부족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돌봄의 질에 대한 학부모 관심이 매우 높아졌음.
-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방과후 돌봄서비스의 현황과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방과후 돌봄 활성화 및 내실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음.
 - 방과후 돌봄 활성화를 위해서는 방과후 돌봄서비스 공급에 대한 명확한 목표설정과 성과관리가 필요하고, 방과후 돌봄에 대한 학교와 지자체 간 협력을 강화하여야 함.
 - 방과후 돌봄서비스 내실화를 위해서는 서비스 통합·관리 행정전달체계 확립, 교사 질 관리 등을 통한 질적 수준 제고, 초등돌봄교실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안전관리 체계 마련이 필요함.

1 서론

- 자녀의 방과후 돌봄 공백 문제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부모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에 하나임.
 - 초등 저학년의 경우 하루 수업시간이 유아교육기관의 교육·돌봄 시간보다 짧아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 2015년 제3차 가족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생 자녀의 60% 이상이 방과후 시간에 학원에 다니는 것으로 나타났음(여성가족부, 2015).
- 초등 방과후 돌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다양한 부처에서 돌봄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음.

* 본 원고는 「이재희·김근진·엄지원(2017). 초등자녀 양육지원 방안. 육아정책연구소」의 내용을 토대로 구성함.

- 주요 정책으로는 교육부의 방과후학교, 초등돌봄교실,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 여성가족부의 공동육아나눔터, 아이돌봄서비스 등이 있음.
- 다양한 방과후 돌봄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여전히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한 상황임.
- 또한 부처마다 운영 및 서비스 공급 형태가 달라 학부모들의 서비스 이용의 불편을 겪고 있음.
- 따라서 본고에서는 방과후 돌봄서비스 제도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2 국내 방과후 돌봄서비스 현황¹⁾

가. 초등돌봄교실

- 초등돌봄교실(이하 돌봄교실)은 ‘별도 시설(전용 또는 겸용교실 등)이 갖추어진 공간에서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규수업 이외에 이루어지는 돌봄 활동’임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17).
- 돌봄교실은 참여대상과 시간을 기준으로 ‘오후돌봄’, ‘저녁돌봄’,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로 구분됨.
 - 오후돌봄은 주로 1~2학년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등의 돌봄이 꼭 필요한 학생들에게 돌봄을 제공하며, 저녁돌봄은 오후돌봄 참여학생 중 추가 돌봄이 필요한 학생에게 제공함.

1) 본 원고에서는 다양한 방과후 돌봄서비스 정책 중 각 부처의 대표적인 돌봄서비스인 초등돌봄교실(교육부), 지역아동센터(복지부), 아이돌봄서비스(여가부)에 초점을 맞춰 소개하였음.

표 1 | 2017년 초등돌봄교실 참여대상

구분	참여대상
오후돌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2학년은 기 구축된 돌봄교실에서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등의 돌봄이 꼭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함. 단, 시·도 및 학교 여건에 따라 담임 등이 추천한 학생 (예: 일시적 실직, 일시적 경력단절 등으로 구직 중인 가정 자녀 등)도 포함됨. 1~2학년 학생 수용 후, 추가 수용 가능한 경우 3학년 이상은 학교 여건에 따라 우선 순위(주1)를 정해 수용함.
저녁돌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후돌봄에 참여한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등의 추가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함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별도의 공간에서 방과후에 돌봄이 필요한 3~6학년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등의 학생 중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1~2개 이상 참여하면서, 오후 돌봄교실을 이용하지 않는 학생을 대상으로 함.

주: 1) 우선순위의 예로는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등의 자녀 중 '16 오후돌봄 참여 학생, 저학년 우선, 저녁돌봄 참여 여부, 방과후학교 참여 여부 등이 있음.

2) 단위학교는 학교여건에 따라 대상자를 확대·운영할 수 있음.

자료: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7). 2017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 한국교육개발원. p.4를 표로 정리함.

- 2014년부터는 전체 초등학교의 99%(5,938개교)가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실 수는 1만개가 넘었음.
- 2016년에는 11,920개실의 돌봄교실이 운영되고 있으며, 참여 학교당 평균 교실 수는 2개 정도이며, 총 24만 4천여명의 초등학생이 이용하고 있음.

표 2 | 초등돌봄교실 연도별 현황

단위: 개, (%), 교실, 천명

년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전체학교수(A)	5,541	5,646	5,733	5,756	5,813	5,829	5,854	5,882	5,895	5,913	5,934	5,978	6,001
참여학교수(B)	337	609	1,421	2,508	2,962	4,146	5,430	5,639	5,652	5,784	5,938	5,972	5,998
참여학교비율	(5.5)	(10.6)	(24.8)	(43.4)	(50.8)	(71.2)	(88.5)	(92.4)	(96.0)	(97.3)	(99.0)	(99.9)	(99.9)
돌봄교실수(C)	445	889	1,631	2,718	3,334	4,622	6,200	5,430	7,086	7,395	10,966	12,380	11,920
평균교실 수¹⁾	0.1	0.2	0.3	0.5	0.6	0.8	1.1	0.9	1.2	1.3	1.8	2.1	2.0
평균교실 수²⁾	1.3	1.5	1.1	1.1	1.1	1.1	1.1	0.8	1.3	1.3	1.8	2.1	2.0
전체학생수 (천명)(D)	4,116	4,023	3,925	3,830	3,672	3,474	3,299	3,132	2,952	2,784	2,729	2,715	2,673
참여학생수 (천명)(E)	8	13	37	50	55	77	104	124	159	160	221	240	244
학생참여율²⁾	(0.2)	(0.3)	(0.9)	(1.3)	(1.5)	(2.2)	(3.2)	(4.0)	(5.4)	(5.7)	(8.1)	(8.8)	(9.1)

주: 1) C/A: 전체 학교당 평균교실 수

- 2) C/B: 참여 학교당 평균교실 수
- 3) E/D: 전체 초등학생 대비 참여학생 비율

자료: 1) 조진일·김홍원·최형주·손종렬·신화주·안성현·정유진(2015). 초등돌봄교실의 환경 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p.22.
 2) 교육부 보도자료(2016. 06. 23). 행복교육과 일가정 양립의 핵심정책, 초등돌봄교실. p.1
 3) 교육통계서비스. 2004~2016년 초등학교 연도별 추이 http://kess.kedi.re.kr/stats/school?menuCd=0101&cd=943&survSeq=2016&itemCode=01&menuId=m_010105&uppCd1=010105&uppCd2=010105&flag=B에서 2017년 6월 27일 인출함.
 4) 교육부 보도자료(2016. 5. 3.) 방과후학교 활성화 방안(안). p.2.

나. 지역아동센터

- 지역아동센터는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빈곤가정의 아동을 돌보기 위한 공부방의 전통을 계승한 아동복지시설임(유희정·홍승아·김지혜 외, 2014).
- 지역아동센터는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임(보건복지부, 2017).
 -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과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운영됨.
 - 지역사회 내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아동보호, 교육 기능, 정서적 지원, 문화서비스 등을 제공함(보건복지부, 2017).
- 지역아동센터는 2004년 아동복지법 개정에 의해 아동복지시설로 법제화되었으며 이후 꾸준히 시설 수가 양적 증가하고 이용아동도 확대되어 2016년에는 4,107개소에서 106,668명이 지원을 받고 있음(보건복지부, 2016).
 - 2016년을 기준으로 초등학생은 8만 2천여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초등 저학년은 4만 2천여명이 이용하고 있음.

표 3 | 지역아동센터 초등학생 이용 현황(2004~2016년)

단위: 명(%)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전체	23,347	43,749	58,851	76,229	87,291	97,926	100,233	104,982	108,357	109,066	108,936	109,661	106,668
초등학생	18,348 (78.6)	34,617 (79.1)	46,575 (79.1)	61,044 (80.1)	69,135 (79.2)	77,085 (78.7)	78,098 (77.9)	79,731 (75.9)	80,426 (74.2)	80,318 (73.6)	81,087 (74.4)	82,380 (75.1)	82,140 (77.0)
저학년	-	-	25,149	32,867	35,972	39,053	37,865	37,407	38,030	39,293	40,425	42,267	41,750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1학년	-	-	-	-	-	-	-	11,056	10,614	11,484	12,263	11,877	10,662
2학년	-	-	-	-	-	-	-	12,821	13,040	12,977	13,767	15,019	14,494
3학년	-	-	-	-	-	-	-	13,530	14,376	14,832	14,395	15,371	16,594
고학년	-	-	21,426	28,177	33,163	38,032	40,233	42,324	42,396	41,025	40,662	40,113	40,390

주: 전체는 미취학, 초등, 중·고등, 탈학교, 기타 포함임.

자료: 보건복지부(2016). 전국 지역아동센터 통계조사 보고서. p.viii.

다. 아이돌봄서비스

-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임(여성가족부, 2017).
 - 크게 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시간단위 돌봄을 제공하는 ‘시간제’와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종일 돌보는 ‘영아종일제’로 구분됨(여성가족부, 2017).
-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은 2016년 전국 221개소로 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성단체, 지자체직영, 사회복지관, 지역자활센터 등에서 운영되고 있음²⁾
- 아이돌봄서비스 중에서 시간제 서비스의 이용아동 현황은 2015년 기준으로 약 7만8천명이며, 0~5세 영유아가 53,207명, 만6~8세 아동이 18,676명, 만9~12세 아동이 6,742명이 시간제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음.

표 4 | 시간제 아이돌보서비스 연령별 이용 현황(2015년)

단위: 명(%)

12개월 이하	영유아						초등학생			합계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	소계	만6~8세	만9~12세	소계	
5,174	10,556	10,342	9,609	8,884	8,642	53,207	18,676	6,742	25,418	78,625
(6.6)	(13.4)	(13.2)	(12.2)	(11.3)	(11.0)	(67.7)	(23.8)	(8.6)	(32.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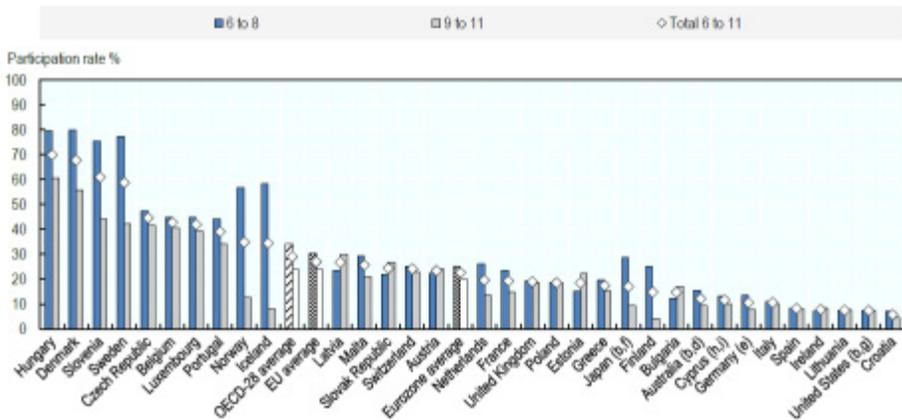
자료: 여성가족부(2016). 내부자료.

2) 아이돌봄서비스 주요통계(n.d.). <https://www.idolbom.go.kr/intro/index2.go>에서 2017년 5월 23일 인출함.

3 국외 방과후 돌봄서비스 현황

가. OECD 국가의 방과후 돌봄서비스 이용 현황

- OECD 국가의 방과후 돌봄서비스 현황을 살펴보면 6~11세 기준으로 방과후 돌봄 이용률이 70% 넘는 국가는 헝가리, 덴마크, 슬로베니아, 스웨덴이었음.
- 이들 국가는 6~8세 기준으로는 약 80%의 아동이 방과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OECD 평균 방과후 돌봄 이용률은 약 30% 수준이고, 6~8세는 약 35%, 9~11세는 약 2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음.



주: 국가마다 방과후 돌봄서비스 산정기준과 발표시기가 상이할 수 있음
 자료: OECD(2016) Out of school hours care service, p.2

그림 11 OECD 국가 아동의 기관 기반 방과후 돌봄서비스 참여율(2014)

나. 국가별 방과후 돌봄정책 사례

- 프랑스
 - 프랑스의 초등 방과후 서비스는 학교 운영 방과후 프로그램, 지방자치단체 운영 방과후 프로그램, 여가 센터(Centre de Loisirs) 운영 돌봄 프로그램으로 구분됨 (최지선, 2013).

- 프랑스의 돌봄서비스 및 운영은 오후 수요일을 제외한 오후 4시 30분 ~ 오후 6시까지는 학교 운영 방과후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수업이 일찍 끝나는 화요일이나 금요일의 경우에는 지자체 운영 방과후 프로그램을 활용함.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8:30-11:30	수업	수업	수업	수업	수업
11:30-13:30	점심	점심	점심	점심	점심
13:30-15:00	수업	수업	여가 센터 프로그램	수업	수업
15:00-16:30		지자체 운영 방과후 프로그램			지자체 운영 방과후 프로그램
16:30-18:00	학교 운영 방과후 프로그램	학교 운영 방과후 프로그램		학교 운영 방과후 프로그램	학교 운영 방과후 프로그램

자료: 한국교육개발원(2016). 2013년 해외교육동향, p.309.

그림 2 | 프랑스의 학교 정규수업 시간 및 돌봄 프로그램 개입 현황

□ 독일

- 독일의 초등 방과후 서비스는 방과후 교육 및 돌봄을 수행하는 종일제 학교 (Gantztagschule)와 지방자치단체 관리 하에 있는 주간 보호기관인 호르트 (Hort)에 주로 이뤄짐(정수정, 2013).
- 종일제 학교의 프로그램은 단위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프로그램의 50% 이상이 초등학교가 학교 외부 기관(문화, 교육, 스포츠, 아동 및 청소년 지원기관)과 협력하여 이뤄짐.
- 호르트는 기본적으로 방과후 4시간 이상을 운영하며 점심식사, 자유시간, 학습시간으로 구성됨. 자유시간은 주로 체육활동과 문화체험활동으로 이뤄지고, 학습시간은 주로 학교숙제를 도와주는 시간으로 구성됨.

□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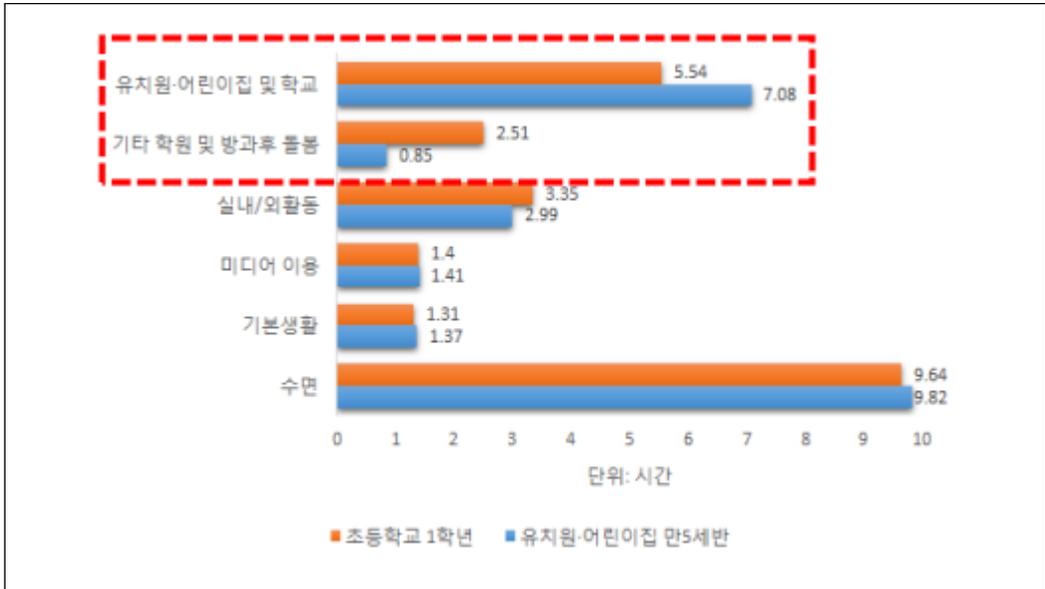
- 방과후 돌봄서비스는 문부과학성의 '방과후 아동 교실 추진사업(초등학교 전 학년 대상)'과 후생노동성의 '방과후 아동 건전육성사업(방과후 아동 클럽,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으로 구분됨(김지영, 2013).

- 방과후 아동 교실은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방과후나 주말에 초등학교의 빈 교실을 활용하여 취학 아동을 위한 방과후 활동의 거점을 만드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음.
- 방과후 아동클럽 역시 방과후나 주말의 초등학교 빈 교실을 활용하여 맞벌이 부부의 자녀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되었고 서비스의 절반 이상이 아동관 및 공민관의 지역시설을 이용함.
- 도도부현에서 문부과학성 담당하에 방과후 사업의 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방과후 아동 교실과 방과후 아동 클럽을 연대하여 사업하고 있음.

4 방과후 돌봄에 대한 정책 수요와 과제

가. 아동의 초등학교 입학 후 가정생활 및 어머니의 근로조건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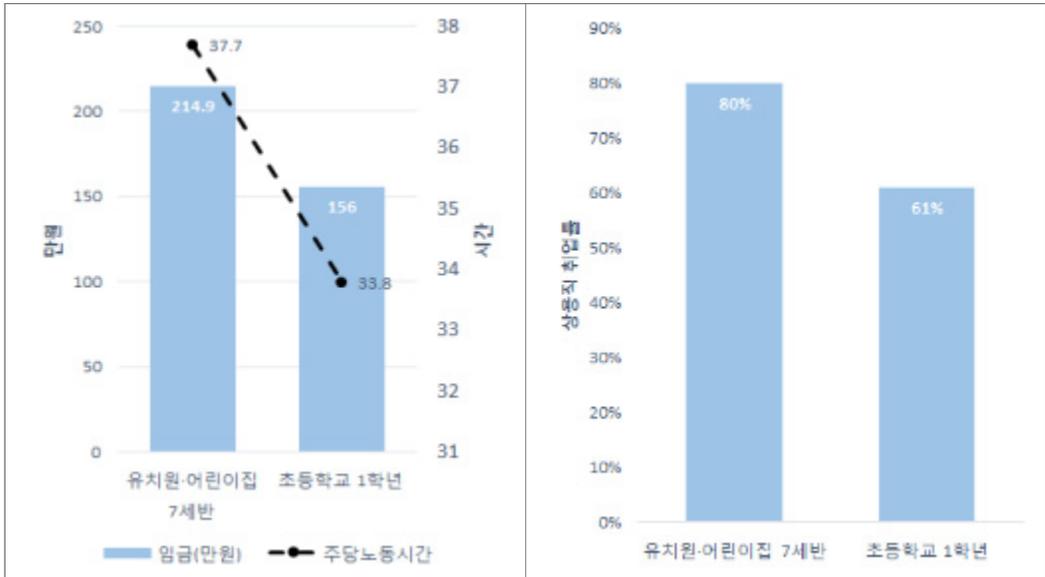
- 아동의 초등학교 입학 이후 대부분의 학부모는 방과후 돌봄의 어려움을 경험함.
 - 초등학교 1~2학년의 주당 수업 시수는 주요 OECD 국가에 비해 현저하게 적은 편임 (백경선, 2013).
 - 유치원·어린이집 만 5세반 아동의 경우 기관 이용 시간이 평균 7.08시간인 반면, 초등학교 입학 후에는 학교에 머무는 시간이 1.5시간 감소한 평균 5.54시간으로 나타남(그림 3 참조).
 - 자녀의 이른 하교에 따른 돌봄 공백의 발생으로 인해 초등학교 1~3학년 자녀를 둔 20~40대 직장여성 3만 1,789명이 회사를 떠난 것으로 나타남(중앙일보 2016. 3. 21).
 - 초등 저학년 10명 중 1명은 성인 보호자의 적절한 돌봄 없이 주당 9시간 이상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남(임혜정, 2017).



주: 유치원·어린이집 만5세반은 2014년, 초등학교 1학년은 2015년에 동일한 아동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자료: 김은실·배윤진·조숙인·이예진·송신영·임준범·박은영·김신경·김은정(2016).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16(한국 아동패널 II). 육아정책연구소. p.255.

그림 3 | 초등학교 입학 후 아동의 일과시간 변화

-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이 취업모의 경제활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시기는 방과후 돌봄 문제를 비롯하여 각종 학교행사나 학부모 모임 등 정보수집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들이 요구되기 때문에 어머니의 취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한국아동패널 분석에 따르면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은 취업모의 임금수준, 노동시간, 상용직 취업률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전(7세반)보다 입학 후 취업모의 월임금은 60만원, 주당 노동 시간은 4시간, 상용직 취업률은 20% 정도 감소함(그림 3 참조).



자료: 이재희·김근진·엄지원(2017). 초등자녀 양육지원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p.116.

| 그림 4 | 취업모의 자녀 연령에 따른 임금, 노동시간, 상용직 취업확률 변화

나. 부모의 방과후 돌봄서비스에 대한 인식 및 요구사항

-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의 심층면담³⁾ 결과, 유치원·어린이집에 보낼 때보다 하교시간이 빨라졌기 때문에 시간 공백을 채우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자녀가 혼자 있지 않도록 학원을 보낸다는 의견이 많았음.

“아이들끼리 있거나... 최소한 혼자있는 시간을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편이고 애들을 혼자 두지 않기 위해서 학원을 보내는 경우도 있어요”(읍면, 전업주부)

“유치원이면 두시에 수업이 끝나도 다섯시까지의 돌봄 오후에는 돌봄을 이용할 수 있다고 치지만 학교는 그게 거의 없고 딱 정확한 시간에 끝나서 아이가 학교를 나오기 때문에 그 때 내가 그 시간에 가서 아이를 픽업해 오지 않으면 우리 아이는 방치가 되는 거거든요”(대도시, 휴직 중인 전업주부)

3) 부모에 대한 심층면접은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어머니 6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음. 외별이는 31명, 맞벌이는 29명이었으며, 대도시 20명, 중소도시 19명, 읍면지역 21명이었음. 심층면접은 2017년 7월부터 8월까지 진행하였음.

- 방과후 수업의 경우 인기가 많은 강좌의 시간이 서로 겹쳐서 듣고 싶은 것을 수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음. 또한 방과후 수업은 주로 분기별로 재추첨을 하고 선착순으로 신청하기 때문에 연속적인 학습이 거의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하였음.

“매번 3개월에 1번씩 분기별로 방과후를 신청하는데 그것도 선착순으로...신청방법 매번 달라지고 맨날 오류 생기고..아무튼 아주 문제가 많아”(중소도시, 전업주부)

“조금 돈이 추가되더라도 조금 더 많이 배울수 있는 수업시간을 조금 더 늘려줬으면...왜냐하면 학원보내고 차태우고 이렇게 힘드니까 학교에서 모든걸 다 했으면 하는데 솔직히...질이 좋지 않아요. 학원처럼 일주일에 두세번 하는것도 아니고,차라리 나는 사교육 그냥 하나를 시키더라도 그걸 제대로 시키는게 낫겠다”(읍면, 전업주부)

- 초등돌봄교실의 공급이 부족하고 자격조건이 까다로워 실제로 혜택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음.

“방과후가 선착순이라서.. 인기있는 방과후 수업은 직장 다니는 엄마들은 신청할 수가 없어요. 정말 학교에 열성적인 집에 있는 엄마들이 그 시간에 맞춰서 접수를 해야지 가능해요. 돌봄 같은 경우도 끝나는 시간이 너무 빨리 끝나는거예요. 이 동네에서 일을 해도 그 시간에 못 맞추는거예요. 현실적이지가 않은거 같아요. 차라리 그냥 학원을 두 개 더 돌려서 여섯시 반에 집에 오게 한다면가 그게 훨씬 현실적이더라고요.”(읍면, 퇴직 후 전업주부)

“돌봄은 들어가려면 일단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무조건 4대 보험 되는 직장에서 일을 해야 재직증명서가 나오지 알바같은거를 하면 그런건 없잖아요..근데 알바하는 엄마들도 되게 많거든요. 조금이라도 알바해서 애들 학원비라도 벌고 싶은 엄마들이 많은데 알바를 못하게 되면...그리고 인원수가 제한되어 있는것도 문제인거 같아요”(중소도시, 전업주부)

5 방과후 돌봄 정책 추진 방향

가. 방과후 돌봄서비스 활성화 방안

- 방과후 돌봄서비스 공급에 대한 명확한 목표설정과 성과관리가 필요함.
 - 현재 추진되고 있는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의 정책 목표 이행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목표설정, 성과관리지표 체계 개발과 이행 모니터링이 필요함.
 - 현재 성과관리지표라고 볼 수 있는 돌봄교실 운영 교실 수, 만족도 조사 점수, 지역 돌봄 협의체 구축 수 등을 구체화해야함.
- 방과후 돌봄에 대한 학교와 지자체 협력 강화
 - 프랑스, 독일, 스웨덴 등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 방과후 돌봄을 지자체 및 지역사회에서 책임지고 운영하고 있고 성공적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운영 모델을 도입해야함.
 - 학교-지자체 협력 모델은 학교는 공간을 대여해 주고 지자체와 지역 사회는 학교 공간을 활용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임.
 - 방과후 돌봄서비스의 공급을 확장하기 위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지자체 협력 모델을 개발하여 공급할 필요가 있음.

나. 방과후 돌봄서비스 내실화 방안

- 방과후 돌봄서비스에 대한 통합·관리 행정전달체계 확립이 필요함.
 - 다부처에서 다양한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지만 각 돌봄서비스 목적 재원, 대상, 운영방안, 전달체계가 상이함.
 - 방과후 돌봄서비스의 수요조사, 신청절차가 돌봄서비스 유형에 따라 상이하여 학부모들이 불편을 겪고 있음.
 - 현재 돌봄협의체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지만 그 기능과 역할이 제한되어 있어 전달·관리체계의 통합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
 - 다부처에서 이뤄지고 있는 방과후 돌봄서비스 신청과 선정, 관리 통로를 단일화하여

수요와 공급을 체계적으로 산출해야함.

- 방과후 돌봄서비스에 대한 통합적인 지역단위 조사 등을 활용하여 수요조사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장기적으로는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모든 방과후 돌봄서비스의 통합 관리가 필요함.
- 방과후 돌봄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 돌봄 교사, 방과후 교사의 자질에 대한 우려가 많기 때문에 교사의 질 관리가 향후 이뤄져야 함.
 - 놀이 등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많기 때문에 돌봄교실과 방과후 교실의 연계, 예체능 방과후 전문 교사 양성 등을 통해 방과후 돌봄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 또한 초등돌봄교실 등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이 높아서 교사가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교사의 확충 및 반편성 개편 등을 고려해야함.
- 초등돌봄교실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안전관리 체계 마련
- 초등돌봄교실은 초중등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2015-74호)을 근거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학교 내의 초등돌봄교실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는 미약함.
 - 지역아동센터의 방과후 아동지도사업은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한정되고 청소년기본법(2017.7.26. 시행, 법률 제14839호) 제 48조의 2(청소년 방과후 활동 지원)에 대한 조항은 만 9세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초등돌봄교실을 주로 이용하는 초등 저학년 아동은 대상에서 제외됨.
 - 초중등 교육법 개정을 통해 법적근거를 마련할 계획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아동기본법 제정과 동시에 아동 방과후 돌봄에 대한 국가 지원이 기본법 안에 포함되어야 함.
 - 이와 더불어 방과후 돌봄서비스 등이 지자체와 협력하는 모델 등이 향후 개발될 때 방과후 돌봄서비스 안전사고 예방 관리체계를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참고문헌 |

- 교육부 보도자료(2016.6.23). 행복교육과 일가정 양립의 핵심정책, 초등돌봄교실. p.1
- 교육부 보도자료(2016.5.3.) 방과후학교 활성화 방안(안). p.2.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7). 2017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
- 교육통계서비스. 2004~2016년 초등학교 연도별 추이 http://kess.kedi.re.kr/stats/school?menuCd=0101&cd=943&survSeq=2016&itemCode=01&menuId=m_010105&uppCd1=010105&uppCd2=010105&flag=B에서 2017년 6월 27일 인출함.
- 김은설·배운진·조숙인·이예진·송신영·임준범·박은영·김신경·김은정(2016).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16(한국아동패널 II). 육아정책연구소
- 김지영(2013.8.25.). 일본의 초·중·고등학생 돌봄 프로그램 현황.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 http://edpolicy.kedi.re.kr/frt/boardView.do?nTbBoardSeq=&strCurMenuId=54&nTbCategorySeq=10060&pageIndex=6&pageCondition=10&nTbBoardArticleSeq=150332&searchTopic=&searchObject=&searchCondition_D=36&searchKeyword_SD=&searchKeyword_ED=&searchCondition_W=6&searchKeyword_W=에서 2017년 10월 23일 인출함.
- 백경선(2013). 교육과정 편제 및 수업시수에 대한 국제비교 연구, 교육부.
- 보건복지부(2016). 전국 지역아동센터 통계조사 보고서(2016년 12월 기준).
- 보건복지부(2017). 2017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 아이돌봄서비스 주요통계(n.d.). <https://www.idolbom.go.kr/intro/index2.go>에서 2017년 5월 23일 인출함.
- 여성가족부(2015). 가족실태조사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54&tblId=DT_MOGE_1510001022&conn_path=I3에서 2017년 10월 23일 인출함.
- 여성가족부(2016). 내부자료.
- 여성가족부(2017). 2017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 유희정·홍승아·김지혜·이슬·동제연·이향란(2014). 취업여성의 직종 및 고용형태에 따른 자녀 양육지원정책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이재희·김근진·엄지원(2017). 초등자녀 양육지원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임혜정(2017). 패널순서형로짓모형을 이용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의 방과후 돌봄공백 영향 요인분석, 보건사회연구, 37(4), 510-534.

- 정수정(2013). 독일의 초·중·고등학생 돌봄 프로그램 현황. 2013.08.25. 한국교육개발원 국외 교육동향.
- 조진일·김홍원·최형주·손종렬·신화주·안성현·정유진(2015). 초등돌봄교실의 환경 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p.22.
- 중앙일보(2016.3.21). 초등생 돌보려... 직장 떠난 엄마 3만 명. <http://news.joins.com/article/19753959>에서 2017년 3월 3일 인출함.
- 최지선(2013). 프랑스의 초·중·고등학생 돌봄 프로그램 현황. 2013.08.25. 한국교육개발원 국외교육동향.
- 한국교육개발원(2016). 2013년 해외교육동향.
- OECD(2016). PF4.3: Out-of-school-hours care services(Updated: 2016.12.07.).

이슈페이퍼 2018-11

저출산 분야 자녀돌봄 지원의 생애주기별 정합성 진단 및 향후 과제

PART 04

유해미

1. 문제 제기
2. 저출산 분야 자녀돌봄 지원 현황
3. 자녀돌봄 지원제도의 이용 경험 및 수요
4. 향후 과제

참고문헌

저출산 분야 자녀돌봄 지원의 생애주기별 정합성 진단 및 향후 과제*

유해미 연구위원

| 요약 |

- 지난 10여년간 주력해 온 자녀돌봄 지원 분야를 중심으로 자녀양육 단계별 지원이 수요자의 욕구에 부합하는지를 진단하고, 해당 요구에 부합하도록 지원내용 및 지원수준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 자녀돌봄 지원은 영유아기의 보육교육비 지원에 주력하였으나, 돌봄지원 수요는 학령기 전반에 걸쳐 있고, 특히 건강관리 및 의료지원 분야는 전 양육 시기에 걸쳐 높은 수요를 보이므로 우선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장애 관련 돌봄서비스 지원은 전(全)계층 지원 확대에 대한 수요자의 동의 비율이 80%를 육박하므로 지원대상을 점차 확대해야 함.
- 원하는 시기에 희망하는 수대로 자녀를 출산 및 양육할 수 있도록 출산 및 신생아기는 산모 도우미 지원대상의 확대, 영유아기는 건강관리 및 의료비 지원, 초등학교는 방과후 돌봄의 접근성 제고, 학령기는 교육비 지원 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함.

1 문제 제기

- 정부의 저출산 대응은 생애주기별로 빈틈없이 추진되어야 하며, 이때 자녀 양육기의 돌봄 분야는 우선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지난 10여 년간 저출산 대응에서 가장 주력해 온 자녀돌봄 지원 분야를 중심으로 각 양육 단계별로 수요자의 욕구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를 진단하여 정책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주요 정책들이 자녀양육 단계별로 수요자의 욕구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간과된 돌봄지원 욕구는 없는지를 규명해야 함.

* 본 원고는 「유해미·최효미·강신혜(2017). 저출산 대응정책의 생애주기별 정합성 분석 연구: 자녀 양육기의 돌봄 분야를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의 내용을 토대로 구성함.

- 이를 위해 자녀양육의 시기(출산 및 신생아기, 영유아기, 초등학교령기, 중고등학교령기) 별로 돌봄지원 사업 현황을 살펴보고 현행 돌봄지원의 내용 및 대상이 적합한지를 분석함¹⁾.
 - 수요자의 돌봄지원 요구 수준에 맞는 지원대상이 포함되고, 해당 욕구 수준에 맞는 소득기준 등 지원대상 기준이 설정되었는지를 규명함.
 - 저출산 대응 노력은 중앙정부 이외에도 지방정부의 노력이 동시에 요구되므로, 지방 정부의 저출산 대응 노력을 포괄하여 다룸.

2 저출산 분야 자녀돌봄 지원 현황

- 중앙정부의 출산 및 신생아기부터 중고등학교령기에 이르는 돌봄지원 사업과 지방정부의 저출산 대응 분야 출산 및 육아지원 사업 현황을 종합하여 정합성 측면에서 주요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가. 중앙정부의 자녀돌봄 지원사업 현황

- 2017년 기준으로 자녀 돌봄지원은 영유아기에 집중되어 사업수가 가장 많고, 재정정 투자 비중도 가장 높음(표 1 참조).
 - 영유아기에는 아동 관련 수당, 보육교육서비스, 가정 내 양육지원(시간제보육 등), 휴가휴식제도와 근로시간 단축 및 시간선택제 및 관련 기업 지원, 건강관리 및 의료지원 등과, 저소득층 대상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과 영양플러스 사업, 장애아 가족을 대상으로 돌봄 및 휴식지원 서비스, 부모 상담, 언어발달 및 발달재활서비스가 제공됨.

1) 이 원고는 육아정책연구소 기본과제, 「유해미·최효미·강신혜(2017). 저출산 대응정책의 생애주기별 정합성 분석 연구: 자녀양육기의 돌봄 분야를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의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재구성함.

〈표 1〉 자녀양육 단계별 중앙정부 주요사업(2017)

단위: 백만 원, %

구분 사업명	양육 시기별				2017년 예산	비중
	0~2세	3~5세	6~12세	13~16세		
임신·출산 진료비					1,200	0.02
신생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12,400	0.20
신생아·산모건강관리지원사업					38,800	0.64
고위험군 산모신생아지원					13,900	0.23
가정양육수당(농어촌, 장애아동)					1,224,200	20.18
시간제보육					8,800	0.15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15,085	0.25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23,000	0.38
0~5세 보육료 지원					3,129,200	51.58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					1,000	0.02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					182	0.00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중앙)					1,220	0.02
12세 이하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244,200	4.03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92,500	1.52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54,572	0.90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18세)	147,200	2.43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9세~)		18,026	0.30
초등돌봄교실					588,600	9.70
방과후 학교					130,500	2.15
방과후 수강권				(~18세)	194,700	3.21
교육급여					127,576	2.10
합계					6,066,861	100.0

자료: 유해미·최효미·강신혜(2017). 저출산 대응정책의 생애주기별 정합성 분석 연구: 자녀양육기의 돌봄 분야를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p.99에서 재인용
보건복지부(2016) ; 교육부(2016) ; 여성가족부(2017) ; 교육부 홈페이지.

-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양육 단계별로 보편적 지원은 가정양육수당과 0~5세 보육료 지원, 12세 이하 국가예방접종 지원 등에 한정됨.
- 영유아 건강관리 및 의료지원 부문에서 세부 사업의 적용기준은 중위소득 40%에서 80%까지 상이함.

〈표 2〉 자녀돌봄 분야 주요사업의 지원대상 소득기준(2017)

양육 단계	구분		소득기준		
	지원내용	선별	보편		
산모 및 신생아	임신·출산 진료비 일부 지원		○		
	아동입원비 일부 지원		○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등 영유아 의료비 지원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			
	신생아 난청진단 의료비 지원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60% 이하			
	신생아·산모건강관리지원사업	중위소득 80% 이하			
0~2세아	가정양육수당(농어촌, 장애아동)		○		
	시간제보육		○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중위소득 60% 이하(가형)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중위소득 40%			
0~5세아	0~5세 보육료 지원		○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	중위소득 40%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 지원	건강보험료 하위 30%			
	영양플러스 사업	중위소득 80%			
0~12세아	12세 이하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중위소득 52%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중위소득 60% 이하(가형)			
	아동통합서비스	취약계층			
	장애아 언어발달 지원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20%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서비스		○		
6~12세아	초등돌봄교실	저소득층 가구 우선			
	방과후 학교				
9~15세아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지원				
	방과후 수강권				
6~17세아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학교급식		취약계층		
	급식비 지원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이하			
0~17세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발달재활서비스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자료: 유해미·최효미·강신혜(2017). 저출산 대응정책의 생애주기별 정합성 분석 연구: 자녀양육기의 돌봄 분야를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p.102에서 재인용.

나. 지방정부의 자녀돌봄 지원 사업 현황²⁾

- 2016년 기준 전국 시·도별 출산·돌봄지원 분야 공통사업의 예산 총액은 8조 7,148억 원이며, 그 중 지방비 예산은 3조 8,872억 원으로 해당 투자는 영유아기에 집중되어 있음(표 3 참조).
- 범주별로는 보육·교육서비스 지원(누리과정 지원금 포함)이 5조 6,664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65.0%를 차지하며, 아동 관련 수당 지원이 1조 6,604억 원으로 19.1%로 나타남.
- 초등학교 학령기 자녀의 경우는 방과후 돌봄지원이 주를 이루며, 해당 예산은 4,561억 원(5.2%)으로 나타남.

〈표 3〉 전국 시·도별 출산·돌봄지원 분야의 공통사업 예산(2016)

단위: 개, 억 원, %

생애주기	지원 분야	사업수	돌봄 분야 예산 총액		지방비 예산	
			예산 총액	분야별 비중	지방비 예산	분야별 비중
	전체	398	87,148	100.0	38,872	100.0
출산 및 신생아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41	778	0.9	422	1.1
	신생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36	250	0.3	142	0.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50	682	0.8	260	0.7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	9	75	0.1	32	0.1
	기타	8	156	0.2	78	0.2
영유아기 자녀 : 0~5세아	아동관련 수당 지원	32	16,604	19.1	5,670	14.6
	보육·교육서비스	75	56,664	65.0	25,984	66.8
	돌봄시간 지원	11	206	0.2	30	0.1
	건강관리 및 의료지원	30	3,127	3.6	1,789	4.6
	기타	65	4,026	4.6	1,097	2.8
초등학교 학령기 자녀 : 6~11세아	방과후 돌봄	36	4,561	5.2	3,361	8.6
	기타: 취약계층 지원	4	18	0.0	5	0.0
중고등 학령기 자녀 : 12~17세아	교육비 지원	1	1	0.0	0	0.0

자료: 유해미·최효미·강신혜(2017). 저출산 대응정책의 생애주기별 정합성 분석 연구: 자녀양육기의 돌봄 분야를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p.115에서 재인용.

보건복지부(2017).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재분석.

2) 이하 자료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재분석한 결과임.

- 2016년 기준 기준 전국 시·도별 출산·돌봄지원 분야 자체사업 예산은 총 1조 8,189억 원이며, 이들 중 영유아 보육·교육서비스(누리과정 지원금 포함) 지원 예산이 1조 916억 원(60.0%)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 영유아기 돌봄지원 분야의 자체사업 비중은 공통사업(65.0%)에 비해 적은 반면, 출산 및 신생아 지원 예산은 9.9%로 늘어남.
 - 사업 수가 가장 많은 출산 및 신생아 지원 사업 중 출산지원금이나 출산용품 등의 지원에 8.2%가 투자됨.

〈표 4〉 전국 시·도별 출산·돌봄지원 분야 자체사업 예산(2016)

단위: 개, 억 원, %

생애주기	지원 분야	사업수	돌봄 분야 자체사업 예산	
			예산 총액	분야별 비중
	전체	908	18,189	100.0
출산 및 신생아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51	21	0.1
	신생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30	33	0.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186	253	1.4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	3	0	0.0
	기타(출산지원금, 출산용품 등)	241	1,500	8.2
	소계	511	1,807	9.9
영유아기 자녀 : 0~5세아	아동관련 수당 지원	68	417	2.3
	세제지원	2	0	0.0
	보육교육서비스	40	10,916	60.0
	돌봄시간 지원	58	76	0.4
	건강관리 및 의료지원	35	50	0.3
	기타	88	411	2.3
	소계	291	11,870	65.3
초등학령기 자녀 : 6~11세아	현금/현물 지원	18	2,164	11.9
	방과후 돌봄	37	1,684	9.3
	기타 : 취약계층 지원	31	242	1.3
	소계	86	4,090	22.5
중고등 학령기 자녀 : 12~17세아	교육비 지원	16	421	2.3

자료: 유해미·최효미·강신혜(2017). 저출산 대응정책의 생애주기별 정합성 분석 연구: 자녀양육기의 돌봄 분야를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p.120에서 재인용.

보건복지부(2017).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재분석.

3 자녀돌봄 지원제도의 이용 경험 및 수요

- 예비부모 및 자녀를 둔 가구의 부모 총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자녀돌봄 지원 정책 및 제도의 이용 경험 및 만족도와 도움 정도, 그리고 각 양육 단계별 돌봄지원의 필요도와 추가 지원요구를 분석한 바는 다음과 같음.

가. 자녀돌봄 지원 제도의 이용 경험 및 도움 정도 인식

- 자녀양육 단계별로 돌봄지원 정책 및 제도의 이용 경험과 이용자에 한하여 도움 정도를 5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토록 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출산 및 신생아기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의 유경험율은 45.9%로 약 절반 수준임.
 - 제도 이용 경험이 있는 부모가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한 사업은 신생아·산모도우미 지원으로 '매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42.2%이고 평균 4.12점으로 조사됨.

〈표 5〉 출산·신생아 지원제도의 이용 경험 및 도움 정도

단위: %(명), 점

구분	이용 여부		도움 정도					계(수)	평균 (5점)
	이용 비율	전체 (수)	전혀 도움 안됨	도움 안됨	보통	도움 됨	매우 도움됨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45.9	(900)	0.7	4.8	23.5	38.5	32.4	1000(413)	3.97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지원	13.6	(900)	0.0	5.7	24.6	41.8	27.9	1000(122)	3.92
신생아 난청진단 의료비 지원	10.9	(900)	3.1	10.2	17.3	40.8	28.6	1000(98)	3.82
신생아·산모 도우미 지원	12.9	(900)	0.9	5.2	17.2	34.5	42.2	1000(116)	4.12
고위험 신생아·산모 지원	4.3	(900)	2.6	5.1	30.8	30.8	30.8	1000(39)	3.82

주: 평균 점수는 '전혀 도움 되지 않음' 1점 ~ '매우 도움됨'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유해미·최효미·강신혜(2017). 저출산 대응정책의 생애주기별 정합성 분석 연구: 자녀양육기의 돌봄 분야를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p.152에서 재인용한 표이며, 유해미 외(2017) 연구의 '자녀돌봄 지원의 만족도와 요구 조사' 결과임.

□ 영유아기 자녀

- 12세 이하 국가예방접종 지원과 자녀세액공제가 각각 68.7%와 62.9%로 높은 수혜율을 나타냈으며, 그 다음으로는 가정양육수당 지원 52.6%, 영유아 건강검진 55.3%, 0~5세 보육료 지원 47.6% 순임
- 제도 및 사업별로 이용경험이 있는 부모가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한 사업은 12세 이하 국가예방접종 지원으로 '매우 도움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50.8%, 평균 4.37점으로 조사됨.

〈표 6〉 영유아기 자녀돌봄 지원 제도 및 정책의 이용 경험 및 도움 정도

단위: %(명), 점

구분	이용 여부		도움 정도						
	이용 비율	전체 (수)	전혀 도움 안됨	도움 안됨	보통	도움됨	매우 도움됨	계(수)	평균 (5점)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5.8	(900)	0.0	1.9	28.8	46.2	23.1	100(52)	3.90
시간제보육	19.6	(900)	1.1	2.8	22.7	37.5	35.8	100(176)	4.04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8.2	(900)	1.4	2.7	20.3	41.9	33.8	100(74)	4.04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52.6	(900)	0.4	1.9	12.9	34.2	50.5	100(473)	4.33
가정양육수당 지원	47.6	(900)	0.2	1.6	12.9	38.6	46.7	100(428)	4.30
0~5세 보육료 지원	12.9	(900)	2.6	2.6	13.8	38.8	42.2	100(116)	4.16
3~5세 누리과정 지원	7.3	(900)	3.0	12.1	31.8	37.9	15.2	100(66)	3.50
시간연장형보육 지원	3.4	(900)	0.0	12.9	25.8	48.4	12.9	100(31)	3.61
육아종합지원센터 가정양육지원	7.9	(900)	1.4	4.2	23.9	39.4	31.0	100(71)	3.94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37.4	(900)	0.0	5.0	19.9	31.2	43.9	100(337)	4.14
드림스타트 사업	3.6	(900)	0.0	3.1	21.9	50.0	25.0	100(32)	3.97
영양플러스 사업	8.1	(900)	1.4	5.5	28.8	28.8	35.6	100(73)	3.92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55.3	(900)	1.0	3.0	18.1	36.5	41.4	100(498)	4.14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7.8	(900)	1.4	4.3	24.3	42.9	27.1	100(70)	3.90
12세 이하 국가예방접종 지원	68.7	(900)	0.0	2.3	9.4	37.5	50.8	100(618)	4.37
자녀세액공제	62.9	(900)	0.4	3.7	15.0	38.3	42.6	100(566)	4.19
교육비 세액공제	51.2	(900)	0.4	4.1	16.7	37.5	41.2	100(461)	4.15

주: 평균 점수는 '전혀 도움 되지 않음' 1점 ~ '매우 도움됨'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유해미·최효미·강신혜(2017). 저출산 대응정책의 생애주기별 정합성 분석 연구: 자녀양육기의 돌봄 분야를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p.154에서 재인용한 표이며, 유해미 외(2017) 연구의 '자녀돌봄 지원의 만족도와 요구 조사' 결과임.

□ 학령기 자녀

- 방과후 학교의 이용율이 57.5%로 가장 높고 급식비 지원이 35.7%로 조사됨.
- 제도 이용 경험이 있는 부모가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한 사업은 급식비 지원과 학교 유유급식 지원이 각각 평균 4.36점, 4.35점이며, 그 다음으로는 초등돌봄교실과 지역아동센터 운영으로 ‘매우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율이 각각 42.1%와 40.0%로 조사됨.

〈표 7〉 학령기 자녀돌봄 지원 제도 및 정책의 이용 경험 및 도움 정도

단위: %(명), 점

구분	이용 여부		도움 정도					계(수)	평균 (5점)
	이용 비율	전체 (수)	전혀 도움 안됨	도움 안됨	보통	도움됨	매우 도움됨		
초등돌봄교실	20.2	(600)	1.7	1.7	15.7	38.8	42.1	100.0(121)	4.18
방과후 학교	57.5	(600)	1.2	2.9	21.7	42.6	31.6	100.0(345)	4.01
방과후 수강권 지원	9.8	(600)	3.4	3.4	11.9	45.8	35.6	100.0(59)	4.07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7.0	(600)	0.0	7.1	16.7	52.4	23.8	100.0(42)	3.93
지역아동센터 운영	7.5	(600)	0.0	6.7	11.1	42.2	40.0	100.0(45)	4.16
급식비 지원	35.7	(600)	0.0	1.9	10.7	37.4	50.0	100.0(214)	4.36
학교 유유급식 지원	28.0	(600)	0.0	1.8	10.7	38.1	49.4	100.0(168)	4.35

주: 평균 점수는 ‘전혀 도움 되지 않음’ 1점 ~ ‘매우 도움됨’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유해미·최효미·강신혜(2017). 저출산 대응정책의 생애주기별 정합성 분석 연구: 자녀양육기의 돌봄 분야를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p.159에서 재인용한 표이며, 유해미 외(2017) 연구의 ‘자녀돌봄 지원의 만족도와 요구조사’ 결과임.

□ 근로자 대상 기업의 돌봄지원 제도

- 근로자 대상 기업의 돌봄지원 제도의 이용율은 전반적으로 저조한 가운데, 출산전 후휴가 23.3%, 배우자 출산휴가 22.7%, 육아휴직제도 18.3% 순으로 조사됨.
- 이들 제도가 매우 도움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육아휴직 65.5%, 출산전후휴가 53.8%,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48.7% 순으로 조사됨.

〈표 8〉 근로자 대상 자녀돌봄 지원제도의 이용 경험 및 도움 정도

단위: %(명), 점

구분	이용 여부		도움 정도					계(수)	평균 (5점)
	이용 비율	전체 (수)	전혀 도움 안됨	도움 안됨	보통	도움됨	매우 도움됨		
출산전후휴가제도	23.3	(900)	0.0	3.3	9.5	33.3	53.8	1000(210)	4.38
배우자 출산휴가	22.7	(900)	2.5	4.4	24.5	25.5	43.1	1000(204)	4.02
육아시간(수유시간) 허용	4.2	(900)	0.0	2.6	18.4	31.6	47.4	1000(38)	4.24
육아휴직제도	18.3	(900)	0.0	0.0	11.5	23.0	65.5	1000(165)	4.54
아빠의 달 인센티브 제도	1.8	(900)	0.0	6.3	25.0	37.5	31.3	1000(16)	3.94
가족돌봄 휴직제도	2.4	(900)	0.0	0.0	31.8	40.9	27.3	1000(22)	3.9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4.3	(900)	0.0	0.0	23.1	28.2	48.7	1000(39)	4.26
시간선택제 일자리 전환 지원	2.6	(900)	0.0	0.0	34.8	30.4	34.8	1000(23)	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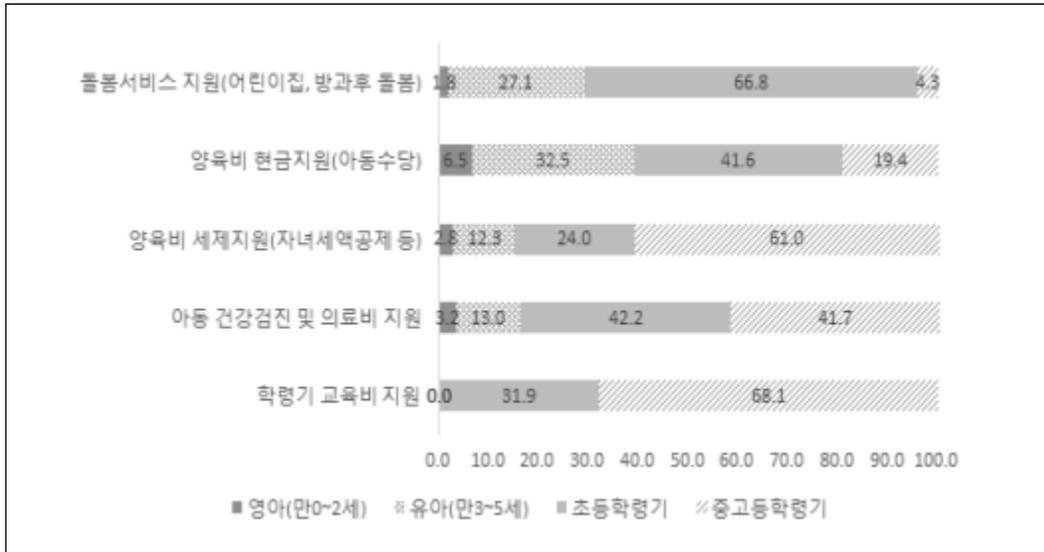
주: 평균 점수는 '전혀 도움 되지 않음' 1점 ~ '매우 도움됨'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유해미·최효미·강신혜(2017). 저출산 대응정책의 생애주기별 정합성 분석 연구: 자녀양육기의 돌봄 분야를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p.161에서 재인용한 표이며, 유해미 외(2017) 연구의 '자녀돌봄 지원의 만족도와 요구 조사' 결과임.

나. 자녀돌봄 지원 요구

- 주요 돌봄지원 정책 및 제도별로 양육단계에 따라 필요한 시기는 돌봄서비스와 양육비 현금지원은 초등학교, 양육비 세제지원과 교육비 지원은 학령기 전반에 걸쳐 높은 수요를 보임.
 - 각 부문별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돌봄서비스는 초등학교 66.8%, 양육비 현금지원은 초등학교 41.6%, 양육비 세제지원과 학령기 교육비 지원은 중학교에 각각 61.0%와 68.1%로 가장 높고, 아동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은 초등학교 42.2%, 중학교 41.7%로 유사한 응답율을 나타냄.

단위: %



자료: 유해미·최효미·강신혜(2017). 저출산 대응정책의 생애주기별 적합성 분석 연구: 자녀양육기의 돌봄 분야를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p.164에서 재인용한 그림이며, 유해미 외(2017) 연구의 '자녀돌봄 지원의 만족도와 요구 조사' 결과임.

[그림 1] 양육 단계별 자녀돌봄 지원의 필요도

- 현행 중앙정부의 세부 지원별로 출산 및 양육 시의 필요도를 7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는 영유아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이 평균 6.2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그 다음으로는 양육비 세제지원 6.17점, 학령기 교육비 지원 6.12점, 임신 및 출산 관련 의료비 지원과 영유아 보육료 지원 공히 6.06점, 초등 방과후 돌봄 지원 6.05점 순임.

〈표 9〉 출산·양육 시 자녀돌봄 제도 및 정책의 필요도 인식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필요 하지 않음 ①	②	③	보통			매우 필요함 ⑦	계(수)	평균 (7점)
				④	⑤	⑥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지원	0.2	0.6	1.5	9.7	17.0	20.7	50.4	100.0(1,200)	6.06
신생아·산모도우미 지원	0.3	0.7	2.3	11.4	17.6	22.9	44.9	100.0(1,200)	5.94
출산용품 지원	0.9	1.2	3.6	18.1	21.4	20.7	34.2	100.0(1,200)	5.57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0.8	1.1	3.6	14.9	21.6	21.8	36.3	100.0(1,200)	5.66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1.0	1.0	2.0	10.9	21.5	28.0	35.6	100.0(1,200)	5.77
일시돌봄(시간제보육) 지원	0.3	0.8	2.7	12.6	22.8	24.8	36.1	100.0(1,200)	5.75
양육비 현금지원	0.8	1.1	2.8	10.8	14.8	22.0	47.9	100.0(1,200)	5.95
양육비 세제지원	0.0	0.3	1.7	7.9	13.8	23.5	52.9	100.0(1,200)	6.17
영유아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	0.1	0.5	0.8	6.8	12.3	23.8	55.8	100.0(1,200)	6.25
영유아 보육료 지원	0.5	0.8	1.5	9.0	15.2	24.0	49.1	100.0(1,200)	6.06
초등 방과후돌봄 지원	0.3	0.6	1.1	9.3	16.5	25.5	46.8	100.0(1,200)	6.05
학령기 교육비 지원	0.2	0.8	0.9	8.3	14.8	24.8	50.3	100.0(1,200)	6.12

주: 평균 점수는 '전혀 필요하지 않음' 1점 ~ '매우 필요함' 7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유해미·최효미·강신혜(2017). 저출산 대응정책의 생애주기별 적합성 분석 연구: 자녀양육기의 돌봄 분야를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p.169에서 재인용한 표이며, 유해미 외(2017) 연구의 '자녀돌봄 지원의 만족도와 요구 조사' 결과임.

-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을 위주로 출산 시 도움 정도에 대해서는 신생아 의료비 지원이 평균 5.94점(7점 만점)으로 가장 높은 수요를 보임.
 - 그 다음으로 출산에 매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아동수당 42.3%, 산후조리원 지원 36.8%,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29.6% 순임.
-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을 위주로 자녀양육 시 도움 정도에 대해서는 영유아 대상무로 독감 예방이 평균 6.04점(7점 만점)으로 가장 높은 수요를 보임.

〈표 10〉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의 출산 도움 정도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도움 되지 않음 ①	보통					매우 도움됨 ⑦	계(수)	평균 (7점)
		②	③	④	⑤	⑥			
출산지원금(일시금)	3.0	2.2	3.8	15.8	19.3	22.5	33.5	100.0(1,200)	5.48
출산기념품(출산용품) 지원	6.0	6.3	6.5	24.7	19.4	14.8	22.3	100.0(1,200)	4.79
아동수당(매월 지급)	1.3	1.8	2.7	13.8	16.3	22.0	42.3	100.0(1,200)	5.77
산후조리원 지원	2.4	2.5	2.7	14.9	20.6	20.2	36.8	100.0(1,200)	5.56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2.4	2.3	4.2	16.9	23.4	21.3	29.6	100.0(1,200)	5.39
모유수유 전문가 가정 파견	3.3	4.0	6.3	21.4	22.1	17.5	25.4	100.0(1,200)	5.09
유축기 대여	3.9	4.2	6.9	24.8	19.7	16.6	24.0	100.0(1,200)	4.98
신생아(0세아) 의료비 지원	1.0	1.2	2.7	8.5	17.5	23.4	45.8	100.0(1,200)	5.94

주: 평균 점수는 '전혀 도움 되지 않음' 1점 ~ '매우 도움됨' 7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유해미·최효미·강신혜(2017). 저출산 대응정책의 생애주기별 정합성 분석 연구: 자녀양육기의 돌봄 분야를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p.178에서 재인용한 표이며, 유해미 외(2017) 연구의 '자녀돌봄 지원의 만족도와 요구 조사' 결과임.

〈표 11〉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 자녀양육에의 도움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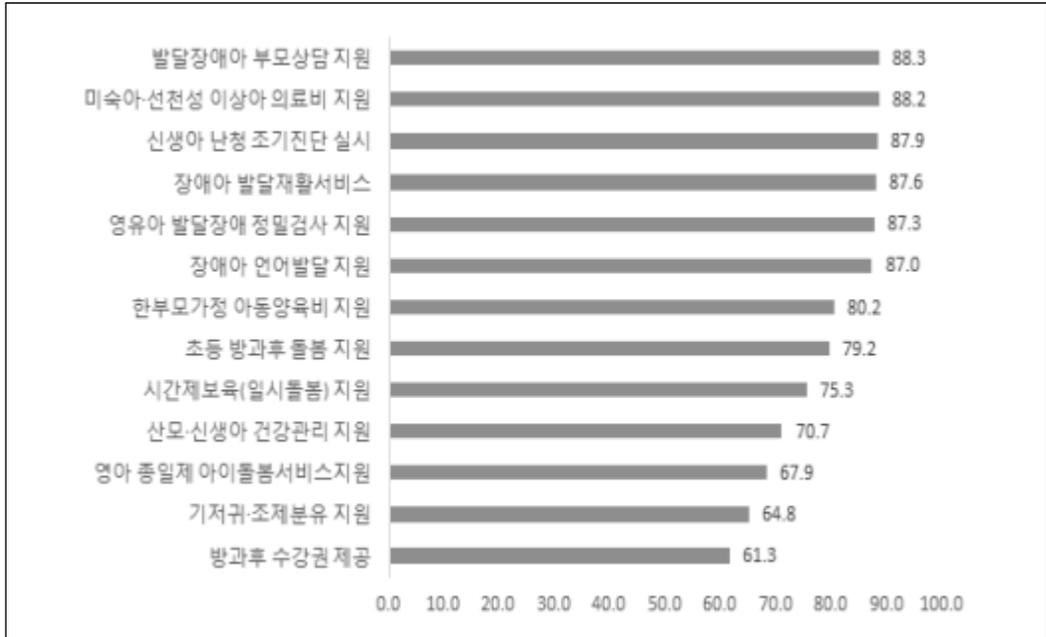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도움 되지 않음 ①	보통					매우 도움됨 ⑦	계(수)	평균 (7점)
		②	③	④	⑤	⑥			
신생아 안심보육료 지원	0.8	1.6	3.3	14.7	25.3	21.8	32.7	100.0(1,200)	5.58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0.5	0.8	1.8	11.6	20.3	24.3	40.6	100.0(1,200)	5.86
맞벌이가구 가사관리사 파견	1.0	2.3	2.6	15.7	19.7	22.1	36.8	100.0(1,200)	5.64
영유아 무료 독감 예방접종	0.1	0.8	1.9	9.0	16.6	24.3	47.3	100.0(1,200)	6.04
유모차(보행기 포함) 대여	1.3	3.2	4.9	23.3	22.0	20.8	24.5	100.0(1,200)	5.22
장난감 대여	1.2	3.2	4.8	24.0	22.3	20.7	24.0	100.0(1,200)	5.21
영유아 학습비 지원	1.0	1.7	3.8	14.4	22.5	25.0	31.7	100.0(1,200)	5.57
복스타트	0.9	2.3	3.7	18.8	25.6	22.4	26.3	100.0(1,200)	5.39
아동전문 건강센터 운영	0.6	1.3	3.1	15.7	20.2	26.0	33.2	100.0(1,200)	5.64
육아상담사 가정 파견	1.0	2.2	4.3	18.9	23.3	22.0	28.3	100.0(1,200)	5.40
아동 등하원(교) 서비스 제공	1.2	1.1	2.9	15.3	21.6	23.4	34.6	100.0(1,200)	5.64
다자녀 진료비 감면: 셋째 자녀	1.3	1.8	3.0	15.3	19.7	23.4	35.5	100.0(1,200)	5.62

주: 평균 점수는 '전혀 도움되지 않음' 1점 ~ '매우 도움됨' 7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유해미·최효미·강신혜(2017). 저출산 대응정책의 생애주기별 정합성 분석 연구: 자녀양육기의 돌봄 분야를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p.185에서 재인용한 표이며, 유해미 외(2017) 연구의 '자녀돌봄 지원의 만족도와 요구 조사' 결과임.

- 그 다음으로 자녀양육 시 매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40.6%(5.86점), 맞벌이 가구 가사관리사 파견 36.8%(5.64점)상해보험료 등 신생아 안심보육료 지원 32.7%(5.58점) 순임(표 11 참조).
- 원하는 시기에 희망하는 수만큼 자녀를 출산하기 위해, 현재 일부 계층에 지원하나, 향후 전(全)계층으로 확대하는 데 동의하는 비율은 장애아 관련 지원서비스 부문에서 높은 수준을 보이는 반면, 방과후 수강권 제공에는 61.3%로 상대적으로 낮은 지지를 보임.

단위: %



자료: 유해미·최효미·강신혜(2017). 저출산 대응정책의 생애주기별 정합성 분석 연구: 자녀양육기의 돌봄 분야를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p.190에서 재인용한 표이며, 유해미 외 (2017) 연구의 '자녀돌봄 지원의 만족도와 요구 조사' 결과임.

[그림 2] 전(全)계층 지원 확대의 동의 비율_부모

4 향후 과제

가. 기본 방향

- 저출산 대응을 위한 자녀돌봄 지원은 각 양육단계별 욕구 수준을 반영하여 보다 세분화하고, 주요 돌봄지원 분야별로 그 적용시기를 확장할 필요가 있음.
- 돌봄지원의 범위는 출산 및 신생아기, 영유아기, 초등학령기, 중고등학령기로 구분하여 세분화하고, 각 시기별 욕구 수준을 반영하여 [그림 3]과 같이 지원내용을 보다 다각화할 필요가 있음.

구분	자녀양육 단계별			
	영아	유아	초등학령기	중고등학령기
주요 돌봄지원 분야				
돌봄서비스 지원	>			
양육비 현금지원	>		>	>
양육비 세제지원	>			
아동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	>			
학령기 교육비 지원	>			

자료: 유해미·최효미·강신혜(2017). 저출산 대응정책의 생애주기별 정합성 분석 연구: 자녀양육기의 돌봄 분야를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p.224에서 재인용함.

[그림 3] 자녀돌봄 지원의 양육단계별 포괄범위

- 지원내용 측면에서 영유아 보육·교육서비스 위주에서 현금지원과 이외 서비스 부문으로 다각화해야 함.
 - 돌봄지원 분야의 서비스 수요는 보육·교육서비스 이외에도 출산 및 신생아 의료지원 및 건강관리서비스, 학령기 자녀 전반에 걸친 건강관리 및 의료비 지원, 교육비 지원 등 매우 다양함.
- 돌봄지원의 수준은 소득계층과 상관없이 보편적인 수요를 나타내는 사업을 중심으로 그 대상을 확대해야 함.
 - 전(全) 계층 확대에의 동의 비율은 장애관련 돌봄지원 전반과 미숙아와 선천적 이상아 의료지원에서 높게 나타남.

나. 자녀양육 단계별 개선과제

□ 출산·신생아기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등 지원의 소득기준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 이나, 보편적 지원에의 동의 비율이 88.2%이므로 보편적 지원을 추구함.
- 신생아 난청진단 의료비 지원의 소득기준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60% 이하에 그치고 있으나, 보편적 지원 확대에의 동의 비율이 87.9%이므로 지원기준을 점차 상향 조정할만 함.
 -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하 저출산 기본계획)”에 포함된 난청 대사이상 등 선천성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신생아 선별검사에 대한 건강보험료 적용 확대, 신생아 난청 선별검사(자동화이용향 방사검사 및 자동화 청성뇌간 반응검사) 등의 건강보험 적용, 고액의 의료비가 드는 치료비에 대한 보험 적용, 신생아 중환자실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확대 등은 적극적으로 추진할만함(대한민국정부, 2016: 70).
- 신생아·산모 도우미 지원은 높은 수요를 나타내므로, 서비스 지원대상의 소득기준을 현행 중위소득 80%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음.
 -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2019년까지 확대하며, 지원대상을 기존 산후돌봄에 더하여 임신부터 만 2세 방문형 건강관리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이를 차질없이 추진토록 함(국정자문위원회, 2017: 154).

□ 영유아기 자녀

- 영유아기는 다양한 돌봄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의료지원 분야는 보편적인 수요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원수준이 이에 못 미치므로 시급한 개선이 요구됨.
-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는 현재 중위소득 60% 이하에 지원되나, 보편적 지원에의 동의 비율이 75.3%로 높게 나타나므로 지원대상을 확대함.
-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는 현재 건강보험료 하위 30% 이하를 대상으로 지원되나, 전(全) 계층 확대에의 동의 비율이 87.3%로 가장 높게 나타나므로 지원대상 소득기준을 점차 상향 조정할만함.
- 장애아 언어발달 지원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20% 이하,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과 장애인 발달재활서비스는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에 지원되는데, 이들 대상의 확대가 요구됨.

□ 학령기 자녀

- 건강관리 및 의료비 지원은 현재 영유아기에 한정되어 있으나, 그 수요가 중고등학교까지 존재하므로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서 15세 이하 입원비 국가책임과 초중고 독감예방접종 국가지원, 아동재활병원 확충 등 학령기 자녀의 의료서비스를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국정자문위원회, 2017: 154).
- 초등학교 학령기 자녀의 방과후 돌봄 수요는 높게 나타나므로 서비스 접근성 제고 노력이 지속되어야 함.
 -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서는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이 주요 과제로 제시됨(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82). 즉 온종일 돌봄교실을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점차 확대하고, 부처 간, 그리고 지자체 및 교육청 간의 협력체계 강화한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이를 차질없이 추진토록 함.
- 고등학교 학령기 이후 교육비 지원은 저소득층 가구에 한정되므로, 이들 지원의 적용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음.
 - 제3차 저출산 기본계획에 의하면, 해당 시기의 지원으로는 교육개혁이 제시되며, 이때 주요내용은 공교육 만족도 제고와 역량 강화, 교육체계 개선 등이 주를 이루는 반면, 교육비 지원 확대 계획은 부재함.
 -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서는 고교 무상교육을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2022년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으므로(국정자문위원회, 2017: 82), 해당 시기의 교육비 지원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참고문헌 |

- 교육부(2016). 보도자료: 2017년 교육부 예산안 발표(2016. 8. 30).
- 국정기획자문위원회(2017).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 대한민국정부(2016).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 보건복지부(2016). 2017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 보건복지부(2017).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 여성가족부(2017). 2017년 여성가족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 개요.
- 유해미·최효미·강신혜(2017). 저출산 대응정책의 생애주기별 정합성 분석 연구: 자녀 양육기의 돌봄 분야를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웹사이트>

교육부 홈페이지. <http://www.moe.go.kr> (검색일자 2017년 6월 1일)

이슈페이퍼 2018-10

1세 영아 가정양육환경 분석을 통한 가정양육 지원방안 모색

김지현

1. 배경 및 문제점
2. 연구방법 및 연구내용
3. 1세 영아 가정 양육환경 결과 분석
4. 집단 특성별 취약 양육환경
5. 1세 영아 가정양육 지원 방안

참고문헌

1세 영아 가정양육환경 분석을 통한 가정양육 지원방안 모색*

김지현 부연구위원

| 요약 |

- 전생애 발달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영아기 경험의 대부분은 가정에서의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고, 부모의 취업유무를 떠나 영아의 주양육자, 즉 부모가 제공하는 환경에 의해 크게 좌우됨.
- 영아 가정의 환경은 물리적 환경, 인적 환경, 지원 환경으로 크게 나누어지고, 현재 1세 영아 가정에서 각 영역의 양육환경을 적절수준으로 제공하는지를 진단하여 분석하고, 부족한 부분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 1세 영아를 양육하는 300가구의 가정방문을 통해, 영아 가정의 물리적 환경과 상호작용들을 직접 관찰하고, 직접 관찰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1:1 면접설문을 통해 1세 영아의 양육환경의 실태를 파악하고, 가정양육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함.
- 가정 양육환경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안전장치 구비 및 미디어 사용에 대한 주의 등 물리적 환경에 대한 주의와 함께 가사활동 부담률 증진 및 양육지원 환경 조성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제고가 필요함.

1 배경 및 문제점

- 영아에게 부모의 양육행동, 가정의 양육환경은 매우 직접적이고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사적인 영역으로 생각되는 가정 양육환경에 대한 체계적 분석과 진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영아 발달의 기본이 되는 가정 양육환경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가정 양육환경의 영역을 세분화하여 각 영역에서 적절한 환경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영아를 키우는 부모에게나 그 환경에서 살아가는 영아에게나 매우 중요함.
- 본고에서는 영아 가정환경을 물리적 환경, 인적 환경, 지원 환경으로 나누고 현재 1세

* 본 원고는 「김지현·문무경·최윤경(2017). 영아 양육환경 분석 지표 개발연구: 1세아 가정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의 내용을 토대로 구성함.

영아 가정에서 각 영역의 양육환경을 적절수준으로 제공하는지를 진단하고 분석하여, 부족한 부분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하고자 하였음.

- 이에 ‘영아 양육환경 분석 지표 개발연구: 1세아 가정을 중심으로’를 통해 살펴본 가정 방문 관찰 조사 실태 결과를 활용하여 가정양육환경 제공에서 취약한 부분과 취약한 집단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할 부분에 대한 제언과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함.

2 연구방법 및 연구내용

- 1세 영아 가정 양육환경 분석을 위해 1세 영아를 양육하는 300가구를 면접원이 직접 방문하여 관찰조사를 실시하였음.
- 20가구의 예비조사 후 관찰평가 기준이 모호하거나 조절이 필요한 부분을 면접원 워크숍을 통해 수정하고, 본 조사를 진행함.
- 영아 가정의 물리적 환경과 상호작용들을 직접 관찰하고, 직접 관찰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1:1 면접설문을 통해 1세 영아의 양육환경의 실태를 파악하였음.
- 1세 영아 가정 양육환경을 영역별로 관찰, 면담한 결과를 토대로 가정양육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함.

3 1세 영아 가정 양육환경 관찰조사 결과 분석

- 1세 영아의 가정 양육환경을 물리적 환경, 인적 환경, 지원 환경으로 구분하여, 각 영역의 세부항목에 대해 1세 영아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을 방문하여 진단하였음.
- 1세 영아의 가정 양육환경 중 1세에게 중요하다고 인식되는 영역 중 실제 양육환경에서 양호 비율의 정도가 영역 및 영역별 세부항목마다 다르게 나타나, 항목별 분석과 대처 방안이 필요함.

가. 영아 기관이용 적정시기

- 현재 기관을 다니고 있는 영아의 비중이 41.0%이며, 12-17개월 영아의 27.3%, 18-23개월 영아의 54.7%로 월령별 차이가 나타남.
- 이러한 차이는 모의 취업상태에 따라 확연히 나타나는데, 모가 전일제 취업인 경우는 전체의 87.5%가 기관을 이용하고 있으며, 시간제 취업의 경우 75%, 일시휴직 및 미취업의 경우 28.3~29.0%의 기관이용률을 보임.

〈표 1〉 기관 이용여부 및 최초 이용시기

구분	이용 여부			최초 이용시기					
	다니고 있음	다니고 있지 않음	계(수)	11개월 이하	12-17개월	18-23개월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41.0	59.0	100.0(300)	19.5	58.5	22.0	100.0(123)	13.8	4.31
영아월령									
12-17개월	27.3	72.7	100.0(150)	24.4	75.6	0.0	100.0(41)	11.6	2.37
18-23개월	54.7	45.3	100.0(150)	17.1	50.0	32.9	100.0(82)	14.9	4.65
모 취업상태									
전일제	87.5	12.5	100.0(40)	45.7	37.1	17.1	100.0(35)	11.2	5.12
시간제	75.0	25.0	100.0(28)	4.8	71.4	23.8	100.0(21)	14.7	3.21
일시휴직	28.3	71.7	100.0(46)	15.4	61.5	23.1	100.0(13)	13.6	4.54
미취업	29.0	71.0	100.0(186)	9.3	66.7	24.1	100.0(54)	15.2	3.24
$\chi^2(df)$	63.23(3) ^{***}			22.16(6) ^{**}					

주: 일시휴직은 육아휴직, 질병휴가 등을 포함함.

자료: 김지현·문무경·최윤경(2017). 영아 양육환경 분석 지표 개발연구: 1세아 가정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pp. 107-108.
 $p < .05$, $p^{**} < .01$, $p^{***} < .001$.

- 기관에 보내기 적당한 시기에 대한 인식도 취업여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모가 전일제 취업의 경우 21개월, 모가 미취업인 경우 26.6개월이 적당하다고 응답하였음.
- 영아 1세 안에서의 월령에 따라서는 기관이용 적절시기에 대한 의견이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현재 기관 이용여부와 취업여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음.
- 대부분 전일제 취업모의 경우 어린이집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고, 현재 어린이집을 보내고 있는 경우 보내고 있지 않은 경우보다 기관 이용 적절시기를 낮게 응답한 경향을 보임.

〈표 2〉 기관 적정 이용시기

구분	11개월 이하	12-17 개월	18-23 개월	24-35 개월	36개월 이상	모름/ 무응답	계(수)	평균	표준 편차	t/F
전체	3.0	15.7	15.7	39.3	26.0	0.3	100.0(300)	25.3		
영아월령										
12-17개월	3.3	18.0	11.3	37.3	30.0	0.0	100.0(150)	25.3	10.42	0.0
18-23개월	2.7	13.3	20.0	41.3	22.0	0.7	100.0(150)	25.3	11.38	
$\chi^2(df)$	7.90(5)									
어린이집 이용여부										
이용함	6.5	31.7	27.6	25.2	8.9	0.0	100.0(123)	19.0	7.77	-10.0*
이용하지 않음	0.6	4.5	7.3	49.2	37.9	0.6	100.0(177)	29.6	10.64	
$\chi^2(df)$	96.46(5)**									
모 취업상태										
전일제	5.0	30.0	12.5	37.5	15.0	0.0	100.0(40)	21.0	9.33	3.3*
시간제	3.6	21.4	21.4	28.6	21.4	3.6	100.0(28)	25.6	9.50	
일시휴직	6.5	10.9	17.4	43.5	21.7	0.0	100.0(46)	23.7	9.39	
미취업	1.6	12.9	15.1	40.3	30.1	0.0	100.0(186)	26.6	10.05	
$\chi^2(df)$	26.50(15)*									

주: 일시휴직은 육아휴직, 질병휴가 등을 포함함.

자료: 김지현·문무경·최윤경(2017). 영아 양육환경 분석 지표 개발연구: 1세대 가정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pp. 106-107.
 $p^* < .05$, $p^{**} < .01$,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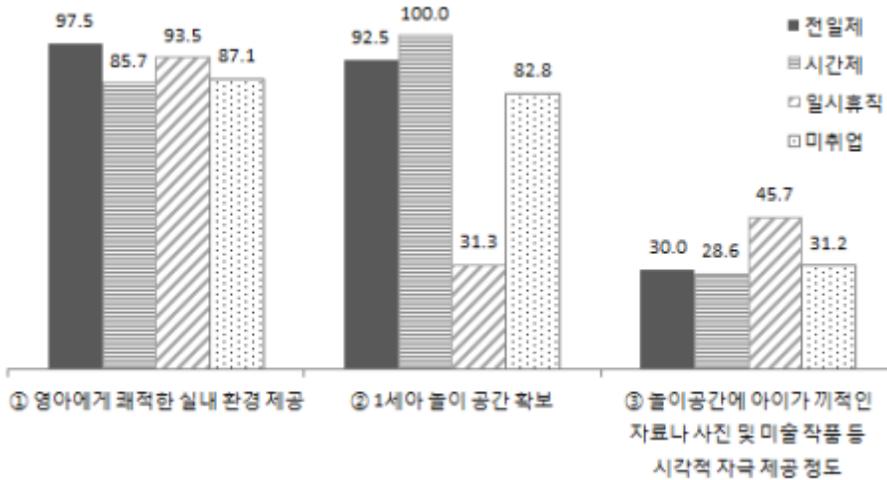
- 모의 상황에 따라 기관에 일찍 보내는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경우 기관 이용의 적절시기가 만 2세 정도라고 응답한 것을 감안했을 때, 만 1세의 가정에서 제공하는 영아 양육환경은 매우 중요함.

나. 영아가정의 물리적 환경

- 영아 가정의 양육환경 중 물리적 환경 영역은 1) 실내환경 구성영역, 2) 위생 및 안전 관리 영역으로 나누어 관찰하였음. ‘실내환경 구성영역’은 ‘기본 실내환경’, ‘자율성 촉진 환경’, ‘발달 적합한 놀이감 및 용품 구비’로 이루어져있음.
 - 기본 실내환경의 경우 놀이공간에 아이가 끼적인 자료나 사진 및 미술작품 등의 시각적 자극 제공 영역에서 33%의 가구만 양호한 평가를 받았음.

- 발달 적합한 놀잇감 및 용품 구비 중 ‘위험한 놀잇감이나 발달 부적합한 놀잇감 구비’ 항목만 68.3%이하로 낮게 나타났으며, 다양한 놀잇감구비, 발달적합한 그림책 구비, 그림책 활용 정도 등의 항목은 모두 80% 이상의 양호비율을 나타내었음.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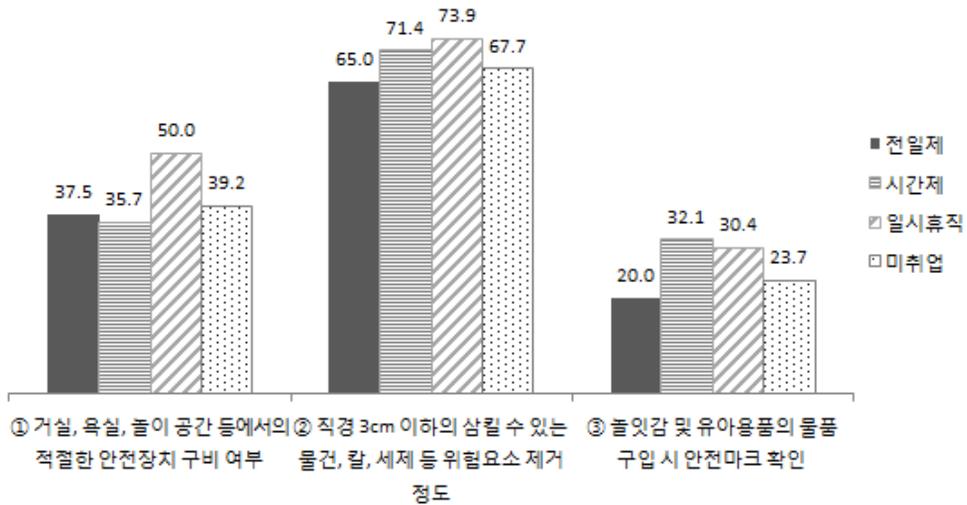


자료: 김지현·문무경·최윤경(2017). 영아 양육환경 분석 지표 개발연구: 1세아 가정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p. 111.

[그림 1] 기본 실내환경 지표항목 내 양호비율

- 영아 가정의 물리적 환경 중 ‘위생 및 안전관리’ 영역의 경우, ‘청결 위생’, 및 ‘안전’의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 양호로 평가받은 가구의 비율이 72.2%, 44.7%로 나타나 특히 ‘안전’ 영역의 보완이 필요함.
 - 청결 위생 중 실내의 전반적인 정리 환경과 전반적 유아용품 청결 정도는 각각 양호로 평가받은 비율이 53.7%, 90.7%로 나타남.
 - 안전 영역의 양호 평가 비율을 살펴보면 ‘거실, 욕실, 놀이 공간 등에서의 적절한 안전장치 구비 여부’의 경우 40.3%, ‘직경 3센티 이하의 삼킬 수 있는 물건 및 위험요소 제거’가 68.7%, ‘놀잇감 및 유아용품의 물품 구입시 안전마크 확인’의 경우 25.0%만이 양호로 평가받아 영아 가정 안전환경에 대한 인식과 대처가 필요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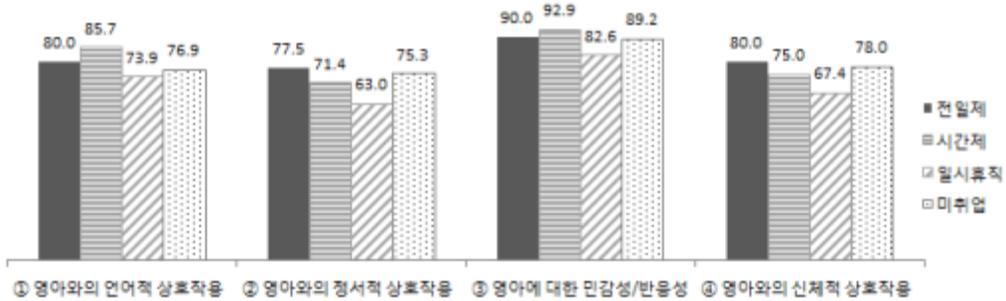
자료: 김지현·문무경·최윤경(2017). 영아 양육환경 분석 지표 개발연구: 1세대 가정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p. 122.

[그림 2] 안전 지표항목 내 양호비율

다. 영아와의 상호작용 및 양육행동

- 영아와의 상호작용 및 양육행동은 어머니가 영아와 보이는 직접적인 상호작용과 어떠한 양육 관련 행동을 보이는지를 직접 관찰을 통해 측정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1) 영아와의 상호작용, 2) 탐색허용 및 안전행동, 3) 기본생활습관 형성, 4) 실외놀이 활동 기회 제공 5) 건강, 의료 및 영양 행동으로 나뉘어짐.
- 영아와의 상호작용영역은 언어적, 정서적, 민감/반응성, 신체적 상호작용을 살펴본 결과, 각 영역의 평가 기준을 통해 양호하다고 평가받은 비율이 각각 77.7%, 73.3%, 88.7%, 76.3%로 중상정도의 비율을 나타냈음.

단위: %



자료: 김지현·문무경·최윤경(2017). 영아 양육환경 분석 지표 개발연구: 1세아 가정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p. 125.

[그림 3] 영아와의 상호작용 지표항목 내 양호비율

- 탐색허용 및 안전행동은 탐색 및 자율적 행동에 대한 허용에 있어 전체의 78.7%가 양호, 영아에 주의 기울이기는 79.2%, 영아의 돌발 위험 행동 및 상황에 대한 양육자의 인지 및 예방은 94.7%로 비교적 높은 양호비율을 나타냄.
- 기본생활습관 형성에서는 각각의 항목에서 '양호'의 평가를 받은 비율로 '영아 수면환경 조성' 항목의 경우 79.0%, '하루일과의 규칙성' 항목의 경우 92.0%, '훈육 시 일관성'의 경우 65.7%로 나타났고, '동영상 시청제한'의 경우 양호한 양육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20.3%로 매우 낮게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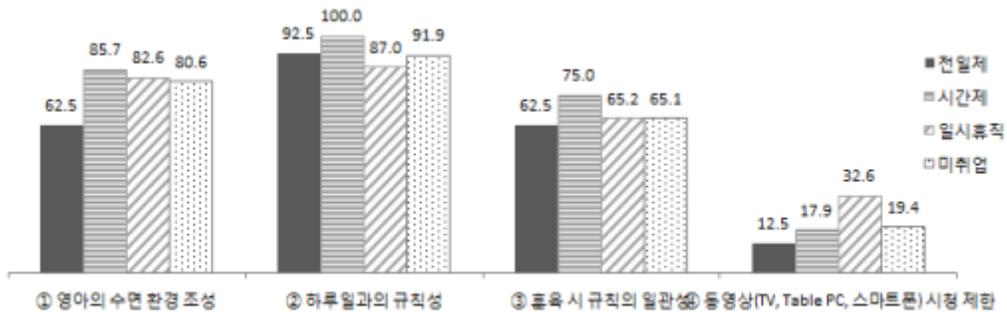
<표 3> 기본생활습관 형성

구분	영아의 수면 환경 조성		하루일과의 규칙성		훈육 시 규칙의 일관성		동영상 시청 제한		사례수	양호 평균
	양호	최소 이하	양호	최소 이하	양호	최소 이하	양호	최소 이하		
전체	79.0	21.0	92.0	8.0	65.7	34.3	20.3	79.7	(300)	64.3
영아월령										
12-17개월	82.0	18.0	92.0	8.0	60.7	39.3	31.3	68.7	(150)	66.5
18-23개월	76.0	24.0	92.0	8.0	70.7	29.3	9.3	90.7	(150)	62.0
$\chi^2(df)$	1.63(1)		0.00(1)		3.33(1)		22.41(1)***			
모 취업상태										
전일제	62.5	37.5	92.5	7.5	62.5	37.5	12.5	87.5	(40)	57.5

구분	영아의 수면 환경 조성		하루일과의 규칙성		훈육 시 규칙의 일관성		동영상 시청 제한		사례수	양호 평균
	양호	최소 이하	양호	최소 이하	양호	최소 이하	양호	최소 이하		
시간제	85.7	14.3	100.0	0.0	75.0	25.0	17.9	82.1	(28)	69.7
일시휴직	82.6	17.4	87.0	13.0	65.2	34.8	32.6	67.4	(46)	66.9
미취업	80.6	19.4	91.9	8.1	65.1	34.9	19.4	80.6	(186)	64.3
$\chi^2(df)$	7.99(3)*		4.04(3)		1.30(3)		6.01(3)			

자료: 김지현·문무경·최윤경(2017). 영아 양육환경 분석 지표 개발연구: 1세대 가정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pp. 131-132.

단위: %



자료: 김지현·문무경·최윤경(2017). 영아 양육환경 분석 지표 개발연구: 1세대 가정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p. 131.

[그림 4] 기본생활습관 형성 지표항목 내 양호비율

- 영아 대상 동영상(TV, 태블릿 PC, 스마트폰 포함) 시청제한의 경우, 영아가 동영상을 전혀 보지 않는 경우 2점, 하루 30분 이하 시청하나 양육자와 상호작용하면서 볼 경우 1점, 하루 30분 이상 시청하거나, 영아 혼자 동영상을 시청할 경우 0점으로 평점되었음.
- 전체의 20.3%가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월령별로 살펴보면 확연한 차이를 발견함. 12-17개월 영아의 경우 31.3%만이 2점, 18-23개월의 영아의 경우 9.3%만이 2점으로 평가받아, 18개월을 기점으로 부모가 동영상을 제한 없이 보여주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여짐.

〈표 4〉 영상(TV, Tablet PC, 스마트폰) 시청제한 평가기준

		면담
관찰 및 면담 내용		①동영상(TV, Tablet PC, 스마트폰 모두 포함) 시청 여부 ②동영상 시청 빈도 및 시간 ③동영상 시청 시 양육자와 상호작용 여부
평점 기준	2점	전혀 보지 않음
	1점	하루 30분 이하 시청하면서 양육자와 상호작용하면서 봄
	0점	하루 30분 이상 시청하거나 영아 혼자 봄

자료: 김지현·문무경·최윤경(2017). 영아 양육환경 분석 지표 개발연구: 1세아 가정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p. 130.

- 실외놀이 활동 기회 제공의 경우 실외 활동 시 놀이의 다양성은 80%에 가까운 양호 비율을 나타내었으나, 집주변 놀이터, 공원 등 실외놀이를 하는 정도에 있어서는 양호하게 평가받은 가구가 전체의 58.0%에 불과함.

〈표 5〉 실외놀이 활동 기회 제공

구분	①		②		사례수	양호 평균
	양호	최소 이하	양호	최소 이하		
전체	58.0	42.0	79.3	20.7	(300)	68.7
영아성별						
남	60.0	40.0	83.9	16.1	(155)	72.0
여	55.9	44.1	74.5	25.5	(145)	65.2
$\chi^2(df)$	0.53(1)		4.03(1)*			

자료: 김지현·문무경·최윤경(2017). 영아 양육환경 분석 지표 개발연구: 1세아 가정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p. 136.

- 건강, 의료 및 영양 행동 중 예방접종 및 정기건강검진과 영아의 청결위생 상태는 90%이상으로 매우 높은 양호비율을 나타내나, 규칙적 식사와 메뉴의 다양성에서 75%의 가정만 양호비율을 나타냄.

라.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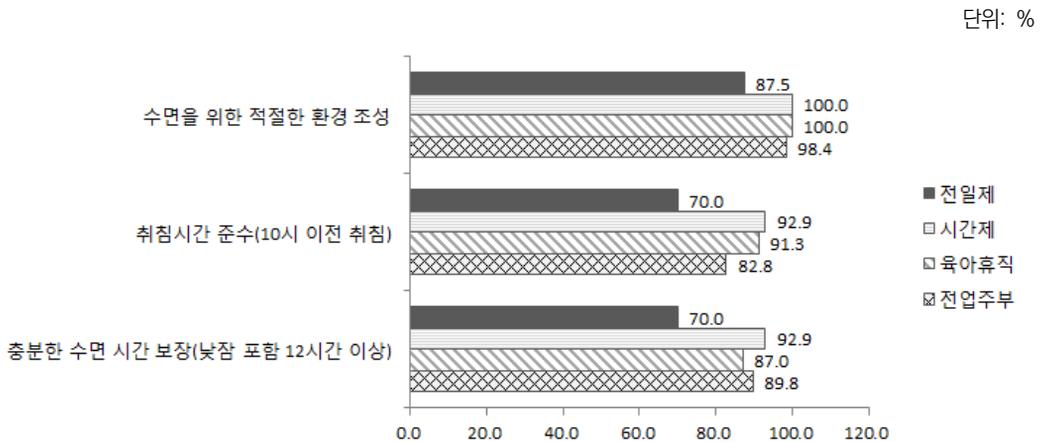
- 영아의 가정 양육환경을 물리적 환경과 양육자의 상호작용 및 양육행동으로 관찰을 통해 살펴본 결과, 취약한 영역과 그룹 등을 발견할 수 있었음.

- 본고에서 활용한 연구의 조사대상인 1세 영아는 걸음마를 떼기 시작하고, 주변에 대한 탐색을 시작하는 시기임과 동시에 자율성을 키워줘야 하는 시기이므로, 안전한 환경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영역의 평가가 대체적으로 낮게 나타나, 영아부모의 안전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함.
- 양육자의 상호작용과 양육행동으로 인해 이루어지는 양육환경도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양육자들의 비선호로 인해 충분히 실외활동을 하지 못하거나, 영아 시기부터 동영상에 노출되는 비율이 매우 높아 영아 시기의 동영상 노출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인식을 높일 필요가 있음.

4 집단 특성별 취약 양육환경

가. 부모의 맞벌이 여부에 따른 특성

- 영아의 수면환경 조성은 전체집단에서는 76.7%가 양호하다고 평가받았으나, 모가 전일제 취업인 경우는 양호한 비율이 62.5%로 낮게 나타나 노력이 필요함.



자료: 김지현·문무경·최윤경(2017). 영아 양육환경 분석 지표 개발연구: 1세아 가정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p. 133.

[그림 5] 영아의 수면환경 조성

- 충분한 수면시간, 10시 전 취침, 수면을 위한 환경조성 등의 세 가지 평가 영역에서 모두 전일제 취업모의 경우에는 다른 집단에 비해 확연히 낮은 비율을 보임.
- 전일제 취업모의 경우 발달에 적합한 양육용품 구비 여부에서 타 집단에 비해 낮은 양호비율을 나타냈음.
- 전일제 취업모의 경우 발달에 적합한 양육용품 구비 여부에서 양호로 평가받은 비율이 70.0%로 타 경우에 비해 현저하게 나타났음.

〈표 6〉 발달 적합 양육 용품 구비 여부-취업상태별

구분	발달에 적합한 양육용품 구비 여부		사례수
	양호	최소 이하	
전체	85.7	14.3	(300)
모 취업상태			
전일제	70.0	30.0	(40)
시간제	100.0	0.0	(28)
일시휴직	91.3	8.7	(46)
미취업	85.5	14.5	(186)
$\chi^2(df)$	13.88(3)**		

자료: 김지현·문무경·최윤경(2017). 영아 양육환경 분석 지표 개발연구: 1세아 가정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p. 114.

- 또한 전일제 취업모의 경우 자녀와의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가사일을 맡기거나, 기계를 사는 등의 노력 등을 통해 가사일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으로 자녀와의 상호작용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가사일은 포기예요. 음식은 등원 도우미 이모님이 해주시고. [부모 10, 전일제, 24개월 남]¹⁾

복직한 이후 가사를 돕는 기기를 대거 구매했어요. 식기세척기, 빨래 건조기, 집에 오면 애랑 최대한 놀아주려고요. [부모 11, 전일제, 18개월 여]²⁾

1) 「김지현·문무경·최윤경(2017). 영아 양육환경 분석 지표 개발연구: 1세아 가정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에서 실시한 심층면담 내용 활용함.

나. 형제 유무에 따른 특성

- ‘다양한 놀잇감 구비’ 및 ‘위험한 놀잇감이나 발달 부적합한 놀잇감 구비’의 경우 형제의 유무에 따라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었음.
 - 형제가 있는 경우, 다양한 놀잇감 구비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면서도 동시에 위험한 놀잇감이나 발달 부적합한 놀잇감에 노출되는 빈도가 높아지므로, 큰 소리나 강한 불빛이 나는 등 영아에게 부적합한 놀잇감에 노출되지 않도록 놀잇감을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표 7〉 발달적합 놀잇감 및 용품구비 영역의 양호 비율

구분	다양한 영역 놀잇감 구비		위험한 놀잇감이나 발달에 부적절한 놀잇감 구비		발달 적합한 그림책 구비		그림책 활용 정도		사례수	양호 평균
	양호	최소 이하	양호	최소 이하	양호	최소 이하	양호	최소 이하		
전체	80.7	19.3	68.3	31.7	94.0	6.0	88.3	11.7	(300)	81.0
영아월령										
12-17개월	76.7	23.3	72.7	27.3	90.0	10.0	86.7	13.3	(150)	79.8
18-23개월	84.7	15.3	64.0	36.0	98.0	2.0	90.0	10.0	(150)	82.2
$\chi^2(df)$	3.08(1)		2.60(1)		8.51(1)**		0.809(1)			
형제유무										
형제 있음	87.5	12.5	65.8	34.2	93.3	6.7	84.2	15.8	(120)	82.2
형제 없음	76.1	23.9	70.0	30.0	94.4	5.6	91.1	8.9	(180)	80.2
$\chi^2(df)$	5.99(1)*		6.28(2)*		3.80(2)		3.80(2)			

자료: 김지현·문무경·최윤경(2017). 영아 양육환경 분석 지표 개발연구: 1세아 가정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p. 117.
 $p^* < .05$, $p^{***} < .001$.

- 영아의 경우, 양육자가 언어적, 정서적, 신체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해주는 것이 중요하나, 형제가 있을 경우, 양육자의 주의 및 관심이 분산될 수 밖에 없으므로 형제가 없는 경우에 비해 부족한 부분이 발생함.
 - 형제가 없을 경우, 영아에게 민감하게 반응해주는 정도에서 양호비율이 91.7%로 나타나는 데에 비해, 형제가 있을 경우에는 그 비율이 84.2%로 낮게 나타나 집단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냄.

- 형제가 없을 경우, 신체적으로 영아를 도와주거나 움직이면서 놀아주는 비율이 80.6%로 높게 나타났으나, 형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도에서 그 비율이 70.0%로 낮게 나타나 집단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냄.

〈표 8〉 영아와의 상호작용-형제유무별

단위: %(명)

구분	언어적 상호작용		정서적 상호작용		영아에 대한 민감성/반응성		신체적 상호작용		사례수	양호 평균
	양호	최소 이하	양호	최소 이하	양호	최소 이하	양호	최소 이하		
전체	77.7	22.3	73.3	26.7	88.7	11.3	76.3	23.7	(300)	79.0
형제유무										
형제 있음	74.2	25.8	67.5	32.5	84.2	15.8	70.0	30.0	(120)	74.0
형제 없음	80.0	20.0	77.2	22.8	91.7	8.3	80.6	19.4	(180)	82.4
$\chi^2(df)$	1.41(1)		3.48(1)		4.03(1)*		4.44(1)*			

자료: 김지현·문무경·최윤경(2017). 영아 양육환경 분석 지표 개발연구: 1세아 가정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p. 126.

다. 시사점

- 전일제 취업모일 경우 양육용품 구비 영역에서의 양호 비율이 낮았고, 자녀의 적절한 수면에 취침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향이 있음. 하지만, 자녀와의 상호작용은 취업여부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음.
- 형제의 유무는 양육자와 영아와의 상호작용에도 영향을 주는데, 특히 양육자가 세심하게 지켜보고 반응해주고, 1:1로 직접 반응해주어야 하는 영역에서 형제가 있는 경우, 양육의 질이 낮게 나타나 보완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임.

5 1세 영아 가정양육 지원 방안

- 영아 가정의 양육환경 구성에 있어서, 발달단계에 맞는 영아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양육환경을 제공해주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음.
 - 연구 결과, 물리적 환경 및 양육자의 양육 특성 관련 가정 양육환경 중 가정 내 안전한 환경 조성, 영아시기 동영상 노출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
- 먼저, 가정 내 양육환경의 물리적 환경 중 안전장치 구비, 위험물질 제거, 안전한 놀이 공간 제공, 놀잇감 구비시 안전마크 확인 등 내용으로 안전한 양육환경 진단 결과 안전 영역의 양육환경이 다른 영역에 비해 낮게 나타남.
 - 1세 영아 시기는 독립적인 이동이 가능해지고, 탐색욕구 등이 강해지는 시기이나, 위험한 것이나 비위생적인 것에 대한 개념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 영아의 손에 닿는 곳에는 위험물건을 치워 두는 등의 자유로운 탐색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함.
 - 하지만, 연구결과에 따르면 많은 영아 가정에서 입에 쉽게 넣을 수 있는 작은 물건, 끈 등 위험할 수 있는 일상적 물건을 치워 두는 등의 안전행동에 있어 미흡한 상태를 보이고 있음.
 - 구체적인 방안으로 각 월령별 발달특성과 이에 맞는 가정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안내서를 개발하여, 보건소 및 소아과의 예방접종 시 배포하는 등 부모 대상 홍보를 할 필요가 있음.
- 미국 소아과 협회(2017)에 따르면 24개월 이하 영아에게 동영상 등의 미디어 노출을 제한해야 함. 하지만 우리나라 1세 영아의 70% 가까이가 동영상을 시청하고 있으며, 혼자보거나, 30분 이상 보는 등의 좋지 못한 미디어 시청 현황을 보이고 있음.
 - 많은 영아 부모가 영아 시기 동영상 노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인식하고 있으나, 현실적인 양육의 어려움 등으로 동영상을 활용하는 경향이 있음.
 - 이에 영아 시기 미디어 노출에 대한 위험성을 인식시키고, 영아기 동영상 노출의 구체적인 부정적 영향과 18개월 이하는 동영상을 제한해야 하며, 18개월 이후에는 부

모와 함께 시청하거나, 30분 이하로 시청하는 등의 시청 시간에 제한을 두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알려줄 필요가 있음.

- 맞벌이 가구, 한부모 가구, 다자녀 가구 등 자녀 양육환경 제공에 있어 충분한 인적 역력이 부족한 가정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함.
 - 맞벌이 가구, 한부모 가구, 다자녀 가구 등의 경우 부모가 일을 하면서 양육을 맡아야 하거나, 공동양육자가 없거나, 돌봐야 하는 자녀가 많아 기본적으로 영아와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함.
 - 또한 언어적, 정서적, 신체적으로 민감한 반응과 관심을 기울여 줄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질 높은 물리적 환경 제공을 위한 가사노동을 위한 시간이 부족함.
 - 따라서, 영아와의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주는 가사일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함. 영아를 둔 가정의 영아 식단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서비스나 양육의 일환인 가사 활동을 도와주는 가사도우미 서비스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함.
 - 특히 한부모 가정의 경우는 바람직한 양육환경 제공을 위한 시간부족과 동시에 양육환경 제공 및 양육행동에 있어 의논상대가 부재한 경우가 많아 질 높은 가정 양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상담창구가 필요함.
- 가정 양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영아 시기 부모의 영향력에 대한 중요성을 사회가 인식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필요함.
 - 육아휴직 및 근로단축제 등의 제도가 활성화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회 분위기 조성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도 기업 내에서 실질적 제도 활용을 허용하는 분위기 및 동료들의 인식이나 이해 정도가 부족한 상황임.
 - 영아기 부모역할의 중요성을 사회차원에서 인식하고, 부모가 질 높은 가정 양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팁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아기에는 기관보육지원보다는 부모가 직접 양육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적 노력이 수반될 필요가 있음.

| 참고문헌 |

김지현·문무경·최윤경(2017). 영아 양육환경 분석 지표 개발연구: 1세아 가정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이슈페이퍼 2018-03

다문화 한부모 육아지원 개선방안

PART 04

권미경

1. 배경 및 문제점
2. 다문화 한부모 가족 현황
3. 다문화 한부모 지원정책 현황
4. 다문화 한부모 가족특성에 따른 양육지원 요구
5. 다문화 한부모 육아지원 개선방안

참고문헌

다문화 한부모 육아지원 개선방안*

권미경 부연구위원

| 요약 |

- 다문화 한부모 가족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 가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은 그 자녀들의 건강한 한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임.
- 현재 다문화 한부모 가족의 지원정책은 다문화 지원정책과 한부모 지원정책에 근거하며 두 정책의 교집합 부분으로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함.
- 다문화 한부모 가족의 요구는 자녀와 함께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간, 기초생활비 지원 같은 생활비용의 지급을 넘어서서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원, 자녀 돌봄의 문제(영유아 자녀), 학업지원에의 문제(학령기 자녀)로 수렴됨.
- 다문화 한부모 가족을 위한 지원정책의 방안은 성장하는 아동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 제공, 다문화 한부모 어머니 역량 강화, 운영 중인 다문화 한부모 지원 제도 운용 효율성 제고라는 틀을 중심으로 구체화함.

1

배경 및 문제점

- 다문화 한부모 가족이 증가하고 있고, 그 안에 성장하는 자녀를 위한 지원이 필요함.
 - 다문화가족 지원 현장에서 이혼, 사별 등을 이유로 다문화 배경을 지닌 한부모 가족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지원정책은 초보적인 수준임.
 - 다문화 배경과 한부모라는 이중적인 어려움을 지닌 가족 상황에서도 자녀들은 성장하고 있고, 시간이 지남 이후 그 과정을 돌이킬 수는 없으므로 다문화 한부모 가족에 대한 시의적절한 지원이 필요함.

* 본 원고는 「권미경·이재희·최인화(2017). 다문화 배경을 지닌 한부모 육아지원 방안. 육아정책연구소」의 내용을 토대로 구성함.

- 다문화 지원정책 중 사각지대로 보이는 다문화 한부모 가족을 위한 지원의 구체화가 필요함.
 - 배경이나 신분과 관계없이 아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지닌다는 내용이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되어 있음.
 - 다문화 한부모 가정에서 부모의 상황으로 인해 성장기 자녀가 받을 수 있는 피해를 줄이고 건강한 한국사회 구성원으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정책적 지원은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으로 기능해야 함.
- 다문화 한부모 현황과 양육 실태를 통계분석과 심층면담의 방법으로 파악하고 지원 요구를 수렴하여, 다문화 배경을 지닌 한부모 가족의 건강한 양육환경 구축을 위한 지원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2 다문화 한부모 가족 현황1)

- 다문화 결혼은 최근 9년간 감소 추세에 있으며 전체 결혼에서 다문화 결혼 비중이 2008년 11.2%를 정점으로 2016년도에 7.7%임.

표 1 | 다문화 결혼 건수 및 전체 혼인 중 다문화 비중(2014~2016)

단위: 건, %

	전체			다문화 혼인			한국인 간 혼인			
	2014	2015	2016	2014	2015	2016	2014	2015	2016	
혼인 건수	305,507	302,828	281,635	24,387	22,462	21,709	281,120	280,366	259,926	
(비중)	(100.0)	(100.0)	(100.0)	(8.0)	(7.4)	(7.7)	(92.0)	(92.6)	(92.3)	
전년비	증 감	-17,300	-2,679	-21,193	-2,561	-1,925	-753	-14,739	-754	-20,440
	증감률	-5.4	-0.9	-7.0	-9.5	-7.9	-3.4	-5.0	-0.3	-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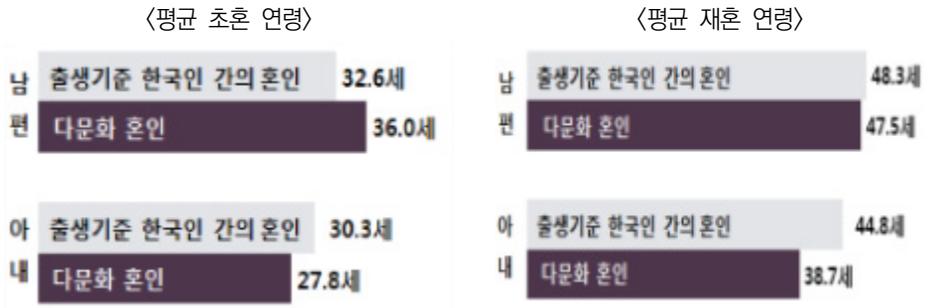
주: 1) 다문화 혼인: 남녀 모두 또는 어느 한쪽이라도 외국인 또는 귀화자인 경우

2) 출생기준 한국인 간의 혼인: 남녀 모두 출생기준 한국인인 경우

자료: 통계청(2017). 2016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 p. 4

1) 본 장은 「통계청(2017). 2016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와 「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6). 2015년 전국다문화 가족실태조사」결과자료를 토대로 작성함.

- 다문화 가구는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의 결합으로 이뤄진 경우가 많았고, 다문화 가구 남편의 초혼연령(36세)이 한국인 간 혼인(32.6세)에 비해 높은 반면, 아내의 초혼연령(27.8세)은 한국인 간 혼인(30.3세)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자료: 통계청(2017). 2016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 p. 8.

[그림 1] 평균 결혼 연령(2016)

- 결혼 비중 감소와 함께 전체 이혼 건수 중 다문화 이혼 건수도 최근 9년간 감소하였으나 2016년도 전체 결혼 중 다문화 비중이 7.7%인 것에 비해 전체 이혼 중 다문화 비중이 9.9%로, 결혼 건수 대비 이혼 수가 한국인 간 이혼 보다 높음.

표 2 | 다문화 이혼 건수 및 전체 이혼 중 다문화 비중(2014~2016)

단위: 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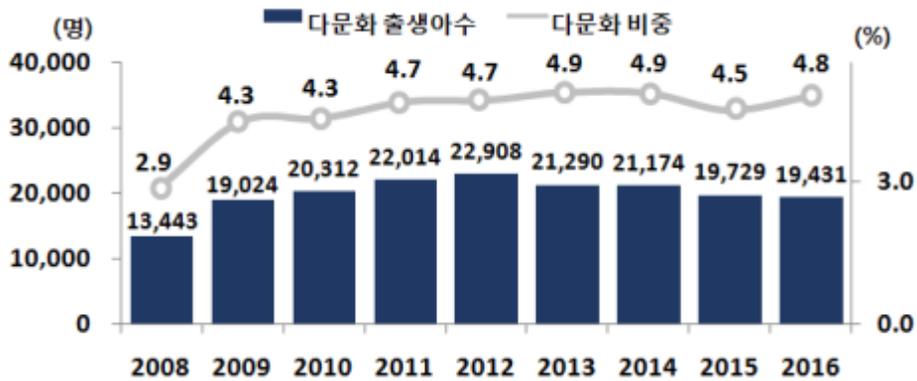
	전체			다문화 이혼			한국인(출생기준)간 이혼			
	2014	2015	2016	2014	2015	2016	2014	2015	2016	
이혼 건수	115,510	109,153	107,328	12,902	11,287	10,631	102,608	97,866	96,697	
(비중)	(100.0)	(100.0)	(100.0)	(11.2)	(10.3)	(9.9)	(88.8)	(89.7)	(90.1)	
전년비	증 감	218	-6,357	-1,825	-580	-1,615	-656	798	-4,742	-1,169
	증감률	0.2	-5.5	-1.7	-4.3	-12.5	-5.8	0.8	-4.6	-1.2

주: 1) 다문화 이혼 : 남녀 모두 또는 어느 한쪽이라도 외국인 또는 귀화자인 경우

2) 출생기준 한국인 간의 이혼 : 남녀 모두 출생기준 한국인인 경우

자료: 통계청(2017). 2016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 p.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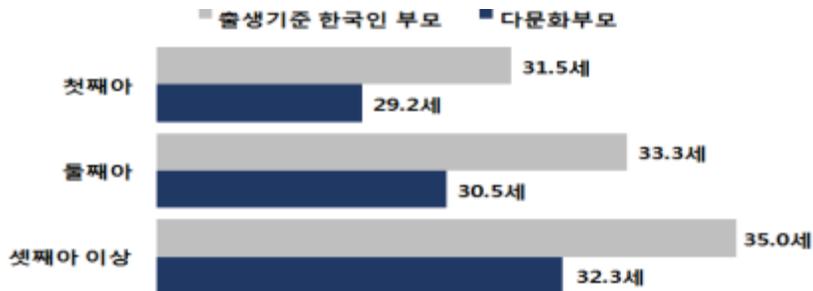
- 다문화 출산 수는 감소하였지만 상대적으로 한국인 간 결혼에서 출산 수치보다 감소 폭이 많지 않아 출생아 수 비율은 크게 감소하지 않았고 오히려 전체출생아 중 다문화 비중은 2008년에 2.9%에서 2016년도에 4.8%로 크게 증가함.



자료: 통계청(2017). 2016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 p. 22

[그림 2] 다문화 출생아 수 및 전체 출생 중 다문화 비중 추이(2016)

- 출생순위별 모의 평균 출산연령을 중심으로 보면, 첫째아의 경우 다문화 어머니 29.2세, 한국인 어머니 31.5세, 둘째아는 다문화 어머니 30.5세, 한국인 어머니 33.2세, 셋째아는 다문화 어머니 32.3세, 한국인 어머니 35세로, 다문화 어머니 출산 연령이 낮고, 출산 간격이 짧음.



자료: 통계청(2017). 2016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 p. 26

[그림 3] 출산순위별 모 평균 출산 연령(2016)

3 다문화 한부모 지원정책 현황

- 다문화 한부모 가족의 지원정책은 다문화 지원정책과 한부모 지원정책에 근거하여 지원정책의 교집합 부분으로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함.

가.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법적 기초인 다문화가족지원법은 2008년 제정되었고, 주요 내용에는 현재 지원정책의 내용이 담겨있고 이는 다음 <표 3>과 같음.

표 3 |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주요내용

구분	내용
다문화가족지원 기본계획	제3조 2항 여성가족부 장관이 5년마다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함.
다문화가족 정책위원회	제3조 4항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둠.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제4조 다문화가족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해야 함.
다문화가족 이해증진	제5조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고 홍보 등 조치를 해야 함.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제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이민자들에게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 적응교육과 직업 교육·훈련 및 한국어교육 등 지원함 - 거주지 및 가정환경 등으로 서비스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방문교육이나 원격교육 등을 지원하고 비용도 차등 지원 - 결혼이민자들의 배우자 등 다문화가족 구성원은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어교육 등 사회 적응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신설 2015.12.1.>
가족관계를 위한 조치	제7조 다문화가족이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가족상담, 부모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추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제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함. - 가정폭력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보호·지원할 수 있음. -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갖춘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설치를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함. - 가정폭력으로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의견진술 및 사실확인 등에 있어서 언어 통역, 법률상담 및 행정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제1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청소년 보육·교육에 있어서 차별해서는 안 됨. -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학과 외

구분	내용
아동·청소년 보육·교육	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음. - 취학 전 보육 및 교육 지원을 위하여 노력해야 함. - 한국어 및 결혼이민자 등인 부 또는 모의 모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 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 아동·청소년 보육·교육 기관의 장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이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조치
다국어 서비스 제공	제14조 2항 다문화가족이 이혼 등의 사유로 해체된 경우에도 그 구성원이었던 자녀에 대하여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적용 제11조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함.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	제11조 2항 - 다국어에 의한 상담·통역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긴급전화센터와 통합 운영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제12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2.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3.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4.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5.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6.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번역 지원사업 7.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관련 공무원 교육	제13조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다문화가족 이해증진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전문인력양성	제13조 2항 다문화가족지원 및 다문화 이해교육 등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노력해야 함.
민간단체 지원	제16조 -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 결혼이민자등이 상부상조하기 위한 단체의 구성·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음.

주: 관련 법령을 본 연구에서 정리함.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law.go.kr/법령/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2017년 12월 8일 인출함.

나.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 한부모가족 지원정책의 근간이 되는 것은 2007년 모·부자복지법에서 개정된 한부모가족지원법(여성가족부, 2017a: 11)으로 한부모가족 복지 증진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여성가족부, 2017a: 470). 주요내용에는 현재 지원정책의 내용이 담겨 있음(표 4 참조).

표 4 | 한부모가족지원법 주요내용

구분	내용	
지원대상자	제4조, 제5조	한부모가족은 모(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로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함.
	제5조 2항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제5조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 <개정 2014.1.21.>
실태조사	제6조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함.
관련 공무원 교육	제6조2항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단체 지원	제9조	한부모가족복지단체를 지원할 수 있음.
지원대상자 조사	제10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매년 1회 이상 관할구역 지원대상자의 가족상황, 생활실태 등을 조사함
복지급여신청	제11조	지원대상자 또는 그 친족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복지급여내용	제12조	1. 생계비 2. 아동교육지원비 3. 아동양육비
복지 자금의 대여	제13조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
		1. 사업에 필요한 자금 2. 아동교육비 3. 의료비 4. 주택자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부모 가족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
고용의 촉진	제14조	-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능력 및 적성 등을 고려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합한 직업을 알선하고 각종 사업장에 모 또는 부와 아동이 우선 고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고용지원 연계	제14조2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한부모가족 관련 시설 및 기관과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 간 효율적인 연계를 도모하여야 한다.
가족지원서비스	제17조	한부모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2.>
		1.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서비스 2. 장애인, 노인, 만성질환자 등의 부양 서비스 3. 취사, 청소, 세탁 등 가사 서비스 4. 교육·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 서비스 5. 인지청구 및 자녀양육비 청구 등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
자녀양육비 이행지원	제17조3	여성가족부장관은 자녀양육비 산정을 위한 자녀양육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법원이 이혼 판결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분		내용
아동·청소년 보육·교육	제17조5	아동·청소년 보육·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한부모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민주택의 분양 임대	제18조	국민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때에는 한부모가족에게 일정 비율이 우선 분양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설설치	제20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주: 관련 법령을 본 연구에서 정리함.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law.go.kr/lsEfnfoP.do?lsiSeq=150441/법령/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2017년 12월 8일 인출함.

다. 다문화 한부모 지원 전달체계 및 지원서비스

- 다문화 한부모의 경우, 다문화 배경을 지닌 한부모라는 특성으로 인해 안정된 생활 및 자녀양육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데,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체계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한부모가족지원센터가 있음.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서 신규사례 대상가구 발굴, 멘토링 제공, 방문지도사 연계, 생활설계, 정서 지원, 사회·정책 정보제공 등의 지원서비스를 제공함. 두 기관에 종사하는 다문화사례관리사, 다문화생활관리사, 한부모가정지원 생활코디네이터 등의 업무를 중심으로 다문화한부모 지원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 5>와 같음.

표 5 | 다문화 한부모 지원 내용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한부모가정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구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부모가정지원센터
	다문화사례관리사 (5일제)	다문화생활관리사 다문화사례관리사 (4일제)	멘토	한부모가정지원 생활코디네이터
소속 기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50개소, 50명	다문화가족지원센터 56개소, 56명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부모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센터 93개소, 106명		건강가정센터	
주요 업무	-1인당 연간 누적 25 사례 이상 신규사례 대상가구 발굴	-1인당 연간 누적 15사 례 이상 발굴 -멘토링 운영관리, -방문지도사 연계사업	초기 결혼이민자 - 정서적지지 - 돌봄 등 - 1:1 멘토링 서비스 제공을 통해 한국에 서의 안정적 정착 및 사회통합 기여	초기 한부모가정의 - 자립의지 고취 - 동기부여 - 생활설계 - 정서 지원 - 사회·정책 정보제공

구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부모가정지원센터
	다문화사례관리사 (5일제)	다문화생활관리사 다문화사례관리사 (4일제)	멘토	한부모가정지원 생활코디네이터
사례 관리 대상	- 위기가구 (가족폭력, 이혼, 자살(시도), 재난 등 경험) - 일반·통합가구		1인당 총 5~10회 실시	1인당 8회 사례: 다문화 한부모: 5~8명,
업무 빈도	주5일	주4일	멘토링 프로그램 : 5회~10회	1인당 평균 8회기(최대 40회기)
보수	28,500천원(연)	20,000천원(연)	25,000원(회)	35,000원(회)
자격 기준	-관련학과 석사학위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2년 이상		- 국내거주 1년 이상인 결혼이민자 - 한국어 구사 - 모범적인 가정생활 유지	- 기본과정교육 10:00~17:00 - 전문과정교육 10:00~18:00

자료: 1)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2017). 2017 한부모 조기자립을 위한 매뉴얼. p.29,
 2) 여성가족부(2017b). 2017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사업안내(II) 부록. pp.397, 401, 406~407.
 3) 「권미경·이재희·최인화(2017). 다문화 배경을 지닌 한부모 육아지원방안. 육아정책연구소」연구에서 수행된 1차 전문가 자문회의(2017년 9월 21일 실시)를 토대로 재구성함.

- 한부모가족이 소송 등에 휘말려 법과 관련된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처할 때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저소득 다문화 한부모일 경우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뿐만 아니라 주거비 지원을 받아 입주할 수 있는 기회가 점차 많아지고, 임대주택과 관련된 불합리한 규정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함.
- 저소득 다문화 한부모로 자녀를 양육하면서 경험하는 경제적 어려움은 공공부조 외에 한부모 가족을 위한 복지급여를 통해 지원되고 있음.
- 한부모 가족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로 긴급한 상황에 일시 돌봄, 가사활동 지원, 정서지원 등 전반적인 생활도움서비스를 제공하는 취약위기가족 지원과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종일제와 시간제 아이돌보미서비스 그리고 0세(임산부)~만12세(초등학생 이하)의 취약계층 아동 및 그 가족에게 제공하는 맞춤형 통합서비스인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 등이 있음.
- 자립 의지를 가진 다문화 한부모에게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취업성공패키지 등과 연계한 직업훈련과 일자리 연계가 지원되고 있음.

4 다문화 한부모 가족특성에 따른 양육지원 요구

- 다문화 배경을 지닌 한부모 15인의 면담내용을 통해 결혼, 이혼과 사별 등 한부모가 된 과정과 국적 취득 문제, 거주, 경제적 문제, 자녀양육의 문제, 지원 이용의 어려움 등을 파악함.
- 결혼, 이혼 또는 사별
 - 한부모가 되게 된 과정 또는 원인은 그 이후 어머니와 자녀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며, 결혼 생활 중의 경험은 이혼인지 사별인지에 따라 대체로 차이를 보임.
 - 사별한 경우는 남편에 대해 긍정적 추억을 이야기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이혼한 경우는 부정적 경험이 상처로 남은 경우가 많았고, 특히 가정불화 기간 동안 아버지의 어머니에 대한 학대를 곁에서 본 경우 자녀들이 어머니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점 등을 양육과정의 어려움으로 꼽았음.
 - 어머니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불평등한 이혼의 과정을 겪는 경우도 있었고, 사별 뒤 에라도 재산의 분배가 공평하지 않아 경제적 빈곤으로 연결되는 양상을 보임.
 - 남편의 원가족과의 관계는 가족에 따라 달랐고, 이혼한 경우 자녀와 아버지와의 만남이 지속되기도 함.
- 국적 취득/귀화 관련 문제
 - 국적의 취득은 최저생계비, 임대주택 등 각종 한부모 지원과 연계되므로 다문화 배경을 지닌 어머니들에게 국적의 취득은 중요한 의미를 지님.
 - 국적 미취득 한부모 가정은 현재 지원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므로 국적의 취득을 도울 수 있는 다면적인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주거 및 공간 문제
 - 자녀와 함께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의 확보는 다문화 배경을 지닌 한부모 가족에게 가장 중요한 해결 과제 중 하나임.
 - 다문화 한부모 가족을 위해 임시 지원 방안으로 쉼터가 제공되고 장기적으로는 임대주택에 입소 우선순위를 부여하지만 국적문제 등으로 이러한 정책의 접근이 쉽

지 않은 경우가 많았음.

- 국적 미취득 상황에서의 주거 공간 지원이 필요함.

□ 경제적 문제

- 다문화 배경을 지닌 한부모들은 대부분 이혼 사별 이후 경제적 빈곤으로 인한 어려움이 많았음.
- 직장을 갖고 자녀를 키우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기초생활비 수급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 지원 또한 국적과 연계되어 있어 국적 미취득의 경우 제외됨.
- 이혼의 경우라도 양육비 추심이 어렵고 이혼 과정에서 이를 포기하게 된 경우도 많았음.
- 그럼에도 자녀 교육에 대한 욕구가 높았고, 사교육 이용 기회 확대를 희망하기도 함.

□ 자녀양육과정의 어려움

- 자녀양육과정에서 문제는 무엇보다 어머니 혼자 양육하는 어려움으로 요약됨.
- 자녀와의 생계유지를 위해 일을 하여야하며, 일반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얻기 힘든 상황이며, 친인척이 가까이 없어서 양육지원을 받기도 어려우며, 특히 아프거나 긴급 상황 발생 시 갑자기 맡길 곳이 없음.
- 자녀들은 어머니 양육 상황에서 아버지의 부재감을 경험하기도 함.
- 자녀를 데리고 일하기 힘든 경우에는 자녀를 취학 전 일정시기 동안 모국에 보내어 양육하기도 함. 그러나 자녀가 중도입국하게 되는 경우에는 자녀의 적응이 수월하지 않은 문제를 지님.
- 모국에서 자녀양육에 도움 받기 위해 친정어머니를 초대하기도 함.
- 자녀와 함께 있지만 어머니 스스로는 외로움을 경험함.
- 자녀의 기관이용이나 학교생활 시 따돌림을 당하거나 차별적인 대우를 받을까 염려하며 자녀의 또래 관계, 학업 등에 관심이 높음.

□ 자녀양육 시 강점과 약점

- 다문화 한부모 어머니들에게 양육자로서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과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함.
- 강점으로는 다문화 배경으로 어려움을 겪지만 열심히 사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준다는 것을 들었음.
- 자녀의 또래 관계형성과 사회성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어머니가 먼저 주도적으로 직장에서 동료나 자녀의 학교에서 어머니들과 사귀려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강점이라고도 함.
-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려 노력한다고 함.
- 경제적으로 빈곤하여 자녀가 원하는 것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부분과 어머니 외 자녀가 경험할 수 있는 가족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부족한 점으로 인지함.
- 다문화 한부모 어머니들은 스스로 인지하는 양육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자조집단을 만들어 정보를 공유하고 양육도 서로 지원하며, 자녀의 또래 친구 어머니들과 유대를 형성하여 양육 도움을 받기도 하였음.

□ 지원제도 이용

- 한국은 지원제도가 많아 한부모가 자녀를 기르기에 어머니 본인의 모국보다 낫다고 평가하는 경향을 보임.
- 다문화 배경을 지닌 한부모 어머니들은 이용 가능한 지원책을 활용하고자 노력하며, 자조모임 등을 통하여 정보를 활발하게 공유하고 있었음.
- 자녀를 위해서는 방문교사제도와 학교 급식제도에 대한 만족이 높음.
- 다문화 한부모들의 제도 활용의 편차가 큼을 고려할 때, 상황에 적절한 정보의 접근, 지원 및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어머니 스스로 정보와 지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음.

- 다문화 배경을 지닌 여성이기 때문에 불평등한 이혼 상황과 사별 후 재산 분배의 과정이 어머니들에게 불리하고 이는 자녀를 양육하는 동안 경제적 어려움으로 연결되는 양상을 확인함.

- 다문화 배경을 지닌 어머니들에게 국적 취득은 지원정책과 연계되는 중요한 문제이나 그 과정이 수월하지 않음.
 - 한국어 교육, 귀화준비 교육 등이 지원되고 있으나, 서류 준비나 은행 잔고 확보 등에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었음. 다문화지원센터 등에서 이러한 준비를 체계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다문화 한부모가 자녀와 함께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의 마련을 위해서는 임대주택 등 주거 지원이 국적 취득 후 지원 가능하므로 국적의 취득을 돕는 것이 우선 필요한 과정으로 고려됨.

5 다문화 한부모 육아지원 개선방안

- 연구 결과를 통해 다문화 한부모 가족을 위한 지원정책의 개선방향을 아동, 어머니, 정책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함.
 - 첫째, 무엇보다 다문화 한부모 가족 안에서 자라는 아동에 초점을 두고 건강한 국민으로의 성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해야 함.
 - 가정의 상황이 어떠한지 그 안에서 자녀는 성장하고, 시간이 지난 이후 그 과정을 돌이킬 수는 없고 이는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한 이유임.
 - 둘째, 다문화 한부모 가족 자립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어머니 역량 강화에 초점 두어야 함.
 - 어머니 스스로 양육자료의 역량을 낮게 인지하고 있는 다문화 한부모 어머니의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이 보완되어야 함.
 - 셋째, 다문화 한부모 가족을 지원 중인 정책의 효율성 제고에 초점을 두어야 함.

정책 방향	지원방안
다문화 한부모 가족 안에 성장하는 아동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제공	- 안전한 주거공간 확보 - 자녀양육 기간 동안 기초생활 지원 - 자녀를 위한 학습지원
다문화 한부모 가족 어머니 역할 강화	- 예방적 접근으로의 상담, 학습기회 확대 - 원스톱 정보제공 및 안내 - 지원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제공 - 사회적 네트워크/자조모임 등 연계 강화
다문화 한부모 지원 제도 및 정책의 효율성 제고	- 법적 제도적 정비 - 지자체 중심 정책안내 - 전달체계 역할과 업무 분장 명료화 - 다문화 한부모 현황 자료구축

[그림 4] 다문화 한부모를 위한 지원정책 개선방향 및 방안

가. 성장하는 아동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 제공

□ 주거 지원을 위해 임시 공간 제공과 임대주택 우선순위 부여

- 갑작스럽게 한부모가 된 상황의 경우 임시 주거공간 지원이 필요함. 현재,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자 다문화 한부모는 자신의 가족 유형에 맞는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할 수 있으나 입소 가능한 가구 수는 전체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임.
-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공동생활지원형에 해당하는 디딤터 경우에는 주거 제공은 물론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직업교육을 실시하나, 그 외에 자녀양육 교육, 인성교육, 상담지도 등의 지원확대가 필요함.

□ 자녀양육 기간 동안 다문화 한부모의 한국 국적 인정

- 다문화 한부모 가정의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어머니가 한국 국적을 지닌 아동의 양육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 방안을 제언함.
- 경제적 어려움은 대부분의 다문화 한부모들이 직면한 문제이나 어머니가 한국인이 아닌 경우에는 기초생계비 수급이 어렵고 자녀에게만 지원됨.
- 성장하는 아동을 지원한다는 맥락에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국적 미취득 어머니에게 한시적인 한국인 지위를 부여하여 기초생활수급, 주거지원 등 지원 혜택을 동일하게 제공하자는 것임.

□ 자녀를 위한 학습지원 강화

- 현재 지역아동센터 등을 통한 학습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가족생활지도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1:1로 만 3세~12세 이하 초등학생 자녀의 학업 및 사회정서발달을 지원하는 서비스 등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에 대한 만족도도 높으나 지원내용 및 기회 확대에의 요구가 높음.
- 향후 유사 기회 확대를 위해 지자체 주도로 대학생 자원봉사활동 등과 연계하여 다문화 한부모 가정 자녀 학습지원을 넓히는 방안을 고려함.
- 교육부에서 농어촌지역 다문화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과 학습지원을 위해 대학생 멘토링을 실시하고 대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데 이를 도시지역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함.

나. 다문화 한부모 어머니 역량 강화

□ 예방적 차원의 상담 및 학습기회 확대

- 무엇보다 다문화 배경 어머니의 역량을 강화하여 다문화 가족에서 한부모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여가는 노력을 선행하여야 함.
- 가장의 급작스런 사망으로 인해 한부모 가정이 되는 경우가 많음을 고려할 때 남은 가족들이 그 심리적 충격을 해결할 수 있는 심리적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 사별로 인한 부분은 예외로 하고라도, 다문화가족에서 흔히 발생하는 언어적 소통의 어려움, 자녀 양육의 어려움,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가족 간 갈등, 가정폭력까지 문제요소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상담이나 한국어 교육, 자녀양육 지원 등을 제공함으로써 줄여갈 수 있음.

□ 원스톱 정보 제공

- 한부모가 된 경황없고 어찌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도움처를 찾을 때 지원제도와 연결하기 위한 정보 제공 및 연계 핫라인 구성을 제안함.
- 이는 서울시에서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우리동네 보육반장’의 개념을 다문화 한부모 가족으로 차용하는 방안임.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프로그램 마련 및 강화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다문화가족 지원 프로그램이 운용 중이나 이 중 한부모 가족을 위한 것은 찾아보기 쉽지 않음.
- 다문화 한부모 가구의 사례를 관리할 경우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사에게는 일반가구 대비 높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센터의 평가지표와 다문화 한부모 가구 지원서비스 정도를 연계하는 제도 마련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음.

□ 사회적 네트워크 강화

- 직장 동료, 이웃 주민, 자녀의 학교 학부모 등 한국인과의 멘토-멘티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함.
- 특히 자녀양육 시기에 자녀가 재원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 등에서 또래 친구 부모들과 연계 형성은 자녀의 학교적응과 어머니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음.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교사 연수 시 다문화 한부모 가족 지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교육내용의 일부로 포함시킴으로써 교사가 다문화 한부모의 자녀양육에 있어서 지원체계 역할을 담당하도록 함.

□ 자조모임 활성화

- 비슷한 경험과 어려움 지닌 경우 상호지원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음.
- 자조모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자조모임을 비영리단체로 지정하거나, 법인화하는 등 법적 단체화하는 과정이 필요함.

다. 다문화 한부모 지원 제도 운용 효율성 제고

□ 법적 제도적 정비

- 이혼하는 과정에서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이혼, 즉, 이혼과정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받지 못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이혼하는 경우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 방안 모색이 필요함.
- 지금까지 다문화 한부모의 이혼이나 법률 분쟁과 관련하여 나타났던 중점 사례들을 고려하여 그에 대한 법적 대응책을 법률적 지원서비스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 지자체 정책 숙지와 담당 업무분담, 정확한 안내가 필요
 - 지자체의 특성을 살린 사업들이 개발 확대되면서 다양한 정책들이 마련되고 있고, 다문화가족 관련 지원도 지자체 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차이를 보이기도 하므로 정책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필요함.
 - 다문화 한부모 지원과 관련한 문의도 다누리콜센터 등에서 다국어를 통해 서비스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함.
- 다문화 한부모 지원정책 안내 매뉴얼 개발 및 배포
 - 현재 한부모 가족을 위한 지원정책 매뉴얼은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서 발간한 것이 있으나 한국인 한부모를 주 대상으로 만들어짐.
 - 결혼이민자로 구성된 '다누리 서포터즈'를 통하여 신규제작 콘텐츠 감수, 번역내용 확인 및 개선에 대한 건의를 받는다고 하므로 '다누리 서포터즈'에 역량 있는 다문화 한부모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지원정책 전달체계의 효율성 제고
 -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통합센터로 운영하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 통합하여 추진하는 사업의 전반적인 효율성은 높아질 수 있으나 다문화 한부모가 지닌 국적 미취득, 언어제약 등의 취약부분으로 인해 통합된 건강가정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나 한부모 가족 지원서비스로의 접근과 이용에 한계가 있음.
 - 다문화 한부모를 지원하기 위해 한부모 가족지원사업에서는 한부모가정지원생활코디네이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다문화사례관리사와 다문화생활지도사 그리고 결혼이민자 멘토링까지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다문화 한부모의 특성을 고려할 때 서로 다른 서비스전달체계 간의 연계가 필요함.
 -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이나, 한부모 가족 지원정책에서 소수의 주변지대, 사각지대로 남는 한부모를 위해 보다 섬세한 정책 접근이 필요함.

- 지원정책에 접근 못하는 다문화 한부모 사각지대 해소 필요
 - 지자체 주민센터,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자조모임 등에 나아와 도움을 청하는 경우는 이미 지원정책의 수혜 가능성이 높아짐.
 - 지원의 사각지대를 찾아내는 노력이 필요하며, 숨은 정책수요자와의 접점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주민센터에 전입 신고하는 때를 활용할 수 있음. 전입신고 시 다문화 지원관련 정책을 push service의 형태로 제공받는 데에 동의를 얻어 필요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안내하는 것임.
- 다문화 배경을 지닌 한부모 현황 파악
 -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3년 주기로 실시하는 한부모 가족 실태조사에는 다문화 배경 여부가 변인으로 들어있지 않아 다문화 한부모는 자료화되지 못하고 있음.
 - 전국다문화가구실태조사에는 혼인상태를 통해 한부모 현황에 대한 부분적 파악이 가능하나 자녀양육 중인 다문화 한부모 비중이 높지 않고 조사내용에 자녀 관련 요인에 대한 부분이 부족함.
 - 다문화 한부모의 경우 자녀양육과정에서 경험되는 어려움이 가장 취약한 부분임을 고려할 때 향후 전국다문화가구실태조사 시에는 다문화 한부모의 비중을 다소 과표 집하고 자녀 관련 요인에 대한 조사내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참고문헌 |

- 권미경·이재희·최인화(2017). 다문화 배경을 지닌 한부모 육아지원방안. 육아정책연구소.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2017). 2017 한부모 조기자립을 위한 매뉴얼.
여성가족부(2017a). 2017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여성가족부(2017b). 2017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사업안내(II) 부록.
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6).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2&vwcd=MT_OTITLE&parmTabId=M_01_02\(중앙행정기관\)여성가족부](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2&vwcd=MT_OTITLE&parmTabId=M_01_02(중앙행정기관)여성가족부)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서 2017년 12월 6일 인출함.
통계청(2017). 2016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

<참고사이트>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law.go.kr/법령/다문화가족지원법> (인출일: 2017년 12월 8일)

<http://www.law.go.kr/lsEfInfoP.do?lsiSeq=150441/법령/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2017년 12월 8일 인출함.

이슈페이퍼 2018-09

어린이집 특수교사 수급 현황과 개선 방안

PART 04

이정림

1. 문제의 제기와 현안
2. 장애 유아 보육 현황 및 특수교사 배치 현황
3. 유아특수교사/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양성
및 수급 현황
4. 어린이집 유아특수교사 수급 개선 방안
5. 어린이집 인적환경 개선 방안
6. 기대 효과

참고문헌

어린이집 특수교사 수급 현황과 개선 방안*

이정림 연구위원

| 요약 |

- 어린이집에 배치된 장애 유아는 장애아전문, 장애아통합, 일반 어린이집에 각각 6,158명, 4,079명, 1,635명으로 총 11,872명이며, 이는 교육부 관할의 유아특수교육기관에 배치된 총 5,186명에 비해 2배 이상임.
- 그러나 11,872명의 장애 아동 중에는 0~2세 장애 영아, 초등학교 입학유예 아동과 방과 후 과정 아동도 포함된 수치라는 점을 고려할 때 3~5세 장애 유아 수는 더 적은 수치일 것으로 추정됨.
- 유아특수교사는 장애아반 담당교사 중 대략 10% 정도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17. 6월 기준,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장애아 보육교사 수치도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만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하는 직무교육 이수자 등이 포함된 수치임.
- 단기적으로 유아특수교사 배치를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로 대체하고자 할 경우 보수교육, 컨설팅, 장학 등의 지원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정확한 지침 및 비용 제공이 되어야 함.
- 중장기적으로는 어린이집 유아특수교사의 급여 및 근무여건 등이 특수학교 교사와 동등한 조건으로 될 수 있도록 국가차원에서의 구체적인 장기계획 수립이 필요함.

1 문제의 제기와 현안

가. 문제의 제기

- 2007년에 제정된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만 3~5세 장애 유아를 의무 교육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장애 유아의 교육 수혜율을 높이고 질적으로 우수한 교육을 제공하고자 하는 의지와 유아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에 대한 국가적 책무성을 실행하기 위한 제도적

* 본 원고는 「이정림·이윤진·박현옥(2017). 어린이집 이용 장애 유아의 지원체계 개선방안. 육아정책연구소」의 내용을 토대로 구성함.

장치로 볼 수 있음.

- 한편 특수교육법이 제정되고 10여년이 지난 현 시점에 이르기까지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장애 유아의 50%가 넘는 대상자가 어린이집에 배치되어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간주' 되고 있음(교육부, 2017a).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19조에서는 일정한 교육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 이용 장애 유아는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간주함.
- 2012년도에 제정된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서는 장애전문 및 장애통합 어린이집의 유아특수교사 배치 기준을 규정하였음.
 - 즉,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가 장애영유아 3명당 1명씩 배치되어야 하고, 배치된 교사 2명당 1명 이상은 유아특수교사여야 함.
 - 이러한 배치 규정은 2016년에는 만 5세 이상, 2017년도에는 만 4세, 2018년도에는 만 3세 까지로 명시하고 있어, 현재 6명 이상의 장애영유아가 있는 어린이집에는 유아특수교사가 1명 이상은 배치되어야 하는 상황임.
- 이상의 법 규정과 달리 현실적으로는 어린이집에서의 열악한 근무조건과 근무환경 등으로 유아특수교사들을 어린이집에 배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유아특수교사는 교육부 소속의 특수학교 유아반, 유치원의 특수학급에 근무하는 유아특수교사에 비해 근무시간이나 근무일수는 많은 반면, 급여는 낮은 편임.
 -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통하여 체계적인 절차를 거쳐 유아 배치를 받고 있는 유치원에 비해, 어린이집은 장애유형과 정도 등이 고려되지 않은 채 배치되고 있고 보조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근무환경이 열악한 편임.
 - 이와 같은 상황으로 인하여 어린이집에서 유아특수교사를 수급하고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나. 유아특수교사 배치 관련 현안에 대한 입장 차이

- 유아특수교사 배치 관련 현안을 둘러싸고 장애영유아 학부모단체, 현장, 관련전문가 들은 다소 상이한 입장 차이를 보임.

□ 원론적 입장

- 장애 유아에 관한 의무교육 관련 법적 규정은「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근거하고 있고, 이러한 법적 근거는 교육부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장애유아와 관련된 교육은 원칙적으로 교육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임.
 - 동법에서는 어린이집을 의무교육 간주기관으로 보고 어린이집에서 보육받고 있는 장애 유아도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원래 법적 근거는 교육부에 있다고 봄.
 - 이러한 맥락에서는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장애 유아가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장애 유아와 동일한 의무교육 대상자로 동일한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고 봄.
-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유아특수교사 배치 관련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입장으로, 이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에서 인정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제 21조 제 2항에 따른 특수학교 유치원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하여야 함.
 - 유치원에서 장애 유아를 유아특수교사가 담당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장애 유아의 질적인 보육을 담보하기 위해서 유아특수교사 관련하여 제정된 법적 기준을 양보 없이 그대로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
 - 유아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자격증을 관할하는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거하여 모든 장애 유아는 의무교육 대상자이므로 교육부가 유치원 뿐 아니라 어린이집 이용 장애 유아까지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
- 교육부에서 어린이집의 유아특수교사 배치를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함.
- 동법에서는 3-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는 의무교육 대상자임을 명시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의무교육 간주 기관으로 인정받은 어린이집에 장애 유아가 배치될 수 있으나 관련 책무는 국가가 담당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
- 모든 장애 유아는 의무교육 대상자이고 국가는 동일한 의무교육 대상자에게 동등한 질적인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논거
- 장애영유아 학부모단체와 일부 관련 전문가들의 입장

□ 현실적 입장

-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장애 유아를 교육하는 유아특수교사 배치를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보고, 현실적으로 해결 가능한 입장을 모색하여야 한다는 입장
- 교육부 발령 유아특수교사 자격 소지자를 어린이집에 배치하는 것은 다소 요원한 상황이므로 어린이집 관장의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해결하자는 입장
- 유아특수교사 배치 규정을 삭제하고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가 유아특수교사를 대체하자는 방안을 제안함.
-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시행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특수교사 수급이 어려운 어린이집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너무 많은 부담을 주지 말고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함을 강조
- 현장에서의 요구도가 가장 많은 제안으로 「장애아동복지지원법」시행을 연기하거나 관련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요구함.

□ 절충적 입장

- 원론적 입장을 양보하기에는 장애 유아 보육의 질적 저하 우려 및 상향화된 법적 규정이 후퇴하는 상황이 됨으로 법적 규정은 그대로 두되, 현실적으로 법적 기준을 준수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잠정적인 유예기간을 두고 법적 기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단계적인 준비 작업을 하자는 입장
- 장기적으로 어린이집의 유아특수교사 배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유아특수교사 수급이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여 관련 법 기준 적용을 한시적으로 연기하자는 중도적인 입장
- 한시적 연기 기간 동안 유아특수교사 수급 방안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자는 방안을 제안함.
- 일부 학계 전문가와 현장 전문가의 입장

- 이상과 같은 입장 차이로 인한 간극은 유아특수교사 배치를 둘러싼 현안 해결을 다소 어렵고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함.

2 장애 유아 보육 현황 및 특수교사 배치 현황

가. 어린이집의 장애 유아 배치 현황

- 어린이집에 배치된 장애 유아 현황은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음.
 - 2017년 기준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일반 어린이집에 각각 6,161명, 4,066명, 1,462명의 유아가 배치되어 총 11,689명의 장애 유아가 배치되어 있음.
 - 이는 2017년 기준 교육부 관할의 유아특수교육기관에 배치된 총 5,437명 유아에 비해 2배가 넘는 수치임.
 - 그러나 11,689명의 장애 아동 중에는 0~2세 장애 영아, 초등학교 입학유예 아동과 방과 후 과정 아동도 포함된 수치라는 점을 고려할 때 3~5세 장애 유아 수는 더 적은 수치일 것임.
 - 현재 연령별 어린이집 배치 장애 유아 수가 명확하게 제시된 통계 자료가 없어 정확한 인원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임.

<표 1> 어린이집 설립 주체 및 운영 형태에 따른 장애 유아 배치 현황

단위: 기관 수(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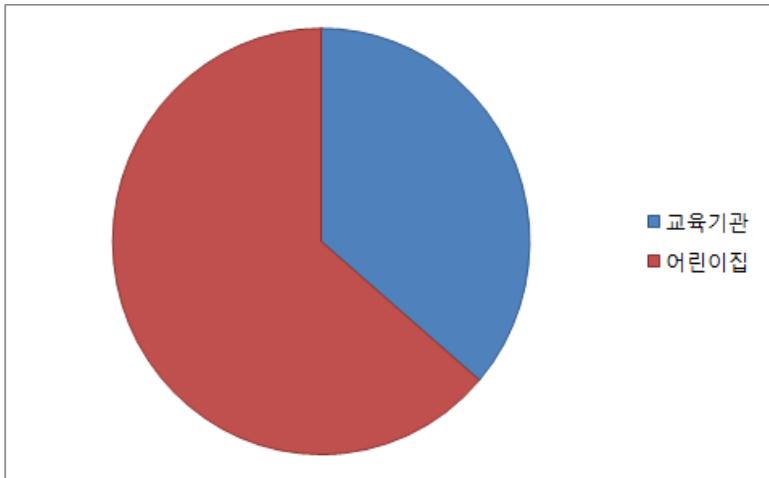
구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민간	가정	협동	직장	계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43 (1,292)	104 (3,923)	6 (204)	24 (724)	1 (18)	0 (0)	0 (0)	178 (6,161)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709 (3,007)	37 (166)	34 (194)	143 (653)	14 (22)	2 (4)	7 (20)	946 (4,066)
일반 어린이집	80	71	37	761	228	7	35	1,219 (1,462)
소계	832	212	77	928	243	9	42	2,343 (11,689)

주: 장애 유아 수는 장애 영아 및 초등학교 입학 유예 아동 등이 포함된 수치임.

자료: 보건복지부(2017a), 보육통계(2017. 12. 31일 기준)

- 어린이집 이용 장애 유아에 대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유치원의 특수학급이나 특수학교 유치부 등을 이용하는 장애 유아보다 더 많은 것으로 보임.

-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장애 유아는 전체 장애 유아 중에서 매우 적은 수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보육통계를 근거로 등록된 장애영유아는 73,470명이며, 이 중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육 받고 있는 장애영유아는 11,872명으로 전체 장애영유아의 16.2%에 불과함 (박현옥·김주영·이계윤, 2017).



주: 특수교육연차보고서의 특수교육 통계와 보육통계를 토대로 구성하였음.

자료: 1) 교육부(2017a), 특수교육연차보고서.

2) 보건복지부(2017a), 보육통계. 보건복지부.

[그림 1] 어린이집과 교육기관에 배치된 장애 유아 수

나. 어린이집에서의 유아특수교사 배치 현황

-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과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의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배치 현황은 <표 2>와 같음.
- 유아특수교사는 장애아반 담당교사 중 대략 10% 정도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보건복지부, 2017b).
- 장애아 보육교사 수치도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만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하는 직무교육 이수자 등이 포함된 수치임.
- 현재 보육통계 상의 특수교사 및 장애아 보육교사 수치를 통해서는 「장애아동복지지

원법」에서 규정하는 유아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 기준을 제대로 갖춘 교사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움.

- 장애 유아 현원 파악을 포함하여 자격을 갖춘 유아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교사에 대한 현황 파악은 어린이집 이용 장애 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 반드시 수행되어야 하는 선결과제임.

〈표 2〉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특수교사 및 장애아 보육교사 현황

단위: 명

어린이집 유형	장애아 수	특수교사	장애아 보육교사
장애아전문어린이집	6,161	1,269	835
장애아통합어린이집	4,066	833	558
계	10,227	2,102	1,393

주: 〈표 2〉의 특수교사 수치는 유아특수교사만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인정 특수교사 자격 소지자가 포함된 수치임.
 자료: 보건복지부(2017a), 보육통계, p.145, 148.

3 유아특수교사/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양성 및 수급 현황

가. 장애영유아를 위한 교원 배치 및 교사 자격

- 어린이집에 배치된 장애 유아를 위한 교원 배치에 관련한 법규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과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및 동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음.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서는 장애 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은 자격을 가진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등을 배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음.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에서는 장애 아동이 배치된 어린이집에서는 장애아 3명마다 보육교사 1명을 배치해야 하며, 보육교사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보육교사 3명 중 1명은 특수학교 유치원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여야 한다고 하였음.
 - 이와 더불어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에서는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자격은 어떠한지 하는지를 명시하였음.

- 현재 어린이집에서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자격을 갖춘 교사, 즉 교육부에서 발령하는 유아특수교사 자격을 갖춘 교사와 보건복지부에서 발령하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라는 서로 다른 자격을 가진 두 영역의 전문가가 같은 기관에 배치되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임.
 - 이처럼 두 개의 서로 다른 자격을 가진 교사가 어린이집에 근거하게 된 가장 핵심적인 근거는 ‘어린이집’이 ‘의무교육 간주 기관’이므로 보육교사만으로 운영되는 비장애 유아의 상황과 다름.
 - 따라서 의무교육 간주 기관인 어린이집에서는 장애아 3명마다 보육교사 1명을 배치해야 하며, 보육교사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보육교사 3명중 1명은 특수학교 유치원 교사 자격을 갖춘 유아특수교사를 배치해야 함.

나. 유아특수교사 양성 현황

- 유아특수교사 양성 현황
 - 2017년 10월 현재 교원양성 현황을 살펴보면 4년제 대학교 총 11개 대학에서 매년 250명 내외의 유아특수교사를 양성하고 있음.
 - 교육대학원에서도 약간의 유아특수교사를 양성하고 있는데, 총 14개 교육대학원에서 유아특수교육 전공을 설치하고 있으나 입학정원이나 자격증 취득 인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명시된 자료가 없음.
- 유아특수교사 양성 대학 교육과정
 - 교원자격검정 실무 편람(교육부, 2017b)에 따르면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는 교직과목과 전공과목을 다음과 같이 이수하도록 하고 있음.
 - 즉, 교직과목 22학점 이상, 전공과목에서는 특수교육 관련 전공과목을 42학점 이상, 현장관찰 및 실습 관련 전공과목을 38학점 이상 이수해야 함.
- 현재 기준으로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경우 교육대학원이나 특수교육대학원에서 유아특수교육을 전공한다고 할지라도 유아특수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실정임.
 -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경우, 일부 교육대학원의 경우에는 교육대학원에서 유아교육

을 전공할 시 유치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데 반해 장애영유아 보육교사의 경우에는 이러한 경로가 차단되어 있음.

다.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양성 현황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양성 현황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는 2개 전문대학에서 양성하고 있으며 매해 총 120여 명을 양성하고 있음.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양성 대학 교육과정

- ‘장애아동복지법’이 제정된 2011년 이후 대학에서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를 양성하는 학과는 전국에서 2개 대학으로 3년제인 연성대학교 유아특수재활과와 한국복지대학교 장애유아보육과가 있음.

- 예를 들면, 연성대학교 유아특수재활과 교수의 협조를 통하여 확보한 내부 자료에 의하면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었음.

- 첫째, 전공교과는 크게 보육자격 교과목과 장애영유아보육교사 교과목으로 나누어 편성되었음,

- 보육교사 자격 관련 교과목은 교사 인성영역인 보육교사론, 아동권리와 복지 등 총 19과목(57학점)으로 편성하고 있음.

-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자격 관련 교과목은 특수교육학개론 등 총 12과목(36학점)으로 편성하여 보육교사 및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고 함.

- 이상에서 소개하였던 두 개 학교 이외는 4년제 대학으로 현재 한국성서대학교 영유아보육학과에서 유아교육 전공 교수 3명과 유아특수교육 전공 교수 2명이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를 양성하고 있음.

- 한국성서대학교에서는 장애교과목 8과목(24학점)이 보육교사 과정과 함께 운영되고 있음.

- 일반보육에 대한 이수과목이 많아서 일반보육에 대한 이해가 높아 통합보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어린이집 현장에서의 적용 및 효율성이 높을 수 있는 장점이 있을 수 있음.

- 반면, 장애교과목이 24학점으로 유아특수교육학과에서 이수하고 있는 80학점에 크게 못 미치는 학점으로 특수교육 관련 전문성을 확보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 한편, 이상에서 언급되었던 학교 외에서 장애영유아 보육교사가 양성되는 경우에는 특수교육 전공 전임 교수가 없는 학교가 대부분으로 주로 외래 강사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¹⁾.
- 또한 장애아보육실습이 실시되지 않고 있으며,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자격 취득 8과목에 대한 교과목 개요도 부재한 상황임.
- 현재 보육교사 자격 검정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8과목에 대한 유사교과목명으로도 교과목 이수를 인정받는 상황임.
- 어린이집 이용 장애 유아를 질 높은 서비스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교과목이 포함되어 교원 양성체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즉, 비장애 유아에 대한 이해를 위한 교과목, 실습과목, 특수교육 관련 전문성 배양을 위한 교과목 등이 포함되어야 함.

라. 유아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수급 현황

- 이상에서 언급되었듯이 유아특수교사 양성 자체가 많이 되지 않고 있으며, 수도권 지역 대학에서는 유아특수교사 양성학과가 부재한 상황으로 천안이남 지역에서만 양성되고 있음.
- 반면, 유아특수교사 수요는 수도권에 더 많은 상황이므로 지역에서 양성된 유아특수교사들이 수도권으로 이동해야 하는 현실임.
- 배출된 유아특수교사들은 특수학교, 특수학급, 특수교육지원센터 등으로 분산되어 지원 및 취업하고 있음.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양성도 2개 전문대학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어 유아특수교사 대체 역할로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를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장애영유아

1) 2017년 11월 1주에 실시된 2명의 유아특수교육 전공 교수의 서면자문 내용을 토대로 함.

를 위한 보육교사 수급도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 현장경험이 많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가 교육(특수교육)대학원에서 유아특수교육을 전공하여도 유아특수교사 자격 취득이 어려움.
- 현재 대학 평가 시 유아특수교사가 어린이집에 취업을 할 경우 임용율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도 어린이집의 유아특수교사 배치를 어렵게 하는 요인 중 하나임.
- 2017년 12월 4일자 교육부 보도자료에서 '22년까지 특수학교 22교 이상(특수학급 1,250학급) 신설 및 특수교사 확충 계획을 표명함으로써 어린이집에서의 특수교사 배치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됨.
- 이상과 같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특수교사 배치를 어렵게 함.

4 어린이집 유아특수교사 수급 개선 방안

가. 중단기 방안

- 단기적으로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로 대체, 유아특수교사 수당 지급, 교육부와의 협조 협의 방안 등에 관하여 다음에서 구체적으로 제안하였음.
- 첫째, 유아특수교사 배치를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로 대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보수교육, 컨설팅, 장학 등의 지원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정확한 지침 및 비용 지원이 되어야 함.
 - 교사 교육 내용, 방법(온라인/집체 등), 횟수, 장소, 강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이 정해져야 하고, 어떤 전달체계(예, 육아종합지원센터 등)를 활용하여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 수립 및 전달이 이루어져야함.
 - 이에 따른 사업 운영비 확보가 필요함.
- 둘째, 어린이집에 유아특수교사를 단기적으로 유인하기 위한 방안으로 어린이집 유아특수교사에 대한 차별화된 수당 지급 방안 마련을 제안함.
- 셋째, 보건복지부는 교육부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공동 대책을 마련해야 함.

- 현장 경력이 많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가 교육(특수교육)대학원에 진학하여 유아특수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해야 함.
- 대학평가에서 어린이집에 취업할 시에도 임용률로 인정해주는 방안을 수용하는 것에 협의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함.

나. 장기 방안

- 장기적으로는 어린이집 유아특수교사의 급여 및 근무여건 등이 특수학교 교사와 동등한 조건으로 될 수 있도록 국가차원에서의 구체적인 장기계획 수립이 필요함.
- 첫째, 특수교육과가 있는 사범대학에 유아특수교육과를 신설하거나 특수교육과 또는 유아교육과 학생들이 유아특수교육을 복수전공 하도록 하고, 이를 실현하는 학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실시함.
- 둘째, 장기적으로 유아특수교사를 유인하고 배치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특수학교에 배치된 교원과 동일한 수준의 급여 조건과 근무여건(근무시간 조정 등)으로 진척시켜 나가야 함.
- 셋째, 유아특수교사를 지원할 수 있는 보조인력 배치도 갖추어서 장기적으로는 한 명의 장애 유아 당 한명의 교사가 돌보는 맞춤형 형태의 지원으로 나아가야 함.

5 어린이집 인적환경 개선 방안

가. 중단기 방안

- 중단기적으로 유아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를 지속적으로 배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안이 지원되고 제공되어야 함.
- 첫째, 교사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및 컨설팅이 제공되어야 함.
 - 본 연구에서 어린이집 장애 담당 보육교사들의 면담 결과, 전문가들로부터 받는 슈퍼비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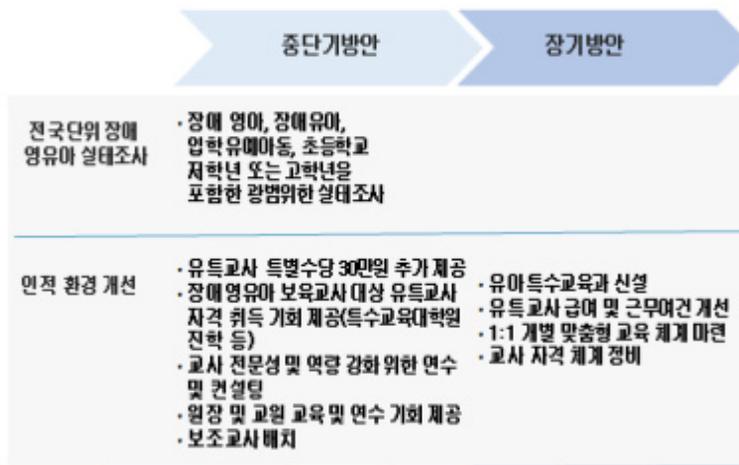
- 장애 담당 보육교사들은 전문적인 지식이나 역량에 대한 갈급함이 많았고, 이러한 욕구가 충족될 때 교사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는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교사 연수나 컨설팅 사업이 강화됨으로써 장애 유아를 위한 질 높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임.
- 둘째, 원장 및 장애아 통합반의 일반교사 교육 및 연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함.
 - 장애 유아를 위한 서비스 지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원장과 장애아 통합반의 일반교사들에 대한 교육 및 연수가 필요함.
 - 원장과 장애아 통합반의 일반교사들의 장애 유아에 대한 이해가 선행하지 않고 이들과의 협조와 연계를 이루기는 용이하지 않음.
 - 집체교육 뿐 아니라 온라인교육 등 다양한 형태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셋째, 보조교사 배치가 이루어져야 함.
 - 어린이집의 장애 유아 배치는 장애정도와 유형이 고려되지 않은 상태로서 한명의 특수교사나 장애영유아 보육교사가 다른 유형의 장애를 가진 유아를 동시에 돌보는 것에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음.
 - 이를 위한 해결 방안은 보조교사 지원임.
 - 또한 교사 연수와 휴가와 같은 교사의 복지와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보조교사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함.
- 특수교사 수급을 포함한 효과적인 장애영유아 지원을 위하여 전국 단위의 장애영유아 실태조사가 필요함.
 - 장애 영아, 장애 유아, 초등학교 입학 유예 장애 아동, 방과 후 과정 장애 아동 등에 관한 현황 및 교사 배치 현황, 서비스 제공 현황 등에 관한 정확한 기초 자료를 토대로 지원 정책 마련이 필요함.
 -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취득한 어린이집의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배치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이 우선 되어야 유아특수교사 수요 및 공급에 대한 적절한 대책 마련이 가능함.
 - 관련 전문가 집단의 컨소시움을 구성하여 질문 제작 및 조사 진행 등을 추진할 필요

가 있고, 이를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관리 감독하여 진행할 수 있는 국가정책 연구기관이 필요함.

- 현재 장애영유아 현황 파악, 교사 현황(유아특수교사, 특수교사 인정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등) 파악, 장애영유아 지원체계인 인적환경, 물리적 환경, 프로그램 및 치료 연계 등과 관련된 정보 부재임
-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장애영유아 대상 전국적인 광범위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함.

나. 장기 방안

- 장애 유아 담당 교사 외에 원장과 장애아 통합반의 일반교사들에 대한 교육 및 연수가 주기적으로 제공되고, 이와 관련된 비용 지원 및 대체인력이나 보조인력 지원이 원활해질 수 있는 체계가 구성되어야 함.
- 어린이집에 특수교사가 배치될 경우,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라는 두 개의 다른 자격에 대한 기능과 역할, 급여 등에 관한 논의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함.
- 궁극적으로는 장애 유아를 담당하는 교사들에 관한 자격 체계가 일원화되어 각 자격에 대한 기능과 역할 등이 정리되고 체계화 되어야 함.



[그림 2] 어린이집 유아특수교사 수급 개선 방안

6 기대 효과

- 어린이집에서의 유아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양성 및 수급 현황 파악 등을 통한 유아특수교사 수급 방안 모색 및 해결책 마련
- 전국 단위의 장애영유아 실태조사 실시로 장애영유아 현황, 교사 현황, 장애영유아 지원체계인 인적환경, 물리적 환경, 프로그램 및 치료 연계 등과 같은 관련 정보 파악을 통한 적절한 정책 방안 마련 기반 조성
- 어린이집 이용 장애 유아가 제공받고 있는 서비스 내용 파악을 통한 어린이집 이용 장애 유아에 대한 서비스 격차 요인 파악 및 이에 관한 해결 방안 마련

| 참고문헌 |

교육부(2017a). 특수교육연차보고서.

교육부(2017b). 2017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교육부(2017c).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18~'22) 계획' 발표(2017. 12. 4.). 보도자료.

보건복지부(2017a). 보육통계.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2017b). 장애영유아 어린이집 유아특수교사 보유 현황(2017년 6월 기준). 내부자료.

박현옥·김주영·이계윤(2017). 장애아보육강화연구 -3~5세 장애 유아 의무교육체계를 중심으로-. 전국장애아동보육제공기관협의회·전국장애아동통합어린이집연합회.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법률 제15234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211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법률 제14332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960호]

이슈페이퍼 2018-13

맞벌이 가정의 긴급보육 실태 및 개선과제

유해미

1. 문제 제기
2. 맞벌이 가정 긴급보육 지원 정책
3. 맞벌이 가정 긴급보육 실태 및 요구
4. 개선 과제

참고문헌

맞벌이 가정의 긴급보육 실태 및 개선과제*

유해미 연구위원

| 요약 |

- 맞벌이 가정의 어린이집 이용에도 불구하고 긴급할 때 자녀를 맡길 데가 없어 어려움을 경험한 경우는 자녀가 아픈 경우가 64.8%로 가장 많고, 특히 0세아의 해당 연간 횟수는 평균 7.8회로 높게 나타남.
- 자녀가 아파서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못한 경우, 가족돌봄 휴가를 희망하는 비율이 58.7%로 높게 나타나고, 그 다음으로 아이돌봄서비스 13.5%, 의료기관 내 부설 보육시설 돌봄 12.1% 순으로 조사됨.
- 맞벌이 가정의 자녀가 아파서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대체교사를 가정으로 파견할 시에는 1) 가정파견형 대체교사의 안정적인 인력풀 확보, 2) 대체교사의 건강권 보장, 3) 대체교사 서비스 질 관리, 4) 아이돌봄지원사업 등 기존사업과의 중복 문제 등을 고려해야 함.
- 대체교사 지원 방안으로는 6개월 이상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아픈 아동에 대한 교육과 아동학대 교육을 강화하고, 사후관리 방안을 별도로 마련하며, 오전 7시반부터 오후 7시반까지 서비스를 운영하고, 서비스 위탁기관으로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고려할만함.

1 문제 제기

- 맞벌이 가정의 자녀 돌봄지원을 위해 어린이집의 종일제보육 운영을 의무화하고,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보육서비스 지원을 위해 시간연장형 보육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긴급보육에의 대응 정도는 미흡한 실정임.
- 특히 맞벌이 가정의 자녀가 아픈 경우는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없는 대표적인 긴급보육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음.
 - 특히 수족구병 등 법정 전염성 질병 및 감기, 눈병 등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어린이

* 본 원고는 「유해미·이민희(2017). 맞벌이 가정 대체교사 긴급지원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의 내용을 토대로 구성함.

집 이용 아동은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고 가정보호를 요함.

- 따라서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맞벌이 가정의 자녀가 질병, 사고 등으로 어린이집에 단기간 동안 등원할 수 없는 긴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대체교사를 지원하는 방안을 위주로 모색함.
 - 이를 위해 맞벌이 가정의 긴급보육 시 애로사항 및 요구를 파악하고, 특히 어린이집 이용 중인 맞벌이 가정의 자녀가 질병 등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가정으로 대체교사를 지원할 시의 고려점과 세부 운영사항을 제시함.

2 맞벌이 가정 긴급보육 지원 정책

- 맞벌이 가정의 자녀가 아파서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아이돌봄지원사업에서 “감염아동 특별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동 사업의 목적은 수족구병 등 전염성 질병 감기·눈병 등의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시설(어린이집 등) 이용 아동을 가정에서 보호하려는 것임(아이돌봄지원서비스 홈페이지, 2018. 4. 30 검색).
- 지원내용으로는 질병 완치 시까지 이용 가정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서비스 비용의 50%를 지원하며, 이용단가는 시간당 9,360원(정부지원 4,680원, 부모부담 4,680원)이고, 야간 및 휴일에는 시간당 4,680원이 추가됨.
 - 전염성 질병 감염에 따른 서비스 이용은 정부지원 시간(연 600시간)에 포함되지 않음.
- 지원절차로는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종사자 또는 이용자 가정의 신청으로 우선 서비스 제공, 추후 진단서(소견서) 및 처방전 중 1부와 시설 미이용 확인서(결석확인서 포함)를 서비스 제공기관에 제출해야 함.

3 맞벌이 가정의 긴급보육 실태 및 요구

- 2017년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영유아를 둔 맞벌이 가정의 부모 1,000명을 대상으로 긴급보육의 실태 및 지원요구, 대체교사의 가정 내 파견 시의 요구사항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가. 긴급보육 실태 및 대응

-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 중이나, 긴급할 때 자녀를 맡길 데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8.9%에 달함.
 - 긴급보육 발생 빈도는 가끔 발생하는 경우(2달에 1회 이하) 35.0%, 한 달에 1번 28.5%, 아주 가끔 발생하는 경우(연중 3회 이하) 20.3% 순으로 조사됨.

〈표 1〉 긴급보육 어려움 여부

단위: %(명)

구분	예	아니오	계(수)
전체	78.9	21.1	100.0(1,000)
자녀연령 ¹			
0세	93.2	6.8	100.0(44)
1세	80.9	19.1	100.0(157)
2세	78.6	21.4	100.0(281)
3세	81.9	18.1	100.0(259)
4세	74.7	25.3	100.0(166)
5세	68.8	31.2	100.0(93)
$\chi^2(df)$	14.572(5)*		

자료: 유해미·이민희(2017). 맞벌이 가정 대체교사 지원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 58.

* $p < .05$.

〈표 2〉 긴급보육 발생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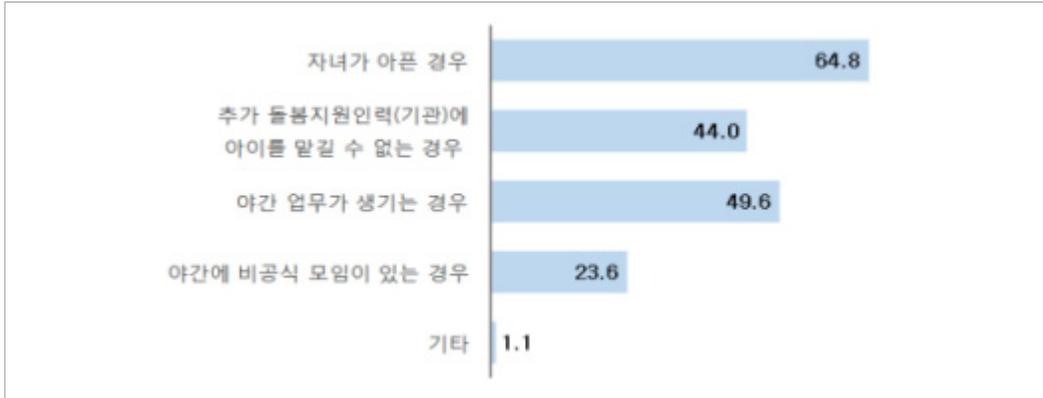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아주 가끔 발생함 (연중 3회 이하)	가끔 발생함 (2달에 1회 이하)	보통 (한달에 1회 정도)	자주 발생함 (한달에 2회 이상)	매우 자주 발생함 (1주일에 1회 이상)	계(수)
전체	20.3	35.0	28.5	13.8	2.4	100.0(789)
자녀연령 ¹						
0세	7.3	34.1	31.7	26.8	0.0	100.0(41)
1세	16.5	39.4	28.3	11.8	3.9	100.0(127)
2세	21.7	35.7	28.1	12.7	1.8	100.0(221)
3세	18.9	36.3	30.7	11.8	2.4	100.0(212)
4세	21.0	31.5	27.4	16.1	4.0	100.0(124)
5세	34.4	26.6	23.4	15.6	0.0	100.0(64)
자녀연령 ²						
영아	18.5	36.8	28.5	13.9	2.3	100.0(389)
유아	22.0	33.3	28.5	13.8	2.5	100.0(400)
월 가구소득						
200만원 이하	27.8	27.8	27.8	11.1	5.6	100.0(18)
400만원 이하	21.6	34.5	27.3	14.8	1.9	100.0(264)
600만원 이하	20.4	35.8	27.5	14.3	1.9	100.0(363)
600만원 초과	16.7	34.7	33.3	11.1	4.2	100.0(144)
거주지역						
광역시	14.5	40.8	27.7	14.5	2.6	100.0(311)
중소도시	23.2	30.8	30.8	12.9	2.3	100.0(426)
읍면지역	30.8	34.6	15.4	17.3	1.9	100.0(52)

자료: 유해미·이민희(2017). 맞벌이 가정 대체교사 지원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p. 58~59.

- 어린이집 이용에도 불구하고 긴급할 때 자녀를 맡길 데가 없어 어려움을 경험한 경우는 자녀가 아픈 경우가 64.8%로 가장 많음.
- 자녀가 아파서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못한 경우 연간 횟수는 평균 5.52회이며, 해당 횟수는 자녀연령이 어릴수록 높은 경향을 보여 0세아는 평균 7.8회로 높게 나타남 (유해미·이민희, 2017: 61).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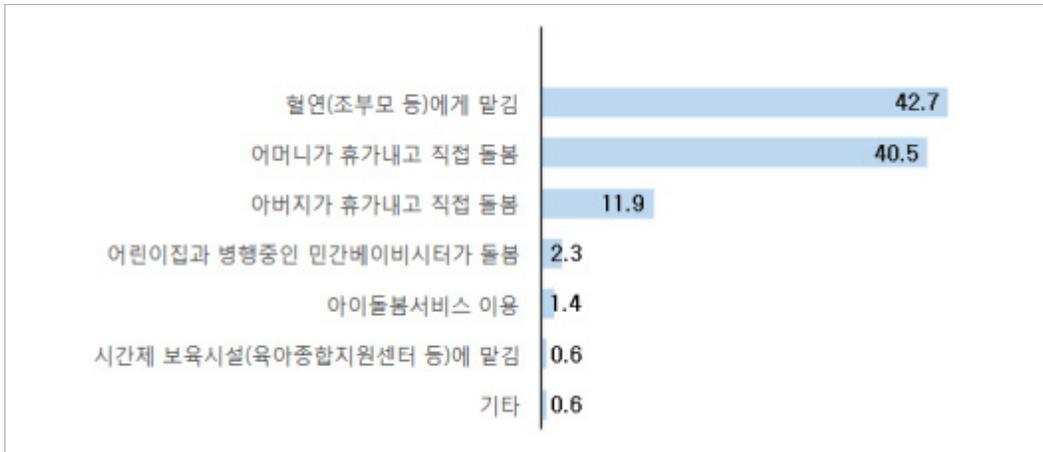


자료: 유해미·이민희(2017). 맞벌이 가정 대체교사 지원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 60.

[그림 1] 긴급보육 경험 상황(중복응답)

- 자녀가 아파서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못한 경우, 자녀를 돌봐준 사람 또는 기관으로는 조부모 등 혈연이 42.7%, 어머니가 휴가를 내고 직접 돌봄 40.5%, 아버지가 휴가를 내고 직접 돌봄 11.9%로 조사됨.

단위: %



자료: 유해미·이민희(2017). 맞벌이 가정 대체교사 지원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 62.

[그림 2] 자녀가 아파서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못한 경우의 돌봄인력 및 기관

나. 긴급보육 시 지원 요구

- 어린이집 이용 중인 자녀가 아파서 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희망하는 서비스로는 부모의 직접 돌봄이 58.7%로 높게 나타났으며, 아이돌봄서비스 13.5%, 의료기관 내 부설 보육시설에서 돌봄 12.1% 순으로 조사됨.
- 특히 기관을 단독으로 이용 시에 부모의 직접 돌봄을 희망하는 비율이 60.9%로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남.

〈표 3〉 자녀가 아픈 경우 희망 서비스_전반

단위: %(명)

구분	부모 휴가를 제공할	아이돌봄이 가 돌봄	의료기관내 부설 보육시설에서 돌봄	환아전문 거점 보육 시설에서 돌봄	대체교사가 가정에서 돌봄	기타	계(수)
전체	58.7	13.5	12.1	9.1	6.5	0.1	100.0(1,000)
자녀연령							
영아	57.1	13.9	13.3	9.1	6.4	0.2	100.0(482)
유아	60.2	13.1	11.0	9.1	6.6	0.0	100.0(518)
추가 돌봄 여부							
병행	47.5	11.1	19.1	12.3	9.9	0.0	100.0(162)
기관 단독 이용	60.9	14.0	10.7	8.5	5.8	0.1	100.0(838)
월 가구소득							
200만원 이하	56.5	8.7	17.4	13.0	4.3	0.0	100.0(23)
400만원 이하	57.4	11.6	14.7	11.3	5.0	0.0	100.0(319)
600만원 이하	58.5	15.3	11.2	6.7	8.0	0.2	100.0(463)
600만원 초과	61.5	12.8	9.2	10.8	5.6	0.0	100.0(195)

자료: 유해미·이민희(2017). 맞벌이 가정 대체교사 지원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 63.

- 부모의 직접 돌봄 이외에 자녀가 아파서 어린이집에 가지 못한 경우, 희망 서비스로는 의료시설 내 부설 보육시설이 37.1%로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는 아이돌봄이 29.0%로 나타남.
- 대체교사 가정 파견 돌봄을 희망하는 비율은 14.3%에 그쳤으며, 특히 0세아를 둔 가구에서 해당서비스를 희망하는 경우는 전무함.

- 아픈 자녀의 보육지원으로 대체교사 파견 방식보다 기관을 더 선호하는 이유로는 파견된 돌봄인력의 신원이 불확실하고(31.8%), 전문성이 의문시되며(26.6%), 낮은 돌봄인력에 대한 자녀의 적응 문제에 대한 우려(25.8%) 등이 지적됨.

〈표 4〉 자녀돌봄 휴가 이외에 자녀가 아픈 경우 희망 서비스

단위: %(명)

구분	의료기관내 부설 보육시설 에서 돌봄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파견되어 돌봄	환아전문 거점 보육시설에서 돌봄	대체교사가 가정으로 파견되어 돌봄	기타	계(수)
전체	37.1	29.0	17.2	14.3	2.4	100.0(587)
자녀연령 ¹						
0세	28.0	48.0	20.0	0.0	4.0	100.0(25)
1세	31.6	29.5	24.2	11.6	3.2	100.0(95)
2세	44.5	32.3	7.7	13.5	1.9	100.0(155)
3세	36.8	27.1	14.8	19.4	1.9	100.0(155)
4세	36.4	32.3	18.2	10.1	3.0	100.0(99)
5세	32.8	10.3	34.5	20.7	1.7	100.0(58)
자녀연령 ²						
영아	38.5	32.7	14.5	11.6	2.5	100.0(275)
유아	35.9	25.6	19.6	16.7	2.2	100.0(312)
월 가구소득						
200만원 이하	30.8	23.1	38.5	7.7	0.0	100.0(13)
400만원 이하	45.4	19.1	18.6	15.3	1.6	100.0(183)
600만원 이하	29.9	34.7	17.3	14.4	3.7	100.0(271)
600만원 초과	41.7	31.7	12.5	13.3	0.8	100.0(120)

자료: 유해미·이민희(2017). 맞벌이 가정 대체교사 지원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p. 64-65.

다. 대체교사 파견 시 요구

- 현행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감안하여 자녀가 아픈 경우 대체교사를 가정으로 파견하는 제도를 도입할 시의 각종 운영기준에 관한 의견은 이하와 같음.
- 가정 내 파견 대체교사 자격요건으로는 ‘보육교사와 동일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60%로 나타난 반면, 보육교사보다 낮은 자격여도 무방하다는 의견은 7.3%에 불과함.

〈표 5〉 가정파견 대체교사의 자격요건

단위: %(명)

구분	보육교사와 동일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보육교사보다 높은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보육교사보다 낮은 자격요건이어도 된다	계(수)
전체	60.0	32.7	7.3	100.0(1,000)
자녀연령				
영아	60.8	32.4	6.8	100.0(482)
유아	59.3	33.0	7.7	100.0(518)
추가돌봄 여부				
병행	52.5	38.3	9.3	100.0(162)
기관 단독 이용	61.5	31.6	6.9	100.0(838)

자료: 유해미·이민희(2017). 맞벌이 가정 대체교사 지원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 68.

- 가정으로 파견되는 대체교사의 희망서비스 이용료는 시간당 6,000~8,000원이 51.4%를 차지하며, 9,000원 이상이 10%선으로 조사됨.
 - 희망서비스 비용은 월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낮은 경향을 보이므로, 소득기준을 적용한 비용지원을 고려할만함.

〈표 6〉 대체교사 긴급보육 파견 시 희망 이용비용

단위: %(명)

구분	3,000~ 4,000원 미만	4,000~ 5,000원 미만	5,000~ 6,000원 미만	6,000~ 7,000원 미만	7,000~ 8,000원 미만	8,000~ 9,000원 미만	9,000~ 10,000원 미만	10,000원 이상	계(수)
전체	8.2	9.0	10.8	33.9	17.5	5.9	8.5	6.2	100.0(1,000)
자녀연령									
영아	8.7	10.2	9.3	34.9	18.3	4.4	9.1	5.2	100.0(482)
유아	7.7	7.9	12.2	33.0	16.8	7.3	7.9	7.1	100.0(518)
추가돌봄 여부									
병행	6.8	7.4	14.8	32.1	14.2	5.6	7.4	11.7	100.0(162)
기관 단독 이용	8.5	9.3	10.0	34.2	18.1	6.0	8.7	5.1	100.0(838)
월 가구소득									
200만원 이하	34.8	17.4	8.7	34.8	4.3	0.0	0.0	0.0	100.0(23)
400만원 이하	10.3	13.5	12.2	33.9	18.8	4.1	4.1	3.1	100.0(319)
600만원 이하	6.3	8.4	11.7	34.3	17.7	7.1	9.5	5.0	100.0(463)
600만원 초과	6.2	2.1	6.7	32.8	16.4	6.7	14.4	14.9	100.0(195)

자료: 유해미·이민희(2017). 맞벌이 가정 대체교사 지원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 71.

- 서비스 희망 시작시각은 오전 8시가 37.4%, 오전 9시가 34.6%이고, 서비스 희망 종료 시각은 오후 6시 이후가 69.1%로 주를 이룸.
 - 서비스 시작시각은 서비스 병행 이용가구에서 8시 이전 14.8%, 8시 38.3%로 더 이른 것으로 나타남.
 - 서비스 종료시각은 서비스 병행 이용가구에서 오후 6시까지 희망하는 비율이 73.5%로 더 늦은 것으로 나타남.

〈표 7〉 대체교사 파견서비스 희망 시작시각

						단위: %(명)
구분	8시 이전	8시	9시	10시	11시 이후	계(수)
전체	7.1	37.4	34.6	5.8	15.1	100.0(1,000)
자녀연령						
영아	7.3	36.7	35.3	6.2	14.5	100.0(482)
유아	6.9	38.0	34.0	5.4	15.6	100.0(518)
$\chi^2(df)$			0.763(4)			
추가돌봄 여부						
병행	14.8	38.3	22.8	6.2	17.9	100.0(162)
기관 단독 이용	5.6	37.2	36.9	5.7	14.6	100.0(838)
$\chi^2(df)$			12.814(4)*			
월 가구소득						
200만원 이하	4.3	34.8	21.7	17.4	21.7	100.0(23)
400만원 이하	6.3	32.9	39.8	5.0	16.0	100.0(319)
600만원 이하	6.7	41.5	31.5	5.2	15.1	100.0(463)
600만원 초과	9.7	35.4	34.9	7.2	12.8	100.0(195)
$\chi^2(df)$			19.585(12)			

자료: 유해미·이민희(2017). 맞벌이 가정 대체교사 지원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 72.

* $p < .05$.

〈표 8〉 대체교사 파견서비스 희망 종료시각

단위: %(명)

구분	15시 이전	15시	16시	17시	18시 이후	계(수)
전체	2.9	2.9	9.4	15.7	69.1	100.0(1,000)
자녀연령						
영아	3.3	4.1	9.5	16.4	66.6	100.0(482)
유아	2.5	1.7	9.3	15.1	71.4	100.0(518)
$\chi^2(df)$			6.719(4)			
추가돌봄 여부						
병행	8.0	4.3	6.2	8.0	73.5	100.0(162)
기관 단독 이용	1.9	2.6	10.0	17.2	68.3	100.0(838)
$\chi^2(df)$			17.543(4)**			
월 가구소득						
200만원 이하	0.0	8.7	17.4	34.8	39.1	100.0(23)
400만원 이하	3.4	3.1	9.1	15.4	69.0	100.0(319)
600만원 이하	2.2	2.6	9.1	16.2	70.0	100.0(463)
600만원 초과	4.1	2.6	9.7	12.8	70.8	100.0(195)
$\chi^2(df)$			na			

주: 'na'는 빈도분포 특성상 통계적 유의도 검정이 적절치 않음을 의미함.

자료: 유해미·이민희(2017). 맞벌이 가정 대체교사 지원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 73.

** $p < .01$.

- 대체교사 긴급보육 지원제도의 세부 운영기준으로 '1일 최소 2시간 이상 이용한다'에 대해 동의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 평균 3.76점(5점 만점 기준)으로 조사됨.
- 그 다음으로는 '현재 이용 중인 어린이집에 신청한다' 3.60점, '당일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3.44점, '만 36개월 미만이는 부모 동반시만 이용할 수 있다' 3.20점 순임.

〈표 9〉 긴급보육 시 대체교사 가정 내 파견의 요구사항

단위: %, 점(명)

구분	동의 정도					계(수)	평균 (5점)
	전혀 동의 안함	별로 동의 안함	보통	대체로 동의함	매우 동의함		
1일 최소 2시간 이상 이용해야 한다	0.8	6.0	27.9	46.8	18.5	100.0(1,000)	3.76
만 36개월 미만아는 부모 동반시만 이용할 수 있다	4.6	19.3	37.5	28.6	10.0	100.0(1,000)	3.20
당일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2.8	14.3	31.5	38.5	12.9	100.0(1,000)	3.44
서비스 이용비용은 부모가 전액 부담한다	14.2	25.1	32.7	22.4	5.6	100.0(1,000)	2.80
평일에만 이용할 수 있다	12.4	21.6	29.9	28.3	7.8	100.0(1,000)	2.98
현재 이용 중인 어린이집에 신청한다	1.8	7.2	34.6	42.4	14.0	100.0(1,000)	3.60

주: 동의 정도는 '전혀 동의하지 않음' 1점~'매우 동의함' 5점으로 평정한 결과임.
 자료: 유해미·이민희(2017). 맞벌이 가정 대체교사 지원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 74.

4 개선 과제

가. 기본 방향

- 어린이집 이용 아동이나 부모의 특성에 따라 긴급보육 시 지원 요구가 다르므로, 서비스를 다양화하여 부모 선택권을 보장해야 함.
- 어린이집 이용하는 맞벌이 가정의 자녀가 아픈 경우 긴급보육 지원은 일차적으로 부모가 직접 돌볼 수 있도록 휴가를 보장하되, 이외에도 다양한 지원이 모색되어야 함.
 - 아픈 아동에 대한 긴급지원은 지원 대상 및 적용사항을 명료화해야 함.
 - 대체교사의 가정 내 긴급 파견은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사업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되 이원화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며, 기존 사업(아이돌봄지원사업)과의 차별화를 위해 돌봄인력(대체교사) 전문성 강화에 주력해야 함.

나. 대체교사 지원의 고려사항과 세부 방안

- 대체교사 긴급지원 제도의 도입은 이하의 측면에서 신중한 접근을 요함.
 - 대체교사 모집 시 가정 내 파견서비스에 대한 보육교사들의 선호도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안정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됨.
 - 어린이집 대체교사에 비해 소득안정성이 낮고, 서비스 관리 기관의 연간 인력수급 계획 및 관리의 어려움도 예상됨.
 - 질병감염 아동에 대한 일상적인 보육으로 대체교사의 감염 우려가 있으므로 대체교사의 건강관리의 어려움이 예상됨.
 - 아픈 아동을 돌보는 경우는 파견된 대체교사가 감염 위험에 일상적으로 노출되는 위험이 초래되므로, 인력 채용 시의 어려움은 물론, 안정적인 인력풀 유지 및 관리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됨.
 - 일회성 서비스 이용으로 대체교사에 대한 부모 신뢰도 및 만족도를 보장하기 어려움.
 - 아픈 아동을 보육하는 것은 건강관리 측면에서 추가적인 운영 기준을 요하므로 아동 안전 및 보호 관련 요건들이 엄격하게 규정되지 않을 경우,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아동안전의 위험이 초래될 수 있음.
 - 기존 사업들 즉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과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지원사업과의 중복 문제 등 사전 논의 및 조정이 요구됨.
- 대체교사 긴급지원에 대한 부모 수요를 반영한 운영기준으로는 다음을 고려할만함.
 - 적용대상 아동
 - 지원대상은 6개월 이후 아동에 적용하며, 적용대상 증상은 의료기관에 의한 입원하거나 내원 치료할 필요는 없으나 가정에서 안정을 요하는 경우, 전염성 질환(홍역, 수두, 풍진 등)인 경우 등이 포함될 수 있음.
 - 인력 양성 및 관리 사항
 - 자격요건은 어린이집 대체교사와 동일하게 보육교사 자격증을 보유한 자로 규정하되, 지원연령을 보다 확장할 수 있음.
 - 교육내용으로 아픈 아동에 대한 보육활동 내용과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강화함.

- 사후관리 사항으로 부모 만족도 평가 결과를 대체교사에게 전달하여 개선 노력을 점검하고 대체교사 인력풀 관리에 반영함.
- 서비스 이용비용/운영시간
 - 서비스 이용비용은 시간당 7,000원에서 8,000원선이 고려될 수 있으며, 서비스 운영시간은 오전 7시 반부터 오후 7시 반까지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추진체계/시범사업
 - 서비스 운영 기관으로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고려될 수 있음.
 - 시범 기관으로 국공립어린이집(거점형 시간연장어린이집, 365어린이집 등)을 지정하여 아픈 아동에 대한 대체교사 신청사항을 공지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와의 적극적인 서비스 연계를 추진함.

| 참고문헌 |

유해미·이민희(2017). 맞벌이 가정 대체교사 긴급지원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아이돌봄지원서비스 홈페이지. <https://www.idolbom.go.kr/use/infect.go> (검색일자 2018년 4월 30일).

PART

05

육아비용

Ⅰ 영유아 가구의 교육·보육에 대한
인식과 서비스 이용 행태에 관한 고찰
최효미 부연구위원

이슈페이퍼 2018-04

영유아 가구의 교육·보육에 대한 인식과 서비스 이용 행태에 관한 고찰

최효미

1. 배경 및 문제점
2. 지원 정책과 유아교육·보육에 대한 인식
3. 서비스 이용 행태별 인식 차이
4.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영유아 가구의 교육·보육에 대한 인식과 서비스 이용 행태에 관한 고찰*

최효미 부연구위원

| 요약 |

- 영유아 가구들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재정 투자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높은 지지를 보인 반면, 무상보육을 위한 증세에 대해서는 낮은 동의도를 보였음. 반면, 일·가정 양립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동의도는 매우 높게 나타남.
- 영유아 가구들 사이에 조기 교육에 대한 요구는 전반적으로는 그리 높지는 않았으나, 조기 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은 부모일수록 사교육 등의 이용 비중이 높고, 교육·보육서비스 이용비용도 높은 특징이 포착됨.
- 주어진 자원 안에서 지원에 대한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보다 효과적인 비용 지원 체계의 모색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추가적인 증세가 아닌 재정 배분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유아교육·보육 재정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도 시급히 요구됨.
- 또한, 향후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비용 지원 중심의 보육 지원을 넘어선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의 강화가 요구됨.
- 한편, 영유아기 부모들의 조기 교육에 대한 불안감은 초등기 이후 교육 과정에 대한 불안감이 투영된 것일 수 있으므로, 공교육 정상화를 통해 사교육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보다 근본적 대책 마련이 요구되며, 특히 영유아 부모 대상의 부모교육의 강화와 정책 홍보가 요구됨.

1 배경 및 문제점

- 정부는 영유아 가구의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2013년부터 전면적인 무상 보육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 하지만, 이러한 정부 지원에도 불구하고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 부담은 여전히 높음

* 본 원고는 「최효미·김나영·김태우(2017).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 연구(V).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수집된 자료를 재분석하여 구성함.

로 나타남(권미경 외, 2016: 120~123).

- 비용 지원이 집중되고 있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교육·보육서비스 이용비용의 경감 효과도 그리 크지 않아, 2016년 아동 당 총 교육·보육비용은 월평균 16만9천원(최효미 외, 2016 : 103)이었으며, 2017년 19만8천원(최효미·김나영·김태우, 2017: 85)인 것으로 나타남.
- 한편, 2017년 기준 영유아 가구 중 복수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47.0%로 절반가량에 달하며, 특히 기관 교육·보육(어린이집, 유치원 등)과 사교육서비스를 조합하여 이용하는 경우가 전체 응답자의 36.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최효미·김나영·김태우, 2017: 83).
- 즉, 정부가 상당 부분 이용비용을 지원하는 기관(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등)을 이용한 이후에도, 영유아 가구를 중심으로 사교육을 추가적으로 이용하는 현상이 교육·보육 비용 부담을 가중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
- 또한, 영유아 가구의 교육·보육서비스 선택 및 이용비용에는 서비스 이용종류 및 조합 방식 뿐 아니라 다양한 가구 특성 등이 영향을 미침.
 - 선행 연구 등에 따르면, 영유아의 교육·보육서비스 이용비용에는 자녀수, 지역 규모, 가구소득, 가구원 수, 모 특성(연령, 교육수준), 맞벌이 여부, 자녀 연령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¹⁾.
 - 이와 함께 정책적 지원의 확대도 교육·보육 이용비용 결정에 영향을 미침(김은정·이혜숙, 2016; 최효미 외, 2016).
 - 하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교육·보육서비스 이용 여부 및 이용비용 등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 요인을 분석한 것이므로, 실제 이용하고 싶었으나 현재 이용하지 않는(혹은 못하는) 경우의 욕구를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음.
- 본 연구는 가구 특성이나 자녀 특성 뿐 아니라 영유아 가구의 교육·보육에 대한 가치관 및 정책에 대한 태도 등의 인식이 교육·보육서비스 선택과 이용비용 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초점을 맞춤.

1) 김지경(2005), 박선욱(2008), 박선욱(2011), 이성림(2011), 이진화·박진아·박기원(2015), 최효미 외(2016) 등.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존 연구들의 다수가 가구 특성, 모 특성, 자녀 특성 등에 따라 교육·보육서비스 이용 행태 및 이용비용이 달라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 반면, 교육·보육서비스 선택 및 이용비용 결정에 있어 영유아 가구의 정책에 대한 인식 및 교육·보육에 대한 가치관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크게 진행된 바가 없음.
- 가치관과 인식에 대한 고찰은 현실적 어려움으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에도 영유아 가구가 보다 근본적으로 어떠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찰의 필요성이 높음.

2 지원 정책 및 유아교육·보육에 대한 인식

- 2장 이후의 내용은 최효미·김나영·김태우(2017)에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됨.
- 특히, 본 연구에서 활용한 가치관 및 인식 문항의 경우 총 1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무상보육에 대한 태도(3개 문항), 일·가정 양립 지원에 대한 견해(2개 문항), 유아교육·보육에 대한 가치관(4개 문항)을 중심으로 살펴봄.
 - 출산 관련 2개 문항, 현재 세태에 대한 인식 2문항은 직접적 연관성이 낮으므로 제외함.
 - 무상보육에 대한 태도는 고소득자에 대한 무상 보육 필요성, 재정 부담 대비 지원 확대 당위성, 증세에 대한 태도 등임.
 - 일·가정 양립에 대한 태도는 여성의 출산 후 경력단절의 원인이 부실하고 부족한 보육서비스 때문이라고 생각하는지, 유연근무 등 부모권 보장이 안 되는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함.
 - 유아교육 및 보육에 대한 가치관 문항은 기관 이용에 대한 선호 및 효과성에 대한 입장, 취학 전 학습에 대한 태도를 질문하는 문항으로 구성됨.

가. 가구 특성별 무상 보육 및 일·가정 양립 정책에 대한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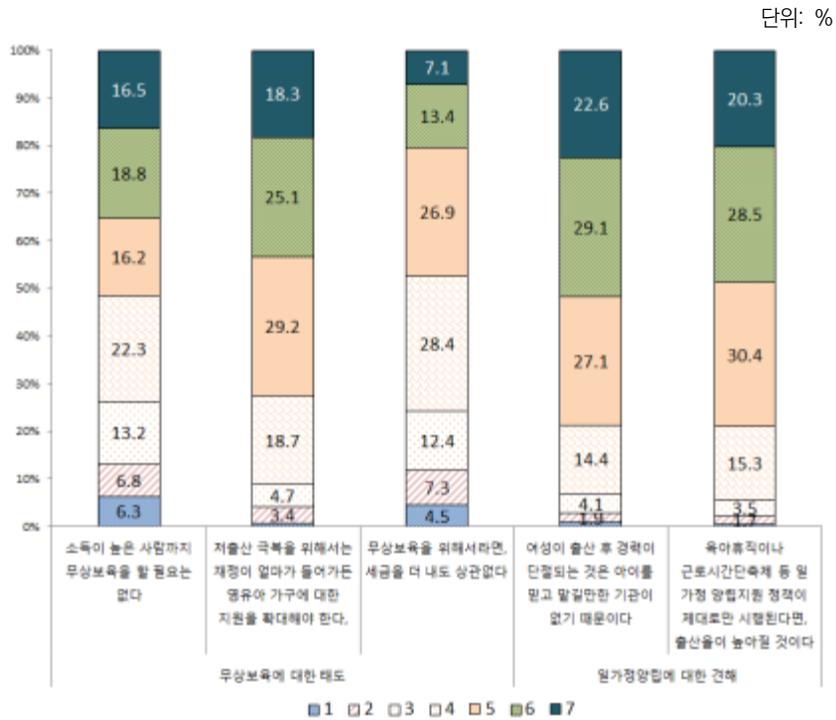
- 무상보육과 관련된 인식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재정이 얼마가 들어가든 영유아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한다’는 질문에 7점 만점에 5.2점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보임.
 - 반면, ‘무상보육을 위해서 세금을 더 내도 상관없다’는 질문에는 4.3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지지를 보임.
 - ‘소득이 높은 사람까지 무상보육 할 필요는 없다’는 질문에도 4.6점으로 비교적 낮은 동의를 보임.



[그림 1] 무상 보육 및 일·가정 양립 정책에 대한 태도(평균)

- 일·가정 양립과 관련된 인식 문항에 대한 동의도는 무상보육에 대한 태도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남.
 -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제 등 일·가정 양립지원 정책이 제대로만 시행된다면, 출산율이 높아질 것이다’라는 질문과 ‘여성이 출산 후 경력에 단절되는 것은 아이를 믿고 맡길만한 기관이 없기 때문이다’는 질문에 둘 다 5.4점으로 나타남.

- 무상보육과 관련된 인식과 일·가정 양립 정책에 대한 인식 문항에 대한 응답 분포를 살펴보면,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 2개 질문은 7점 응답 비중이 각각 22.6%와 20.3%로 높게 나타남.
 - 한편, 5점 이상 응답 비중도 평균 점수에서의 경향성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 특히 무상보육을 위한 증세 의사에 대해서는 7점에 응답한 비중이 7.1%로 매우 낮았으나, 6점 정도 동의한다는 응답은 13.4%, 5점 정도의 동의를 보이는 경우는 26.9%로, 전반적으로 낮은 동의를 보이기는 하지만 7점 동의도가 낮은 것에 기인한 현상임.



주 : 7점 만점이며, 비중이 1% 미만인 경우에는 표기하지 않음.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2] 무상 보육 및 일·가정 양립 정책에 대한 태도(비중)

- 무상보육에 대한 태도는 총 자녀수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막내자녀 연령별 태도는 ‘지원 확대 필요성’에 대한 문항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 ‘재정 지원 확대 필요성’은 막내 자녀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동의도가 낮아지는데, 자신이 향후 정책 지원 대상이 될 가능성이 낮아질수록 동의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영유아 부모들의 정책에 대한 인식이 다소 주관적 편향을 가지고 있음을 엿볼 수 있음.

| 표 11 | 총 자녀수 및 (막내)자녀의 연령별 인식

단위: 7점 척도, 명

	무상보육에 대한 태도			일·가정양립에 대한 견해		빈도
	①	②	③	④	⑤	
전체	4.6	5.2	4.3	5.4	5.4	(1,119)
총 자녀수						
1명	4.5	5.3	4.3	5.4	5.5	(350)
2명	4.7	5.2	4.2	5.4	5.4	(603)
3명이상	4.5	5.2	4.4	5.4	5.3	(166)
<i>F</i>	2.8	0.2	0.8	0.0	0.7	
막내자녀연령별						
0세	4.4	5.5	4.4	5.4	5.4	(230)
1세	4.5	5.3	4.2	5.4	5.4	(192)
2세	4.6	5.3	4.3	5.6	5.5	(176)
3세	4.8	5.2	4.1	5.3	5.3	(171)
4세	4.7	5.0	4.3	5.3	5.3	(169)
5세	4.6	5.0	4.4	5.5	5.4	(182)
<i>F</i>	1.4	3.3**	1.5	1.2	1.0	

주 : ①소득이 높은 사람까지 무상보육을 할 필요는 없다, ②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재정이 얼마나 들어가든 영유아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③무상보육을 위해서라면, 세금을 더 내도 상관없다, ④여성이 출산 후 경력이 단절되는 것은 아이를 믿고 맡길만한 기관이 없기 때문이다, ⑤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단축제 등 일 가정 양립지원 정책이 제대로만 시행된다면, 출산율이 높아질 것이다

* $p < .05$, ** $p < .01$, *** $p < .001$

- 맞벌이 여부 및 가구소득, 지역규모별로도 무상보육에 대한 태도와 일·가정양립에 대한 견해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 다만, ‘무상 보육을 위한 증세’에 대해서는 소득이 높을수록 동의도가 높아지는 현상이 발견되었으며, 지역 규모에 따라 대도시에 사는 경우에 유의미하게 동의가 높음.

표 2 | 맞벌이 여부 및 가구소득, 지역규모별 인식

단위: 7점 척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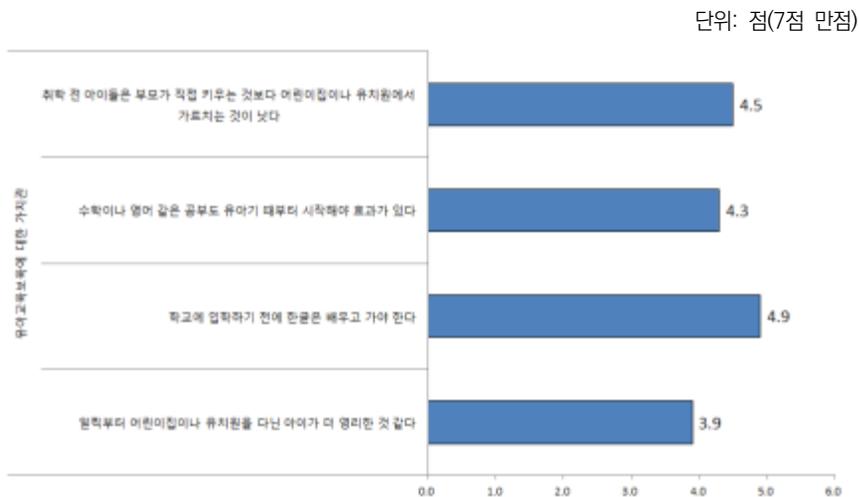
	무상보육에 대한 태도			일·가정양립에 대한 견해		빈도
	①	②	③	④	⑤	
전체	4.6	5.2	4.3	5.4	5.4	(1,119)
맞벌이 여부						
그렇다	4.6	5.2	4.3	5.4	5.4	(518)
아니다	4.6	5.2	4.3	5.4	5.4	(601)
t	0.7	-0.3	0.8	0.2	0.7	
가구소득						
199만원이하	5.4	5.1	4.0	5.3	5.3	(19)
200~299만원	4.7	5.2	3.9	5.4	5.4	(120)
300~399만원	4.6	5.1	4.1	5.2	5.2	(350)
400~499만원	4.7	5.4	4.4	5.5	5.6	(263)
500~599만원	4.5	5.2	4.4	5.4	5.4	(195)
600~699만원	4.5	5.4	4.5	5.5	5.5	(75)
700만원이상	4.4	5.3	4.7	5.7	5.4	(98)
F	1.0	1.2	4.5***	2.5*	2.1	
지역 규모						
대도시	4.7	5.2	4.5	5.3	5.3	(479)
중소도시	4.5	5.2	4.1	5.4	5.4	(509)
읍면지역	4.3	5.3	4.1	5.5	5.5	(131)
F	2.9	0.2	10.6***	2.0	2.2	

주 : ①소득이 높은 사람까지 무상보육을 할 필요는 없다, ②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재정이 얼마나 들어가는 영유아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③무상보육을 위해서라면, 세금을 더 내도 상관없다, ④여성이 출산 후 경력이 단절되는 것은 아이를 믿고 맡길만한 기관이 없기 때문이다, ⑤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단축제 등 일 가정 양립지원 정책이 제대로만 시행된다면, 출산율이 높아질 것이다

* $p < .05$, ** $p < .01$, *** $p < .001$

나. 가구 특성별 유아교육·보육에 대한 가치관 차이

- 유아교육·보육에 대한 가치관 문항의 경우 7점 만점에 평균 4점대로 그다지 높은 동의를 보이지 않은 특징이 있음(그림 3참조).
 - 가치관 문항 중 동의도가 가장 높은 문항은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한글은 배우고 가야한다’로 평균 4.9점임.
 - ‘취학전 아이들은 부모가 직접 키우는 것보다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가르치는 것이 낫다’는 질문에는 평균 4.5점, ‘수학이나 영어 같은 공부도 유아기 때부터 시작해야 효과가 있다’는 질문에는 평균 4.3점의 동의를 보임.
 - ‘일찍부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닌 아이가 더 영리한 것 같다’는 질문에는 평균 3.9점으로 보통 이하의 낮은 동의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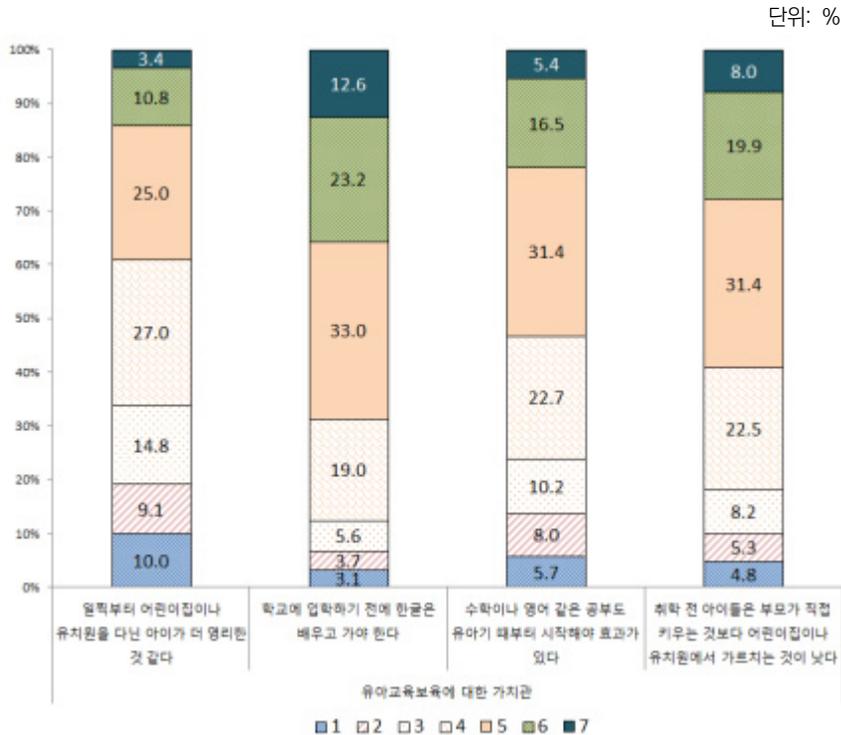


[그림 3] 유아교육·보육에 대한 가치관(평균)

- 유아교육·보육에 대한 가치관 문항에 대한 응답 빈도를 살펴보면, 입학 전 한글 학습의 필요성에 대해서 5점을 준 경우가 33.0%, 6점 23.2%, 7점 12.6%로, 상당수 부모들이 취학 전 한글 학습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함.
 - 반대로 ‘일찍부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닌 아이가 더 영리한 것 같다’는 질문에

는 5점 이상에 응답한 비중이 39.2%였으며, 최하점인 1점에도 10.0%가 응답하여 낮은 동의를 보임.

- 하지만, 교육적 효과와 무관하게 가정내 보육보다 기관 보육에 대한 선호를 질문한 문항에 대해서는 5점 이상에 59.3%가 동의한 것으로 나타나, 영유아기 기관 이용이 교육적 목적 때문만은 아님을 짐작케 함.
- 한편, 취학전 한글 교육이 아닌 수학이나 영어 교육의 효과성에 대한 견해는 5점 이상 53.3%, 3점 이하 23.9%로 한글 교육에 비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음을 엿볼 수 있음.



주 : 7점 만점 기준이며, 비중이 1% 미만인 경우에는 표기하지 않음.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4] 유아교육·보육에 대한 가치관(비중)

- 유아교육·보육에 대한 가치관 문항은 자녀수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자녀수가 많을수록 동의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조기 기관 이용에 대한 긍정적 생각, 유아기 수학이나 영어 공부의 효과성, 취학 전 기관 이용에 대한 선호 등은 자녀수가 많을수록 동의도가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남.
 - 취학 전 한글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자녀가 1명인 경우에 비해 다자녀인 경우 높은 동의를 보이기는 하나, 자녀가 3명인 경우에 비해 2명인 경우에 약간 더 높은 동의를 보임.
 - 자녀 연령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음.

| 표 3 | 총 자녀수 및 (막내)자녀의 연령별 가치관 차이

단위: 7점 척도, 명

	유아교육·보육에 대한 가치관				빈도
	⑥	⑦	⑧	⑨	
전체	3.9	4.9	4.3	4.5	(1,119)
총 자녀수					
1명	3.7	4.7	4.0	4.3	(350)
2명	3.9	5.0	4.3	4.6	(603)
3명이상	4.1	4.9	4.4	4.7	(166)
<i>F</i>	5.4**	4.1*	4.7**	6.4**	
막내자녀연령별					
0세	3.9	4.8	4.3	4.4	(230)
1세	3.8	4.9	4.2	4.5	(192)
2세	4.0	4.9	4.4	4.6	(176)
3세	3.9	5.0	4.2	4.4	(171)
4세	3.9	4.7	4.2	4.6	(169)
5세	3.8	5.0	4.2	4.6	(182)
<i>F</i>	0.6	1.2	0.7	0.8	

주 : ⑥일찍부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닌 아이가 더 영리한 것 같다, ⑦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한글은 배우고 가야 한다, ⑧수학이나 영어 같은 공부도 유아기 때부터 시작해야 효과가 있다, ⑨취학 전 아이들은 부모가 직접 키우는 것보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가르치는 것이 낫다.

* $p < .05$, ** $p < .01$, *** $p < .001$

- 맞벌이 여부 및 가구소득, 지역규모 등에 따라서 유아교육·보육에 대한 가치관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 다만, 취학 전 부모의 직접 양육에 비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가르치는 것이 낫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가구소득에 따른 약간의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특히 가구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구간에서 다른 집단에 비해 낮은 동의를 보이는 특징이 있음.
 - 즉, 가구소득이 600만원 이상 고소득 가구의 경우에는 그 이하 소득 구간 가구에 비해 부모 양육 대비 기관 양육에 대한 선호가 약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표 4 | 맞벌이 여부 및 가구소득, 지역규모별 인식

단위: 7점 척도, 명

	유아교육·보육에 대한 가치관				빈도
	⑥	⑦	⑧	⑨	
전체	3.9	4.9	4.3	4.5	(1,119)
맞벌이 여부					
그렇다	3.9	4.9	4.2	4.5	(518)
아니다	3.9	4.9	4.3	4.6	(601)
t	-0.1	-0.4	-1.1	-0.8	
가구소득					
199만원이하	3.7	4.7	4.2	4.6	(19)
200~299만원	3.8	4.9	4.1	4.5	(120)
300~399만원	4.0	4.9	4.3	4.6	(350)
400~499만원	3.9	4.8	4.2	4.6	(263)
500~599만원	4.0	4.9	4.4	4.5	(195)
600~699만원	3.6	4.9	4.4	4.2	(75)
700만원이상	3.8	4.7	4.0	4.1	(98)
F	0.9	0.5	1.1	2.9**	
지역 규모					
대도시	4.0	4.9	4.3	4.4	(479)
중소도시	3.8	4.8	4.2	4.6	(509)
읍면지역	3.8	5.0	4.2	4.6	(131)
F	2.5	1.2	0.7	1.3	

주 : ⑥일찍부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닌 아이가 더 영리한 것 같다, ⑦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한글은 배우고 가야 한다, ⑧수학이나 영어 같은 공부도 유아기 때부터 시작해야 효과가 있다, ⑨취학 전 아이들은 부모가 직접 키우는 것보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가르치는 것이 낫다.

* $p < .05$, ** $p < .01$, *** $p < .001$

다. 정책에 대한 인식-유아교육·보육에 대한 가치관 차이

- 정책에 대한 인식과 유아교육·보육 가치관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무상 보육에 대한 인식 문항 중 ‘소득이 높은 사람까지 무상보육을 할 필요는 없다’는 문항은 다른 유아교육·보육 가치관 문항과 유의한 상관이 전혀 발견되지 않음.
 - 즉, 기관 보육의 필요성 및 효과성, 취학 전 학습의 필요성 및 효과성 등에 대한 견해와 무관하게 무상 보육에 대한 인식이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앞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대부분의 영유아 가구가 가구소득과 무관한 무상보육에 대해서는 통일된 의견을 가지고 있음을 엿볼 수 있음.
- 유아교육·보육 가치관 문항 중에서는 ‘일찍부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닌 아이가 더 영리한 것 같다’는 문항의 경우 ‘무상 보육을 위한 증세 동의’가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정책 선호와의 상관이 낮은 문항이었음.
 - 무상 보육을 위한 증세 필요성에 동의도가 높은 사람들은 조기 기관 이용의 효과성에 대해 더 긍정적 반응을 보였으며, 유아기 수학이나 영어에 대한 조기 학습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성을 보임.
 - 즉, 영유아기 기관 이용과 조기 학습에 대한 동의가 높을수록 증세를 통해서라도 무상 보육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
- 여성 경력단절이 신뢰할만한 보육기관이 많지 않기 때문이라는 견해에 동의도가 높은 경우에는 취학전 한글 학습의 필요성, 유아기 수학 및 영어 조기 학습의 효과성, 기관 보육 선호 등에서 양의 상관관계를 보임.
 -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의 실효성 제고에 대한 동의가 높을수록 취학전 한글 학습의 필요성, 기관 보육 선호 등에서 양의 상관관계를 보임.

| 표 5 | 정책에 대한 인식-유아교육·보육 가치관 간의 상관관계

		유아교육·보육에 대한 가치관			
		⑥	⑦	⑧	⑨
무상보육에 대한 인식	①	-0.0524	-0.0319	-0.0422	-0.0249
	②	0.0228	0.0873 ***	0.0382	0.0384
	③	0.1651 ***	-0.0193	0.1085 ***	-0.0079
일·가정양립에 대한 인식	④	0.0264	0.0962 ***	0.0684 **	0.1057 ***
	⑤	-0.0505	0.0962 ***	0.0308	0.1042 ***

주 : 1) ①소득이 높은 사람까지 무상보육을 할 필요는 없다, ②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재정이 얼마나 들어가는 영유아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③무상보육을 위해서라면, 세금을 더 내도 상관없다, ④여성이 출산 후 경력이 단절되는 것은 아이를 믿고 맡길만한 기관이 없기 때문이다, ⑤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단축제 등 일 가정 양립지원 정책이 제대로만 시행된다면, 출산율이 높아질 것이다, ⑥일찍부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닌 아이가 더 영리한 것 같다, ⑦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한글은 배우고 가야 한다, ⑧수학이나 영어 같은 공부도 유아기 때부터 시작해야 효과가 있다, ⑨취학 전 아이들은 부모가 직접 키우는 것보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가르치는 것이 낫다.

2) 영유아별로 매칭한 자료임.

* $p < .05$, ** $p < .01$, *** $p < .001$

3 서비스 이용 행태별 인식 차이

가. 서비스 이용 행태별 무상 보육 및 일·가정 양립 정책에 대한 태도

- 서비스 조합 방식별로 정책에 대한 인식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우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재정이 얼마나 들어가는 영유아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한 문항이었음.
 - ‘지원 확대 필요성’은 역설적이게도 개별돌봄서비스만 이용하는 경우, 사교육서비스만 이용하는 경우, 사교육서비스+개별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높은 동의도를 보임.
 - 즉, 유아학비·보육료 지원이 적용되는 기관에 다니지 않는 경우에 정부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음.
 -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지만 사교육서비스+개별돌봄서비스 하는 경우에는 다른 방식의 서비스 조합방식을 가진 경우와 인식에 있어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나, 관측치가 2개에 불과하므로, 과도한 해석은 주의를 요함.

- 소득이 높은 사람까지 무상보육을 할 필요는 없다는 응답에 대해서는 다른 집단에 비해 현저히 낮은 동의도를 보였으며, 재정지원 확대 필요성, 무상 보육을 위한 증세, 일·가정 양립 지원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는 높은 동의도를 보였음.

표 6 | 이용 서비스별 무상보육 및 일·가정 양립 정책에 대한 태도 차이

단위: 7점 척도, 명

	무상보육에 대한 태도			일·가정양립에 대한 견해		빈도
	①	②	③	④	⑤	
전체	4.6	5.2	4.3	5.4	5.4	(1,119)
전적으로 부모가 돌봄	4.4	5.4	4.6	5.4	5.4	(171)
단일서비스						
어린이집만 이용	4.6	5.3	4.2	5.3	5.3	(358)
유치원만 이용	4.8	5.3	4.3	5.3	5.3	(196)
반일제 이상 학원만 이용	4.9	4.7	4.3	5.5	5.2	(43)
개별돌봄서비스만 이용	4.2	5.7	4.3	5.6	5.7	(22)
사교육서비스만 이용	3.9	5.8	4.6	6.1	5.7	(13)
복수서비스 이용						
기관 + 사교육서비스	4.7	5.1	4.3	5.4	5.4	(547)
기관 + 개별돌봄서비스	4.4	5.3	4.1	5.5	5.5	(74)
사교육서비스+개별돌봄서비스	3.2	5.8	5.5	6.2	6.3	(2)
기관+사교육+개별돌봄	4.4	5.1	4.4	5.8	5.4	(79)
F	0.69	2.16*	1.12	1.58	0.43	

주 : ①소득이 높은 사람까지 무상보육을 할 필요는 없다, ②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재정이 얼마나 들어가든 영유아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③무상보육을 위해서라면, 세금을 더 내도 상관없다, ④여성이 출산 후 경력이 단절되는 것은 아이를 믿고 맡길만한 기관이 없기 때문이다, ⑤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단축제 등 일 가정 양립지원 정책이 제대로만 시행된다면, 출산율이 높아질 것이다,

* $p < .05$, ** $p < .01$, *** $p < .001$

- 서비스 이용비용에 따라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서비스 이용비용이 30~50만원 사이인 경우에 가구소득에 따른 차등 지원, 무상 보육을 위한 증세 의사,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 등에서 약간 높은 동의를 보임.

- 반대로 서비스 이용비용이 50만원 이상으로 비교적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가정의 경우 영유아 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동의를 보임

| 표 7 | 서비스 이용비용별 무상보육 및 일·가정 양립 정책에 대한 태도 차이

단위: 7점 척도, 명

	무상보육에 대한 태도			일·가정양립에 대한 견해		빈도
	①	②	③	④	⑤	
전체	4.6	5.2	4.3	5.4	5.4	(1,119)
서비스 이용비용						
10만원 미만	4.6	5.3	4.3	5.4	5.3	(529)
10~30만원 미만	4.6	5.3	4.4	5.4	5.4	(479)
30~50만원 미만	4.7	5.3	4.5	5.5	5.6	(195)
50만원 이상	4.6	5.1	4.2	5.5	5.4	(302)
F	0.14	1.95	0.86	1.47	0.95	

주 : ①소득이 높은 사람까지 무상보육을 할 필요는 없다, ②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재정이 얼마나 들어가든 영유아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③무상보육을 위해서라면, 세금을 더 내도 상관없다, ④여성이 출산 후 경력이 단절되는 것은 아이를 믿고 맡길만한 기관이 없기 때문이다, ⑤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단축제 등 일 가정 양립지원 정책이 제대로만 시행된다면, 출산율이 높아질 것이다,

* $p < .05$, ** $p < .01$, *** $p < .001$

나. 서비스 이용 행태별 유아교육·보육에 대한 가치관 차이

- 이용 서비스 조합방식별에 따라 유아교육·보육에 대한 가치관은 조기 한글 교육의 필요성과 조기 수학 혹은 영어 학습의 효과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됨.
- 반일제 이상 학원만 이용하거나 개별돌봄 서비스만 이용하는 경우, 기관+사교육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조기 한글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동의도가 높게 나타남.

| 표 8 | 이용 서비스 조합방식별 유아교육·보육에 대한 가치관 차이

단위: 7점 척도, 명

	유아교육·보육에 대한 가치관				빈도
	⑥	⑦	⑧	⑨	
전체	3.9	4.9	4.3	4.5	(1,119)
전적으로 부모가 돌봄	3.7	4.7	4.3	4.4	(171)
단일서비스					
어린이집만 이용	3.9	4.9	4.2	4.6	(358)
유치원만 이용	3.7	4.9	4.2	4.7	(196)
반일제 이상 학원만 이용	4.2	5.2	5.0	4.7	(43)
개별돌봄서비스만 이용	4.1	5.1	3.8	4.9	(22)
사교육서비스만 이용	3.6	4.4	3.1	3.4	(13)

	유아교육·보육에 대한 가치관				빈도
	⑥	⑦	⑧	⑨	
복수서비스 이용					
기관 + 사교육서비스	4.0	5.1	4.4	4.5	(547)
기관 + 개별돌봄서비스	3.8	4.7	4.4	4.6	(74)
사교육서비스+개별돌봄서비스	4.8	4.8	5.8	4.8	(2)
기관+사교육+개별돌봄	4.2	4.9	4.3	4.5	(79)
<i>F</i>	1.21	2.01*	2.33*	1.87	

주 : 1) ⑥일찍부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닌 아이가 더 영리한 것 같다. ⑦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한글은 배우고 가야 한다. ⑧수학이나 영어 같은 공부도 유아기 때부터 시작해야 효과가 있다. ⑨취학 전 아이들은 부모가 직접 키우는 것보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가르치는 것이 낫다.

2) 영유아별로 매칭한 자료임.

* $p < .05$, ** $p < .01$, *** $p < .001$

- 서비스 이용비용에 따라서는 ‘수학이나 영어 같은 공부도 유아기 때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서비스 이용비용이 10만원이하인 경우 4.1점으로 다른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은 동의도를 보임.
 -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한글은 배우고 가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서도 서비스 이용비용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낮은 동의도를 보임.
 - 조기 교육의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해 동의도가 낮은 경우 현재 이용비용도 낮아지는 경향성이 발견된다고 볼 수 있음.
 - ‘일찍부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닌 아이가 더 영리한 것 같다’는 질문에는 서비스 이용비용이 30~50만원인 경우가 다른 집단에 비해 다소 높은 동의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됨.

| 표 9 | 서비스 이용 비용별 유아교육·보육에 대한 가치관 차이

단위: 7점 척도, 명

	유아교육·보육에 대한 가치관				빈도
	⑥	⑦	⑧	⑨	
전체	3.9	4.9	4.3	4.5	(1,119)
서비스 이용비용					
10만원 미만	3.8	4.7	4.1	4.5	(358)
10~30만원 미만	3.8	4.9	4.4	4.5	(196)
30~50만원 미만	4.2	5.1	4.4	4.6	(43)
50만원 이상	4.0	5.0	4.4	4.6	(22)
F	2.03	3.46*	8.53***	1.60	

주 : 1) ⑥일찍부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닌 아이가 더 영리한 것 같다, ⑦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한글은 배우고 가야 한다, ⑧수학이나 영어 같은 공부도 유아기 때부터 시작해야 효과가 있다, ⑨취학 전 아이들은 부모가 직접 키우는 것보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가르치는 것이 낫다.

2) 서비스 이용 비용은 가구당 총 교육·보육 비용임.

* $p < .05$, ** $p < .01$, *** $p < .001$

4 결론 및 시사점

- 영유아 가구들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재정 투자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높은 지지를 보인 반면, 무상보육을 위한 증세에 대해서는 낮은 동의도를 보였음.
 - 한편,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제 등 일·가정 양립 지원의 필요성이나, 신뢰성 있는 기관 보육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는 무상 보육보다 더 높은 동의도를 보였음.
 - 이와 같은 경향성은 가구특성이나 자녀 특성 등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영유아 가구 전반에서 나타나는 양상임을 알 수 있었음.
- 유아교육·보육 가치관과 관련된 문항들에서는 전반적으로 낮은 동의도를 보인 가운데,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한글은 배우고 가야한다’는 질문에 대한 동의도가 그나마 높은 수준이었음.
 - 조기 영어교육 혹은 수학 교육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평균 4.3점, 조기 기관 보육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평균 3.9점의 낮은 동의를 보였음.

- 자녀가 많은 경우에 기관 보육이나 조기 교육에 대해 다소 높은 동의를 보이는 특성이 있으나, 맞벌이 여부나 가구소득 등에 따라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음.
- 사교육 서비스나 개별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지원 확대 필요성에 보다 높은 동의를 보였으며, 서비스 이용비용이 30~50만원인 경우에 가구소득에 따른 차등 지원, 무상 보육을 위한 증세 의사, 일·가정 양립지원 정책 등에서 약간 높은 동의를 보였음.
- 취학 전 한글교육 필요성에 높은 동의를 보이는 경우 사교육 서비스 혹은 개별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기관과 사교육서비스를 조합하여 이용하는 경우에 높은 동의도를 보였음.
- 영유아 가구들이 지원 확대 필요성에는 높은 동의를 보이지만 증세에 대해서는 낮은 동의도를 보이는 점을 감안할 때, 재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비용 지원 체계의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보여짐.
- 영유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한 증세 부담 의향에 대한 대국민 조사인 김동훈·이재희·이혜민(2017: 124~125)에서도 추가 부담 의향은 낮았으며, 특히 영유아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추가 부담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26.8%에 그쳤음.
- 이처럼 무상 보육 등 영유아에 대한 국가 책임에 대한 높은 동의도에 비해 이를 위한 추가적인 세금 부담 의사가 낮은 만큼 주어진 자원 안에서 지원에 대한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보다 효과적인 비용 지원 체계의 모색이 필요함.
- 무엇보다 추가 증세에 대한 의향은 낮았으나 무상 보육에 대한 지지를 고려할 때, 추가적인 증세가 아닌 재정 배분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유아교육·보육 재정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도 시급히 요구됨.
- 향후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의 강화가 요구됨.
- 저출산 극복을 위한 무상 보육 등 지원보다 일·가정 양립 지원에 대한 동의도가 높게 나타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영유아 가구에 대한 지원은 일·가정 양립 지원의 강화가 정책 실효성 제고에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됨.
- 이를 위해서는 맞벌이 가구를 위한 보육 사각 지대 해소 뿐 아니라 맞벌이 가구의 부모권 확대를 위한 지원 정책, 즉 유연근무 및 탄력적 근무시간제 등의 확대, 강화가 요구됨.

- 영유아 가구의 조기교육에 대한 요구는 전반적으로는 그리 높지는 않았으나, 조기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은 부모일수록 사교육 등의 이용 비중이 높고, 교육·보육서비스 이용비용도 높은 특징이 포착됨.
 - 교육부는 초등 1~2학년의 한글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유아기 한글 학습을 자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²⁾, 영유아 부모들은 조기 영어나 수학 교육에 비해 특히 한글 교육은 취학 전에 마무리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사교육비용 증가에 영향을 미침.
 - 결국 정책 방향에도 불구하고 영유아 부모들의 조기교육에 대한 인식 변화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비용 지원 정책의 취지도 반감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할 때, 영유아 부모 대상의 부모교육의 강화와 정책 홍보가 요구됨.
 - 한편, 영유아기 부모들의 조기 교육에 대한 불안감은 정부의 정책과 초등기 이후 교육 과정에 대한 불안감이 투영된 것일 수 있으므로, 공교육 정상화와 강화를 통해 사교육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보다 근본적 대책 마련이 요구됨.

2) 연합뉴스(2016. 8. 1.), 내년부터 초등학생 한글교육 학교가 책임진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7/29/0200000000AKR20160729136200004.HTML>에서 2018년 6월 11일 인출함.

| 참고문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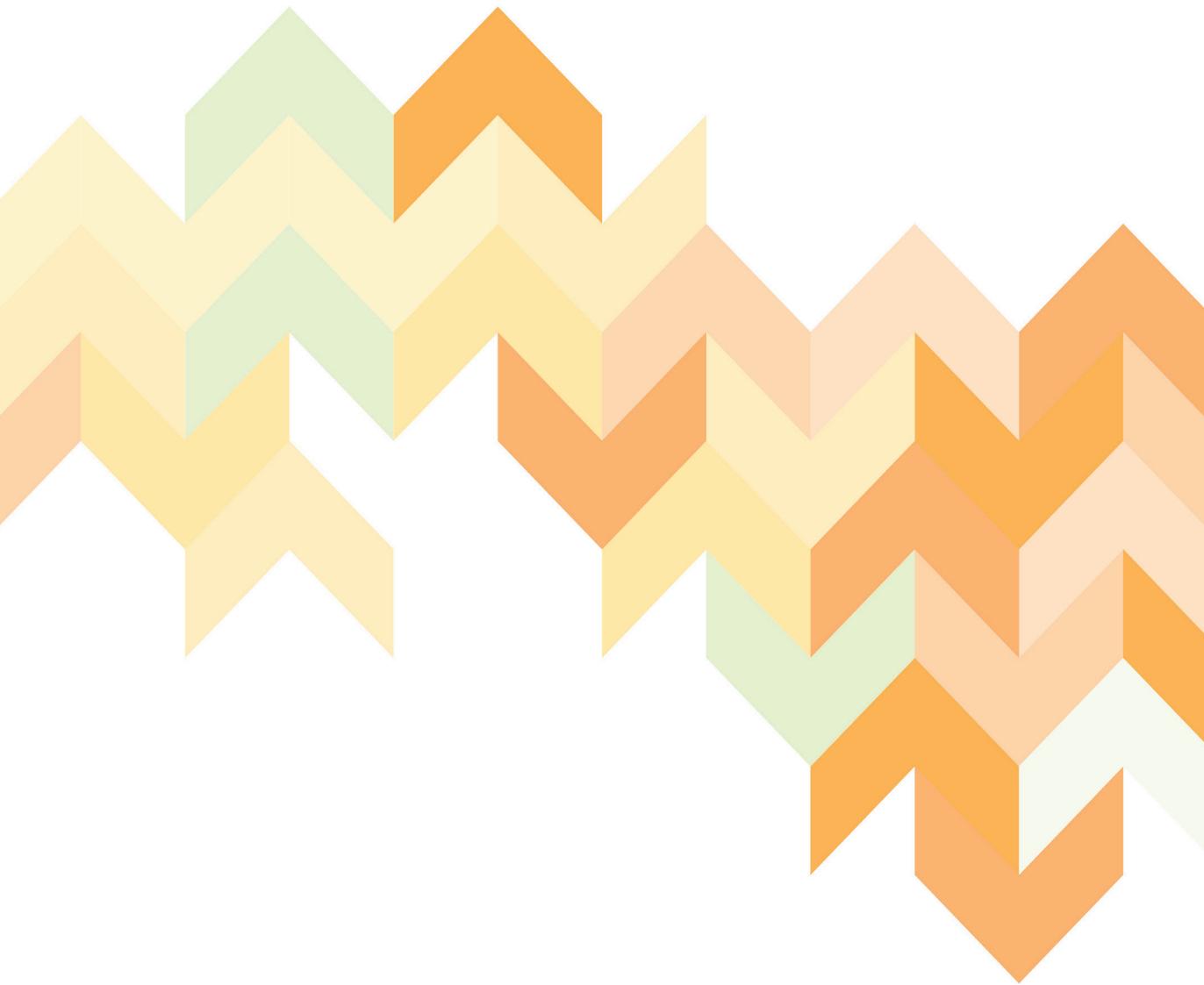
- 권미경·이정원·최효미·김혜진(2016). 육아문화 개선방안 연구. 여성가족부·육아정책연구소.
- 김동훈·이재희·이혜민(2017). 행복한 육아문화 정착을 위한 KICCE 육아정책 여론조사(I). 육아정책연구소.
- 김은정·이혜숙(2016). 영유아 보육(돌봄) 지원 정책 평가와 정책 과제- 보육료 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지경(2005). 가구의 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률과 지출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한가정학회지, 43(6), 47~60.
- 박선욱(2008). 미취학자녀를 둔 가구의 자녀보육비 지출실태와 영향요인. 소비문화연구. 11(2), 197~213.
- 박선욱(2011). 보육서비스 유형선택과 비용의 결정요인. 한국생활과학회지. 20(4), 831~847.
- 연합뉴스(2016. 8. 1.) 내년부터 초등학생 한글교육 학교가 책임진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7/29/0200000000AKR20160729136200004.HTML>에서 2018년 6월 11일 인출함.
- 이성림(2011). 영유아 자녀 가계의 보육 및 교육서비스 소비 실태. 생활과학, 14, pp.118-134.
- 이진화·박진아·박기원(2015).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 연구 III. 육아정책연구소.
- 최효미·김길숙·이동하·임준범(2016).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 연구(IV). 육아정책연구소.
- 최효미·김나영·김태우(2017).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 연구(V). 육아정책연구소.

2018년 이슈페이퍼 모음집
2018 KICCE 육아지원정책 현안과 과제

발행일 | 2018년 12월
발행인 | 백선희
발행처 | 육아정책연구소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3층, 4층
전화 | (02) 398-7700
팩스 | (02) 398-7798
홈페이지 | <http://www.kicce.re.kr>
인쇄처 | 경성문화사 (02) 786-2999

※ 이 책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2018 KICCE
육아지원정책 현안과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3층, 4층
| TEL 02)398-7700 | FAX 02)398-7798 | <http://www.kicce.re.kr>